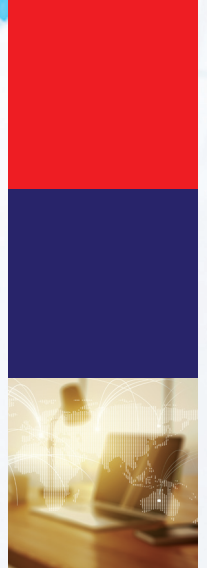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5-20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조문희
이규엽
김현수
금혜윤
강민지
정민철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조문희 · 이규엽 · 김현수 · 금혜윤 · 강민지 · 정민철

연구보고서 25-20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인 쇄 2026년 1월 26일
발 행 2026년 1월 29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름(02-2273-7012)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2,000원
ISBN 978-89-322-1950-9 94320
978-89-322-1072-8(세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국문요약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을 넘어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다자체제에 기반한 개방경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증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무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역사적 고찰, 통상법적 검토, 실증분석, 무역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WTO 체제 이후를 관통하는 관세정책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발 관세조치의 확산 양상과 그 법적 근거, 주요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세인상이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관세인상이 가격, 무역전환, 투자, 고용,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실증적·정량적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트럼프 1기 이후 나타난 주요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무역모형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무역, 가격, 후생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그러나 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양면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둘째, 동태적 무역모형 분석에 따르면 관세장벽과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가별 산업구조와 상품 대체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역 축소,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충격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무역 위축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장벽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별도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인하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가격 측면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WTO 법 중심의 다자규범 집행력이 약화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힘 기반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도와 자국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여 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협상, 국내 산업보호 장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에 나타난 한국의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세장벽의 상시화·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 수출의 '이중 리

스크' 관리, 둘째,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조항의 전략적 활용, 셋째, 우회수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넷째, 글로벌 통상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다섯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여섯째, 무역협정과 WTO 등 법적·외교적 채널의 적극적 활용이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과 목적 18

 2. 주요 연구 내용 19

 3. 글로벌 관세장벽의 역사적 배경 21

 가. 1930년대와 1970년대 관세장벽 22

 나. WTO 체제 이후 29

제2장 글로벌 관세장벽의 확산 동향 35

 1. 미국발 관세 조치의 확산 배경 36

 가. 대외적 요인 36

 나. 대내적 요인 39

 2. 미국발 관세장벽의 확산 47

 가. 트럼프 1기 행정부 47

 나. 바이든 행정부 62

 다. 트럼프 2기 행정부 66

 3. 주요국의 대응 91

 가. 중국 93

 나. EU 98

 다. 캐나다 100

 라. 인도 102

 마. 브라질 103

 바. 멕시코 105

4. 소결	106
제3장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	113
1. 개요	114
2. 관세의 파급 경로: 큰 그림	117
가. 관세 전쟁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117
나. 경제 영향 분석 시 무엇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119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125
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가 오르면 수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	126
나. 높아진 관세의 부담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28
다. 관세 인상으로 관세 수입은 개선되는가?	133
라. 관세 인상은 어떻게 제3국에 영향을 미치는가?	136
제4장 미국발 관세장벽 확산이 미친 영향	139
1. 주요국의 무역 구조 변화	140
가. 미국 수입시장	140
나. 중국 수출시장	154
다. 한국 수출시장	166
라. 한국 수입시장	178
2.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88
가. 개요	188
나. 분석 모형	190
다. 분석 자료	192
라. 분석 결과	192

마. 추가 분석 결과	197
3.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기업의 성과 동향	199
가. 개요	199
나. 분석 대상	200
다. 주요 동향	201
4. 소결	203

제5장 관세장벽 확산과 향후 무역 및 경제 변화 207

1. 개요	208
2. 분석 모형	210
가. 경제주체	210
나. 무역 흐름	218
다. 시장 청산 및 균형	220
라. 분석 방법론: 동적 정태분석(Dynamic hat algebra)	222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223
4.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	229
가. 분석 시나리오	229
나. 데이터	231
5. 분석 결과	234
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234
나. 가격에 미치는 효과	239
다. 후생에 미치는 효과	243
라. 관세정책 불확실성의 영향	246
6. 소결	250

제6장 결론	251
1. 한국의 과거 대응	252
가. 트럼프 1기 행정부	252
나. 바이든 행정부	255
2.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259
가.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노출	259
나. 품목별, 조치별, 표적화된 관세 부과와 예외 조항 확대	262
다. 우회수출에 따른 추가 피해 최소화	265
라. 관세 관련 국내 피해기업 지원 확대	268
마.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성 강화	270
바. 추가 고려사항: 미 국내법, 무역협정, WTO	272
 참고문헌	 280
 부록	 309
 Executive Summary	 321



표 차례

표 1-1. 주요국의 시기별 평균 관세율 비교	24
표 1-2.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 현황	30
표 1-3. 신규 개입 조치의 세부 유형별 현황(2009~25년 누적)	33
표 2-1. 미국의 무역상대국별 상품무역수지(2019~23년)	41
표 2-2.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조사 사항	48
표 2-3. 트럼프 행정부 제301조 조치의 주요 내용	61
표 2-4. 태양광제품에 대한 제201조 조치 내용	63
표 2-5. 바이든 행정부의 제301조 추가 조치 주요 내용	65
표 2-6. 주요국에 대한 IEEPA 상호관세율 수정 및 기타 조정 사항 ..	72
표 2-7.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저지하려는 의회의 법안 발의 ..	80
표 2-8. 2025년 기타 제232조 조치의 조사 개시일 및 경과	88
표 2-9. 트럼프 2기 미국과 무역 대상국의 무역협상 (2025년 10월 현재 기준)	92
표 2-10. 미국발 관세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	95
표 2-11. 트럼프 1기 관세정책에 주로 사용된 법	108
표 2-12.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주로 사용된 법	109
표 2-13. IEEPA를 대체할 관세 부과 수단 비교	110
표 3-1. 관세 전쟁에 따른 관세 수입 증가의 기여	135
표 4-1. 미국 수입에서 산업별 비중	141
표 4-2. 미국 수입에서 국가별 비중	142
표 4-3. 중국 수출에서 산업별 비중	155
표 4-4. 한국 수출에서 산업별 비중	167
표 4-5. 한국 수입에서 산업별 비중	178
표 4-6. 직접효과 분석 결과(중국)	193
표 4-7. 직접효과 성질별 분석 결과(중국)	194

표 4-8. 간접효과 분석 결과(40개국)	195
표 4-9. 간접효과 성질별 분석 결과(40개국)	195
표 4-10. 간접효과 분석 결과(한국)	196
표 4-11. 간접효과 성질별 분석 결과(한국)	196
표 4-12. 삼중차분법 추정 직접 및 간접효과	198
표 4-13. 삼중차분법 추정 간접효과 분석 결과(한국)	199
표 5-1. 기초통계량	227
표 5-2. 무역 불확실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28
표 5-3. 무역 불확실성의 관세상당치	229
표 5-4. 분석 시나리오 개요	231
표 5-5. 국가별 상호관세율	232
표 5-6. 분석 시나리오 내용	233
표 5-7.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미국의 국별 수입 변화	237
표 6-1. 시기별 정부의 대응 비교	259
표 6-2.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	260
표 6-3.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HS 4단위 기준)	260
표 6-4.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내용 중 우회수출(환적) 부분	266
표 6-5. 트럼프 2기 보조금 관련 정책	271
표 6-6. 트럼프 1, 2기의 주요 관세정책 수단	273
표 6-7. IEEPA를 대체할 관세 부과 수단 비교	274
표 6-8. 미국이 FTA를 체결한 주요국과의 상품무역수지 및 FTA 예외 적용	276
표 6-9. 국가안보 예외 조항에 대한 쟁점과 WTO 패널 판단	27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구성과 장(chapter) 간 연계도	20
그림 1-2.	1930년대 미국의 평균 관세율 추이	23
그림 1-3.	1930년대 미국의 전체 교역 추이	24
그림 1-4.	1930년대 미국의 GDP 성장률 및 실업률	25
그림 1-5.	1930년대 영연방의 블록화 심화 현황	26
그림 1-6.	전 세계 관세율 추이	29
그림 1-7.	전 세계 RTA 현황	32
그림 1-8.	세계 무역 관련 신규 조치 현황	32
그림 2-1.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지 추이	40
그림 2-2.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노동자 동향	43
그림 2-3.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 동향	45
그림 2-4.	미국의 대중 및 대세계 관세율 동향	46
그림 3-1.	관세의 파급 경로와 관련 경제변수	120
그림 3-2.	정부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134
그림 4-1.	산업별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143
그림 4-2.	산업별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46
그림 4-3.	생산단계별 미국 수입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148
그림 4-4.	생산단계별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50
그림 4-5.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미국 수입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151

그림 4-6.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53
그림 4-7. 산업별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156
그림 4-8. 산업별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59
그림 4-9. 생산단계별 중국 수출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161
그림 4-10. 생산단계별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63
그림 4-11.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중국 수출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164
그림 4-12.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166
그림 4-13. 산업별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168
그림 4-14. 산업별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71
그림 4-15. 생산단계별 한국 수출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173
그림 4-16. 생산단계별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74
그림 4-17.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한국 수출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176
그림 4-18.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177
그림 4-19. 산업별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179
그림 4-20. 산업별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81

그림 4-21. 생산단계별 한국 수입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184
그림 4-22. 생산단계별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185
그림 4-23.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한국 수입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186
그림 4-24.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187
그림 4-25. 한국의 대미국 수출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2012~23년)	201
그림 4-26. 기업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2016~22년)	202
그림 5-1.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1995. 1.~2025. 9.)	225
그림 5-2.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전 세계 교역 변화	235
그림 5-3.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미국의 수입 변화	236
그림 5-4.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중국 및 한국의 수출 변화	238
그림 5-5.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미국의 가격 변화	240
그림 5-6.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가격 변화(시나리오 1-1)	241
그림 5-7.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변화	245
그림 5-8.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 세계 교역 변화	246
그림 5-9.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요국의 가격 변화	248
그림 5-10.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요국의 후생 변화	249



글상자 차례

글상자 4-1. 미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	192
------------------------------	-----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1. 미국의 주요 관세 조치 관련 한-미 간 수출입 및 비중 ..	313
부록 그림 2. 미국의 주요 관세 조치 관련 국가별 수입 비중	318
부록 그림 3.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국의 수입 변화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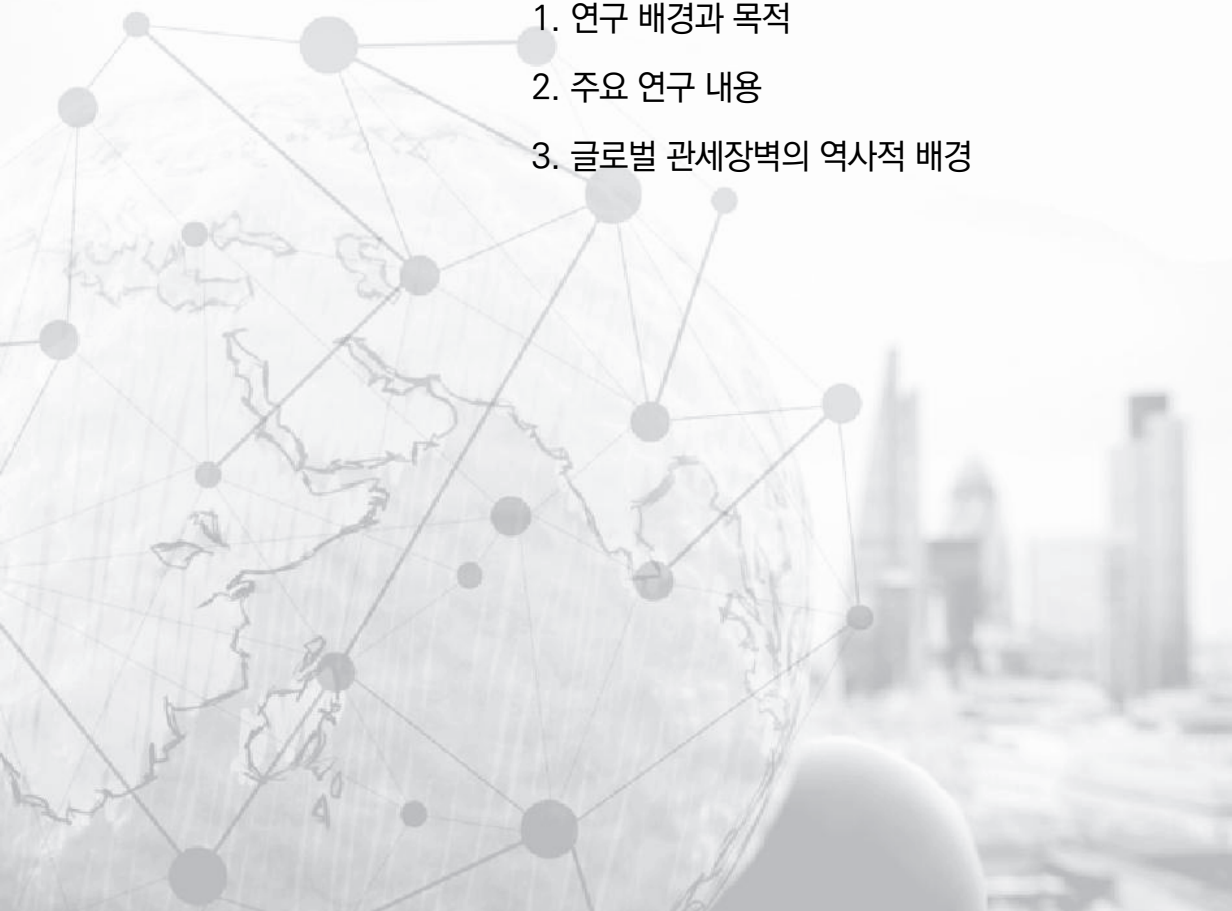
제1장

K

PM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글로벌 관세장벽의 역사적 배경



1. 연구 배경과 목적

2024년 10월 당시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시카고 경제 클럽(Economic Club of Chicago)에서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and it's my favorite word*)”라고 언급하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년) 시기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무역법 제201조(세이프가드),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행위) 등을 근거로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WTO의 다자주의 규범을 우회하는 통상정책을 구사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사실상 유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르러 관세 부과가 중국뿐 아니라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해당 국가들은 협상 또는 보복관세 검토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관세장벽의 확산과 상호보복 위험이 높아졌고, 다자체제 기반의 개방경제 아래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제학적 분석과 통상법적 검토를 결합해 관세장벽 재부상의 배경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무역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관세정책이라는 고전적 수단이 21세기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다음의 핵심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하고자 한다.

- ① 관세장벽은 왜 다시 부상하는가?
- ② 관세장벽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 ③ 이러한 조치의 법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 ④ 한국 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 ⑤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경제적 영향이 예상되는가?
- ⑥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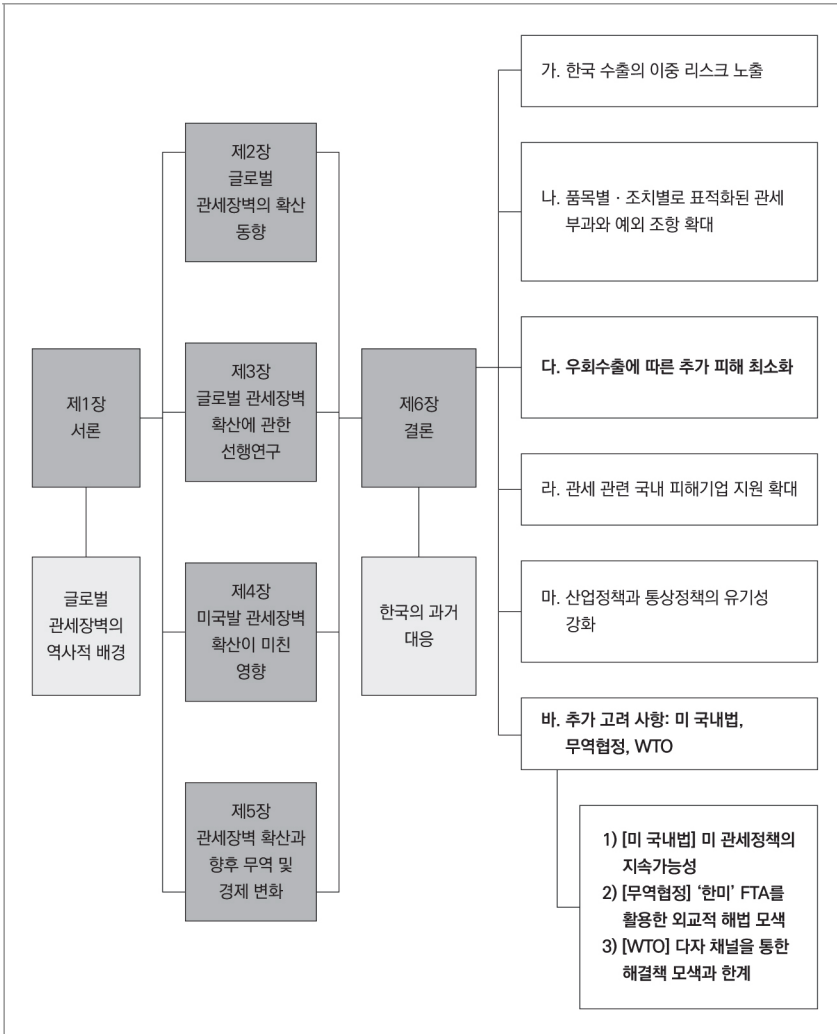
연구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대 이후 관세장벽 확산 사례를 조망함으로써 역사적 관점과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국제통상법적 고찰을 통해 미국 국내법 근거와 WTO 규범 등과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셋째, 경제적 영향평가로서 통계 현황, 선행 연구 검토, 실증분석과 시뮬레이션(동태적 무역 모형) 분석을 병행한다. 분석 범위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전개된 주요 조치의 정리와 2025년 이후의 관세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관세정책의 범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재점화된 주요 관세 조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주요 연구 내용

최근 동향 설명에 앞서 1930년대 관세장벽의 확산과 해소, 1970년대 관세 조치, 1995년 WTO 체제 이후 다자주의의 전개, 그리고 최근 보호무역 강화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정리한다. 이러한 역사적 조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무역 자유화 기조에 역행하는 미국발 관세 조치의 확산 배경과 특징을 다룬다. 국내

법상의 정책 근거, 주요 적용 사례, 법적·정책적 논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조치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적·외교적 대응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관세 인상 및 보복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관세

그림 1-1. 연구의 구성과 장(chapter) 간 연계도



자료: 저자 작성.

변화가 가격·생산·교역·후생 등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설명하고, 이어지는 실증 및 시뮬레이션 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관세정책 확산 전후 주요국의 무역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대미국 한국 수출기업의 매출·영업이익률 등 핵심 재무지표 추이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향후 관세장벽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무역이론모형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관세장벽 변화가 교역, 가격, 후생 등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한국정부·산업계 대응을 검토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3. 글로벌 관세장벽의 역사적 배경

본 절에서는 최근의 관세장벽 확산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과거의 관세장벽 확산 사례를 조망함으로써 역사적 관점과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관세는 각국 정부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특히 수입품에 대한 세율 조정은 국내 시장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도구였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국가별 경제 여건과 산업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운용되었으며, 특정 시기에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관세장벽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관세는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 무역 전략, 국가의 경제 주권, 심지어 외교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왔다. 특히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에는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Tariff Act)과 같은 고율의 관세 조치가 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보복관세를 유발하며 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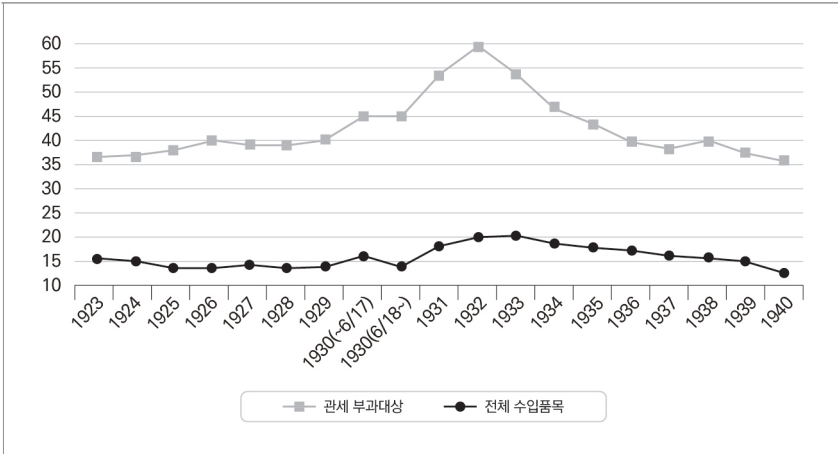
별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바 있다. 이후 1970년대 닉슨 행정부의 10% 수입할증관세(import surcharge)와 같은 전략적 관세정책은 관세가 외교 및 통화 정책의 협상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은 1995년 WTO 출범과 FTA의 확산으로 일시적인 완화 국면을 맞았으나, 최근에는 국가안보, 공급망, 기후 등 새로운 명분을 앞세운 전략적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함께 다시금 관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세정책의 역사적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1930년대의 관세장벽 확산과 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어 1970년대의 관세 조치와 WTO 체제 이후의 다자주의 그리고 최근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까지 관세정책의 전환과 복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가. 1930년대와 1970년대 관세장벽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실업률 급등을 경험하며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였다. 미국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 압력이 강해졌고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보호 요구가 고조되었다. 당시 높은 수준의 관세가 경제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행정부는 자국 경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30년 6월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하여 평균 수입 관세를 약 20%p 인상하면서 높은 보호 장벽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세가 부과되었던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1929년 40.1%에서 1932년 59.1%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면세 품목을 포함한 전체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9.6%로 변화하였다.

그림 1-2. 1930년대 미국의 평균 관세율 추이

(단위: %)



주: 해당 기간 면세 품목의 비중은 전체 수입 품목의 60%대 가량임.
 자료: USITC(2017), pp. 2-3을 토대로 작성.

스무트-홀리법의 시행으로 미국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이 크게 높아지자 유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수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보복에 나섰다. 다른 국가 데이터와의 일관성을 위해 전체 수입품에 대한 주요국의 평균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1920년대 13.0%에서 1930년대 16.6%로 상승했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관세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 그 결과 스무트-홀리법 시행 전인 1929년 미국의 전체 수출은 70억 달러, 전체 수입은 59억 달러였으나 1933년에는 각각 24억 달러와 20억 달러로 65% 이상 급감하였다.

표 1-1. 주요국의 시기별 평균 관세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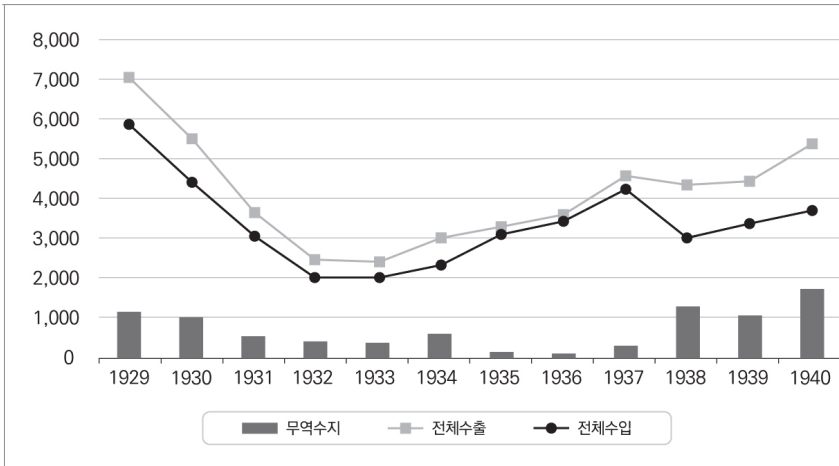
국가		1920~29년	1930~40년
미국	전체 수입	13.0	16.6
	관세 대상 품목 수입	35.1	44.5
캐나다		13.4	15.2
프랑스		7.1	21.0
독일		7.2	26.1
이탈리아		4.5	16.5
영국		9.8	23.2

주: 미국 이외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은 전체 수입품을 대상으로 함.

자료: Crucini and Kahn(2003), p. 5.

그림 1-3. 1930년대 미국의 전체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Trade Data(검색일: 2025. 8. 6.).

결국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전쟁이 촉발되면서 1929년에서 1934년까지 세계 무역도 약 66% 급감했으며,¹⁾ 미국과 유럽 각국은 교역 위축으로 경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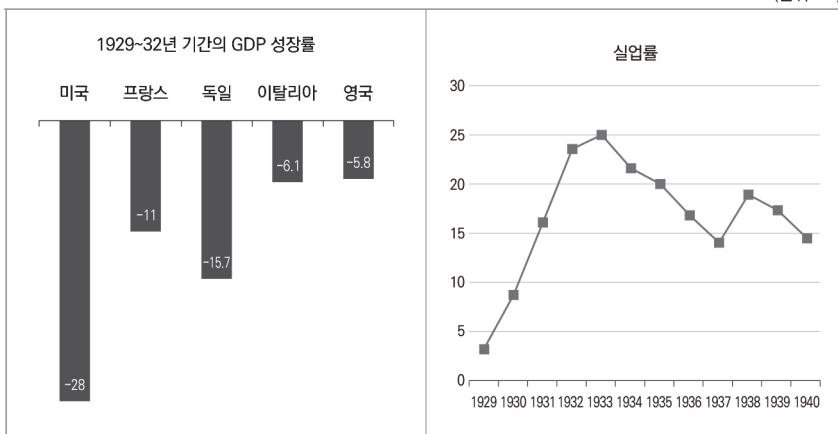
1) Office of the Historian, "Protectionism in the Interwar Period"(검색일: 2025. 8. 6.).

가 더욱 심화되었다. 1929~32년 기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28%에 달했으며, 유럽에서도 독일 -15.7%, 프랑스 -11%, 영국 -8% 등 대다수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스무트-홀리법 시행 당시 8.7%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1933년 24.9%까지 폭등한바, 수출 의존 제조업의 실업자도 대거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스무트-홀리법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자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영국은 기존의 자유무역 기조를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1932년 오타와 회의(Ottawa Conference)를 통해 영연방 국가 간 무역 우대제도(Imperial Preference, 제국 특혜)를 도입했다. 즉 영국은 미국 등 비영연방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유지하는 보호무역 체제를 구축하였고, 영연방 내 특혜관세를 통해 무역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영국 경제권을 강화하였

그림 1-4. 1930년대 미국의 GDP 성장률 및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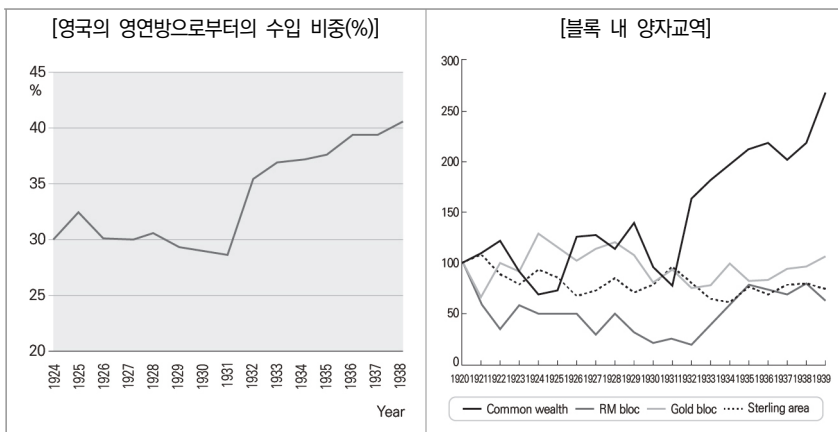
자료: Statista(2022), p. 4.

자료: Statista(2022), p. 5.

다. 이 회의에서 체결된 오타와 협정 이후 영국의 영연방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931년 30%를 상회한 뒤 1938년에는 40%에 달하기도 했다. Jacks and Novy(2019)의 연구에서도 영연방 내 무역(그림 2-5 우측의 검은색 실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931년 이후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 영국이 차별적 무역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블록 내 무역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프랑스 역시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강력한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제를 강화하여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프랑스는 자국의 식민지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구축하여 경제 블록화를 추진했고 프랑스 식민지에서 미국 제품을 배제하고 프랑스 제품 우대 정책을 시행했다. 독일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특히 미국산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겼다. 독일은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자 이탈리아, 헝가리, 발칸 반도의 동유럽 국가(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와 적극적으로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대응 조치로 인해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규모가 급격

그림 1-5. 1930년대 영연방의 블록화 심화 현황



자료: de Bromhead *et al.*(2017), p. 4.

주: 1920년을 100으로 표준화하여 계수값 도출.
자료: Jacks and Novy(2019), p. 20.

히 감소한 반면 유럽 내부의 경제 블록화는 심화되었다. 블록 경제로의 전환은 국제적 무역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1933년 루즈벨트 행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수출시장 위축과 국내 실업률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상호 협력적 무역관계를 강조하였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관세 인하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호 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을 1934년 통과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협상권을 행사하여 의회 승인 없이도 상대국과 관세를 상호 인하하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루즈벨트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협상하며 무역 긴장을 완화하였고 1934~39년까지 총 19개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평균 관세율을 약 40%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관세 완화 협정을 통해 국제 교역량은 1935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기초를 보였고, 생산과 고용이 점차 증가하였다. 루즈벨트 행정부의 관세 완화 노력은 세계 경제에 즉각적인 회복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과 같은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스무트-홀리법 등)가 국제 무역량 급감과 대공황을 악화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브레튼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ference)에서는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설립이 실패하자 우선 관세 감축을 위한 다자 협정으로서 1947년 GATT 체제가 출범했다. 이후 세계 경제는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주도 국가로서 GATT

협상 라운드에 적극 참여하며 선진국 간 관세율을 평균 10% 미만 수준까지 낮추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내외 경제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당시 미국은 심각한 무역적자,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달러-금태환 제도의 한계(달러 유출, 금 보유고 감소)와 함께 일본, 서독 등 경쟁국과의 환율, 무역 불균형도 심화되었다.²⁾ 이에 미국은 경쟁국의 통화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 정지와 함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할증관세(import surcharge)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에 근거한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을 활용한 것으로,³⁾ 임금 및 물가 통제와 함께 발표되어 이른바 닉슨 쇼크(Nixon Shock)로 불린다. 닉슨 행정부는 미국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일본 및 서독과 같은 무역 흑자국이 자국 통화를 절상하도록 압박하고자 하였다. 수입할증관세는 약 4개월 동안 시행되었으며, 전체 수입의 52%에 적용되었고 관세가 없는 품목과 수입할당 대상 품목은 제외되었다. Irwin(2012)에 따르면,⁴⁾ 1971년 당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9.2%였는데 10%의 관세 추가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의 상대가격은 약 8.5%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 미국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0.54)을 적용하면, 결국 이러한 조치는 영향을 받는 수입품의 수입을 4.6% 감소시키거나 총수입을 2.2%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2) Irwin(2021), p. 33.

3) 유지윤(2024), p. 7.

4) Irwin(2012), pp.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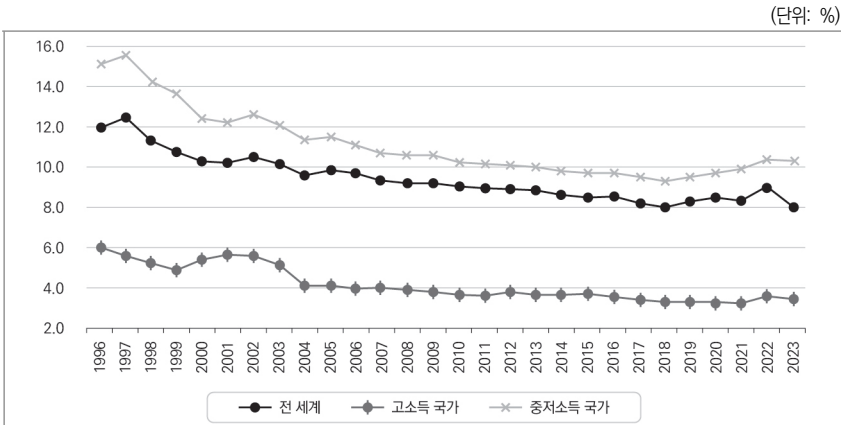
나. WTO 체제 이후

앞서 살펴본 대공황기의 스무트-홀리법, 전후 GATT 체제의 출범, 그리고 1970년대 닉슨 행정부의 수입할증관세 조치까지의 흐름은 관세정책이 단순한 수입세가 아니라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전략적 수단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이러한 경험 위에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보다 강력하고 규범화된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였다. 이하에서는 WTO 체제 이후 세계적인 관세율 인하 추세와 자유무역의 확산, 이후 등장한 지역무역협정의 영향과 보호무역주의의 재부상 과정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최근의 관세정책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글로벌 관세율 동향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IDB가 제공하는 단

그림 1-6. 전 세계 관세율 추이



주: 1) 전체 상품, 단순평균 MFN 관세율임.

2) 소득 기준 국가 분류는 WTO IDB의 기준에 따름.

자료: WITS, WTO IDB(검색일: 2025. 8. 8.).

순평균 MFN 관세율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관세율은 WTO 출범 당시 1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9.2%로 감소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 중·저소득 국가의 관세율은 15.2%에서 10.6%로 감소하여 전 세계의 관세율 하락에 기여하였다. 고소득 국가의 관세율은 같은 기간에 6.1%에서 4.0%로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 세계의 관세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유럽

표 1-2.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 현황

국가	전 품목, 가중평균 MFN 관세율(%)				관세율 변화(%p)		
	2010	2014	2018	2022	2010~14	2014~18	2018~22
벨기에	3.08	3.07	3.11	2.68	-0.01	0.04	-0.43
캐나다	2.96	2.94	3.09	3.05	-0.02	0.15	-0.04
중국	5.30	5.60	4.27	2.86	0.30	-1.33	-1.41
홍콩	0	0	0	0	0	0	0
프랑스	3.08	3.07	3.11	2.68	-0.01	0.04	-0.43
독일	3.08	3.07	3.11	2.68	-0.01	0.04	-0.43
인도	7.34	6.34	6.00	5.99	-1.00	-0.34	-0.01
이탈리아	3.08	3.07	3.11	2.68	-0.01	0.04	-0.43
일본	2.56	2.70	3.03	2.42	0.14	0.33	-0.61
멕시코	5.64	4.64	3.92	4.75	-1.00	-0.72	0.83
네덜란드	3.08	3.07	3.11	2.68	-0.01	0.04	-0.43
폴란드	3.08	3.07	3.11	2.68	-0.01	0.04	-0.43
한국	7.31	7.99	9.07	8.67	0.68	1.08	-0.40
싱가포르	0.14	0.24	0.68	0.11	0.10	0.44	-0.57
스페인	3.08	3.07	3.11	2.68	-0.01	0.04	-0.43
스위스	3.44	4.11	3.42	2.76	0.67	-0.69	-0.66
UAE	3.88	3.60	4.71	2.97	-0.28	1.11	-1.74
영국	3.08	3.07	3.11	3.21	-0.01	0.04	0.10
미국	2.81	2.78	3.19	2.53	-0.03	0.41	-0.66
베트남	6.47	5.42	8.97	4.98	-1.05	3.55	-3.99

주: 1) 수입액은 상품의 수입액만 고려함. 2015~24년 평균수입액 기준 세계 상위 20대 국가에 대만(18위)이 포함되나 대만의 관세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베트남(21위)을 포함함.

2) 인도(2014년)와 UAE(2010년 및 2022년)의 경우 당해 연도 관세율이 누락되어 있어 전년도 자료를 사용함.
 자료: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관세율); UNCTAD, UNCTAD STAT(수입액)(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8. 7.).

재정위기와 세계 무역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주도하는 WTO가 2010년대에 들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의 관세율은 8% 내외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의 관세율은 2008~10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 3.7%를 기록하였고 2015년 이후 관세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중·저소득 국가를 보면, 2010~12년 동안 관세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었고 2010년대 중반 이후 2020년까지 9%대를 유지하였다. 팬데믹 막바지인 2022년에는 전 세계 관세율이 증가하였다가 2023년 기준으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24년 평균수입액 기준, 세계 상위 20위에 속하는 국가의 관세율 현황을 보면 20개 국가 중 2010~14년 동안 관세율이 증가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2010년대 중후반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관세율이 증가한 국가 수가 크게 늘어나는 특징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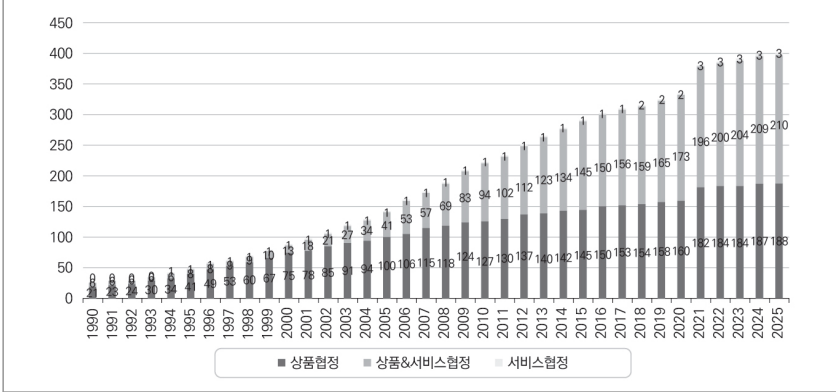
2) 무역 자유화와 보호주의 정책 동향

2000년대 초까지 WTO 중심의 다자 협상이 진척되면서 세계 평균 관세율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보호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시장 개방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평균 기준의 관세 인하 폭은 점차 줄어들지만,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사이에서는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되었다. 글로벌 다자체제를 주도하였던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를 체결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였고, WTO 체제하에서도 이러한 무역협정이 예외로 인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이 확산되었다. 이렇듯 양자 간 혹은 지역 내 무역협정의 확산은 이 협정 내 국가들 간의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무역 확대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Global Trade Alert(GTA)를 통해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요 조치를 살

그림 1-7. 전 세계 RTA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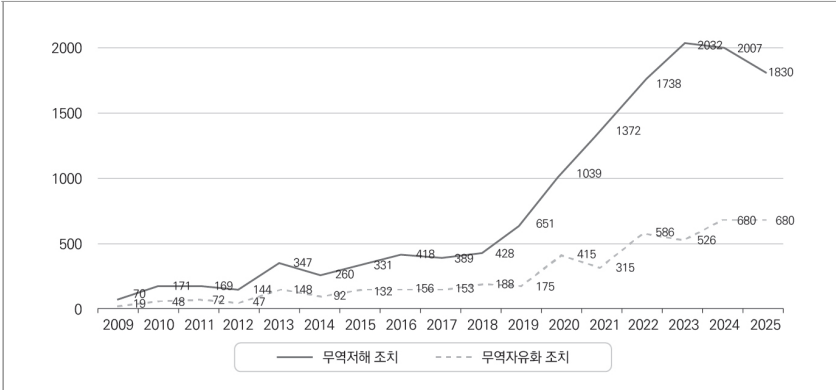


주: 2025년 8월 7일 현재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RTA를 대상으로 하며, 상품과 서비스협정의 발효일이 다른 경우 상품협정 발효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검색일: 2025. 8. 7.).

그림 1-8. 세계 무역 관련 신규 조치 현황

(단위: 건)



주: 연도는 조치의 이행 연도.

자료: Global Trade Alert, Activity Tracker(검색일: 2025. 8. 8.).

펴보면, 무역 저해 조치는 2009년 70건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1,000건을 상회하며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2,032건에 이르렀다.5) 특히 조사

5) GTA는 각국의 국제무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무역 저해(harmful) 또는 무역 자유화(liberalizing)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무역 저해 조치란 해당 정책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국내 상업활동에 보조금

표 1-3. 신규 개입 조치의 세부 유형별 현황(2009~25년 누적)

(단위: 건, %)

세부 유형	구분	개입 건수	비중
재정보조금	보조금	12,682	16.1
정부대출	보조금	11,953	15.1
수입 관세	관세	9,571	12.1
무역금융	수출 관련 조치	6,876	8.7
현지화 인센티브	무역 관련 투자 조치	3,240	4.1
반덤핑	우발적 무역 보호 조치	2,709	3.4
세금 또는 사회보험 감면	보조금	2,363	3.0
대출보증	보조금	2,349	3.0
구체화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보조금	1,788	2.3
해외시장에서의 재정 지원	수출 관련 조치	1,762	2.2
공공조달 현지화	정부조달 제한	1,627	2.1
수출세	수출 관련 조치	1,426	1.8
수입관세 쿼터	비자동 수입 라이선스, 쿼터	1,329	1.7
자본 투입 및 자본 취득	보조금	1,326	1.7
현지 부가가치 인센티브	무역 관련 투자 조치	1,263	1.6
생산보조금	보조금	1,213	1.5
수입 가격 벤치마크	가격통제 조치	1,053	1.3
가격 안정화	보조금	992	1.3
수출 금지	수출 관련 조치	929	1.2
FDI: 진입 및 소유권 규칙	FDI	897	1.1

주: 신규 개입 조치는 총 70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나, 위의 표에서는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유형만 제시함.
 자료: Global Trade Alert, Activity Tracker(검색일: 2025. 8. 8.).

기간을 전반기(2009~17년)와 후반기(2018~23년)로 나누어 보면 후반기에 신규 무역 저해 조치의 이행 건수가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무역 자유화 조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무역 저해 조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의 상업적 이익을 확실하게 차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역 자유화 조치란 해당 정책이 비차별적(즉 최혜국 대우) 기준으로 시장 접근을 개방하거나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무역 저해 조치인지 무역 자유화 조치인지는 정책의 유형이 아닌 정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정책 수단별로 신규 개입 조치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재정보조금이 12,682건(1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정부대출(11,953건, 15.1%), 수입 관세(9,571건, 12.1%), 무역금융(6,876건, 8.7%)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련 정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WTO 체제 이후 세계는 무역 자유화와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국면을 지나왔다.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는 빠르게 증가하며 관세정책이 다시 주요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회귀하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와 전략적 통상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

제2장



글로벌 관세장벽의 확산 동향

1. 미국발 관세 조치의 확산 배경
2. 미국발 관세장벽의 확산
3. 주요국의 대응
4. 소결



본 장에서는 글로벌 관세장벽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앞서, 최근 무역 자유화 기조에 역행하는 미국발 관세 조치의 확산 배경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고율의 관세를 연속적으로 부과하였고, 이는 세계 교역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은 이러한 관세정책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근거, 주요 적용 사례 및 논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조치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적·외교적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본 장은 미국발 관세 조치가 확산된 배경과 그 파급효과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무역 자유화 시대 이후 재등장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미국발 관세 조치의 확산 배경

가. 대외적 요인

1) 관세 양허 제도와 구조적 불균형 문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수입관세 부과는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II조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된다. 회원국은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개별 상품별로 '양허세율(bound rate)'을 설정하고, 이를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라는 형태로 기재하여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로 편입한다(GATT 제II조 제7항). 이 양허세율은 관세의 상한선으로 기능하며,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이 상한을 초과하는 관세 혹은 새로운 형태의 부과금·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GATT 제II조 제1항). 이러한 제도 덕분에 회원국들은 상호 간 시장 접근의 예

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여러 라운드를 통한 관세 인하로 무역 자유화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세 양허는 협상의 산물이므로 국가별·품목별로 큰 편차가 존재한다.⁶⁾ 협상을 통해 정해진 관세 수준은 역사적·경제적 맥락과 협상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미국은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상무부 및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5년 4월 1일 대통령에 보고한 보고서의 제3장,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대외 무역 관행 검토(Review of Unfair and Non-Reciprocal Foreign Trade Practices)에서는 미국의 평균 적용 관세는 3.3%인데 반해 EU(5%), 중국(7.5%), 베트남(9.4%), 인도(17%), 브라질(11.2%)의 평균 관세는 모두 더 높고, 특정 제품에 있어서도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관세는 2.5%이지만 EU, 인도, 중국은 각각 10%, 70%, 15%로 훨씬 더 높은 세율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인도는 50%, 튀르키예는 60.3%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비호혜적인 관세 수준에 대해 지적하였다.⁷⁾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해 전통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낮았고, 제조업과 농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관세 인하를 무역 협상 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다.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등에서 미국은 산업재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대신 서비스, 지적권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저관세·개방 시장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 확산을 촉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낮은 관세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미국 내에서는 “우리는 낮은 관세를 양허했는데, 상대국은 민감품목에서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

6) 각국의 양허세율 및 최근 MFN 세율은 WTO 홈페이지 “tariff profiles”(검색일: 2025. 10.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The White House(2025. 4. 3.),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America First Trade Policy Executive Summary”(검색일: 2025. 4. 4.).

한다”는 불만이 확산되었고, 이는 제301조·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 국내법을 통한 관세 인상의 명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규범 어젠다가 관세, 수입 제한 등을 통해서 규제 준수 비용을 국경에서 가격화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관세정책은 국경에서의 마약 관리 규제 준수 비용으로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의 국제수지 흑자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타국의 국내 정치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GATT 규정상 정해진 관세 양허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구조적 불균형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중국의 부상과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의 어려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중국이 방대한 제조 기반, 저임금 노동력,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급속히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 국가 주도의 비시장경제(NTE) 체제,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국영기업(SOE) 중심의 산업 구조,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그리고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등 WTO 협정의 기본 정신과 양립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⁸⁾

초기에 미국은 반덤핑(Anti-Dumping)이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와 같은 다자체제 내 무역구제 수단을 활용해 대응했으나,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잇따라 위반 판정을 내렸다. 대표적으로 미국-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사건(DS437) 등에서 WTO 상소기구는 국유 지분 보

8) USTR(2024. 2.), “2023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pp. 2-7(검색일: 2025. 5. 2.).

유만으로는 국영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⁹⁾ 미국의 보조금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WTO는 비시장경제국(NME)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관행을 ‘이중 구제(Double Remedy)’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¹⁰⁾

결국 이러한 판례의 누적은 미국으로 하여금 현행 WTO 규범이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와 비시장적 관행을 규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불신은 결국 상소기구 위원의 신규 선임을 거부하는 미국의 선택으로 이어졌으며, 2019년 12월 이후 상소기구는 최종 심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자적 해결의 불능’ 상태는 국제 통상 질서의 공백을 야기했다. 분쟁 해결에 수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최종 판정의 실효성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된 환경 속에서, 미국은 더 이상 WTO 절차에 의존하기보다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국내 법적 수단을 동원한 일방주의적 대응을 본격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대내적 요인

1) 무역수지 균형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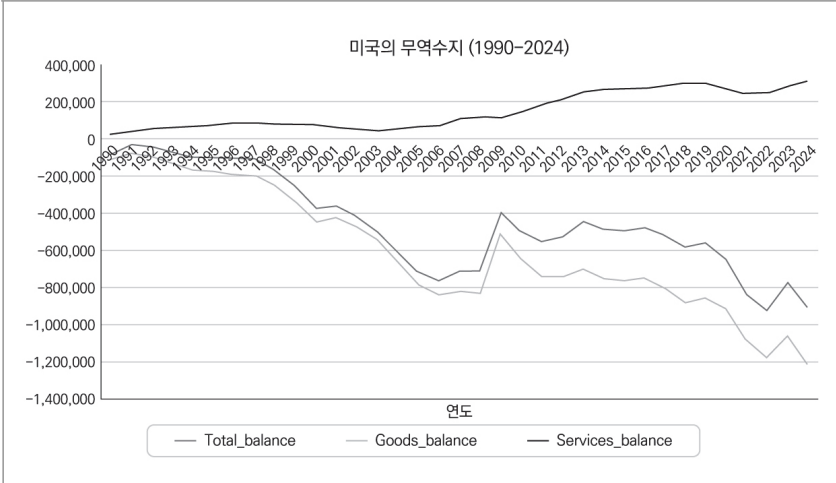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대외 경제 조정 수단을 넘어서, 미국의 구조적인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상품수지는 1조 2,117억 달러 적자, 서비스수지는 2,933억 달러 흑자, 종합 무역수지는 총 9,18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35억 달러(17%) 증가하는 등, 무역 적자 누적 추세가 더욱 심화된 양

9)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437/AB/R, adopted 16 January 2015, para. 4.92.

10) WTO, “Dispute Settlement: DS379 —United States —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DS379)”, Dispute Settlement: One-Page Case Summaries-1995 — 2022(검색일: 2025. 5. 10.).

그림 2-1.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60-present (Excel)"(검색일: 2025. 5. 25.) 토대로 저자 작성.

상을 보였다.¹¹⁾

재무부, 상무부 및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5년 1월 20일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이하 AFTP)에 관한 대통령 각서¹²⁾에 따라 2025년 4월 1일 대통령에 보고한 보고서의 제1장(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Large and Persistent Trade Deficit)에서는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로 인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협의 규모와 긴급성에 대해 논하며, 무역 적자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공정성과 상호주의의 결여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¹³⁾ 이 보고서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관세를 낮게 유지하고 경제를 개방해왔지만 무역 상대국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엄청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부과해 왔

11) BEA,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ecember and Annual 2024 Report" (검색일: 2025. 10. 2.).

12) The White House(2025. 1. 20.), "America First Trade Policy"(검색일: 2025. 4. 4.).

13) The White House(2025. 4. 3.),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America First Trade Policy Executive Summary"(검색일: 2025. 4. 4.).

표 2-1. 미국의 무역상대국별 상품무역수지(2019~23년)

(단위: 백만 달러)

교역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국	-342,629	-307,967	-352,854	-382,295	-279,424
멕시코	-99,417	-110,964	-105,511	-130,465	-152,379
베트남	-66,617	-90,896	-116,145	-113,265	-104,627
독일	-67,051	-56,895	-69,599	-74,077	-83,021
일본	-69,111	-55,476	-60,356	-68,655	-67,283
캐나다	-25,769	-13,813	-47,675	-80,109	-66,253
아일랜드	-52,088	-35,203	-41,167	-66,558	-61,984
대한민국	-20,972	-25,033	-29,233	-43,278	-51,398
대만	-33,067	-30,216	-41,393	-47,370	-44,607
이탈리아	-23,551	-29,490	-39,316	-41,362	-44,061
인도	-23,612	-24,173	-33,319	-43,944	-47,738
태국	-20,162	-26,289	-34,714	-42,836	-40,720
말레이시아	-27,317	-30,342	-36,086	-41,289	-41,153
스위스	-26,665	-56,865	-39,895	-22,677	-24,819
인도네시아	-12,373	-12,815	-17,666	-24,743	-16,884
기타 국가	53,665	5,376	-9,108	36,900	54,914
총계	-845,759	-901,482	-1,071,053	-1,177,373	-1,064,950

자료: USITC 홈페이지, "U.S. Trade by Industry Sectors and Selected Trading Partners"(검색일: 2025. 11. 14.).

다며, 이러한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므로 호혜주의와 균형 잡힌 무역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있다.¹⁴⁾

[표 2-1]이 보여주듯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외국의 '불공정 관행' 때문으로 인식하여 IEEPA를 통한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무역 상대국별 상품 무역수지 불균형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Ibid.*

2) 제조업 경쟁력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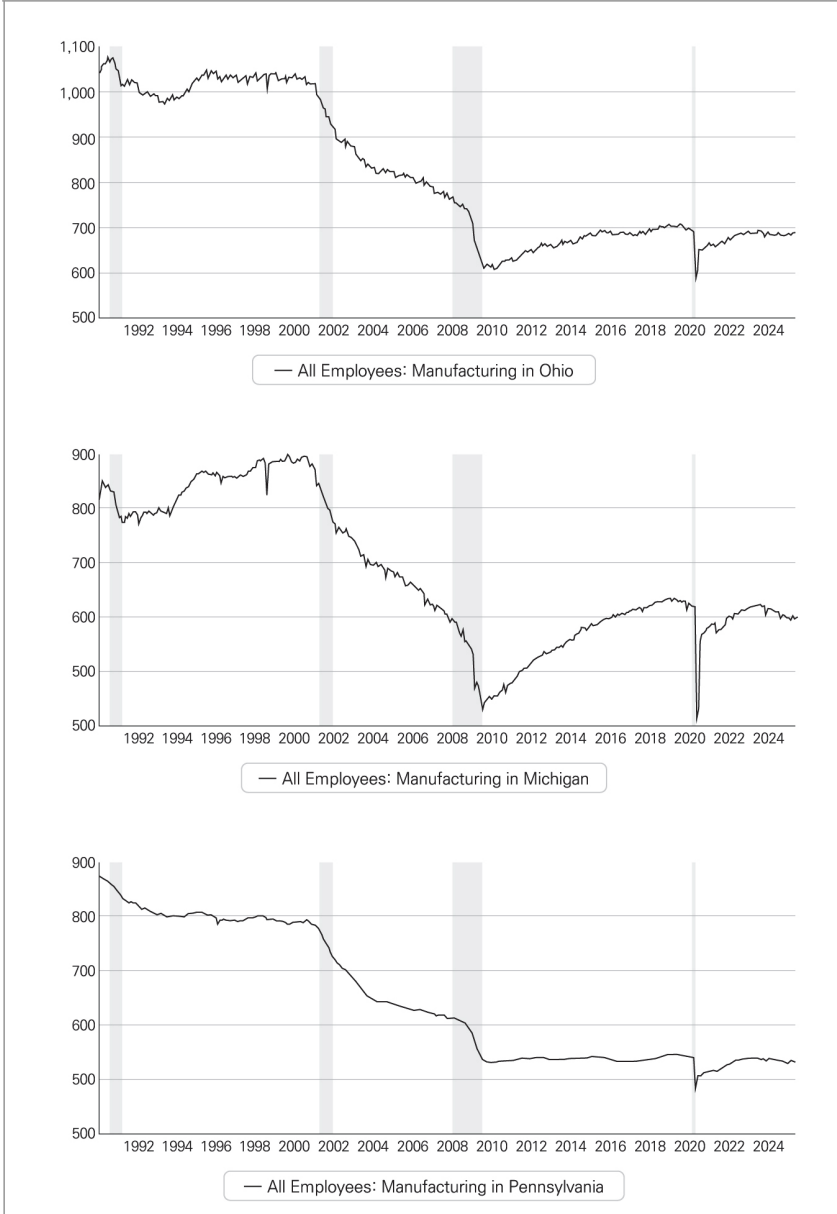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 시정 수단을 넘어, 쇠퇴한 제조업 기반을 복원하려는 정치·산업정책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시장 진출은 미국 중서부 산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중국산 제조품이 미국 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오하이오(Ohio), 미시간(Michigan),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등 전통적인 산업 중심 주에서는 공장 폐쇄와 대규모 해고가 이어졌고,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상실감을 경험했고,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반감으로 전환되었다. 과거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은 ‘글로벌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계층’으로 인식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 특히 고율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근거로 이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2016년 대선 및 이후 재선 국면에서 이 핵심 경합주들을 재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및 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는 관세-투자 연계형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그 투자 분야는 반도체·제약·의약품·선박 제조·에너지 및 LNG 인프라·핵심광물·자동차 및 AI 첨단기술 등 미국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관세 협상을 기반으로 한 FDI 유치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노동자 계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노동자 동향

(단위: 천 명)



자료: FRED, "All Employees: Manufacturing in Ohio"; "All Employees: Manufacturing in Michigan"; "All Employees: Manufacturing in Pennsylvani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4. 4.).

3)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기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또한 재정적자 완화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재정 압박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관세를 통한 직접 세수 확대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의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8년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철강·알루미늄)와 무역법 제301조(중국산 제품)에 근거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관세 수입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히 2018~20년 기간에 관세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대규모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s)의 직접적 효과로 해석된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2020~21년)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관세 수입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팬데믹 이후 교역이 회복되고 기존 관세가 유지되면서 2022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에는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4년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림 2-3]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정책적 요인(보호무역 강화)과 경기·교역량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연방정부의 세수 구조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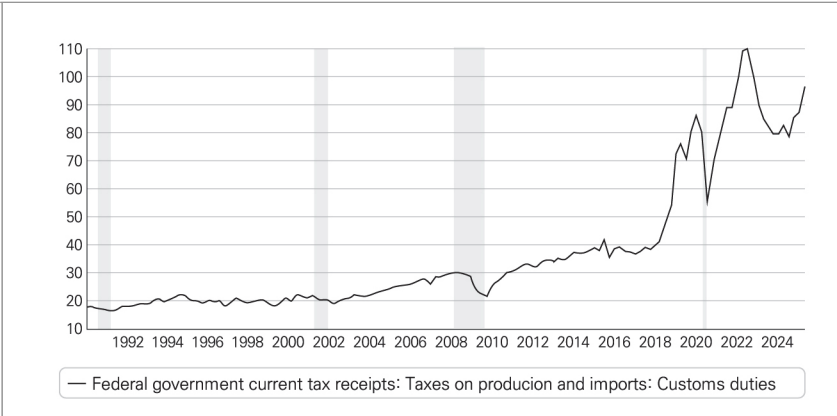
관세의 세입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Bipartisan Policy Center(2025)는 관세 수입이 미국 GDP의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관세가 구조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주요 재정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⁵⁾ 즉 관세 수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세입을 보완할 수 있으나, 그 규모 자체가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보다 긍정적인 재정 기여 효과를 전망하였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2025년 1월 6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시행된 새로운 행정명령 기반의 관세 인상 조치를 분석한 결과,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약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아가 관세 수입 증가로 인한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까지 반영할 경우, 총재정 절감 규모가 약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하였다.¹⁶⁾ 다만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무역 상대국의 보복관세(counter-tariffs)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실제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감소와 교역량 축소

그림 2-3.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 동향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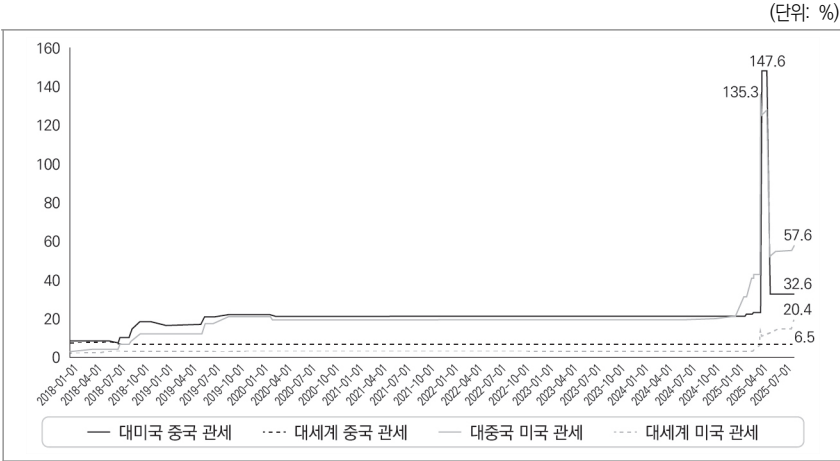


자료: FRED(2025), "Federal government current tax receipts: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Customs duties"(검색일: 2025. 4. 4.).

15) Bipartisan Policy Center(2025. 4. 23.), "How Much Are U.S. Tariffs Raising in Revenue?" (검색일: 2025. 5. 10.).

16)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25. 6. 4.), "Budgetary and Economic Effects of Increases in Tariffs Implemented Between January 6 and May 13, 2025"(검색일: 2025. 7. 15.).

그림 2-4. 미국의 대중 및 전세계 관세율 동향



자료: PIIIE(2025. 9. 25.),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검색일: 2025. 10. 1.).

로 인해 미국의 총재정 개선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 몇 년 동안 관세는 연간 수익의 약 2%만을 차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부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수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 비용에 충당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¹⁷⁾ 백악관의 무역·제조업 수석 보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역시 CNBC 인터뷰에서 “10%의 보편적 관세만으로도 약 3,500억~4,000억 달러의 세입이 발생하며, 협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단순한 무역정책 수단이 아닌 감세 재원 확보 및 재정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에는 전략적 고려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7) Renshaw, Morgan, and Lawder(2025. 1. 23.), “Trump push to use tariffs to pay for tax cuts faces opposition in Congress”(검색일: 2025. 5. 10.).

18) *Ibid.*

2. 미국발 관세장벽의 확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기간인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조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중국의 대미 관세를 보면 최근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2-4). 본 절에서는 2018년부터 미국이 시행한 주요 관세 조치와 그 경과 그리고 어떠한 국내 법적 근거에서 이러한 관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한다.¹⁹⁾

미국 헌법은 의회에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과 대외 무역 및 해외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제1조 제8절 제1항과 제3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외국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가 위임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각 행정부에서 주로 활용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관련 조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국 국내 법원 판례와 WTO 등 국제분쟁 사례 등을 통해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가. 트럼프 1기 행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1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및 통상법 조항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무역법 제201조(Section 201)를 주요 도구로 사용했다.

19) 미국의 관세장벽 확산 관련 무역 현황의 경우 2025년 시행된 여러 조치들과 관련한 변화는 최근(2025년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 밀어내기(front-loading) 물량 확대와 각종 유예 조치로 인해 뚜렷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무역 현황 내용은 [부록]으로 갈음함.

1) 무역확장법 제232조

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개요²⁰⁾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조사 후 수입품의 수량 또는 기타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이 상품 수입에 제한을 가하거나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제232조 조사는 상무장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 신청으로 개시되며,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을 살피는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최대 90일 이내에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치의 내용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대통령은 조치 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의 이

표 2-2.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조사 사항

분류	조사 목록
안보	① 예상되는 미국 국방 수요에 필요한 국내 생산 ②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역량 ③ 미국 국방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 제품, 원자재, 생산 장비 및 시설, 기타 보급품 및 서비스의 기존 및 예상 가용성 ④ 미국의 국방 요구와 그러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산업 및 관련 공급 및 서비스의 성장 요구 사항 ⑤ 상품 수입이 미국 산업과 미국 국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	① 국내 산업의 “외국 경쟁이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② “상당한 실업”, 정부 수입 감소 및/또는 투자 및 기술 손실 등의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미국 제품의 “대체”

자료: 무역확장법 제232조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0) U.S. Congress(2025. 7. 16.),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검색일: 2025. 11. 6.).

유를 설명하는 서면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경우, 상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 진행 후 대통령 조치 결정까지 약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으므로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나)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총 8건의 제232조 조사 후 2건(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조치를 시행하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4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년 1월 조사 결과에 따라 2018년 3월 23일부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²¹⁾ 다만 최종적으로 여러 주요 상대국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거나 혹은 쿼터가 부과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관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 임시 면제 기간 이후 2018년 5월 1일부터 철강에 대해 2015~17년 평균 수입량의 70%(263만 톤)를 기준으로 하는 쿼터를 적용받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그대로 10% 관세를 부과받았다. 비슷하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철강에 대해 쿼터를 적용받았는데, 다만 동시에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었다. 또한 호주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었다. 한편 미국의 가장 주요한 수입 상대국인 EU,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임시 면제 기간 이후 2018년 6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2019년 5월 20일 USMCA 협상을 계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모두 면제되었다.

추가적으로 2020년 2월 8일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일부 파생제품으로 조치 대상이 확대되었는데,²²⁾ 해당 조치는 기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파생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21) Proclamation 9704(알루미늄); Proclamation 9705(철강).

22) Proclamation 9980.

되었다.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은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총 재료 비용에서 평균적으로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018년 6월 1일 이후 수입량이 이전 2년 동안의 연간 수입 물량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2018년 6월 1일 이후 2년 동안 수입 증가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품목으로는 강철 못, 압정, 드로잉핀, 골판지 못, 스테이플,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도금밴드, 자동차용 범퍼 등이 해당되었다. 다만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조치에서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들은 파생제품 관련 조치에서도 면제되면서 한국은 철강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고,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서만 10%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232조 조사를 지시하였다. 2019년 2월 미국 상무부 장관은 관련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광석 및 관련 제품, 티타늄 스폰지, 변압기 및 특정 입자 지향 전기강판 부품, 바나듐, 이동식 크레인 등에 대해 제232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우라늄, 티타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는 상무부의 보고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품목들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거부하면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변압기와 바나듐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되었지만 보고서를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품목들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러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시 협상 카드로 활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의 법적 정당성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과 연방항소법원(CAFC)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심리 거부로 그 법적 정당성이 사실상 인정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관련 소송이 패널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우선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을 살펴보자. 미국국제철강협회(AIIS)는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미국 헌법의 ‘위임 금지 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의회가 입법권을 행정부에 너무 광범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32조가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기준하에 대통령에게 너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였으며, 의회가 구체적인 지침 없이 대통령에게 법률 제정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제23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제무역법원(CIT)은 2019년 3월 이 소송에서 제232조가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²³⁾ CIT는 이 사건은 1976년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Federal Energy Administration v. Algonquin SNG Inc. 사건에 구속되는데, 이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미 제232조가 ‘명확한 원칙(intelligible principle)’을 포함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²⁴⁾

미국국제철강협회(AIIS)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는데, 2020년 2월 CAFC는 제23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폭넓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이라는 기준이 대통령의 재량권을 적절히 제한하는 명확한 원칙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상무부 장관의 적절한 조사로 개시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통령의 결정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²⁵⁾ 이에 CAFC 역시 제232조가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

23)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Inc. v. United States, No. 18-00152, Slip Op. 19-37 (Ct. Int'l Trade Mar. 25, 2019)(검색일: 2025. 11. 4.).

24) *Ibid.*, p. 28.

25)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Inc. v. United States, No. 19-1727 (Fed. Cir. Feb.

하지 않는다며 CIT의 판결을 확정하여 제232조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CAFC의 결정에 불복하여 철강 수입업체인 USP Holdings 등은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23년 3월 27일 이 사건의 심리 요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거부했다.²⁶⁾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인 CAFC의 합헌 판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사실상 국내법적으로는 제232조 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 등 다수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였고 2022년 12월 WTO는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부과한 관세 및 관련 조치가 안보 목적을 빙자한 무역 제한 조치로서 GATT 제1조(최혜국 대우), 제2조(양허표준 초과 관세 금지), 제11.1조(수량 제한 금지)를 위반했으며 GATT 제21조 안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²⁷⁾

GATT 제21조는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GATT 제21조(b)(iii)는 조치가 “전쟁 또는 다른 국제관계에서의 비상 상황(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US-Steel and Aluminium Products (China) (DS544)²⁸⁾ 사건에서 패널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치가 무력 충돌, 전쟁, 심각한 외교 단절 등의 상황 등 비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안보 예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바 안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8, 2020), p. 5(검색일: 2025. 11. 4.).

26) U.S. Supreme Court, “USP Holdings, Inc., *et al.* v. United States, *et al.*,” No. 22-565 (petition for certiorari filed Dec. 20, 2022)(검색일: 2025. 11. 4.).

27) WTO, “US - STEEL AND ALUMINIUM (CHINA), US - STEEL AND ALUMINIUM (NORWAY), US - STEEL AND ALUMINIUM (SWITZERLAND), US - STEEL AND ALUMINIUM (TURKEY)1 (DS544, DS552, DS556, DS564),” Dispute Settlement : One-Page Case Summaries - 1995-2022 (Geneva: WTO, 2023)(검색일: 2025. 5. 10.).

28) WTO, “Dispute Settlement: DS544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검색일: 2025. 4. 4.).

미국은 국가안보 관련 판단은 ‘주권적 결정이며 비사법적 판단(nonjusticiable)’의 영역이라며 WTO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고 2023년 1월 30일 항소하였으나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 사실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국가안보’를 경제적 명분으로 확대 해석하여 남용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안보를 핑계로 보호무역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무역법 제201조

가) 무역법 제201조의 개요²⁹⁾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201조는 미국 국내 산업이 ‘급격히 증가한 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대통령이 미국 산업에 일시적인 구제(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또는 쿼터)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무역 협회, 회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그룹이 제출한 서면 청원서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 자체 주도 또는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의 요청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ITC의 조사 과정은 두 단계로 각 단계에서 ITC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조사 결과를 연방 관보에 게시한다.

첫째 단계에서는 영향을 받는 미국 산업과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데, ① 생산 시설의 상당한 공회전 여부, ② 상당수의 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으로 국내 생산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③ 미국 산업 내에서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한 ITC는 수입 추세 및 기타 요인뿐만 아니라 생산, 이익,

29) U.S. Congress(2021. 1. 13.), “Safeguards: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검색일: 2025. 11. 6.).

임금, 생산성 및 고용의 감소도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여부 및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 심각한 손상 또는 위협 여부를 판단한다. ITC 조사가 매우 복잡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청원서 제출 후 120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둘째로, ITC가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고려하여 관세의 인상 또는 부과를 권장하거나 제품에 대한 관세율 할당 또는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의 수정 및 부과 또는 이러한 조치의 조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국제협상을 시작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한 ITC는 청원서 제출 후 18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USITC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권고사항 중 어떤 것을 이행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은 ITC 권고안을 이행하거나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제201조 조치를 취하는 날 또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대통령은 조치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조치가 ITC 권고와 다르거나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의회는 대통령의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공동 비승인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roval)을 제정할 수 있다. 결의안이 제정되면 ITC 권고가 구제책이 되며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이를 선포해야 한다. 초기에는 최대 4년의 수입 구제를 부여하고, 대통령은 조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치의 초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ITC는 대통령과 의회에 중간 검토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무역법 제201조의 적용

2017년 6월 미국 가전제품 제조사 월풀(Whirlpool)의 요청에 따라 USITC는 세탁기 수입 증가가 자국 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18년 1월 22일 USITC는 세탁기 수입 증가가 심

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USTR이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20~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조치는 2018년 2월 7일부터 일부 예외³⁰⁾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실질적인 타격은 LG, 삼성 등 한국기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조치 기간은 최초 3년이었으나, 2년이 연장되면서 2023년 2월 7일부로 종료되었다.

세탁기에 대한 제201조 조치의 대상은 폭 24.5인치(62.23cm) 이상, 32.0인치(81.28cm) 이하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이다. 세탁기(완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TRQ 방식으로 120만 대까지는 1년 차(2018년) 기준 20%의 저율관세를 부과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쿼터 내 저율관세는 1년 차 20%부터 3년 차 16%까지 감축되었고, 조치 연장 이후인 4년 차(15%)와 5년 차(16%)에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 쿼터초과분에 대한 고율 관세는 매년 5%씩 감축되어 5년 차에는 30%까지 낮아졌다. 세탁기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TRQ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다만 쿼터 내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되었다. 쿼터 초과분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는 매년 5%씩 감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쿼터 기준 물량이 1년 차 5만 개에서 3년 차 9만 개 및 5년 차 13만 개로 점차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태양광 제품 제조사 수니바(Suniva) 등의 청원에 따라 5월부터 USITC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USITC는

30) FTA 체결국 중에는 캐나다에 대해서만 면제되었으며, GSP 수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전체 수입의 3%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면제되었다(일례로 태국의 경우 3%를 초과하여 조치 대상에 포함됨).

31) 관련 Fact sheet에 따르면 2011년 월풀은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된 세탁기가 덤핑 가격으로 수출되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원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013년 상무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이익을 얻는 수입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LG와 삼성은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2015년 월풀이 다시 중국으로부터의 세탁기 수입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에 따라 2017년 상무부는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LG와 삼성의 생산공장은 또다시 태국, 베트남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USTR,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fact sheet)"(검색일: 2025. 8. 8.).

관련 수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00% 증가했고 가격은 60% 하락하여 대부분의 미국 생산업체가 국내 생산을 중단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 혹은 파산을 선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2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치는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2018년 2월 7일부터 일부 면제³²⁾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조치 기간은 최초 4년이었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4년 연장이 결정되어 2026년 2월 6일 종료되었다.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201조 조치의 대상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 및 모듈이다. 태양광 셀의 경우 TRQ 방식이 적용되어 쿼터(2.5GW) 내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되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년 차 30%의 관세가 4년 차까지 매년 5%p 감축되었으며, 쿼터는 4년 차까지 2.5GW가 유지되었다. 반면 태양광 모듈의 경우 TRQ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1년 차 30%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감축되었다. 추가적으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부터 관세가 면제된 바 있는데 2020년 10월 해당 면제가 철회되었고 동시에 4년 차(2021년 2월~) 관세율이 15%에서 18%로 인상되었다.³³⁾

다) 무역법 제201조 적용의 법적 정당성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SG)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 세이프가드에 관한 절차적 및 실체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발동 이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조치의 영향에 상당하는 수준의 양허를 통해 피해국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³⁴⁾하고 있으며 만약 보상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피해국에게 세이프가드

32) GSP 수혜 개발도상국 중 전체 수입의 3%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면제되었다(태국과 필리핀은 3%를 초과하여 조치 대상에 포함). 한편 인도의 경우 GSP 지위가 박탈된 2019년 6월 5일부터 조치 대상이 되었다.

33) Federal Register(2020), "To further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certai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검색일: 2025. 8. 8.).

34) SG 협정 8.1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을 제안하거나 동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조치에 상응하는 양허 정지를 취할 권리를 부여³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법 제201조를 근거로 태양광 전지 및 모듈에 취해진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8년 5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DS546).³⁶⁾

USITC는 세탁기 및 부품을 함께 누적(cumulation)하여 수입 증가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측은 부품이 국내 세탁기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 평가가 부적절하며 상대적 시장점유율, 증가 속도, 가격 변화 등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USITC의 누적 평가 및 시장점유율 분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SG 협정 제2.1조 및 제3.1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³⁷⁾ 또한 USITC가 국산 부품과 수입 부품이 서로 경쟁하지 않음에도 동종상품이라고 본 점은 SG 협정 제4.1조 국내 산업 정의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³⁸⁾ 또한 국내 산업의 심각하고 전반적인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가격, 수익성 등 SG 협정 제4.2(a)조 항목을 모두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해야하나, 국내 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내 생산자와 관련된 재무 데이터를 제외하였으며, USITC는 가격 억제 효과 및 추세 일치를 근거로 수입 증가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³⁹⁾

따라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자기 나라 간에 1994년도 GATT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 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5) SG 협정 8.2조

제12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 정지의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1994년도 GATT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36) WTO, "Dispute Settlement: DS546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 (DS546)," Dispute Settlement Case Summary(검색일: 2025. 5. 10.).

37) WTO,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 (DS546)," Dispute Settlement: One-Page Case Summaries —1995-2022 (Geneva: WTO, 2023)(검색일: 2025. 5. 10.).

38) *Ibid.*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이후 양측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2023년 4월 28일 후속 절차를 종료하기 위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⁴⁰⁾

태양광 제품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8년 5월 14일에, 중국은 2018년 8월 14일에 분쟁해결절차상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제기한 사건은 2018년 9월 26일 패널이 설치되었으나 패널이 구성되지는 않았다(한국제기 DS545⁴¹⁾; 중국제기DS562⁴²⁾).

중국이 제기한 협의 절차는 2019년 8월 15일 패널이 설치되고 2019년 10월 24일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2021년 9월 2일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다. 동패널보고서(WT/DS562/R)에 따르면 패널은 USITC의 보고서를 근거로, ‘예상치 못한 상황’ 및 ‘관세 양허 의무의 효과’로 인해 수입이 급증했다는 미국의 설명이 GATT 규정에 부합하며, 중국이 미국의 규정 비합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⁴³⁾ 또한 패널은 미국의 USITC가 태양광 제품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수입 증가 탓으로 돌려지지 않도록 하는 비귀속(non-attribution)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국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⁴⁴⁾ 끝으로 중국은 조사 중 기밀 정보에 대한 SG 협정 제3.1조 및 제3.2조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중국의 주장이 제3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

39) *Ibid.*

40) WTO(2023. 4. 28.), “Korea, US reach mutually agreed solution in large residential washers dispute”(검색일: 2025. 5. 10.).

41) WTO, “Dispute Settlement: DS545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Products (DS545),” Dispute Settlement Case Summary(검색일: 2025. 5. 10.).

42) WTO, “Dispute Settlement: DS562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Products (DS562)”(검색일: 2025. 5. 10.).

43) WTO,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PV Products (China) (DS562),” Dispute Settlement: One-Page Case Summaries - 1995-2022 (Geneva: WTO, 2023)(검색일: 2025. 5. 10.).

44) *Ibid.*

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요 주장 모두를 기각하였다.⁴⁵⁾

3) 제301조

가) 무역법 제301조의 개요⁴⁶⁾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편(제301조~제310조, 19 U.S.C. §§2411-2420)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의 구제’라는 제목으로 통칭되며 종종 ‘제301조’라고 불린다. 제301조는 USTR에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고 특정 대외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제301조에 따른 조사는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가 거부되거나 외국 정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①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한 혜택을 위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② 정당화할 수 없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경우 개시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청원 또는 USTR 직권으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협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USTR은 조사가 개시된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30일 이내에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외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301조는 USTR이 ①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을 부과하고, ② 무역협정 양보를 철회 또는 중단하고, ③ 해당 행위를 중단하거나 미국에 보상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USTR은 수입 제한 선택 시 관세를 우선시해야 하며 의무조치의 수준은 해당 국가가 미국 상업에 부과하는 부담 또는 제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USTR은 조치의 수정 또는 종료 사유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301조 조치는 USTR이 지속할

45) *Ibid.*

46) U.S. Congress(2025. 9. 30.),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검색일: 2025. 11. 6.).

것을 요청받고 사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한 4년 후에 종료된다.

1974년 제정된 이후 2025년 1월까지 제301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건은 130건이며, 그중 35건만이 1995년 WTO 설립 이후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는 WTO에서 분쟁해결절차가 시행된 후 제301조 조사가 아닌 WTO DSU를 주로 활용하여 무역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⁴⁷⁾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나) 무역법 제301조의 적용

2017년 8월 USTR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이전 강제 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보고하였다. 이후 2018~19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7.5~2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제301조 조치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차(2018년 7월 6일) 조치에서는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 반도체, 의료기기, 로봇, 통신장비 등 첨단 제조업 관련 340억 달러 규모의 품목들이 대상이 되었다. 제2차(2018년 8월 23일) 조치는 화학제품, 플라스틱, 오토바이 등 160억 달러 규모의 품목들이 대상이 되면서 그 범위가 주요 제조업으로 확대되었다. 제3차(2018년 9월 24일) 조치에서는 2,000억 달러 규모로 대상 품목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요 품목 역시 생활용품, 가전제품, 가구, 식료품, 섬유, 금속, 건축자재 등 다양한 산업재뿐 아니라 일부 소비재에까지 확대되었다. 제4차(2019년 9월 1일) 조치는 처음에는 3,0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0년 1월 15일 미-중 무역 합의(Phase One Deal)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이 대상이 되었다. 대상 품목에 의류, 신발, 스마트폰, 노트북, 장난감, 가정용 전자제품, 스포츠 용품, 도서 등이 포함되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에

47) Crowell(2025), "Section 301: History and Overview"(검색일: 2025. 4. 4.).

표 2-3. 트럼프 행정부 제301조 조치의 주요 내용

(단위: 미 달러, %)

구분	시행일	대상 품목	관세율
1차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	25%
2차	2018년 8월 23일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	25%
3차	2018년 9월 24일	2,000억 달러 규모, 5,745개 품목	10% → 25%*
4차	2019년 9월 1일	1,100억 달러 규모, 3,229개 품목	15% → 7.5%**

주: 대상 품목은 조치 시행 당시 발표된 HTS 8단위 기준.

* 2019년 6월 15일 25%로 인상.

** 2020년 2월 14일 7.5%로 인하.

자료: 최철화(2024), 「트럼프 2.0」 시대와 중국(1): 관세(검색일: 2025. 8. 8.).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소비재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제301조 조치에 대응하여 2018년 7월 6일 돼지고기, 대두, 자동차 등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다만 2020년 1월 15일 양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의 일부를 유예 또는 중단하였다.

다) 무역법 제301조 적용의 법적 정당성

2018년 중국은 미국이 제301조에 근거하여 자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가 GATT 제I조(최혜국대우) 및 제II조(관세 양허)에 위반된다며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하였다(DS543).⁴⁸⁾ 이에 대해 미국은 해당 조치가 GATT 제XX조(a)호의 ‘공중도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미국의 기술, 지식재산, 상업기밀의 절도 및 오용’이라는 공중도덕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제기한 ‘도난, 오용, 불공정 경쟁 반대’라는 윤리 기준이

48) WTO, “Dispute Settlement: DS543 —United States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검색일: 2025. 5. 10.).

GATT 제XX조(a)에서 말하는 공중도덕(public morals)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미국이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이 인용한 공중도덕 목표 사이에 목적과 수단의 진정한 관계를 입증하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조치가 GATT 제XX조(a)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패널은 중국의 주장대로 미국이 GATT 제I조 제1항 및 제II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제XX조(a)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2020년 9월 15일 판결하였다.⁴⁹⁾ 이에 대해 미국은 2020년 10월 27일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기구 기능 마비로 인해 본 사건은 현재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나.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2021~25년)도 제301조, 제232조, 제201조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유지·관리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처럼 공격적·일방주의적으로 확대한 형태는 아니며, 동맹과의 조율, 공급망 안정, 인플레이션 대응 등 정책 목적과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1)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일부 동맹국과는 합의를 통해 TRQ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EU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비슷하게 일본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철강에 대해 쿼터가, 영국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쿼터

49) WTO, "United States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DS543)," Dispute Settlement: One-Page Case Summaries - 1995-2022(검색일: 2025. 5. 10.).

표 2-4. 태양광제품에 대한 제201조 조치 내용

(단위: GW, %)

연도(기간*)	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	비고
	쿼터(GW)	쿼터 내 관세율	쿼터 초과 관세율	관세율	
2018	2.5	0	30	30	2/7 시행(4년)
2019	2.5	0	25	25	
2020	2.5	0	20	20	
2021	2.5	0	18(15)	18(15)	11/16까지 15%
2022	5	0	14.75	14.75	연장(4년), 쿼터 확대
2023	5	0	14.50	14.50	
2024	5	0	14.25	14.25	8/1 쿼터 확대
2025	12.5	0	14	14	
2026	-	-	-	-	2/6 종료

주: * 관세 부과 기간은 해당 연도의 2월 7일부터 다음 연도의 2월 6일까지임.
 자료: 저자 작성.

가 적용되었다. 한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제232조 관세가 임시 유예되었고, 2023년에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해 200% 관세가 부과되었다.⁵⁰⁾

2) 무역법 제201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셰이프가드는 2018년 2월 7일부터 태양광 셀에 대하여 연간 쿼터 2.5GW를 기준으로 쿼터 내에서는 무관세,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1년 차 30%부터 매년 5%p가 감축되어 4년 차 15%(18%로 인상)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태양광 모듈의 경우 쿼터 없이 상기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 계속 필요하다”며 조치 기간을 2026년 2월 7일까지로 4년 연장하였다.⁵¹⁾ 조치가 연장된 5년 차(2022년)부터는 관세율이 매년 0.25%p

50) U.S. Congress(2025. 9. 26.), “Expanded 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검색일: 2025. 11. 6.).

51) Proclamation 10339.

감축되어 관세율 자체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는데, 다만 태양광 셀에 대한 쿼터를 5GW로 확대하였고, 나아가 2024년 8월부터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증가에 따른 태양광 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쿼터를 12.5GW로 크게 확대하였다. 추가적으로 양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부터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2024년 6월 다시 면제가 철회되었다.

3) 무역법 제301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취한 대중국 제301조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2022년 해당 조치의 의무 검토 주기(4년) 도래에 따라 2024년 5월 14일 USTR은 4개년 검토 보고서⁵²⁾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상업에 계속해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기술 이전 관련 행위, 정책 및 관행을 많이 제거하지 않았고, 사이버 침입과 사이버 절도를 포함하여 외국 기술을 획득하고 흡수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으며, 경우에 따라 더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미국에 더 큰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⁵³⁾ 더불어 USITC의 분석에 의하면 제301조 관세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다른 대체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다각화와 회복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⁵⁴⁾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80억 달러 규모 389개 품목에 대해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주요 대상 품목은 전기차(관세율 25%→100%), 반도체(25%→50%), 태양광 패널(25%→50%), 리튬이온 배터리(7.5%→25%), 핵심광물(0%→25%) 등이다. 특히 전기차, 태양광 셀, 반도체를 제외하면 모두

52) USTR(2024),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검색일: 2025. 8. 19.).

53) USTR(2024), "USTR Finalizes Action on China Tariffs Following Statutory Four-Year Review"(검색일: 2025. 8. 19.).

54) *Ibid.*

표 2-5. 바이든 행정부의 제301조 추가 조치 주요 내용

시행일	대상 품목	품목 수	관세율
2024년 9월 27일	배터리 부품(비(非)리튬이온)	1	7.5% → 25%
	전기차	8	25% → 100%
	전기차용 배터리(리튬이온)	1	7.5% → 25%
	의료용 호흡보호구 및 안면 마스크(1차)	1(2)	7.5% → 25%
	주사기, 비늘(경장주사기 외)	1	0% → 100%
	STS 크레인	1	0% → 25%
	태양광 셀	2	25% → 50%
	철강·알루미늄	321	0~7.5% → 25%
	핵심 광물(천연흑연 외)	26	0% → 25%
2025년 1월 1일	반도체	15	25% → 50%
	의료용 및 수술용 고무장갑(1차)	1	7.5% → 50%
	1회용 섬유 안면 마스크(1차)	1(1)	7.5% → 25%
	팅스텐	3	0~7.5% → 25%
	태양광 웨이퍼	1	25% → 50%
	폴리실리콘	1	25% → 50%
2026년 1월 1일	의료용 호흡보호구 및 안면 마스크(2차)	1(2)	25% → 50%
	경장주사기	1	0% → 100%
	비(非)전기차용 배터리(리튬이온)	1	7.5% → 25%
	의료용 및 수술용 고무장갑(2차)	1	50% → 100%
	1회용 섬유 안면 마스크(2차)	1(1)	25% → 50%
	천연흑연	3	0% → 25%
	영구자석	1	0% → 25%

주: 품목 수는 HTS 8단위 기준이며, ()는 HTS 10단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경우 해당 품목의 HTS 10단위 수.
 자료: Bond, Solomon, and saccomanno(2024), United States finalizes Section 301 tariff increases on imports from China(검색일: 2025. 8. 19.).

기존에 추가 관세가 0%이거나 또는 7.5%의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던 품목들이었으며, 이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대중국 수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당 조치는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많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27일부로 시행되었고, 이어서 2025년 1월 1일 2차 조치가 시행되고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3차 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조치는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와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해 관세가 집중적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향후에도 제301조 조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제301조·제232조·제201조 조치를 전면 폐기하지 않고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추가 조치는 자제하였으며, 동맹국과의 조율 및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제301조 대중국 관세는 유지 및 추가된 반면,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EU 등 우호국과 협정을 통해 쿼터 체제로 조정되었다. 또한 제201조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친환경 산업 보호 차원에서 연장되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전략적 유연성과 정책 목적 중심으로 활용 방향이 다소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라며 대선 캠페인 내내 관세를 대외정책의 일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1월 20일에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memorandum) 제2조(a)에서도 상무장관은 재무장관 및 USTR과 협의해서 미국의 크고 지속적인 연간 상품무역 적자 원인과 그로 인한 경제 및 국가안보의 영향 및 위험을 조사하고 글로벌 추가 관세 또는 기타 정책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였고,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해 다양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발

55) Federal Register(2025. 1. 30.), “America First Trade Policy”(검색일: 2025. 4. 3.).

표하고 상황을 보아 빠르게 수정하는 등 새로운 관세의 발표와 수정이 짧은 주기로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을 더해오고 있다.

1) IEEPA

가) IEEPA의 개요⁵⁶⁾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 Code § 1701-1707, 이하 IEEPA)」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적성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의 권한을 평시 체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의 경제적 비상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1945년 이후에도 대통령이 TWEA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국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외국인 자산을 동결하는 등 폭넓은 경제 통제를 실행하자, 의회는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 Code §1622, 이하 NEA)」과 IEEPA를 차례로 제정하여 대통령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투명성과 보고 요건을 강화하였다. 비록 IEEPA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일정한 절차적 통제를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법령이 TWEA와 유사한 수준의 광범위하고 견제받지 않는 행정권한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IEEPA는 NEA에 근거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그러한 위협에 관하여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한 후⁵⁷⁾ 외환 거래 규제, 자산 동결 및 통화 또는 유가증권의 수출 및 수입

56) U.S. Congress(2025. 9. 1.),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검색일: 2025. 11. 6.).

57) 법령(Section 1701)은 "(a) Any authority granted to the President section 1702 of this title may be exercised to deal with any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which has its source in whole or substantial part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or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if the President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규제, 재산 몰수 등 광범위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주목할 점은 IEEPA 조문상 명시적으로 관세정책을 관한 범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권한 부여의 예외 조항[50 U.S. Code § 1702(b)]에서도 관세정책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IEEPA는 지금까지 주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개인 단체 자산 동결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활용되어왔으며, 관세 부과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2025년 2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최초였다.

나) IEEPA의 적용

2025년 2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경 보안과 펜타닐 문제를 명목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하여 추가 관세(이하 펜타닐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 약물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가비상사태 선언(2025년 1월 20일)과 연계되어 시행되었다.⁵⁸⁾

가장 먼저 중국(홍콩 포함)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4일 10% 관세 부과 이후, 3월 4일 다시 10% 인상되면서 총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20%의 펜타닐 관세는 2025년에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10월 30일 미-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11월 10일부터 다시 인하되어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⁵⁹⁾

캐나다의 경우 2025년 2월 1일 양국 정상 간 협의로 △13억 달러 규모의 국

with respect to such threat(이 편 제1702조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그러한 위협에 관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그 근원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미치는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 "The authorities granted to the President section 1702 of this title may only be exercised to deal with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with respect to which a national emergency has been declared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nd may not be exercised for any other Purpose[...](이 편 제1702조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것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없다[...])"고 하여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정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5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9), IN11129(검색일: 2025. 8. 8.).

59) Executive Order 14357.

경 계획을 시행할 것,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 명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시행이 30일간 중단되었다.⁶⁰⁾ 멕시코 또한 2025년 2월 1일 양국 정상 간 협의를 통해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하여 국경 지역에 1만 명의 군인을 즉시 파견하는 등의 조건으로 관세 시행이 30일간 중단되었다.⁶¹⁾

그러나 2025년 3월 4일부터 멕시코⁶²⁾와 캐나다⁶³⁾에 대해서도 25%의 펜타닐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멕시코에 대해서는 칼륨,⁶⁴⁾ 캐나다에 대해서는 칼륨⁶⁵⁾과 에너지 품목⁶⁶⁾에 대해 10% 관세가 적용되었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기존 10%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25%에서 35%로 인상되었으며,⁶⁷⁾ 멕시코에 대해서는 7월 31일 양국 정상 간 협의를 통해 25% 관세 적용이 연장되었다.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세의 경우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펜타닐 관세가 추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5년 1~8월 기준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 중 약 90%,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 중 약 85%가 USMCA를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실질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⁶⁸⁾ 더불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는 행정명령 14289에 따라 제232조(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조치와 중첩되어 적용되지 않는다.⁶⁹⁾ 그러나

60) Trump(2025b), 'Truth Social post'(검색일: 2025. 10. 21.).

61) Trump(2025a), 'Truth Social post'(검색일: 2025. 10. 21.).

62) Executive Order 14198.

63) Executive Order 14197.

64)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d5afad)(검색일: 2025. 10. 21.).

65)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d5b0a5)(검색일: 2025. 10. 21.).

6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d7c46d)(검색일: 2025. 10. 21.).

67) Executive Order 14325.

68) Gillies(2025. 8. 6.), "Crucial exemption allows majority of Canadian and Mexican goods to shipped to US without tariffs"(검색일: 2025. 10. 2.).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는 다른 관세 조치(제232조 조치, 제301조 조치, 상호 관세 등)와 중첩되어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2025년 4월 2일 미국은 무역 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정책, 세금정책, 환율 조작, 불공정 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안을 발표하였다.⁷⁰⁾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57개 국가에 대해서는 명시된 상호관세율(11~50%)에 따른 차등적인 관세가, 이외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10%의 관세(보편관세)가 예고되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에 펜타닐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만큼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이한 면제 국가인데,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가 중첩되어 적용된다.

국가마다 차등적으로 책정된 상호관세율은 미국과 상대국의 관세율 차이뿐 아니라 TBT, SPS,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부패 등 비관세장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고려한 결과라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24년 기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과 무역수지 적자액의 비율(=무역수지적자액/수입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시키는 데 그 기저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상대국에게 무역수지 관리라는 제약을 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통해 각국에 대하여 양자 간 무역 협상을 강요하였다.

상호관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치이나, 실질적으로는 상당수의 품목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품목별 관세 조치(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품목(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과 더불어 향후 품목별 관세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 품목(의약품, 반도체, 항공기, 산업기계 등), 그리고 핵심광물, 에

69) Executive Order 14289,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e0a63e)(검색일: 2025. 8. 8.).

70) Executive Order 14257.

너지 등과 같이 미국이 수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품목들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최초에는 반도체 디바이스(HS_8541) 및 반도체(HS_8542) 관련 품목만 면제 리스트(ANNEX-II)에 포함된 바 있으나, 2025년 4월 11일 스마트폰(HS_8517.13), 컴퓨터 부품(HS_8473.30), 반도체 제조기기(HS_8486) 관련 품목들에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다.⁷¹⁾ 이후에도 상호관세 면제 리스트는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2025년 9월 8일부터는 흑연, 니켈, 주석, 토륨, 펄프, 금 및 유기화학품 등에 대해 면제된 반면, 화학·플라스틱 관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면제가 철회되었다.⁷²⁾ 또한 2025년 11월 14일 수정에서는 커피, 과일, 소고기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상호관세가 면제되었다.⁷³⁾

차등적인 상호관세의 시행은 처음에는 2025년 4월 9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되었고,⁷⁴⁾ 이후 다시 30일간 유예되었다.⁷⁵⁾ 다만 보편관세(10%)는 이에 앞서 4월 5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가 유예된 약 4개월간 동안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9일부터 차등적인 상호관세가 한시적으로나마 부과되었다.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최초 부과안(4월 2일)에서 무역수지 적자 비율에 따라 34%로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에 대한 재보복 조치에 따라 84%로 인상되었으며(4월 9일),⁷⁶⁾ 이후 다시 125%로 인상되면서(4월 10일)⁷⁷⁾ 기존의 펜타닐 관세(20%)를 합산하면 145%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12일 미-중 양국은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10%(보

71) Presidential Memorandum of April 11, 2025,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72) Executive Order 14346.

73) The White House(2025. 11. 14.), "Modifying the Scope of the Reciprocal Tariff with Respect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검색일: 2025. 11. 24.).

74) Executive Order 14266.

75) Executive Order 14316.

76) Executive Order 14259.

77) Executive Order 14266.

표 2-6. 주요국에 대한 IEEPA 상호관세율 수정 및 기타 조정 사항

국가	상호관세율		기타 국가별 조정 사항
	기존(4/9)	수정(8/7)	
한국	25%	15%**	· 제232조 자동차·부품 고정** 15%(11/1) · 기타 품목별 관세 우대(이하 일본·EU·영국 동일)
일본	24%	15%*	· 상호관세 고정* 15% · 제232조 자동차·부품 고정* 15%(9/16)
EU	20%	15%*	· 상호관세 고정* 15% · 제232조 자동차·부품 고정* 15%(8/1)
영국	10%	10%	·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TRQ(쿼터 내 0%, 초과 25%) · 제232조 자동차 TRQ(쿼터 내 고정* 10%), 부품 고정* 10%
대만	32%	20%	
베트남	46%	20%	
캄보디아	49%	19%	· 항공기, 의약품 등 관세 면제
인도네시아	32%	19%	· 코코아, 팜유, 고무 관세 면제 합의(미발효)
필리핀	17%	19%	· 농산물, 전자, 타이어, 가방, 항공기 부품 면제 요청
뉴질랜드	10%	15%	
튀르키예	10%	15%	
스위스	31%	39%	· 상호관세 15% 합의(11/14, 미발효)
중국	34%	10%***	· IEEPA 관세(펜타닐) 추가 20%
인도	26%	25%	· IEEPA 관세(표현자유·인권 침해) 추가 25%
브라질	10%	10%	· IEEPA 관세(러시아산 원유 수입) 추가 40%

주: * MFN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MFN관세+상호관세=15%'로 고정되며,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그대로 MFN 관세가 적용됨.

**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추가 관세 형태였으나, 12월 4일 발표된 미-한 전략무역투자협정 이행 고시를 통해 상호관세(11/14)와 자동차(11/1부) 모두 고정 15%로 변경됨.

*** 중국을 포함하여 수정된 상호관세율 리스트(69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10%의 상호관세(보편관세)가 부과됨. 자료: 저자 작성.

편관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유예 조치(90일간)에 합의하였다(기존 펜타닐 관세 합산 시 30%).⁷⁸⁾ 해당 유예 조치는 다시 90일간 연장을 거쳐,⁷⁹⁾ 10월 30일 미-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또다시 1년이 연장되었으며(2026년 11월 10일까지), 동시에 인하된 펜타닐 관세(20%→10%)를 합산하면 20%의 관세가 부과된다.⁸⁰⁾

78) Executive Order 14298.

79) Executive Order 14334.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상호관세 부과는 2025년 8월 7일 이루어졌으며,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기초로 조정되었다.⁸¹⁾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25%→15%), 영국(10%), 일본(24%→15%), EU(20%→15%), 베트남(46%→20%) 등이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총 69개 국가에 대하여 수정된 상호관세율 리스트가 발표되었다. 새로운 리스트에서는 대부분 국가의 상호관세율이 최초 발표(4월 2일)보다 인하되었는데, 일부 국가는 인상되기도 하였다. 특히 기존에 상호관세 대상(57개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국가(10% 보편관세 대상)가 새롭게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관세가 인상된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뉴질랜드(10%→15%), 튀르키예(10%→15%) 등이 있다.

한편 브라질의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상대국이었던 만큼 상호관세에 한해서는 10%의 보편관세 수준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8월 5일부터 표현의 자유 및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IEEPA를 근거로 하는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⁸²⁾ 대상 품목은 별도로 명시된 면제 리스트(ANNEX-I)와 제232조 조치 대상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며, 상호관세(10%)와 중첩되어 적용된다. 면제 품목은 석유, 연료, 오렌지 주스, 펄프, 광물, 비료, 엔진, 항공기 등 총 69개로 기존 상호관세의 면제 품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브라질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Brasil)에 따르면 해당 면제 품목들이 미국의 대브라질 수입 중에서 약 43.4%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⁸³⁾

인도의 경우 미국과의 개별 무역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수정된 상호관세는 기존 26%와 거의 동등한 수준인 25%가 책정되었다. 그러나 2025년 8월 27일부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것을 이유로 IEEPA에 근거하여

80) Executive Order 14358.

81) Executive Order 14326.

82) Executive Order 14323.

83) Agência Brasil - EBC(2025), "Tariff hike: exceptions apply to 434 exports to US"(검색일: 2025. 11. 24.).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⁸⁴⁾ 해당 조치는 상호관세 면제 리스트상의 품목(행정명령 14257의 ANNEX-II)과 제232조 조치 대상을 제외하고 부과되는 만큼, 사실상 상호관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0%의 보편관세를 부과받았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첨단기술 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 등 거의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최근 한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심화된 만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IEEPA 관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 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는 당연하게도 크게 불리한 위치에 놓였으며, 더불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로부터 조달하는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증가해 생산비용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2025년 8월 1일부터 15%(11월 14일부터 고정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비교적 큰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가 MFN 관세가 합산되지 않는 고정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기존에 한국이 우위에 있었던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고, 이에 따라 상대적인 경쟁력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 IEEPA 적용의 법적 정당성

IEEPA 관세 사용의 법적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IEEPA 적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있었던 과거 사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EEPA를 관세정책에 활용하기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IEEPA를 활용하였고 미국 내에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84) Executive Order 14329.

2020년 미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틱톡, 위챗 거래(다운로드, 업데이트, 결제)를 금지하고 향후 다운로드 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⁸⁵⁾ 이에 틱톡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틱톡의 데이터 전송이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개인 커뮤니케이션(other personal communication, which does not involve a transfer of anything of value)”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 부여의 예외 조항(50 U.S. Code § 1702(b))에 해당하며 ② 틱톡 콘텐츠가 보호되는 “정보 자료(information materials)”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통령의 IEEPA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틱톡 다운로드 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시행을 중단시키는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바 있다.⁸⁶⁾ 이처럼 IEEPA 적용에 대해 미국 법원은 그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판결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미국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송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2025년 5월 28일 미 CI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특정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⁸⁷⁾ 트럼프 행정부가

85) The White House(2020. 8. 6.), “Executive Order 13942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Tok”; The White House(2020. 8. 6.), “Executive Order 13943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Tok”(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9. 9.).

86) TikTok Inc. v. Trump, No. 20-cv-2658 (D.D.C. Sept. 27, 2020).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틱톡에 대한 조치가 이어졌고, 2024년 4월 24일 ‘외국 적국 통제 애플리케이션 방지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H.R. 7521 (118th))’이라는 법안이 발효되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요구하였다. 틱톡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12월 미국 항소법원은 해당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고 틱톡은 이에 불복하여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소송들은 IEEPA 자체보다는 새롭게 제정된 법안의 합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S. Congress, “H.R. 7521 (118th Congress):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검색일: 2025. 9. 9.); TikTok Inc. v. Garland, No.24-5178 (D.C. Cir. Dec. 6, 2024).

87)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Slip Op. 25-66 (May 28, 2025)(검색일: 2025. 9. 9.).

IEEPA를 근거로 발동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상품에 부과된 관세(불법 이민, 마약 문제 관련) 및 모든 수입품에 대한 기본 10% 관세(무역 적자 대응) 조치에 대해 CIT는 IEEPA가 전 세계적인 관세나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행사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것(*ultra vires*)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포괄적인 관세 부과는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며, IEEPA의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권한은 특정 관세를 허용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CIT는 IEEPA 권한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을 다루기 위한(*deal with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조치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관세 부과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위협을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펜타닐이나 불법 이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IEEPA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특히 무역 적자 대응을 위한 10% 보편관세는 IEEPA의 목적 범주를 넘어선다며,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는 무역법 제122조 등 다른 법률에 명확한 제한(예: 15% 관세 상한, 150일 최대 기간)과 함께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CIT는 해당 관세 조치를 즉각 무효화하고 영구적인 집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하고, 외교, 안보, 대외 협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판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CAFC는 CIT 판결에 대한 임시 효력 정지 명령을 발동하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관세 부과 조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CAFC는 2025년 8월 29일 대통령이 부과한 마약 밀매 대응 관세와 상호주의 관세가 IEEPA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⁸⁸⁾IEEPA는 대통령에

88)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Fed. Cir.), *V.O.S. Selections, Inc. v. Trump*, No. 25-1812 (Aug. 29, 2025)(검색일: 2025. 9. 9.).

게 수입을 규제할(regulate) 권한을 주지만, 관세나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줄 때는 항상 관세(duties)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규제 권한이 과세 권한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관세 부과는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데, 중대문제 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에 따라 이러한 중대한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했다고 보려면 법률에 명확한 승인(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있어야 하는데 IEEPA의 “규제하다”라는 모호한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별개의견은 IEEPA가 아예 어떤 형태의 관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과세 권한을 주는 셈이 되며,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위헌적으로 위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수입을 규제하다”라는 문구는 관세 부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한으로 관세는 수입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며, 수입 금지(prohibit)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도 허용되므로 관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IEEPA는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유연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법부는 대통령의 외교 및 국가안보 관련 사실 판단에 대해 상당한 존중(deference)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AFC는 7:4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의한 마약 밀매 대응 관세와 상호주의 관세가 IEEPA의 권한을 초과한 위법한 조치라는 CIT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나 CIT가 내린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의 효력을 2025년 10월 14일까지 유예하여 이 기간 정부가 대법원 상고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3일에 대법원에 상고청원을 제출한 상태로 9월 9일에 대법원이 이 청원을 받아들이고,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CAFC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CIT에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개입 없이 IEEPA에 근거하여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IEEPA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대체 관세 조치(플랜B)’를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⁸⁹⁾

라) IEEPA의 취소와 의회의 역할

IEEPA의 발동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법(NEA)」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근거한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그에 따라 IEEPA에 기반한 조치 역시 종료될 수 있다. IEEPA/NEA 체제하에서 행정부의 비상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양원 결의(Concurrent Resolution)와 공동 결의(Joint Resolution)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977년 IEEPA가 제정될 당시, NEA는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를 양원 결의를 통해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는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의회의 의사만으로 비상사태를 무효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3년 미 연방대법원은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 462 U.S. 919(1983) 판결에서 이른바 입법부 거부권(legislative veto)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의 판례에서도 *Chadha* 판례가 재인용되며 그 법리가 확립되었다.⁹⁰⁾ *Chadha* 판결 이후 의회는 1985년 NEA를 개정하여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공동 결의를 채택하

89) Osendarp *et al.*(2025. 9. 4.), “Court of Appeals Rules That President Lacks Authority for Broad Tariffs”(검색일: 2025. 9. 9.).

90) U.S. Congress(2025. 9. 1.),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검색일: 2025. 11. 6.).

도록 했다.

공동 결의는 법률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후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을 무력화해야만 비상사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의 IEEPA 조치를 의회가 단독으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취한 것에 대응하여,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해당 관세를 취소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 119대 의회(2025~26년)에서는 대통령의 IEEPA 관세 발동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러한 입법 시도는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하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 및 통상 규제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나 상·하원이 공화당 다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IEEPA 관세'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국가나 조치만을 제한하는 협소한 결의안은 상원에서 드물게 표결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캐나다건). 그러나 설령 의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각 원에서 3분의 2로 재가결해야 하며, IEEPA 관세를 직접 활용해온 현 행정부를 감안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2-7.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저지하려는 의회의 법안 발의

구분	내용	2025년 10월 3일까지의 현황
마약	H. J. Res. 72 ⁹¹⁾	캐나다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부과된 관세(행정명령 제14193호)에 근거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
	S. J. Res. 37 ⁹²⁾	2025년 3월 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일 상원 통과(51-48). 하원 도착 후 보류(지도부가 올리지 않음)
	H. J. Res. 73 ⁹³⁾	남부 국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과된 관세(행정명령 제14194호)에 근거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
상호관세	H. J. Res. 91 ⁹⁴⁾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
	S. J. Res. 49 ⁹⁵⁾	2025년 4월 9일 발의자의 안전 소개 발언 2025년 4월 30일 상원에서 부결, 공화당 이탈표가 일부 있었으나 임계치 미달
상호관세 수정	H. J. Res. 117 ⁹⁶⁾	브라질 정부의 위협에 S. J. Res 관세(행정명령 제14323호)에 근거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
IEEPA로 관세부과 금지	S. 151 ⁹⁷⁾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또는 인상하거나 관세율 할당량을 부과하기 위해 IEEPA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H.R. 407 ⁹⁸⁾	2025년 1월 17일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에 회부됨 2025년 1월 15일 하원 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회부

- 91) U.S. Congress, “H.J.Res.72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by the President on February 1, 2025”(검색일: 2025. 11. 5.).
- 92) U.S. Congress, “S.J.Res. 37 —A joint resolution terminat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to impose duties on articles imported from Canada”(검색일: 2025. 11. 5.).
- 93) U.S. Congress, “H.J.Res.73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by the President on February 1, 2025”(검색일: 2025. 11. 5.).
- 94) U.S. Congress, “H.J.Res.91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by the President on April 2, 2025”(검색일: 2025. 11. 5.).
- 95) U.S. Congress, “S.J.Res.49 —A joint resolution terminat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to impose global tariffs”(검색일: 2025. 11. 5.).
- 96) U.S. Congress, “H.J.Res.117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by the President on July 30, 2025”(검색일: 2025. 11. 5.).
- 97) U.S. Congress, “S.151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on Imported Goods Act of 2025”(검색일: 2025. 11. 5.).
- 98) U.S. Congress, “H.R.407 —Prevent Tariff Abuse Act”(검색일: 2025. 11. 5.).

2) 무역확장법 제232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근거로 사용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쳤던 전례가 있는데,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한 관세조치들이 실제로 실행될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 제232조의 적용

(1) 철강 및 알루미늄(Steel and Aluminum)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부터 계속된 철강·알루미늄 제232조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25년 3월 12일부터 기존의 모든 면제 조치가 종료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되었으며, 파생제품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⁹⁹⁾¹⁰⁰⁾ 즉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가 적용받고 있던 기존의 관세 면제 및 쿼터 적용이 전면 폐지되었고, 파생제품의 범위는 알루미늄 캔, 통조림 맥주 등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생제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용융·주조(철강) 혹은 제련·주조(알루미늄) 공정을 거친 철강·알루미늄이 원재료로 사용되었다면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HS_73(철강제품) 및 HS_76(알루미늄 및 제품)에 속하지 않은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 혹은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만 관세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앞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관세가 50%로 인상되었다.¹⁰¹⁾ 다만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는 HS_73과 HS_76에 속하는 품목도 철강 함량 또는 알루미늄 함량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도록 변경되었다. 만약 철강과 알루미늄이 모두 함유되어 있다면 각각의 함량에 대

99) Proclamation 10896(철강).

100) Proclamation 10895(알루미늄).

101) Proclamation 10947.

해 제232조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¹⁰²⁾ 한편 철강·알루미늄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관세(예: 상호관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철강 파생제품의 범위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을 포함한 11개(HTS 기준)의 가전제품이 추가되었다.¹⁰³⁾ 또한 8월 18일부터는 증장비, 철도, 가구, 펌프, 터빈 등을 포함한 407개(HTS 기준) 품목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추가되었다.¹⁰⁴⁾

한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조치는 현재 영국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쿼터 내에서는 제232조 관세가 면제되며 쿼터 초과 시에도 50%가 아닌 25% 관세가 부과된다. 파생제품의 경우 별도의 쿼터 적용 없이 철강 혹은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¹⁰⁵⁾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Automobiles and Auto Parts)

자동차 부문은 미국의 최대 수입 품목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관세 조치가 예고된 최우선 품목 중 하나였다. 제232조 품목별 관세는 먼저 2025년 4월 4일부로 완성차에 대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5%가 부과되었다.¹⁰⁶⁾ 대상 품목은 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화물밴, 픽업트럭 등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반면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그리고 버스, 트랙터, 특수용도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¹⁰⁷⁾

102) Executive Order 14289.

103) Federal Register(2025. 6. 16.), "Implementation of duties on steel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6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검색일: 2025. 8. 8.).

104) Federal Register(2025. 8. 19.), "Adoption and procedures of the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 exclusions process"(검색일: 2025. 10. 21.).

105)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ee1cb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ee1ce7)(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0. 21.).

106) Proclamation 10908.

한편 미국의 최대 수입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USMCA에 따른 특혜 대우 기준($RVC \geq 75\%$)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함량 부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USMCA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서 미국산 가치의 비중이 높고 또한 멕시코·캐나다에 많이 진출한 미국 제조사(Big 3: Ford, GM, Stellantis)들은 상대적으로 관세의 부분 면제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치는 2025년 5월 3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완성차와 동일하게 25% 관세가 부과되었다. 대상 품목은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품(HS_8708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차대, 차체, 구동축, 배터리, 모터, 전자장비, 엔진, 타이어 등을 포함한 관련 부품까지 폭 넓게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컴퓨터(HS_8471) 등 일반적으로는 차량용 부품이 아닌 품목들까지 조치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었다.¹⁰⁸⁾ 다만 실질적으로는 승용차 및 경트럭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⁹⁾ 한편 완성차와 달리 부품은 USMCA 특혜 대우 기준($RVC \geq 65 \sim 75\%$)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가 완전히 면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추후 부품과 관련해서도 미국 함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수립되기 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합계 자동차 가격(MSRP)¹¹⁰⁾의 일정 부분만큼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상계(credit)할 수 있는 ‘수입조정상쇄금(import adjustment offset amount)’을 부여하였다.¹¹¹⁾¹¹²⁾ 해당 조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107) HS 코드 기준으로는 설상 주행용, 골프용, 경형(가솔린 1,000cc 이하) 등을 제외한 승용차(HS_8703)와 경형트럭으로 분류되는 일부 화물차(HS_8704)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108) HS 2단위 코드 기준으로는 87과 더불어 40, 70, 73, 83, 84, 85, 90, 94 등 다양한 품목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109)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de7ef9)(검색일: 2025. 10. 21.).

110)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제조사 권장 소매 가격).

111) Proclamation 10925.

112) Federal Register(2025. 6. 13.), "Procedures to administer import adjustment offset amounts

1년 차(2025. 4. 3.~2026. 4. 30.)에는 제조사별 완성차 MSRP 합계액의 3.75%, 2년 차(2026. 5. 1.~2027. 4. 30.)에는 2.5%를 상한으로 상쇄금을 받을 수 있다. 즉 1년 차에는 MSRP의 15%(=3.75%/25.00%)에 해당하는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가 면제(상쇄)될 수 있으며, 다음 해에는 MSRP의 10%(=2.5%/25.00%)에 해당하는 부품 수입의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따라서 1년 차에 USMCA 기준을 충족하는(관세가 면제되는) 부품의 비중이 85% 이상이면 미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는 나머지 비(非)USMCA산 부품(비중 15% 이하) 수입에 대한 25% 관세를 전액 면제(상쇄) 받을 수 있다.¹¹³⁾ 이와 같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단순히 완성차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②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및 ③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IEEPA 펜타닐 관세와 중첩되어 적용되지 않는다.¹¹⁴⁾ 만약 대상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가 가장 우선시되며, 다음으로 ②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 ③ 마지막으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IEEPA 관세가 적용된다.¹¹⁵⁾¹¹⁶⁾ 즉 ①에 대한 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②와 ③에 따른 관세를

for certain imports of automobile parts”(검색일: 2025. 10. 21.).

113) 예를 들어 MSRP가 2,000원인 제조사는 상쇄금은 75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비USMCA산 수입 부품의 비중이 15%(=300원) 이내라면 부품에 대해 지불하는 25% 관세(300×25%=75)를 모두 상쇄할 수 있다.

114) Executive Order 14289;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e0a63e)(검색일: 2025. 10. 21.).

115) 처음에는 ③이 ②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25년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조치의 관세 인상(50%)과 함께 우선순위가 변경되었다. Proclamation 10947.

116) 구리 제품의 경우 해당 우선순위를 규정한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후 Proclamation 10962에서 ①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경우 구리에 대한 제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조치에 따른 의무 범위에 구리 제품을 포함시키는 만큼 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혹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대상이 중첩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함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므로 관세가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Proclamation 10962.

부과받지 않는다. 반면 USMCA에 따른 특혜 대우 기준을 충족하여 ①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면제) ②에 따른 관세는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관세가 증첩되지 않는 조치는 상기한 조치들 간에만 해당되며, 이외에 MFN 관세, 세금, 수수료, 반덤핑·상계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301조 관세 및 팬타닐 관세 등은 증첩되어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상호관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별 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조정되었다.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영국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완성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의 쿼터 내에서 고정 10%(예: MFN 2.5% + 제232조 7.5%) 관세가 적용되며, 부품에 대해서는 쿼터 없이 고정 10% 관세가 적용되었다.¹¹⁷⁾ 일본은 9월 16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상호관세와 마찬가지로 고정 15%(MFN 2.5% + 제232조 12.5%)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다.¹¹⁸⁾ EU 역시 일본과 동일한 형태로 고정 15% 관세에 합의하였고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었다.¹¹⁹⁾ 다만 이러한 고정 15%는 기존의 MFN 관세율이 15% 미만이었던 일반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되는 것이며,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픽업트럭의 경우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0%가 되는 형태로 기존의 관세(MFN 25% + 232조 0%)가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도 무역 합의를 통해 11월 1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고정 15%(FTA 0% + 제232조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다만 같은 고정 15%라 하더라도 기존 FTA로 인한 혜택(2.5%)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셈이다.

117) Executive Order 14309.

118) Executive Order 14345.

119) Federal Register(2025. 9. 25.), "Implementing certain tariff-related elements of the U.S.-EU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tariff suspension"(검색일: 2025. 11. 24.).

(3) 구리(Copper)

구리 및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제232조 조사는 2025년 3월 10일 개시되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¹²⁰⁾ 조치 대상은 반제품 구리(구리관, 구리선, 구리봉, 구리판 등) 및 구리 기반 파생제품(배관 부속, 전선·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이며, 다만 구리 원재료(광석, 정광, 음극, 양극 구리)와 구리 스크랩 등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품목들은 주로 HS_74에 속하는 구리 관련 제품이며, 더불어 절연전선·케이블(HS_8544) 관련 품목들도 일부 포함되었다. 해당 조치는 구리 함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조치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¹²¹⁾

(4) 기타

목재·제재목 및 파생제품(Timber, Lumber, and Derivatives)에 대한 제232조 조사는 2025년 3월 10일 시작되었으며, 관세는 10월 14일부터 부과되었다.¹²²⁾ 품목별 추가 관세는 원목·제재목 10%, 업홀스티드 목재가구 25%, 주방 캐비닛/바니티 및 부품 25%이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업홀스티드 목재가구는 30%, 주방 캐비닛/바니티 및 부품은 50%로 관세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한편 무역 합의가 발효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데, 영국에 대해서는 10%의 인하된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 EU, 일본의 경우 고정 15%를 적용받게 된다. 더불어 새롭게 제232조 조치의 대상이 된 만큼 관련 품목들은 더 이상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되며, 또한 브라

120) Proclamation 10962.

121) Proclamation 10962의 (3)에 따르면 2025년 2월 발표된 Proclamation 10895(알루미늄) 및 Proclamation 10896(철강)에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의무 범위 내에 구리 제품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122) The White House(2025), "Adjusting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검색일: 2025. 11. 24.).

질과 인도에 부과된 추가적인 IEEPA 관세 조치(브라질 +40%, 인도 +25%)에
서도 제외된다.

2025년 4월 22일 조사가 시작된 중·대형 트럭 및 부품·파생제품(Medium-duty and Heavy-duty Trucks and Medium- and Heavy-duty Truck Part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에 대해서는 대상 품목의 범위가 버스
까지 확대되면서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과 부품에 대해 25%, 버스에 대
해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¹²³⁾ 해당 조치는 기존 자동차 및 부품에 대
한 제232조 조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USMCA 기준 충족
에 따른 특혜(미국 함량 면제 및 부품 무관세),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차량에
대한 부품 관세 감면, △다른 조치와의 중첩 적용에서 우선순위 등이 적용된다.
한편 기존에 자동차 제232조 관련 무역 합의를 마친 EU, 일본 등에 대해서는
앞선 목재·제재목 및 파생제품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면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 외에 제232조 조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항목으로는 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2025년 4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Pharmaceuticals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¹²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¹²⁵⁾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¹²⁶⁾ 5월 민
간항공기·제트엔진 및 부품(Commercial Aircraft and Jet Engines and
Parts for Commercial Aircraft and Jet Engines),¹²⁷⁾ 7월 폴리실리콘 및

123) The White House(2025), "Adjusting imports of 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medium-
and heavy-duty vehicle parts, and buses into the United States"(검색일: 2025. 10. 21.).

124) Federal Register(2025. 4. 16.),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06587)(검색일: 2025. 10. 21.).

125) Federal Register(2025. 4. 16.),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06591)(검색일: 2025. 10. 21.).

126) Federal Register(2025. 4. 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07273)(검색일: 2025. 10. 21.).

127) Federal Register(2025. 5. 13.),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파생제품(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¹²⁸⁾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부품·구성요소(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¹²⁹⁾ 8월 풍력터빈 및 부품·구성요소(Wind Turbine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¹³⁰⁾ 9월 로봇 및 산업기계(Robotics and Industrial Machinery),¹³¹⁾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용 소모품·장비·기기(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Medical Consumables, and Medical Equipment, Including Devices)¹³²⁾ 등이 있다.

표 2-8. 2025년 기타 제232조 조치의 조사 개시일 및 경과

품목	조사 개시	경과
목재·제재목 및 파생제품	3/10	10/14 발효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4/1	-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4/1	-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4/22	-
중·대형 차량 및 부품·파생제품	4/22	11/1 발효
민간항공기·제트엔진 및 부품	5/1	-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7/1	-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부품·구성요소	7/1	-
풍력터빈 및 부품·구성요소	8/13	-
로봇·산업기계	9/2	-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용 소모품·장비·기기	9/2	-

자료: 저자 작성.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08500)(검색일: 2025. 10. 21.).
 128) Federal Register(2025. 7. 16.),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13345)(검색일: 2025. 10. 21.).
 129) Federal Register(2025. 7. 16.),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13365)(검색일: 2025. 10. 21.).
 130) Federal Register(2025. 8. 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16191)(검색일: 2025. 10. 21.).
 131) Federal Register(2025. 9. 26.),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18749)(검색일: 2025. 10. 21.).
 132) Federal Register(2025. 9. 26.),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No. 2025-18729)(검색일: 2025. 10. 21.).

나)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의 법적 정당성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국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의 국내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판단을 받았던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
법원(CIT)은 제232조가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CAFC)도 CIT의 판결을 확정하여 제232조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에 상소가 제기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사
건의 심리 요청을 거부하며 사실상 제232조 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232조를 둘러싼 일련의 판례들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제232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국내법적 정당성을 인정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IEEPA를 통해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만약 대법원에서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대
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될 경우 이미 국내적으로 법적 정당성이 확보
된 제232조를 활용하여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될 가
능성이 있다.

3) 제301조

2025년 1월 20일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이하
AFTP)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따라 2025년 4월 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
의 제13장 제301조 4개년 검토평가(AFTP의 섹션 3(b))에 의하면 USTR은 관
련 법에 따라 제301조 조치를 4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18년 중국
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301조 조치에 대한 첫 번째 4개년 검토가 2024년 5월
에 완료되었고 그 결과 일부 관세가 인상되었다.¹³³⁾ 동 보고서 제14장 새로운

133) The White House(2025. 4. 3.),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America First Trade Policy
Executive Summary"(검색일: 2025. 4. 4.).

제301조 조치 식별(AFTP의 제3(c)조)에서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제301조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USTR은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의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고 정당화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식별하였다고 밝혔다.

4) 기타¹³⁴⁾

만약 대법원에서도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기존에 활용하던 무역확장법 제232조 또는 무역법 제301조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새롭게 1974년의 무역법 제122조나 1930년 무역법 제338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 압박을 가하고자 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외 절차가 간소하고 대통령의 독자적 재량권이 큰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시 권한을 다른 규정으로, 대통령이 일시적인 수입 과세(임시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② 달러가치의 압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③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 수지불균형 교정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세율은 최대 15%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간은 의회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최대 150일 동안 유효하고 또한 대통령은 수입에 대한 쿼터를 설정하여 수입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122조는 수입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설정할 때 행정기관의 조사나 국회의 승인없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STR이나 USITC와 같은 정부기관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무역법과

13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5. 4. 23.),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Authority to Impose Import Tariffs"(검색일: 2025. 11. 5.).

차별화된다. 제122조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해석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기간이 없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15%까지만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도 최대 150일로 짧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930년 무역법 제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① 미국 제품에 대해 “불합리한 비용·징수·규제·제한”을 부과하면서 다른 외국 상품에는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때, ② 미국 상업에 대해 “세관·톤세·항만세·수수료·징수·분류·규제·조건·제한·금지” 등을 통해 불이익·차별을 줄 때 관세를 부과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이미 내린 관세 부과 선언을 공익상 필요할 경우 정지, 철회, 보완, 수정할 수도 있다. 별도의 조사 없이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최대 50%의 고율관세를 즉시 매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주로 비교가 되는데, 제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차별적 조치가 관세 부과 사유인 데 비해 제338조는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원인이 된다. 또한 제301조는 USTR의 조사 및 판단이 필수적이거나 제338조는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이 가능하다. 제301조는 최대관세율이 없으나 제338조는 수입품 가치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제301조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 반해 제338조는 제122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사용 사례가 거의 없다.

3. 주요국의 대응

미국의 보호주의적이며 일방적인 글로벌 관세장벽에 각국의 반응은 상이하
다. 자국 시장 규모가 크거나 관세 부과로 피해가 클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

나 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국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중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는 경

표 2-9. 트럼프 2기 미국과 무역 대상국의 무역협상(2025년 10월 현재 기준)

무역 상대국	협상 타결일	상호 관세 (4/2)	새로운 상호관세 (7/7)	협상 관세	합의 주요 내용
한국	2025. 7. 30.; 2025. 10. 29.	25%	25%	15%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약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 형태, 약 1,500억 달러는 미국 내 조선/해운 등 전략산업 협력형 투자 형태),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 구매 등
EU	2025. 7. 29.	20%	30%	15%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미국산 에너지 제품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 구매, EU로 수출되는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EU 관세 철폐를 포함하여 EU 측 관세의 상당 부분 철폐, EU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를 포함하여 미국에 15%의 관세 지불.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에 대한 부문별 관세는 50% 지불 등 ¹³⁵⁾
필리핀	2025. 7. 23.	17%	20%	19%	세부 합의문 공개 미흡·필리핀 정부의 공식 확정 텍스트 부족으로 '원칙 합의/정치적 발표' 단계
일본	2025. 7. 22. (프레임워크)	24%	25%	15%	대부분 품목 15%, 자동차 15%. 일본의 대미 구매·투자 약속(5,500억 달러 투자), 미국산 쌀·농산물(80억 달러) 보잉기(100대) 구매 등 ¹³⁶⁾
	2025. 9. 4. (집행문서)				미-일 프레임워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¹³⁷⁾
인니	2025. 7. 22.	32%	32%	19%	15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제품, 45억 달러 규모 농산물, 보잉기(50대, 32억 달러) 구매 미국산 제품의 99% 품목에 대해 무관세화·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 미측은 인니산에 대한 상호관세를 19%로 인하. 다만 '프레임워크' 단계라 세부 협정문과 품목별 예외·원산지 규정은 협상 중 ¹³⁸⁾
베트남	2025. 7. 2.	46%	N/A	20%	미국 수입 시 20% 관세, 제3국 경우 시 40% 구조. 그러나 하노이 측 공식 세부 문건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언론/브리핑 위주로 확인되며 이행·집행 메커니즘(경유 판정, 집행 시점)이 불명확함.
영국	2025. 5. 8.	10%	N/A	10%	미국산 농축산물(쇠고기, 에탄올 등)에 대한 영국 시장 접근 확대 - 에탄올(7억 달러) 구매, 농산물(2.5억 달러) 구매 ¹³⁹⁾

자료: Executive Order 14257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저자 정리.

향을 보인다. 주요국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트럼프 2기에 초점을 맞춰 살펴 보고자 한다. 2025년 10월 1일 현재까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EU, 한국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였다. 다수 국가가 협상관세 및 주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아직 세부 이행문서 절차 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음에서는 중국, EU, 캐나다, 브라질,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의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중국

2025년 2월 1일 미국이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2025년 2월 4일 중국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중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25년 2월 10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였다.¹⁴⁰⁾

135) The White House(2025. 7. 28.),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Reach Massive Trade Deal"(검색일: 2025. 10. 1.).

136) Joint Statement on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July 22, 2025(검색일: 2025. 10. 10.).

137) Executive Order 14345.

138) The White House(2025. 7. 22.), "Joint Statement on Framework for United States-Indonesia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검색일: 2025. 10. 1.).

139) The White House(2025. 5. 8.), "Fact Sheet: U.S.-UK Reach Historic Trade Deal"(검색일: 2025. 10. 1.).

140) 税委会公告2025年第1号(2025. 2. 4.),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

중국은 보복관세뿐 아니라 WTO에 이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였다. 2025년 2월 4일, 중국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였다(DS633).¹⁴¹⁾ 중국은 해당 조치가 미국의 GATT 제II조상 양허표에 명시된 관세 상한(bound rate)을 초과함으로써 양허 의무를 위반하였고, 오직 중국산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GATT 제I조가 규정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이 사건에서 미국이 다자간 협정상 자국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부과함으로써 WTO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25년 3월 3일 미국이 펜타닐을 근거로 중국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2025년 3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및 면화에 대해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및 유제품에 대해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⁴²⁾ 2025년 2월에 발표한 1차 보복관세는 에너지, 자동차 등 총 80개 품목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과되었으나 2차 보복 조치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을 74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육류, 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였다.

2025년 4월 2일 미국이 57개국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하였고 2025년 4월 4일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무역규칙에 어긋나고 중국의 정당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전형적인 일방적인 괴롭힘 관행”이라고 평가하며, 2025년 4월 10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현

(검색일: 2025. 10. 1.).

141) WTO, “Dispute Settlement: D633 — United States — Additional Tariff Measures on Goods from China (DS633),” Dispute Settlement Case Summary(검색일: 2025. 5. 10.).

142) 税委会公告2025年第2号(2025. 3. 4.),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검색일: 2025. 10. 1.).

표 2-10. 미국발 관세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

발표일	대응 이슈	중국의 조치	대상 품목	내용	시행일
2025. 2. 4.	미국정부의 10% 대중관세 대응	미국산 수입품 1차 추가 관세	석탄(무연탄, 유연탄 등), 액화 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	15% 추가 관세 부과	2025. 2. 10.
			원유, 농기계, 배기량 높은 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	10% 추가 관세 부과	2025. 2. 10.
2025. 2. 4.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통제	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제품은 허가증 취득 후 수출 가능	2025. 2. 4.
2025. 2. 4.	WTO에 제소(DS633)				
2025. 3. 4.	미국정부의 10% 추가 관세 대응	미국산 수입품 2차 추가 관세	닭고기, 밀, 옥수수 및 면화	15% 추가 관세 부과	2025. 3. 10.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및 유제품	10% 추가 관세 부과	2025. 3. 10.
2025. 4. 4.	2025. 4. 2. 중국에 대해 상호관세로 34% 추가 관세 부과 발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1차 보복관세	미국산 모든 수입품	34% 추가 관세 부과	2025. 4. 10.
			7종 희토류 수출통제		2025. 4. 4.
			WTO에 제소(DS638)		
2025. 4. 9.	미국이 상호관세 34%에서 84%로 인상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2차 보복관세	미국산 모든 수입품	84% 추가 관세 부과	2025. 4. 10.
2025. 4. 11.	미국이 상호관세 84%에서 125%로 인상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3차 보복관세	미국산 모든 수입품	125% 추가 관세 부과	2025. 4. 12.
2025. 5. 13.	미중 고위급 경제 무역회담 합의	추가 관세율 10%로 합의	모든 미국산 수입품	미국에 대한 24% 추가 관세율(총 34% 추가 관세율) 시행을 90일간 중단	2025. 5. 14.
2025. 8. 12.	90일 정지 완화 조치를 추가로 90일 연장			2025. 11. 10. 재조정 전까지 10% 유지	2025. 8. 14.
2025. 11. 5.	미중 무역 협상 합의	2차 보복의 추가 관세 중단	2025. 3. 이후 부과한 모든 보복관세 품목	보복관세 중단	2025. 11. 10.

자료: 저자 정리.

재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34%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¹⁴³⁾

2025년 4월 4일, 중국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257, 14259)에 따른 모든 교역상대국 대상 보편관세·국가별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제소하였다(DS638).¹⁴⁴⁾ 중국은 이 사건에서 미국의 조치가 △GATT 제I조 제1항(최혜국대우 원칙), △GATT 제II조 제1항(a) 및 (b)(관세 양허 이행의무), △GATT 제X조 제3항(a)(관세법령의 일관성·공정성·합리성 의무), △관세평가협정 제1.1조 및 제8조, GATT 제VII조의 관세평가 관련 조항,¹⁴⁵⁾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제3.1조 및 3.2조 등을 위반¹⁴⁶⁾ 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⁴⁷⁾ 미국은 이에 대해서 국가안보 문제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로, WTO 모든 회원국은 GATT 제21조 본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본질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대응하였다.¹⁴⁸⁾

중국의 이러한 보복관세¹⁴⁹⁾에 대응하여 2025년 4월 8일 미국은 중국 상품에

143) 税委会公告2025年第4号(2025. 4. 4.),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검색일: 2025. 10. 1.).

144) WTO, “Dispute Settlement: DS633 —United States —Universal and Country-specific Additional Duties on Imports from China (DS633),” Dispute Settlement Case Summary (검색일: 2025. 5. 10.).

145) 미국이 수입제품 관세 산정 시 미국산 부품 등 ‘미국산 비중(U.S. content)’의 가치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기반 평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함.

146) 미국이 자국산 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수입품에 대한 ‘미국산 비중 제외’ 정책을 적용한 것은 수출 실적 또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147) WTO, “United States - Universal and Country-Specific Additional Duties on Imports from Chin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검색일: 2025. 5. 10.).

148) WTO, “United States - Universal and Country-Specific Additional Duties on Imports from Chin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검색일: 2025. 5. 10.).

149) 중국은 보복관세와 WTO 소송 계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에도 마찬가지이다. 2024년 8월 26일 캐나다는 관세법 53항에 따라 특정 중국 제품에 대해 일련의 부가세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중국산 EV에 대한 100% 부가세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25% 부가세가 포함된다. WTO, “Canada -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of Chinese origin -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검색일: 2025. 5. 10.). 이에 대해 중국은 마찬가지로 “WTO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자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관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2025년 4월 9일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은 “실수 중에서도 실수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025년 4월 10일부터 추가관세율을 34%에서 84%로 조정하겠다고 규정하였다.¹⁵⁰⁾ 이에 미국정부가 다시금 2025년 4월 10일 상호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하자 2025년 4월 11일 중국은 이에 대해 “국제경제 및 무역 규칙은 물론 기본적인 경제 법규와 상식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025년 4월 12일부터 추가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¹⁵¹⁾ 미 대중 관세가 최대 145%, 중 대미관세는 125%까지 높아지게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물가와 교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양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계획 수립을 위해 5월 제네바 고위급 경제 · 통상 회동에서 ‘휴전’ 프레임을 선택하였고 미국은 4월 2일자 ‘상호관세’(10%+ α) 중 24%p를 90일간 정지하여 중국산에 일단 10%의 관세만을 유지하기로 하였다.¹⁵²⁾ 이에 중국도 추가 인상 공고(제5 · 6호)를 중지하

행”이라며 2025년 3월 20일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유, 기름 잔류 케이크 및 완두콩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및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稅委會公告2025年第3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加拿大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검색일: 2025. 10. 1.). 또한 중국은 이를 WTO 분쟁해결절차에도 제소하여 2025년 6월 23일 패널이 설립되었다(DS627). 이러한 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중국-캐나다 분쟁의 제3자인 미국은 중국이 이미 캐나다의 부가세에 대응해 캐나다산 농수산물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US Blocks AB Once Again”(2025. 6. 24.).

- 150) 稅委會公告2025年第5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검색일: 2025. 10. 1.).
- 151) 稅委會公告2025年第6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검색일: 2025. 10. 1.).
- 152) 稅委會公告2025年第7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검색일: 2025. 10. 1.).

였다. 이후 8월 12일에 90일간의 정지 완화 조치를 추가로 90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까지 기존 상호관세율(미국 30%, 중국 10%)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양국은 2025년 11월 5일 미중무역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였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공고하였다.¹⁵³⁾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WTO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동일 규모·동일 강도의 보복을 실시하고 협상 타결 시 부분 철회·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통해 관세대응을 넘어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활용한 비관세적인 대응도 병행하였다.

나. EU

EU는 트럼프 2기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즉각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잠정 중단되었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는 약 8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땅콩버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청바지, 오렌지 주스,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EU의 보복관세가 2025년 4월 14일부로 다시 발표되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2025년 3월 12일 약 260억 유로(미국 제232조 관세의 경제적 규모와 상응)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2단계 보복관세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4월 9일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 필요시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예: 디지털세 부과 관련)에 효과적으

153) 税委会公告2025年第9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停止实施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중단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검색일: 2025. 11. 6.).

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강압 방지 수단 (ACI: Anti-Coercion Instrument)’¹⁵⁴⁾을 채택하여 2023년 12월 27일 발효되었다. 이 조치는 제3국이 관세 인상, 수출입 제한, 보이콧, 투자 제한 등 무역·투자 조치를 실제 또는 위협 형태로 사용하여 EU 또는 회원국 정책을 강요·방해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현재까지는 발동되지 않았다.

2025년 7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스코틀랜드 틴베리에서 전략적 무역협상을 타결하였다.¹⁵⁵⁾ 타결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를 포함하는 EU산 수입품에 대해 위협적이었던 기존의 30%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 15%의 단일 관세율 상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항공기 및 부품, 제네릭 의약품, 반도체 제조장비, 일부 화학제품 등 특정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50%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협상에서 EU는 향후 수년간 미국 내 신산업에 6,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 구매, 그리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유제품의 위생증명 요건을 간소화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등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약속하는 동시에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중단과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유지에 합의했다.¹⁵⁶⁾ 이 합의에서 미국이 강도 높은 관세 압박 전략을 일정 부분 후퇴시키는 대신, EU는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군사장비 구매로 대응했다.¹⁵⁷⁾ 관세 위협 후 양허/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부분 면제하는 미국의 협상 패턴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54) European Union, Regulation(EU) 2023/2675 -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검색일: 2025. 10. 1.).

155) The White House(2025. 7. 28.),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Reach Massive Trade Deal”(검색일: 2025. 10. 1.).

156) *Ibid.*

157) USTR(2025. 7. 29.), “U.S.-EU Deal Receives Widespread Praise”(검색일: 2025. 10. 1.).

한편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해 EU는 WTO 규범에 입각한 원칙적인 대응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WTO에 새롭게 제소한 사례는 없다. 미국 행정부의 상소 기구 마비 조치로 인해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EU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캐나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합성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IEEPA를 근거로 캐나다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25%,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 조치가 3월 4일에 발효된다고 공표하였다. 이에 2025년 3월 4일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의 부당한 관세에 대응하여 United States Surtax Order(2025-1)를 통해 즉시 3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소비재·중간재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향후 계속 미국의 관세가 유지된다면 캐나다의 보복관세 범위는 1,55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¹⁵⁸⁾ 또한 3월 4일 캐나다는 이에 대해 WTO 협의요청을 제출하였다(DS634: United States — Additional Import Duties on Goods from Canada).¹⁵⁹⁾

2025년 3월 1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및 파생품에 대해 관세를 재개¹⁶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이에

158)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25. 3. 4.), “Canada announces robust tariff package in response to unjustified U.S. tariffs”(검색일: 2025. 10. 1.).

159) WTO, “Dispute Settlement: DS634 —United States —Additional Import Duties on Goods from Canada”(검색일: 2025. 5. 10.).

160) 2018년 6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캐나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협의요청을 하였고[WTO 홈페이지, “Dispute Settlement: DS550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검색일: 2025. 5. 10.)], 또한 Customs Tariff 제53조에 근거한 United States Surtax Order(Steel and Aluminum), SOR/2018-152(총독회칙·관보 고시)를 통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선택적 품목에 25%/10% 할증관세를 부과(총 166억 캐나다달러 상

대해 USMCA와 WTO법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위반한다며 반발 성명을 내고, 3월 12일 WTO에 협의요청을 제출하였다(DS635: United States—Additional Import Duties on Steel and Aluminium Articles from Canada).¹⁶¹⁾ 또한 United States Surtax Order(Steel and Aluminum 2025)를 통해 철강(125억 캐나다달러)과 알루미늄(30억 캐나다달러)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 4월 3일부터 미국은 제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USMCA 규정을 준수한 미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및 감면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4월 9일 United States Surtax Order (Motor Vehicles 2025)를 제정하여 미국산 차량 및 일부 부품에 25%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감면 체계도 병행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변화에 대해 캐나다 관세법(Customs Tariff) 제53조에 근거한 내각령으로 신속하게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관세법 제53조¹⁶²⁾는 외교부 장관

당 목록)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협의를 요청하였다(WTO, “Dispute Settlement: DS557 —Canada —Additional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검색일: 2025. 5. 10.)). 2019년 5월 17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의 합의로 232 조치와 보복조치를 상호 철회하기로 하면서 캐나다의 보복관세는 2019년 5월 20일부터 종료되었으며 WTO 제소 건도 두 건 모두 당사자간 해결(“mutually agreed solution”)로 종료되었다. 2020년 8~9월에 미국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해 10% 관세를 재부과하려고 하자 캐나다는 10%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목록을 고시하였으나(SOR/2020-199) 미국 측이 철회하면서 캐나다도 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161) WTO, “United States —Additional Import Duties on Steel and Aluminium Articles from Canada”(검색일: 2025. 5. 10.).

162) Customs Tariff 53(2)

Notwithstanding this Act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the Governor in Council ma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and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by order,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Canada’s rights under a trade agreement ... or responding to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the government of a country that adversely affect ... trade in goods or services of Canada, d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 suspend/withdraw rights or privileges under a trade agreement or Act;
- (b) make goods ... subject to a surtax;
- (c) include goods on the Import Control List;
- (d) levy a variable duty tied to quantities.

과 재무장관(장관) 공동 추천에 따라 연방 국무회의(Governor in Council)가 명령(order)을 통해 (i) 무역협정상 캐나다의 권리 집행, 또는 (ii) 상대국 정부의 조치·정책·관행이 캐나다의 재화·서비스 교역에 직접·간접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a) 특정 권리·특혜 정지, (b) 추가 관세 부과, (c) 수입허가목록 등재, (d) 수량 연동 가변관세 부과 등 무역보복·방어 수단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USMCA 협정 아래 대부분의 캐나다산 상품이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인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025년 3월에 부과된 보복관세[3월 4일 부과한 300억 캐나다달러, 3월 13일 추가한 142억 캐나다달러의 소비재·중간재 추가 관세(25%)]를 9월 1일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¹⁶³⁾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인도

2025년 4월 미국이 인도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2025년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이폰과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도산 수입품에 대해 50%의 전면적 관세를 2025년 8월 27일부터 부과하는 행정명령¹⁶⁴⁾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인도의 국가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163) Government of Canada, “Canada’s response to U.S. tariffs on Canadian goods”(검색일: 2025. 10. 4.).

164) Executive Order 14329.

위한 정당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총 50% 관세 부과에 반발해 2025년 8월 7일 36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 등 미국산 무기 도입을 유보했다. 그러나 보복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국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모디 총리는 독립기념일인 2025년 8월 15일 연설에서 ‘강한 인도’를 강조하면서 제트엔진,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8월 26일 국민에게 ‘인도에서 생산하고 인도에서 지출하라’며 ‘자급자족(스와데시 운동)’을 당부했다. 인도정부는 부가세인 상품·서비스세(GST)를 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감세 정책으로 미국의 50%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자국 의류 업계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면화에 부과하는 관세 11%를 2025년 8~9월 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다.

마. 브라질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브라질의 모든 제품에 대해 10%,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의 3위 철강 제품 수출국인 브라질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 또한 브라질은 트럼프와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2025년 8월부터 50% 관세를 부과받음에 따라 커피·소고기·해산물·과일·신발 등 많은 업종이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브라질 제품 중 694개 품목(전체 수출품 중 45%)에 대해선 관세 예외 조치를 적용받아, 미국의 50% 관세 부과 영향을 받는 품목은 35.9% 수준인 것으로 현지 당국은 추산했다.¹⁶⁵⁾ CNN은 “항공기 부품, 석유

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오렌지 주스 등은 모두 관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며 “트럼프의 브라질 관세 행정명령은 실효성이 부족한, 말로만 하는 위협에 가깝다(more bark than bite)”고 평가했다.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르면 “브라질이 보복하면 미국도 상향 대응한다”고 되어 있어,¹⁶⁶⁾ 맞보복-재상향의 악순환을 피하려면 초반에는 행정적 면제·감면·TRQ 협상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에는 자국의 경쟁력을 일방적으로 해치는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다. 2025년 4월 11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이하 「경제상호주의법」), LEI Nº 15.122, DE 11 DE ABRIL DE 2025」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이 브라질의 주권적 선택에 간섭하는 일방적인 상업 조치 채택, 무역협정 위반, 브라질이 채택한 환경 보호 기준보다 더 부담이 큰 환경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브라질 정부가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 조세 수입 또는 제한 부과, 통상 양허 또는 투자 중단,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¹⁶⁷⁾

165) 「美의 50% 관세폭탄 앞둔 브라질 “협상하되 안풀리면 다음 대응”」(2025. 8. 1.)(검색일: 2025. 10. 4.).

166) The White House(2025. 7. 30.),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검색일: 2025. 10. 4.).

Sec.4.(b) Should the Government of Brazil retaliate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this action, I will modify this order to ensure the efficacy of the actions herein ordered. For example, if the Government of Brazil retaliates by raising tariff rates on United States exports, I will increase the ad valorem duty rate set forth in this order by a corresponding amount. (브라질 정부가 이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에 보복할 경우, 나는 여기에 명령된 조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명령을 수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정부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여 보복하는 경우, 나는 이 명령에 명시된 종가관세율을 상응하는 금액만큼 인상할 것입니다.)

167) 세계 법제정보센터(2025. 5. 7.), 「브라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상호주의법」 제정」(검색일: 2025. 10. 2.).

한편 브라질은 브라질산 제품에 부과된 미국의 50% 관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개발은행(BNDES)에서 운용하는 수출보증기금을 활용해 대미 수출 기업에 300억 헤알(7조 6,923억 원) 규모의 신용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보복보다는 국내 기업 보호와 관세 부담 완화, 협상력 확보를 우선하고 있다. 육류 등 관세 부과 대상 식품의 경우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차원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서 학교 또는 병원 급식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바. 멕시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5년 2월 1일 트럼프 2기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였고 협상으로 1개월 유예를 얻었지만, 3월 4일부터 25% 관세가 실제 발효하였다. 그러나 3월 6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이 25% 관세를 무기한 유예하는 예외가 만들어졌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는 USMCA 하에서 미국과의 무역 중 84% 이상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¹⁶⁸⁾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2026년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헌법 131조 및 Ley de Comercio Exterior(대외무역법)를 통해 대통령이 관세율 인상, FTA 관세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복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USMCA 유지 및 경제의존도 때문에 캐나다처럼 전면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이 제3국으로 향하고 있다.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아시아발 수입 급증을 우려하여 2025년 12월 10~11일 멕시코 하

168) Gillies(2025. 8. 6.), "Crucial exemption allows majority of Canadian and Mexican goods to be shipped to US without tariffs"(검색일: 2025. 10. 2.).

원과 상원은 잇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비FTA국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 인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FTA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약 1,400개 품목에 대해 20~35%, 일부 품목은 최대 50%까지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¹⁶⁹⁾ 한국도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아 자동차 및 부품, 철강, 가전·전자, 섬유 등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다른 국가들 역시 미국발 관세에 대응하여 제3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모방하게 된다면, 미국발 관세정책이 도미노처럼 제3국 관세로 연쇄 확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자체제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망과 투자 결정이 FTA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밖의 국가는 관세 및 비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4. 소결

다시 관세의 시대가 돌아왔다.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규범 어젠다가 관세, 수입 제한 등을 통해서 규제 준수 비용을 국경에서 가격화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관세정책은 국경에서의 마약 관리 규제 준수 비용으로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의 국제수지 흑자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타국의 국내 정치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GATT법상 정해진 관세 양허 의무를 준수 하지 않고 구조적 불균형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미국의무역구제 조치가 WTO 체

169) Cheng(2025. 12. 11.), "Mexico Slaps Up to 50% Tariffs on Chinese Goods, Drawing Outcry From Beijing"(검색일: 2025. 12. 12.).

제 내에서 반복적으로 제약을 받자, 미국정부는 WTO 상소기구를 마비시키는 등 WTO 무력화 노선에 나서게 되었다. 이처럼 WTO의 법 집행 및 역지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 협상하는 방식을 취할 유인이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관세 부과가 외국의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손쉬운 수단으로서 무역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시행한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관세 위협을 통해 양허 및 투자 약속을 받아낸 뒤 부분 면제하는 미국의 협상 패턴을 고려하면 보조금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제조업의 몰락을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해 막아보겠다는 산업정책적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관세 수입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재정 여건이 팍팍한 상황에서 '자국 산업 투자 재원'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더불어 재정 보조효과를 거둘 수도 있어서 미국은 일방주의적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WTO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WTO 협정이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 시 GATT 제21조의 국가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를 전면내세워 자국 안보에 기반한 조치임을 주장하였고,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서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며, 태양광 모듈 및 세탁기 등 특정 수입품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1974년 무역법 제201조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WTO 규범 내 절차 조사·통지·협의 등을 대체로 준수하며 형식적으로라도 제도권적 절차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정책들은 실질적으로는 보호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동맹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에 일괄적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다수의 WTO 분쟁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 WTO 패널에게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았

표 2-11. 트럼프 1기 관세정책에 주로 사용된 법

구분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201조	무역법 제301조
주무 부처	상무부(DoC) → 대통령	ITC(국제무역위원회)	USTR(미 무역대표부)
적용 요건	특정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급증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초래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지재권 침해, 차별적 조치 등)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라는 폭넓은 개념 적용 가능 - 대통령 재량이 매우 큼 - 주로 품목별 관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협정에 정의된 세이프가드 발동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피해국 보상 및 양허 정지를 감수해야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조사를 포함
주요 사례 (트럼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부과(전 세계 대상, 일부 국가 예외) - 자동차 수입도 조사했으나 관세는 미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세탁기: 최대 50%, 태양광: 30% 점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지재권 침해 및 기술 이전 강제 혐의에 따라 2018년부터 대중 관세 부과
국제법적 정당성 (WTO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 제21조(안보 예외) 적용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SG 협정)에 따라 합법적 조치 가능 - 그러나 보상 미제공 등으로 제소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 제23조에 따른 WTO 분쟁해결절차 우선이 원칙이나, 트럼프는 이를 우회하여 일방 보복
WTO 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S544: 미국 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S546(세탁기): 미국 패소, 상호 합의 - DS562(태양광(중국)): 미국 승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S543: 미국 패소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다.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Section 301 관세)는 WTO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독 보복 조치로서, WTO 패널은 2020년 해당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관세 조치를 신규로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기존의 조치를 상당 부분 수정 및 유지하였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조치의 경우 EU, 일본 등 우호국에 대해 추가적인

표 2-12.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주로 사용된 법

구분	IEEPA	무역확장법 제232조
주무 부처	대통령, 재무부, 상무부	상무부(DoC) 조사 후 대통령 조치 결정
적용 요건	대외적 비상사태 선포 후 경제거래 규제 권한	특정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동결·거래 금지·수입·수출 제한 등 광범위한 경제제재 수단 - 관세 부과 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라는 폭넓은 개념 적용 가능 - 대통령 재량이 매우 큼 - 주로 품목별 관세 부과
주요 사례 (트럼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마약 관련 관세 부과 - 보편관세(10%) 및 국가별 상호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알루미늄, 구리 50% - 자동차 및 부품 25%
국제법적 정당성	- GATT 제21조(안보 예외) 적용 주장	- GATT 제21조(안보 예외) 적용 주장
WTO 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S633(중국이 미국 제소, 2/4): 협의 중 - DS634(캐나다가 미국 제소, 3/5): 협의 중 - DS640(브라질이 미국 제소, 8/5): 협의 중 	- DS635(캐나다가 미국 제소): 협의 중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면제를 적용하면서 완화시켰으나,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201조 조치는 부과 기간을 4년 연장하였다. 중국에 대한 제301조 조치 역시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였으며, 나아가 추가 검토를 통해 2024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2기에는 더 나아가 WTO 규범 자체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트럼프 1기에는 관세 부과가 특정 품목이나 산업(세탁기, 태양광, 철강, 알루미늄, 중국산 기술 제품)에 한정되었으나, 트럼프 2기에는 IEEPA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전면 활용하면서 마약, 무역수지 적자, 보편관세 등 다양한 사유를 통해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WTO 규정이 무시되고, 규범 기반 접근에서 힘 기반 접근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선 관세 위협을 통해 협상에 나서게 하고, 협상 과정에서 양허/투자 약속을 받고 부분면제를 해주는 방식이 패턴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자무역체제는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으며, 미국 내 사법부에서는 IEEPA에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여부를 심리 증으로 국제

표 2-13. IEEPA를 대체할 관세 부과 수단 비교

구분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관세법 제338조	무역법 제122조
관세 부과 목적 및 근거	국가안보를 해치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 및 관세 부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보복 조치	미국 통상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관세 부과
관세율/기간 제한	관세율 및 기간에 명시적 상한 없음	4년 주기 재검토 (이론상 무제한 연장가능)	최대 50%의 추가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전면 금지 가능	관세율 최대 15%로 제한. 관세 부과 기간 최대 150일로 제한
특징	상무부(DOC)의 조사 및 보고가 선행되어야 함. 관세 부과 권한을 명확히 위임하여 법적 정당성이 있음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및 청문회 등 절차 필요. 주로 특정국(중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됨	대통령 주도. IEEPA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주요 대체 수단으로 주목됨	비교적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조치. CIT가 무역적자 대응을 위한 법적수단으로 제122조를 언급한 바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대법원이 IEEPA를 통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부정할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하거나 그밖에 1930년 무역법 제338조 또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 등 다른 관세 수단을 활용하여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제232조에 따라 부문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IEEPA 관세에 제동이 걸릴 경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광물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부과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USTR이 주도하며 조사 및 공청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IEEPA처럼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는 어렵다.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으며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15% 관세 상한, 150일 최대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으나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IEEPA를 통한 관세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임시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제232조, 제338조 및 제12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은 일방적인 관세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 WTO에 제소, 보복관세 부과,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은 WTO에 제소한 바 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한 국제규범 기반의 대응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우선 양자·다자 협상을 통한 실질적 이익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 라인 협의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 중국 등은 보복 관세 조치를 실행한 바 있으나 적극적 관세 대응¹⁷⁰⁾보다는 FTA 네트워크(한-EU, 한-ASEAN, 한-호주, 한-인도 등)를 활용한 관세 리스크 완화 등 대체 시장 확보를 통해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변화에도 강건한 산업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나 브라질과 같이 자국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전환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멕시코처럼 비FTA 국가에 대한 관세를 올려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로, 이에 대응해서 △ 대상국별 위험 매핑과 조기경보 체계 구축, △ 멕시코·브라질 등 비FTA국가와의 FTA 추진 가속화, △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제3국 피해 최소화 외교, △ 기업의 FTA 클럽내 생산기지 분산 지원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 선제적 관리 등이 요구된다. 이어서는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무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 후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170) 우리나라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에 따르면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

1. 개요
2. 관세의 파급 경로: 큰 그림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이 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그에 따른 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크게 인상된 관세(natural experiment)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선행연구를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통상정책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4장(사후 분석)과 제5장(사전 분석)에서 해당 연구 분야의 공백을 일부 메우려고 노력했다. 둘째, 관세 변화로 촉발된 경제주체별 선택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정부가 통상정책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이 관세 인상에 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검토 범위를 좁히고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선행연구의 검토 기준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tariff)는 외생변수다. 무역 제한(trade restriction) 수단인 관세는 정부의 선택변수로서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실제 각국 정부는 근거법에 따라 대상 국가, 품목, 관세율, 기간 등을 다르게 설정한다.¹⁷¹⁾ 그러나 관세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결정된 관세가 경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를 이해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므로, 관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논문(예, Mayer 1984, Grossman and Helpman 1994)은 검토 범위에서 제외한다.

171) 예컨대 Section 201과 301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를 둔다. Section 201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임시로 수입 제한(관세, 수입쿼터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301은 외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거나 미국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하면,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232는 앞선 두 개와 달리 국가안보 관련 수입 규제로서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근거를 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이 장에서는 1930년에 스무트(Smoot)와 홀리(Hawley)가, 1971년 닉슨(Nixon)이, 2018~19년과 2025년 트럼프(Trump)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왜(why) 관세를 올리자는 결정을 했는지 묻지 않는다.¹⁷²⁾ 우리는 관세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관세 변화에 따라 경제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둘째, 관세 하락이 아닌 관세 인상에 주목한다. 관세가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은 상승과 하락 두 가지뿐이다. 선행연구에서 다수의 모형은 관세 하락을 기준으로 자원 배분과 후생 변화를 분석한다. 관세 하락에 따른 분석 결과는 넓게 보면 무역 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의 논조로 확장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전통 무역(traditional trade) 이론부터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신무역(new trade) 이론까지 관세를 외생변수로 취급하며 관세 하락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의 최적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경제주체의 달라진 선택에 따라 각국의 생산, 수출과 수입(무역 패턴),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 실질 소비자 임금(무역의 이익)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한다. 관세 인상의 파급효과는 전통 무역과 신무역 이론 모두에서, 관세 하락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역으로 작동한다.¹⁷³⁾ 관세 하락이 아닌 관세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우리의 관심이므로, 협상을 거쳐 협정을 통해 관세 감축을 약속하는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나 유사 주제를 담은 이론·실증·정량 분석 연구는 주요 검토 범위에서 제외한다.

172) 미국 역사에서 관세 인상의 목적(관세 수입, 산업 보호, 무역수지 개선 등)을 자세히 논의한 Irwin(2017), 레이건과 트럼프 사이의 관세정책 결정 패턴이 유사함을 주장한 Freund(2017b), 2018~19년 관세장벽 확산의 패턴을 보여준 Amity, Redding, and Weinstein(2019, 2020)과 Bown(2025)를 참고하기 바란다.

173) 예컨대 Melitz(2003) 모형에서 관세 하락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나가도록 압박을 가하므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경제 전반의 가격 지수는 떨어지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상승하고 소비자의 소비 수준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Melitz(2003) 모형에 따르면 관세 인상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키므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감소하고 경제 전반의 가격 지수는 높아지게 되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과 소비자의 소비 수준은 떨어져 결국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셋째, 2개국 이상의 국가 사이에 발생한 관세 인상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관세장벽의 확산, 소위 관세 전쟁(trade war)이라 일컫는 현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를 우선하여 검토하고, 실증 연구의 결과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론 연구, 이론 모형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정량 연구도 추가로 살펴본다. 실증 연구와 이론 연구가 상호 작용하면서 무역 모형이 발전한 역사를 떠올릴 때 최근의 관세 전쟁이 유사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이례적임을 상기한다면, 실증 연구를 검토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론 모형의 예측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론 모형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높아진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모두 포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론 모형은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 구조를 드러내는 유용한 장치인 것도 사실이다. 이론 모형의 예측 결과를 검증한 실증 결과를 살펴보고 이론 모형이 다루지 못하는 파급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실증 연구 검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론과 정량 연구 검토를 병행한다.

이 장에서 엄선한 질문은 총 여섯 개다. 관세 전쟁(인상)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질문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향후 연구를 위한 참고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각 질문에 답할 때 대표 논문을 되도록 포함한다.

첫째, (파급 경로) 관세 전쟁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고려 사항) 경제 영향 분석 시 무엇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셋째, (기업) 관세 전쟁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넷째, (소비자) 높아진 관세의 부담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다섯째, (정부) 관세 수입은 과연 개선되는가?

여섯째, (제3국) 관세 전쟁의 제3국 영향은?

각 질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은 관세 전쟁의 현상을 설명할 때 국제무역 전문가가 머릿속에 그리는 큰 그림을 단순화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둘째 질문은 큰 그림 속에서 관세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일 뿐 아니라, 분석의 엄밀성을 더하고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부터 여섯째 질문은 주로 사후 영향(ex post) 분석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관세 전쟁이 경제 주체(기업, 소비자, 정부)와 국가(자국, 제3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절에서는 첫째와 둘째 질문에 관하여 서술한다. 선행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나 절에서는 셋째부터 여섯째 질문을 다룬다. 실증 연구를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실증 연구가 없으면 이론 연구와 정량 연구 순으로 살펴보며, 여의치 않은 경우 조사 보고서, 국제기관 보고서, 국내외 기관 보고서, 국가 공문서 등 순으로 살펴본다. 관세 전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론, 정량, 실증, 또는 혼합 형태)이 존재하므로, 인용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논문을 우선하여 검토한다.

2. 관세의 파급 경로: 큰 그림

가. 관세 전쟁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관세 인상(전쟁)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답하기는 어렵다. 시기에 따라, 대답하는 연구자마다,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이 제시될 수도 있다. 1817년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가 제시한 모형 이후 현재까지 수없이 많은 무역 모형이 경쟁을 거치면서 폐기되거나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모형조차도 새로운 모형에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경제학과 대학생이 이해하는 모형부터 주요 저널에서 인정하는 최신의 기법(state-of-the-art)을 동원한 모형까지, 무역 모형은 관세가 일차적으로(first-order) 상품 시장의 가격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그림 3-1]은 관세의 파급 경로를 도식화하고 관련 경제변수를 보여준다. 관세 인상이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에 둔 것이다. 경제주체는 국내외 기업(중간재와 최종재),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가격(price)과 수량(quantity)을 결정하고, 소비자는 소비 수준(consumption)을 결정한다. 수출(입)가격, 수출(입)량, 상품 가격, 비용 경쟁력 등은 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단어이다. 노동자의 임금이나 고용은 기업의 선택과 관련되고, 상품 가격은 소비자 후생과 연결된다. 이 장에서는 관세를 외생변수로 다루므로 정부의 선택 변수(choice variable)는 없으며, 정부와 관련된 경제변수는 관세율과 수입액의 곱으로 산출되는 관세 수입뿐이다. 관세 변화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시스템의 참여주체인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과 함께 투자, 무역수지, 물가, 환율 등과 상호 작용한다.¹⁷⁴⁾ [그림 3-1]은 주요 단어 사이에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굵은 실선으로, 관련성이 낮고 간접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점선으로 표시한다.¹⁷⁵⁾

174) 국제 무역 문헌에서는 세계 상품 시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관세와 환율 시장, 관세와 금융 시장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지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국가마다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다르므로 수입 대금을 내는 행위는 관세와 환율 시장이 연계됨을 뜻하고, 관세의 변동은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을 유발하므로 주식과 채권 등을 거래하는 금융 시장과도 연동될 수 있다. 관세는 상품 시장뿐 아니라 환율과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품, 환율, 금융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무역에서 상품 시장뿐 아니라 환율과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175)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관세의 파급 경로는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파급 경로 중에서 연구자 사이에 이견이 적은 파급 경로를 우선하여 선택하고, 관세변수와 경제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세 인상의 대략적인 파급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관세율이 오르면, 세계 생산과 무역 네트워크가 서로 연계되므로 세계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그 영향이 미친다. 관세가 단순히 관세 수입과 무역수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높아지면 해당 품목의 수입 가격이 변하므로 수입품을 가져다 쓰는 기업과 동일한 수입품을 생산하는 기업 간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 기업 간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관세로 보호받는 기업과 해당 기업에 속한 노동자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비싸진 수입품을 중간재로 가져다 쓰는 기업이나 해당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에 속한 노동자는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매출과 이익 감소를 경험할 것이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마크업(상품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한계비용으로 나눈 것)을 낮추거나, 피고용자 수나 임금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피고용자 수의 조정에 따른 노동자의 실직 위험은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관세 인상에 따라 임금 소득이 변화한다는 것은 곧 관세 인상이 소득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관세 인상이 촉발한 소비자 가격 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가 변화는 곧 소비자 후생 변화로 직결되며,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의 범위, 관세율 변화 폭, 적용 기간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품 가격 변화는 국내의 기업의 투자 결정도 바꿀 수 있으며, 투자 결정에 따라 장기 경제성장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 영향 분석 시 무엇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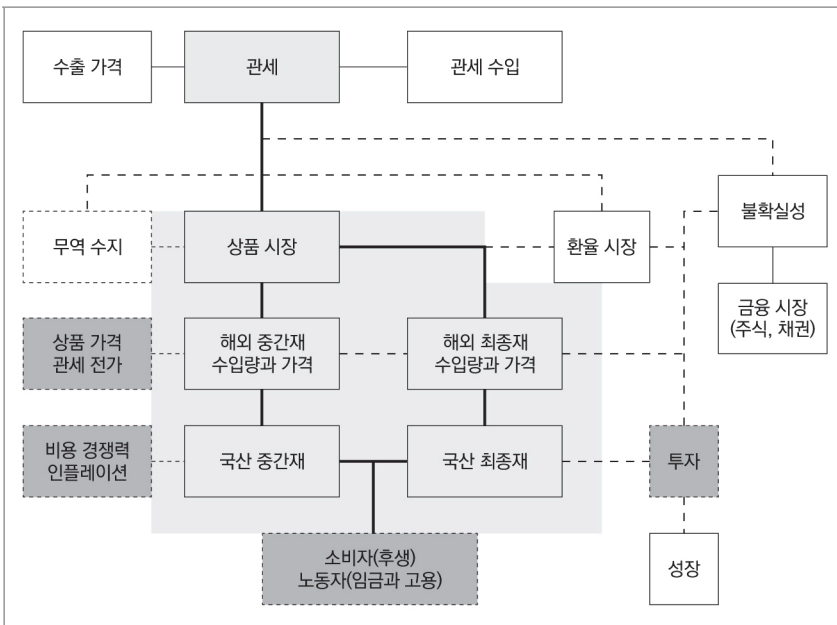
[그림 3-1]에서 관세 인상의 파급 경로를 간단히 설명했으나, 그 설명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세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을 설계하거나, 분석 모형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해석하거나,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

난 수치가 강건한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하거나 점검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¹⁷⁶⁾

첫째, 소비의 다양성(variety): 신무역 이론의 지평을 연 Krugman(1980)이 주장한 다양성이다. 관세 인상의 효과로서 소비량(quantity)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다. 현실에서는 관세 인상에 따라 수입 품목의 수가 하락하여 소비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Amiti, Redding, and Weinstein 2019).¹⁷⁷⁾

둘째, 기업의 크기(size): 기업의 이질성(firm heterogeneity)에 관한 것이다(Melitz 2003). 기업을 국내와 해외 기업으로 구분하고, 각 국가의 기업을 중

그림 3-1. 관세의 파급 경로와 관련 경제변수



자료: 저자 작성.

176) 이외에도 지정학, 지경학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고려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177) CES 수요 함수를 가정하고 1972~2001년 미국 수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Broda and Weinstein (2006)에 따르면, 수입 품목 수의 증가가 미국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는 미국 GDP의 2.6%에 해당한다. Feenstra and Weinstein(2017)은 1992~2005년 기간에 국제 무역이 미국의 후생을 0.9% 증가시켰는데, 이 중 절반은 품목 수 증가가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간재와 최종재 기업으로 나누어 설명했으나 기본적으로 동질적인(homogeneous) 기업을 가정했다. 기업 구분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기업 특징은 기업의 크기다. 다만 기업의 크기 변수는 이론과 정량 모형에서는 모형의 복잡성으로 작용한다. 산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종재와 중간재 무역을 설명함과 동시에 기업의 크기까지 반영된 모형은 이미 개발되었으나(Costinot and Rodriguez-Clair 2014), 정량 분석이 복잡하여 활용도가 다소 떨어진다. 실증 연구에서 기업의 크기 변수는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와 관련된다. 기업의 크기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만 활동하는 기업(중소기업 포함), 수출 기업,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한 다국적 기업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의 차이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크기에 따라 관세 회피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국내의 생산기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관세 회피 능력이 단순 수출 기업보다 클 수 있다(예, Flaaen, Hortacsu, and Tintelnot 2020).¹⁷⁸⁾

셋째, 상품의 대체 가능성(substitutability): 수입 품목이 국내 생산에 투입되는 다른 중간재와 어느 정도의 보완성을 갖는지를 뜻한다. 극단적인 예로서, 교역 상대국이 부과한 관세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라면? 수입업체 입장에서 대체 가능성이 낮은 수입품에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과 대체 가능성이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은 서로 다르다.¹⁷⁹⁾¹⁸⁰⁾ 최근 연구에서는 품목 간 대체탄력성을 반영한 분석

178) 한국기업의 수출입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정책 연구 차원에서 관련 주제는 지속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179) 미국기업(New Balance)의 공청회 발언에서 드러난 예시가 흥미롭다. 뉴발란스는 신발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최종재 생산 회사다. 뉴발란스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신발 깔창을 포함한 다양한 중간재를 사용한다. 뉴발란스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의 기타 부속품, 깔창, 뒤꿈치 쿠션 및 유사한 물품(Other Parts Of Footwear, Insoles, Heel Cushions, And Similar Articles, Made Of Rubber Or Plastics)으로 분류된 신발 깔창(HTS Code: 6406.90.3060)을 수입했다. USTR이 Section 301 공청회에서 뉴발란스는 중국산 깔창만을 유일하게 수입해 사용하며 대체할 만한 공급망을 구축하기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18~19년 당시에는 중국산 수입에 0~5.3% 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5개 공장에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와 함께 뉴발란스는 중국에서 무단으로 생산하는 복제품 뉴붐(New Boom)이

이 확대되는 추세다(예, Fajgelbaum *et al.* 2020).

넷째, 글로벌 생산 구조(global value chain): 해외 중간재와 국내 중간재가 사용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으나, 국내외 중간재의 투입산출 구조를 반영한 생산함수를 염두에 두고 관세 인상의 파급 경로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Eaton and Kortum(2002)가 제시한 무역 모형에 글로벌 생산 구조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확장하고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Antras and Chor(2018)과 Caliendo and Parro(2015)의 연구 등은 관세 전쟁에 관한 반사실적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 연구로 이어졌다(예, Guo *et al.* 2018; 이규엽 외 2017; 조문희 외 2020 등). 최근에는 실증 연구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 고려하는 추세다(예, Handley, Kamal, and Monarch 2025).

다섯째,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 시장 구조는 완전 경쟁부터 불완전 경쟁(독점, 과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정 품목이나 특정 산업이 직면하는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한 습관적인 모형 설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관세 인상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시장의 구조는 과점인가 독점적 경쟁인가? 반도체 시장은 어떠한가? 웃은? 상품이나 산업의 시장 구조에 관한 특징은 관세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 봐야 할 주요 요인이다.

여섯째, 수출 구조(trade structure): 수출 구조는 글로벌 생산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2개국 이상에 걸쳐 중간재 부품을 공급하여 최종재를 조립하

문제이지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USTR(2029. 6. 17.), pp. 296-297).

180)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엘리먼트 전자(Element Electronics)는 중국에서 LCD 패널과 메인보드를 수입해서 TV를 생산하는 미국 유일의 TV 제조회사이다. 2018~19년 공청회에 참석하여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LCD 패널과 메인보드에 관세를 올리면, 해당 회사로서는 관세 비용을 흡수(absorb)할 능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여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엘리먼트 전자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감소할 것이며, 오직 부품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만 남캘리포니아의 공장이 작동할 것이라 발언했다. 만약 관세가 인상된다면 남캘리포니아 공장문을 닫고 해외로(예: 멕시코)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음을 피력하며, 오히려 최종재 TV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USTR(2018. 5. 15.), p. 187].

는 현대 무역 시스템에서는 중간재 수출입이 세계 무역에서 약 60%를 차지한다. 수출 구조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 의존도에 관한 고려로 이어진다. 예컨대 중국산 중간재A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중간재B를 만들고 베트남의 한국 공장으로 중간재B를 수출해 조립한 후 미국으로 상품C를 수출하는 구조를 떠올려 보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중간재A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상품C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 중간재A에 부과된 관세의 영향으로 중간재A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한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위협에 노출된 것이다. 한국이 중국산 중간재A를 사용하는 정도, 즉 해당 중간재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의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도 커질 것이다.

일곱째, 시간(time)의 흐름: 무역 모형의 다수는 정태 분석(static analysis)에 속한다. 관세 인상이 발생하면 부분 균형이든 일반균형이든 관계없이 기존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즉각 이동한다. 교역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관세장벽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면 관세 변화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다수의 국가에 지속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며, 그 효과는 누적되어(cumulative) 나타난다. 최근 연구는 내생적 성장 동력을 장착하여 무역과 성장을 함께 설명하는 무역 모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예, Buera and Oberfield 2020; Sampson 2023). 동태적 무역의 이익은 정태적 무역의 이익보다 크다. 이 말은 관세 전쟁에 따른 동태적 무역의 손실은 정태적 무역의 손실보다 클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관세 전쟁에 관한 최근 실증 연구에서는 월별 수입 데이터를 활용한 사건 연구(event study) 기법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예, Amiti, Redding, and Weinstein 2019; Fajgelbaum *et al.* 2020; Jiao *et al.* 2024).¹⁸¹⁾ 성장의 관점보다는 무역의 동태성을 강조한 모형(dynamic spatial

181) 관세 전쟁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나, 단기와 장기에 따라 관세 변화에 따른 수출 탄력성이 다르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예, Boehm, Flaaen, and Pandabi-Nayar 2019; Fitzgerald

trade model)도 개발되었다. Rodriguez-Clare *et al.*(2025)는 Caliendo, Dvorkin, and Parro(2019)에서 소개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2025년 관세 전쟁의 동태적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주요 교역국의 보복 관세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높아진 관세에 따라 미국의 총고용이 감소하고(제조업 고용 증가, 서비스와 농업의 고용 감소), 실질임금도 2028년까지 1% 감소할 것이라 보고한다.

여덟째, 무역수지(trade balance): 미국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이유로 무역수지 개선을 제시한다. 2025년 4월 2일에 공개된 상호관세 공식의 적용이 무역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무역수지는 일반균형 효과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특정 국가에 관세율을 달리한다고 해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실증 연구도 드물다.¹⁸²⁾ 관세와 무역수지가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 현실에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는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해 보인다(Hufbauer and Lu 2016). 특정 국가 간 무역수지가 만성 적자인 이유는 해당국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Baldwin 2024a, 2024b). 예컨대 미국 소비자가 한국산 수입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의미다. 표준화된 무역 모형에 무역수지의 설명 메커니즘을 이식한 연구도 최근 등장했다(Dix-Carneiro *et al.* 2023). 한 국가가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려면 돈을 빌려와서 소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역수지의 내생적 결정을 설명하려면 기간 간(intertemporal) 소비 변화를 도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동태적 무역 모형을 뜻한다. 정량 모형을 통해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하려면 해당 논문에서 출발해 볼 수 있다.¹⁸³⁾

and Haller 2018).

182) 참고로, 관세 인상이 아닌 무역 자유화가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예, Freund 2017a; Hufbauer and Lu 2016).

183) 다국가, 다산업 모형에 불완전 노동시장(실업 존재)을 상정하고 무역수지를 내생적으로 결정하며 시간의 동태성이 강조된 이 모형은 여타 무역 모형과 차별성이 크다. 다만 해(solution)를 찾는 컴퓨터

마지막으로, 발표 효과(announcement effect)와 불확실성(uncertainty):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관세 인상의 효과는 상품, 환율, 금융 시장 등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뉴스(news)가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관세 인상 발표의 효과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가하며 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을 추가한다. 최근 선행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위주로 보고한다. 관세 인상에 따라 증가한 기업 수준의 불확실성(trade policy uncertainty)이 기업의 투자, R&D, 이윤을 모두 낮추고(중국: Benguria *et al.* 2022), 주식 가치도 하락시켰다(중국: Ding, Pu, and Qi 2021; Huang *et al.* 2023; 미국: Amiti, Kong, and Weinstein 2020). 또한 무역의 불확실성은 무역비용을 높이므로, 무역의 불확실성이 집중된 국가 사이의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무역을 저해한다(조문희 외 2020).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소비의 다양성, 기업의 크기, 상품의 대체 가능성, 글로벌 생산 구조, 시장 구조, 수출 구조, 시간의 흐름, 무역수지, 발표 효과와 불확실성 등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하에서 검토한 자료는 앞서 언급한 고려 사항을 크고 작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최신 연구이다. 지금부터는 검토 범위를 축소하여 관세 인상(전쟁)이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코드가 복잡하고 모델 확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가 오르면 수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가 증가했을 때 수출 기업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달리 말해서 수출 기업이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회피하려면 어떤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가?

- 첫째, (가격) 수출 기업은 수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둘째, (생산량) 수출 기업은 국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셋째, (투자) 수출 기업은 해외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다.
- 넷째, (고용과 임금) 수출 기업은 고용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다섯째, (수출국) 수출 기업은 우회 수출을 모색할 수 있다.
- 여섯째, (그 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회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기업의 관세 회피 전략은 위에 열거한 둘째부터 다섯째 수단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Flaaen, Hortacsu, and Tintelnot(2020)은 미국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 사실에 주목한다. 2012년, 2016년, 2018년에 관세를 매긴 데이터와 미국의 세탁기 수입액, 미국 세탁기 시장의 소매 상품 가격 데이터 등을 두루 활용하여 실증분석했다. Flaaen, Hortacsu, and Tintelnot(2020)은 결과의 일부로서, 미국이 매긴 관세에 대응하여 미국에 세탁기를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이 세탁기를 생산하는 기지를 이전(country-hopping)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출 기업의 우회 수출 전략(다섯째) 선택 가능성이 실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국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을 조정(둘째)하고 결국 해외직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한 선택(셋째)을 지지한다.

첫째로 언급한 수단은 나타나지 않는다. 수출 기업의 가격 조정 여부는 고용과 임금 조정(넷째)과 관련성이 높고, 크게는 이윤율 조정이나 마크업(상품 가격에서 한계비용을 뺀 값을 한계비용으로 나눈 값)을 조정(첫째)하는 것과 연관된다. 수출 기업이 가격을 조정했는지에 관한 질문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해당 질문은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충분히 탄력적인가? 내지는 실제 미국의 관세 인상이 누구의 부담으로 귀속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도 바꾸어 물을 수 있다. 경제학자의 관심이 관세 전가에 쏠려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실제 수출 가격을 조정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만을 소개한다.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왜(why) 수출 가격이 조정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자. Jiao *et al.*(2024)는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가격이나 시장 조정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수출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위챗(WeChat)을 통해 설문했다. 중국 수출 기업 600개사는 대체 해외시장 확장이나 국내시장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로 판매 채널과 네트워크 부족을 꼽았다(각각 59.3%, 46.6%, 문항당 복수응답 허용). 미국을 판매처로 여기는 중국 수출 기업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기업의 낮은 이익률이 수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72.2%), 계약상 조정이 불가함이 둘째 이유이다(21.1%). 즉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가격 조정이 필요했는지 모르나 이익률이 이미 너무 낮았다. 짧게 말해서 중국 수출 기업은 수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다. Jiao *et al.*(2024)는 2018년 미국의 관세 인상이 중국 수출업체의 수출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1월~2019년 4월(초점: 2017년 1월~2019년 4월)까지 중국의 한 지방급 도

사에서 해외로 수출한 모든 기업을 포함하는 자료를 활용했다. 중국의 수출 기업이 국가/지역으로 수출한 품목(HS 10자리 기준)의 일일 거래 수준 수출 데이터와 기업별 월간 국내 판매 데이터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 연구(event study)를 시행한 결과로, 미국의 관세가 중국 수출품의 선적가격(free on board price)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실증 결과를 보고했다.¹⁸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모두 중국기업인 것만은 아니다. Lovely and Liang(2019)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기업에도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Jensen(2025)는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해외 기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면 혁신을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보다 장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 것이라 주장한다.

나. 높아진 관세의 부담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관세 귀착 연구(tariff incidence)는 왜 중요한가?¹⁸⁵⁾ 관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제주체인 해외 생산자(수출업자), 수입업자, 국내 소비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실질적으로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가를 질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 가격을 일부 부담할 수 있고, 미국 내 자동차 수입업자가 이윤을 줄이면서 부담할 수도 있으며, 미국 소비자가 비싸진 자동차 가격을 부담할 수도 있다. 관세 귀착을

184) Jiang *et al.*(2023) 역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한다. 중국기업의 수출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고 대미 수출액은 16.47% 감소했음을 보였다. 수출량(quantity) 감소가 수출액 감소를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185) 관세 귀착(incidence) 또는 관세 전가(pass-through)는 관세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완전(complete) 전가는 부과된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부분(incomplete) 전가는 기업이 관세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하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경우, 영(zero)의 전가는 기업이 관세 부담을 전혀 소비자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 비용 절감 또는 이윤 감소로 흡수하는 경우이다. 소비자 가격의 관세 탄력성을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 전가율을 고려하는 것과 같다. 참고로 소비자 가격의 관세 탄력성은 관세가 1% 증가할 때 소비자 가격이 몇 % 변화하는지 측정한다.

이해하는 것은 관세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관세 부담이 경제주체에 어떻게 전가되는지 알 수 있다면 경제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세정책을 수정할 여력이 생긴다는 뜻도 된다.

중국 수출 기업, 미국 수입 기업, 미국 소매 기업 이렇게 세 종류의 기업만 있다고 상황을 단순화해보자. 중국 수출 기업은 수출 가격을, 미국 수입 기업은 중국산 수입품의 최종 수입 가격(중국산 수출 가격과 관세의 곱 + 마진)을, 미국 소매 기업은 소비자 가격(미국의 최종 수입 가격 + 마진)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중국기업의 수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19년 미국이 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품의 선적가격(관세 부과 전 수출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Jiao *et al.* 2024). 관세는 올랐는데 중국 수출 기업의 수출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수입 기업의 최종 수입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 소매 기업의 소비자 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는다. 희귀한 자료이지만 관세 전가를 가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스마트워치, TV 등을 파는 미국의 소매 회사인 베스트바이(Best Buy)는 2019년 6월 17일에 개최된 Section 301 공청회에서 2018년에 시행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제조업자와 소매업자가 10% 상당의 관세가 유발하는 비용을 모두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¹⁸⁶⁾

관세 귀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쉬운 모형은 관세 인상의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 균형(partial equilibrium) 무역 모형이다. 특정 상품의 세계 시장에 가격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둔 대국 모형과 동일 상품의 세계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가정을 둔 소국 모형이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최적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시장 청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 시장 하나만을 살펴보므로 부분 균형 분석이 된다. 시장의 구성 조건인

186) USTR(2019. 6. 17.), pp. 180-181.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입량이 결정된다. 수입 수요는 우하향한다. 즉 가격이 오르면 수입 수요는 감소한다. 대국 모형과 소국 모형을 가르는 가정은 공급 곡선의 형태이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 대국 모형, 수평이면 소국 모형이다. 대국 모형에서는 관세 인상에 따라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하면 수출 가격이 감소하지만, 소국 모형에서는 관세가 인상되어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하더라도 수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공급 곡선의 형태는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¹⁸⁷⁾

대국 모형과 소국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한 관세 인상(전쟁)의 파급효과는 우리가 공급 곡선의 형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고려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미국이 대국이라면 특정 품목의 관세 인상에 따라 교역 조건의 개선이 일어난다. 만약 미국이 소국이라면 특정 품목의 관세 인상은 사중 손실 증가로만 이어진다. 미국이 대국인지 소국인지는 실증분석의 영역이다(셋째 질문인 관세 인상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며 넷째 질문인 관세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와 밀접하게 연계). 부분 균형 이론 모형이 비록 가정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업과 소비자의 최적 선택, 생산, 수출, 시장 구조, 상품의 대체 가능성 등 앞서 언급한 고려 사항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해하기 쉬우며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 틀을 제공할 수는 있다.

187) 대국 모형에서는 관세 인상이 세계 시장 가격(수출 가격)을 떨어뜨린다. 새로운 세계 시장 가격(수출 가격)은 기존 세계 시장 가격보다 낮지만, 관세 인상에 따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상승한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증가하는 폭은 관세율이 증가한 폭보다 작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관세 증가가 세계 시장 가격을 떨어뜨렸으므로 동일 상품을 수입할 때 낮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교역 조건 개선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새로운 균형에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높아지므로 국내 소비자는 과거보다 소비를 줄이고 국내 생산자는 과거보다 생산을 늘린다.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surplus)는 왜곡되고, 두 왜곡의 합은 사중 손실로 계산된다. 정부의 관세 수입이 사중 손실보다 클 경우 후생은 증가하고, 작으면 후생은 감소한다. 소국 모형에서는 관세 인상이 세계 시장 가격(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급 곡선이 수평이므로, 관세율이 증가한 폭만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한다. 대국 모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균형에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높아지므로 국내 소비자는 과거보다 소비를 줄이고 국내 생산자 역시 과거보다 생산을 늘린다. 대국 모형과 달리 소국 모형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왜곡 증가에 따라 사중 손실의 규모만 커지므로 관세 인상의 결과 후생은 항상 감소한다.

연구자는 계량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에 나섰다.¹⁸⁸⁾ 연구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이후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실제로 변하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관세 귀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보면 수입 가격 데이터와 시장의 소매 가격 데이터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예컨대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 2020), Fajgelbaum *et al.*(2020), Cavallo *et al.*(2021) 등은 미국의 수입 자료(HS 10단위 품목 16,000개 이상)를 활용한다. Flaaen, Hortacsu, and Tintelnot(2020)처럼 미국의 세탁기 소매 가격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관세가 변동할 때 소매 가격이 변동한다는 의미는 관세 변화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입품이 중간재로 사용되고 최종재가 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HS 10 단위 품목 데이터를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구성하는 상품과 매칭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다만 두 데이터를 매칭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Amiti, Redding, and Weinstein 2019; Fajgelbaum *et al.* 2020), 대부분의 관세가 중간재에 매겨지는 형태여서 관세가 부과된 후에 나타나는 가격 변화를 추적하기도 어렵다 보니 자주 고려되지는 않는다(Flaaen, Hortacsu, and Tintelnot 2020).

선행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관세 전가의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예측과 달리(puzzle) 미국은 소국이며, 관세 인상이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었다(Fajgelbaum and Khandelwal 2022; Fajgelbaum *et al.* 2020; Amiti, Redding, and Weinstein 2019, 2020; Cavallo *et al.* 2021; Flaaen, Hortacsu, and Tintelnot 2020 등). 특히 관세 귀착을 연구

188) Irwin(1998)에 따르면 1930년 6월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미국의 수입량은 40% 이상 감소했다. 부분 균형 분석에 따르면 스무트-홀리 관세 자체는 수입을 약 4~8% 감소시키고, 특정 관세(specific duties)와 디플레이션이 결합하면서 실질 관세율(effective tariff)이 더욱 상승하여 8~10%의 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했다. 일반균형 모형에 기반을 둔 반사실적 분석에 따르면, 관찰된 40% 수입 감소 중 약 4분의 1은 실질 관세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 논문의 조사 논문인 Fajgelbaum and Khandelwal(2022)는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을 활용하여 미중 관세 전쟁이 미국, 중국, 그 외 다른 국가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조사 논문은 관세 전쟁에 따라 미국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수입품을 사야 했고, 미중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결론짓는다.¹⁸⁹⁾

관세 전가의 결론은 다른 저자와 정성적으로 같으나 Cavallo *et al.*(2021)은 결과를 환율 변동의 전가 효과와 비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입 관세의 전가 효과는 환율 변동의 전가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 중국 수출업자는 달러화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기준 가격을 크게 인하하지 않았으나, 미국 수출업자는 외국의 보복관세 영향을 받은 품목의 가격을 낮췄다. 미국 매장 내 소비자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했는데, 이는 소매 마진의 감소를 뜻하며, 해당 결과는 관세의 부담이 상당 부분 미국 기업에 전가되었음을 시사한다. Flaaen, Hortacsu, and Tintelnot(2020)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2018년 미국이 결정한 세이프가드 관세에 따라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이 108~225% 증가했으며,¹⁹⁰⁾ 세탁기와 건조기의 중간 가격(median price)이 각각 \$86, \$92 상승했다. 거의 모든 원산지에 매겼던 2018년 미국의 관세에 따라 세탁기 가격은 거의 12% 상승했으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건조기의 가격은 세탁기 가격 상승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조기 가격과 미국 내 세탁기 브랜드별 가격 인상을 함께 고려하면, 2018년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 시 소비자 가격의 관세 탄력성은 1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189) Fajgelbaum *et al.*(2020)이 한 수입품 종류의 다양성 간 대체성(substitution among varieties of an imported product), 수입품 간 대체성(substitution among import products),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의 대체성(among imported and domestic aggregates) 등 세 가지 차원의 대체성을 추가로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보다 엄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90) 미국이 반덤핑 관세로 세탁기 수입을 제한했을 때 뒤따랐던 가격효과를 추정한 Flaaen, Hortacsu, and Tintelnot(2020)의 연구는 분석 데이터의 특이성 이외에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최종 소비재에 부과된 관세 사례이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둘째, 한국기업 사례(LG electronics와 Samsung Electronics)를 포함하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셋째, 미중 관세 전쟁이 동틀 무렵인 2018년 초 트럼프 정부의 첫 관세 부과(Section 201조 근거) 사건을 분석한다.

이 외에도 관세 인상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앞서 소개한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는 소비의 다양성을 추가로 고려해서 분석했다. Waugh(2019)는 중국의 보복관세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소비 증가율’이 감소했음을 보였다. 소비자 가격, 소비의 다양성, 소비 증가율 외에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소득 분위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인 연구도 있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해외 기업이 모두 부담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미국 내 경제학자는 관세 효과가 역진적(regressive)이라 주장한다. 즉 미국의 관세정책(2018~19년, 2025~현재)이 저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Clausing and Lovely 2025).

다. 관세 인상으로 관세 수입은 개선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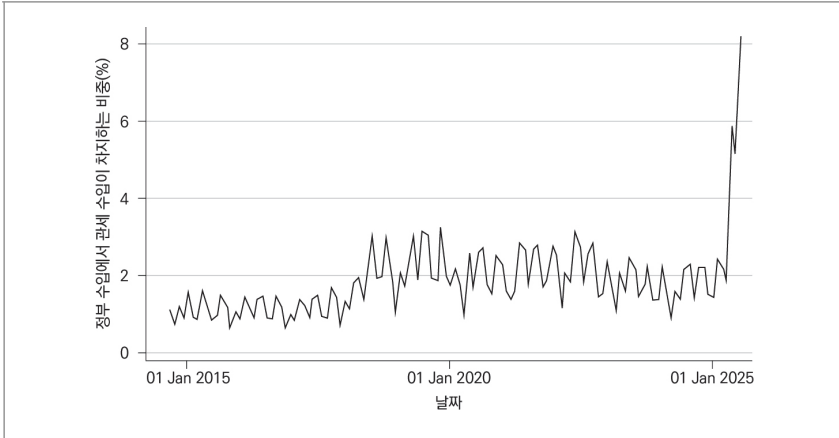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높은 관세율 부과에 따라 관세 수입(customs duties; customs revenues)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을까? 앞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인가?

먼저 미국정부가 국경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벌어들이는 관세 수입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2015~25년(현재)까지 정부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자. 미 재무부는 매월 말 정부 수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¹⁹¹⁾

[그림 3-2]는 미 재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 정부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관세 수입은 16,000개 이상의 품목별 수입 가격과 수입량, 해당 품목의 관세율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2018년 3월부터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발표된 2020년

191) 관세 수입 정보를 집계하고 미 정부의 회계에 반영하기까지 대략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 정부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주: 1) Monthly Treasury Statement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조정하지 않음.
 2) 2025년 5월과 6월 미 정부 수입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6%, 5.97%로 올랐음.
 3) 2025년 7월 미 정부 수입에서 관세 수입의 비중이 약 8.17%로 증가함. 이는 6월과 7월 관세 수입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6월보다 7월의 정부 수입 총액이 감소한 결과임.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검색일: 2025. 9. 12.)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월까지 미 관세 수입의 월별 비중은 최소 0.68%(2018년 4월 30일)에서 최대 3.15%(2019년 10월 31일) 사이에서 움직인다(그림 3-2 주 참고). 미국의 월별 수입액은 계절성(seasonality)을 반영하여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은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미 관세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트럼프 주장을 지속하여 비판해왔다. 비판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관세 수입이 미 정부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다. 미 정부의 수입에서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es)와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세(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가 80~90%를 차지한다. 둘째, 관세 인상에 따라 관세 수입이 늘더라도(2018~19년 1%대에서 최대 3%)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 Irwin의 지적을 추가 검토해 보자. 2018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상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HS 10단위 16,000개 품목 단위의 수입액과 관세 정보를 활용한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

는 관세 인상에 따른 관세 수입을 계산하여 Table 2에 제시하고 있다. 동일 시 기 미 재무부가 제공한 관세 수입 자료를 추가하여 살펴보자. [표 3-1]은 관세 전쟁에 따른 관세 수입 증가의 기여분을 가늠해 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가 제시한 결과와 미 재무부가 제공하는 실제 관세 수입을 활용하면 관세 전쟁에 따라 증가한 관세 수입이 미국의 관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표 3-1]에 나타난 것처럼 2018년 12월로 갈수록 관세 수입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¹⁹²⁾ 다만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¹⁹³⁾

표 3-1. 관세 전쟁에 따른 관세 수입 증가의 기여

(단위: 십억 달러, %)

2018년	관세 인상에 따른 계산된 관세 수입(A)	미 재무부 발표 실제 관세 수입(B)	비중(A/B) (단위: %)
1월	0.0	3.2	0.0
2월	0.1	2.7	3.7
3월	0.1	3.1	3.2
4월	0.4	3.4	11.6
5월	0.4	3.0	13.5
6월	0.7	3.5	19.9
7월	1.4	4.2	33.7
8월	1.4	4.2	32.9
9월	1.6	4.6	35.0
10월	3.2	5.6	57.7
11월	3.0	6.3	47.7
12월	3.2	6.0	53.4

주: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 Table 2 자료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검색일: 2025. 9. 12.)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함.

자료: 저자 작성.

192) Flaaen, Hortacsu, and Tintelnot(2020)은 2018년 세이프가드 관세에 따라 관세 수입은 8,2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한다. 해당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 내에서 1,800명 고용이 창출되었으나(미국 기업의 고용 증가분 +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고용 증가분), 소비자 비용을 매년 15조 달러 상승시켜 고용당 비용이 815,000달러 소요된 것으로 계산했다.

193) 미 관세 수입 금액이 늘어난 것을 관세정책의 효과라고 선불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신문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에 속한다). 미국의 수입량(quantity)이 늘어난 효과인지 수출 가격(export price)이 커져서 그런 것인지, 트럼프의 주장처럼 관세정책의 효과인지는 실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재차 관세 전 가(귀착) 문제로 회귀하게 된다.

라. 관세 인상은 어떻게 제3국에 영향을 미치는가?

관세가 인상되면 세계 시장에서 상품의 상대 가격이 왜곡된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상품의 수입 대신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났는지 무역 전환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조문희 외(2020)은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전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5~19년 자료(전체 품목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를 사용했다. 저자들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입 전환을 일으켰다고 보고한다. 다만 자본재, 소비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미중 관세 전쟁이 무역 흐름을 단순히 다른 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제3국에 기회가 되어 순수출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인가? Fajgelbaum *et al.* (2024)는 관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bystander) 국가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으로 관세 부과 대상 상품의 수출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관세가 부과된 상품의 국가별 수출성장률 차이는 산업별 특화 패턴보다는 국가별 관세 탄력성(tariff elasticity)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공급 곡선이 하향 기울기를 가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수출을 대체하는 국가는 관세전쟁의 주요 수혜국이 되지만, 미국과 중국의 수출을 보완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관세는 한 국가를 넘어 타국의 경제까지 일반균형 효과(general equilibrium effects)를 미친다. 관세 인상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균형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예, Caliendo and Parro 2022).¹⁹⁴ 미중 간 관세

194) 산업 간 무역부터 산업 내 무역까지 무역 모형은 관세 인상에 따라 경제변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예측 결과를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경제변수가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지 그 크기(magnitude)까지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Eaton and Kortum(2002)의 이론 모형을 기초로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방법론을 제시한 Deckle *et al.*(2007)은 정량 분석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 NAFTA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자세히 설명한 Caliendo and Parro(2015)는

전쟁의 사전 영향 분석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한다(Guo *et al.* 2018; Ossa 2014). Guo *et al.*(2018)은 Caliendo and Parro(2015)에 기반을 두고 미국이 중국산 상품 수입에 45%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45% 보복관세를 매기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수출, 수입, 생산, 실질 임금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미국은 상당한 사회적 후생 손실을 겪지만, 중국은 무역 전쟁이 미중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손실을 다소 입거나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일부 국가가 약간의 이익을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Caliendo and Parro(2015)나 해당 논문을 확장한 Antras and Chor(2018) 모형을 활용하여 관세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이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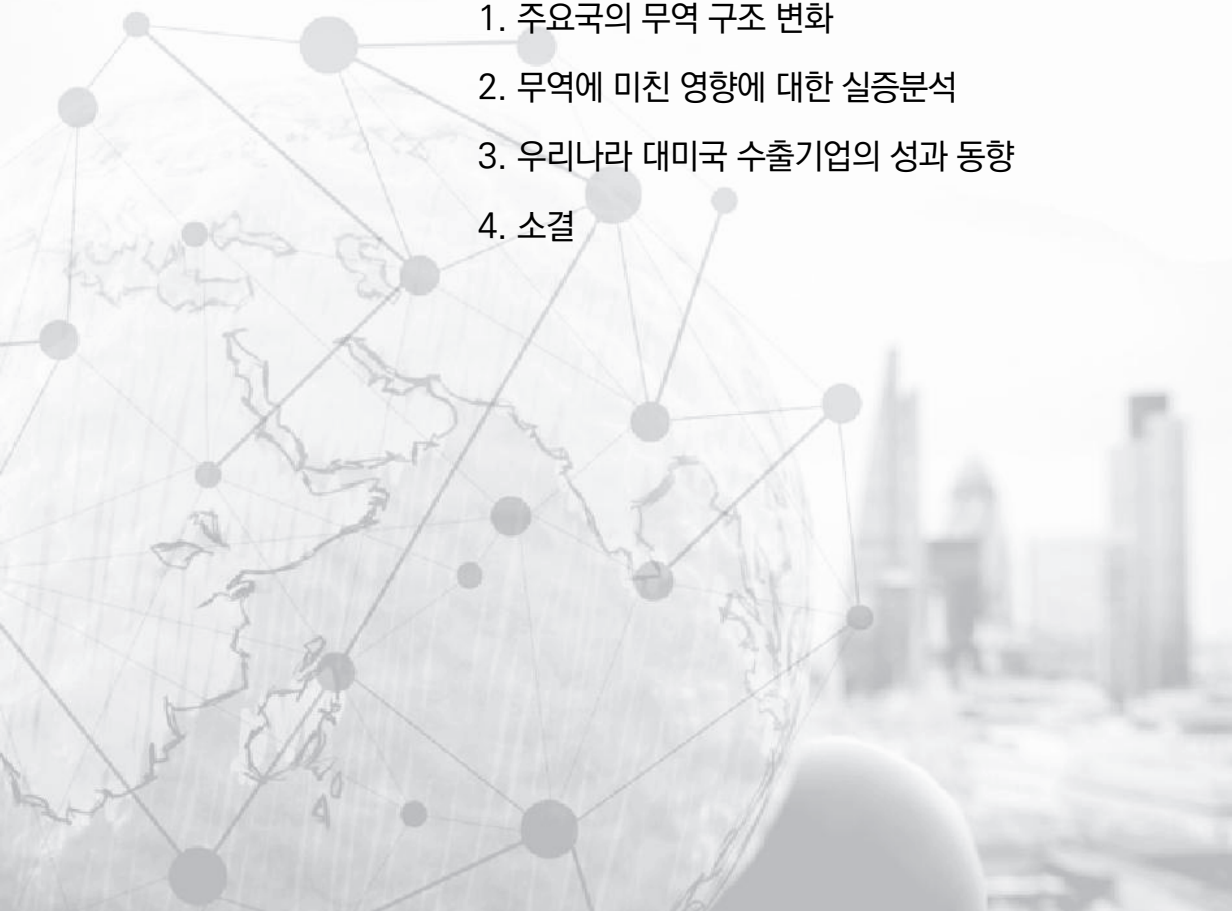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을 선택하고 산업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Eaton and Kortum(2002) 모형을 확장하였으며, 실제 무역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NAFTA 협정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aliendo and Parro(2022)는 자신들의 모형을 활용해 2018년 관세 전쟁의 후생 효과와 수출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Table 1과 2).

제4장



미국발 관세장벽 확산이 미친 영향

1. 주요국의 무역 구조 변화
2.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3.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기업의 성과 동향
4. 소결



1. 주요국의 무역 구조 변화¹⁹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 이후에는 관세가 통상정책의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않았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 관세정책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대해 광범위하게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관세정책의 발표와 유예를 반복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의 대응 역시 다양해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관세정책의 확산이 주요국의 무역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세정책이 본격화된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시기 간 주요국의 무역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직접적으로 관세정책을 시행한 미국 수입시장, 그리고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중국 수출시장 그리고 대표적인 제3국으로서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시장을 살펴본다.

가. 미국 수입시장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거대한 수입 규모를 보인다. 그중에서도 2022~24년 기준 기계(15.4%), 전기·전자(15.0%), 화학·고무·플라스틱(14.8%), 기타 제조업(11.9%), 자동차(11.6%) 등이 주요 수입 산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수입시장의 산업 구조는 지난 10년간 광업의 비중 감소를 제외하면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광업의 비중은 2012~14년 17.5%에서 2022~24년 9.1%로 감소했는데, 이는 세 일 혁명으로 2010년대 전반에 걸쳐 미국 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크게

195) 본 절의 내용은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증가하면서 그 결과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화학·고무·플라스틱(11.2%→14.8%)을 비롯해 상기한 주요 산업과 농축수산물업(5.8%→7.3%)은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EU, 중국, 멕시코, 캐나다 4개국으로 이들이 지난 10년간의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더해 2020년대 들어 비중이 커진 ASEAN(2022~24년 10.5%)을 더하면 주요 5개국의 비중은 70%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EU, 멕시코, ASEAN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2017~19년까지 증가했으나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301조) 시행 이후인 2022~24년 들어서는 크게 감소했다. 캐나다의 경우 2017~19년 들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면서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나, 2022~24년 들어서는 비중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이외에 주요한 수입 상대국으로는 일본,

표 4-1. 미국 수입에서 산업별 비중

(단위: 십억 달러, %)

HS 2단위	산업	2012~14		2017~19		2022~24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01~24	농축수산물업	133	(5.8)	160	(6.6)	232	(7.3)
25~27	광업	401	(17.5)	226	(9.3)	290	(9.1)
28~40	화학·고무·플라스틱	257	(11.2)	316	(13.0)	470	(14.8)
50~63	섬유·의복	111	(4.9)	118	(4.9)	126	(4.0)
72~83	철강·비철금속	125	(5.5)	137	(5.6)	180	(5.7)
84	기계	319	(14.0)	371	(15.3)	489	(15.4)
85	전기·전자	306	(13.4)	358	(14.8)	476	(15.0)
87	자동차	254	(11.1)	304	(12.5)	367	(11.6)
86,88,89	기타 운송기기	33	(1.5)	37	(1.5)	38	(1.2)
90~92	광학·측정·정밀기기	79	(3.5)	99	(4.1)	128	(4.0)
기타*	기타 제조업	267	(11.7)	296	(12.2)	379	(11.9)
	합계	2,287		2,421		3,176	

주: * 41~43, 44~49, 64~71, 93~97.

1) 산업은 HS 부(section) 및 류(chapter: 2단위) 분류를 기준으로 11개로 재구성함.

2) 합계는 미분류(HS_99 등) HS 코드를 제외한 11개 산업의 합계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한국, 대만, 인도, 영국 등이 있다. 한국의 비중은 2012~14년 2.8%에서 2022~24년 3.8%로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대만, 인도 등의 비중도 2020년대 들어 증가하는 양상이다. 반면 일본(6.1%→4.6%), 영국 등의 경우 비중이 감소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미국 수입시장의 산업 구조를 한국을 포함한 7대 수입 상대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먼저 EU는 화학·고무·플라스틱(40.4%), 기타 운송기기(37.0%), 광학·측정·정밀기기(28.4%)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은 섬유·의복(25.6%), 전기·전자(28.0%), 기타 제조업(26.8%)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멕시코는 자동차(34.4%)와 농축수산물식품업(20.4%),

표 4-2. 미국 수입에서 국가별 비중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	2012~14		2017~19		2022~24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1	EU	349	(14.8)	430	(17.0)	592	(17.9)
2	중국	463	(19.7)	520	(20.6)	495	(15.0)
3	멕시코	287	(12.2)	342	(13.5)	483	(14.6)
4	캐나다	340	(14.4)	319	(12.6)	432	(13.1)
5	ASEAN	133	(5.7)	193	(7.6)	348	(10.5)
6	일본	143	(6.1)	144	(5.7)	153	(4.6)
7	한국	66	(2.8)	77	(3.0)	125	(3.8)
8	대만	41	(1.7)	49	(1.9)	102	(3.1)
9	인도	44	(1.9)	56	(2.2)	90	(2.7)
10	영국	55	(2.3)	60	(2.4)	66	(2.0)
11	스위스	29	(1.2)	41	(1.6)	59	(1.8)
12	브라질	31	(1.3)	32	(1.3)	42	(1.3)
13	이스라엘	23	(1.0)	21	(0.8)	22	(0.7)
16	사우디	53	(2.2)	19	(0.8)	18	(0.5)
25	러시아	28	(1.2)	21	(0.8)	8	(0.2)
39	베네수엘라	34	(1.5)	9	(0.4)	4	(0.1)
	전체	2,357		2,528		3,299	

주: 1) 국가 순위는 2022~24년 평균 기준이며 EU(27개국)와 ASEAN(10개국)은 단일 국가로 집계.

2) 전체는 미분류(HS_99 등) HS 코드를 포함한 대세계 수입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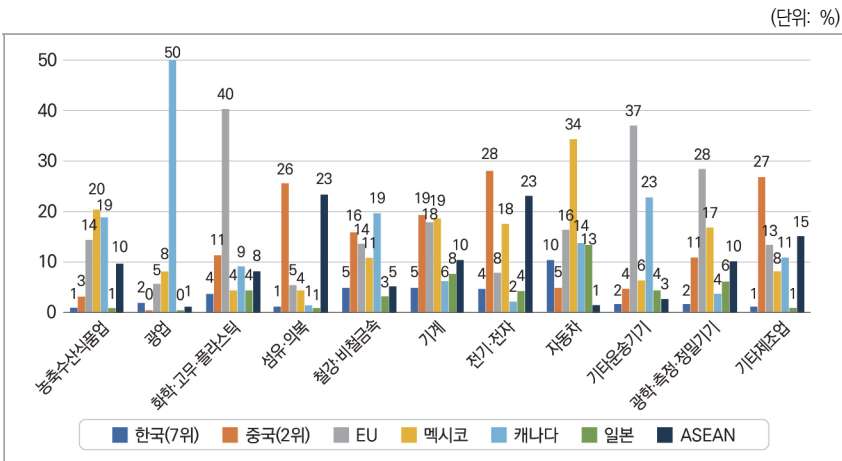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캐나다는 광업(49.9%), 기타 운송기기(23.0%), 농축수산물업(18.8%), 철강·비철금속(19.5%)의 비중이 높다. 기계 산업의 경우 중국(19.4%), EU(17.9%), 멕시코(18.7%)의 비중이 비슷하게 높은 편이다.

한편 한국은 자동차(10.3%)의 비중이 주요 4개국 수준에 근접할 만큼 높고, 또한 철강·비철금속(5.0%), 기계(4.9%), 전기·전자(4.5%), 화학·고무·플라스틱(3.6%)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광학·측정·정밀기기(6.2%)에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ASEAN의 경우 10개국 중 베트남(4.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동차와 광업의 비중이 낮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섬유·의복(23.4%), 전기·전자(23.0%), 기타 제조업(15.0%)의 비중이 높다.

지난 10년간 미국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산업별로 주요 수입 상대국들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한국은 광업, 화학·고무·플라스틱, 기계, 자동차에서 비중이 증가했고, 철강·

그림 4-1. 산업별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주: 2022~24년 총수입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6위)은 ASEAN으로 대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비철금속, 전기·전자, 기타 운송기기에서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과거에도 수입 규모가 크지 않았던 자동차와 기타 운송기기 등을 제외하면 여러 산업에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중 하나인 기계는 중국(-13.38%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멕시코(+5.03%p), 대만(+6.10%p), 베트남(+3.46%p)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1.24%p)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수입액이 거의 2배가량 증가하면서(연평균 116억 달러 → 238억 달러) 비중 역시 적지 않게 커졌다.

전기·전자 역시 중국(-11.50%p)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며, 더불어 멕시코(-1.11%p)와 일본(-2.02%p)의 비중도 감소했다. 반대로 다른 주요 상대국의 비중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베트남(+8.40%p)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의 감소분 대부분을 상쇄하고 있다. 한편 한국(-0.26%p)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는데, 그간 한국의 전기·전자 관련 주요 기업의 생산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된 영향을 일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멕시코(+10.53%p)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한국(+3.46%p)의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금액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2012~14년 대비 2022~24년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은 117% 증가, 멕시코로부터 수입은 108% 증가에 달한다. 반대로 캐나다(-8.61%p)와 일본(-6.37%p)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는데, 다만 수입액 규모로는 여전히 3위와 4위로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중국(+0.62%)의 비중 역시 소폭 증가했는데, 중국의 경우 상기한 주요국들과 달리 미국에 대한 완성차 판매는 미미하며, 거의 모두가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외 산업들에 대해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식품업의 경우 중국(-2.54%p)의 비중이 감소하고 멕시코(+5.41%p)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광업은 캐나다(+21.07%p)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7.58%p) 등 중동

지역 산유국의 비중이 감소했다. 화학·고무·플라스틱의 경우 EU(+7.65%p)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한국(+1.32%)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중국(-1.67%p), 캐나다(-4.19%p), 영국(-1.36%p)의 비중이 감소했다. 섬유·의복 역시 중국(-12.26%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베트남(+5.96%p)을 비롯한 ASEAN 국가 그리고 인도(+2.56%p), 방글라데시(2.18%p)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철강·비철금속의 경우 중국(-3.11%p), 일본(-2.00%p), EU(-0.75%p) 등의 비중이 감소했고, 캐나다(+0.55%p), 멕시코(+2.33%p), 인도(+1.20%p) 등이 증가했다. 광학·측정·정밀기기 역시 중국(-3.37%p), 일본(-3.94%p), EU(-1.17%p)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반대로 멕시코(+2.83%p), 코스타리카(+2.36%p) 등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기타 제조업의 경우도 앞의 산업들과 유사하게 중국(-11.48%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베트남(+5.54%), 스위스(+2.33%p), EU(+1.53%p) 등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다만 주요 수입 상대국인 캐나다(-0.53%p)와 멕시코(-0.64%p)의 비중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단계별(1차상품,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로 미국의 수입시장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1차상품의 비중이 크게 감소(14.6%→7.5%)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역시 미국의 세일혁명¹⁹⁶⁾으로 인해 기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국내 생산으로 대체된 영향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는 모두 비중이 증가했다. 미국 수입에서 생산단계별 비중은 중간재가 2022~24년 40.6%로 가장 높은데,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비재의 비중(30.0%)이 상당히 높은 수입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적이다.

196) 해당 기간 미국의 원유(HS_2709.00) 수입은 35.5% 감소(-1,011억 달러)한 반면, 원유를 제외한 1차 상품 수입은 11.2% 증가(+56억 달러)했다. 석유가스의 경우 가스 상태의 것(HS_2711.2)만 1차상품으로 분류되며(+15.2%, +16.6억 달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HS_2711.1)는 중간재로 분류된다.

그림 4-2. 산업별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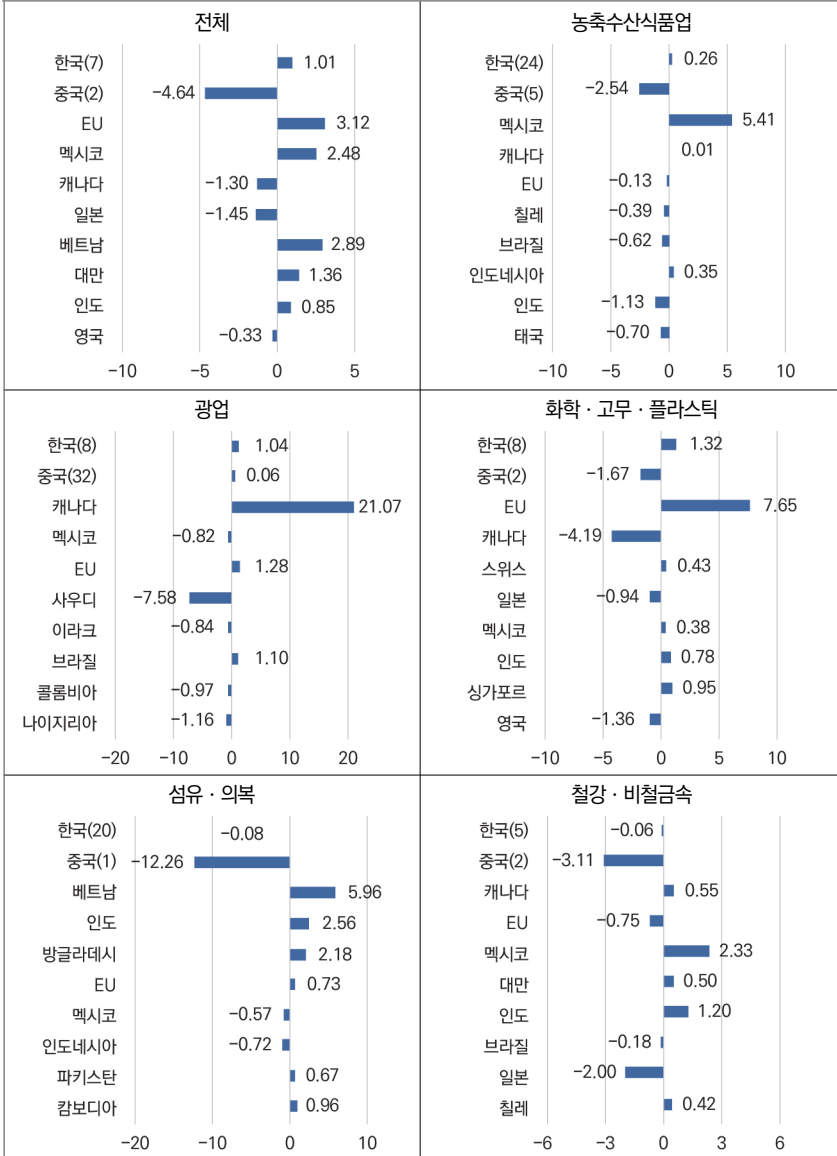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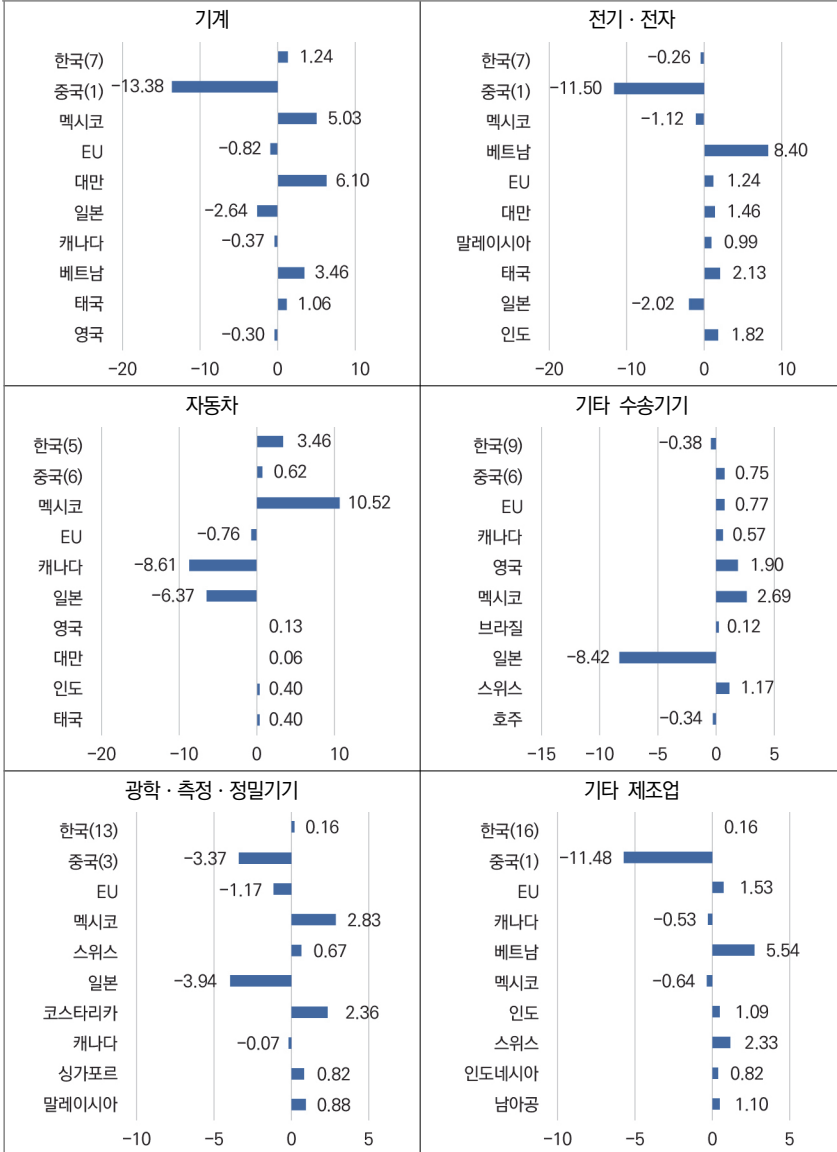


그림 4-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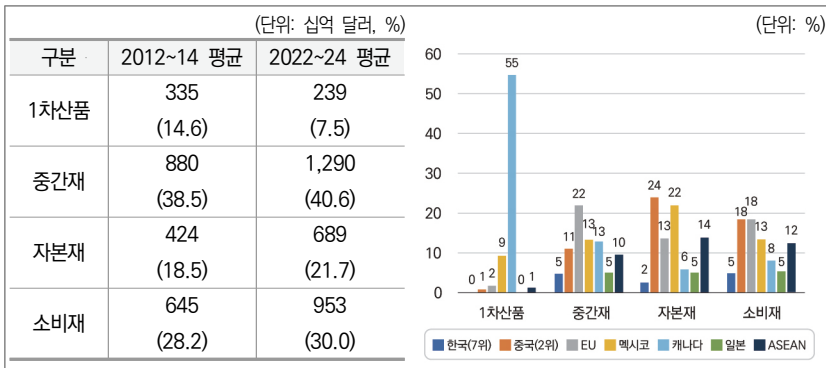
(단위: %p)



주: 주요 상대국은 한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산업별 2022~24년 수입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생산단계별 주요 수입 상대국의 비중을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1차산품의 경우 캐나다의 비중이 무려 54.5%에 달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간재의 경우 EU(21.8%)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멕시코(13.4%), 캐나다(12.8%), 중국(11.1%) 그리고 한국(4.9%) 등 다른 주요국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자본재의 경우 중국(24.0%)과 멕시코(21.8%)의 비중이 높고, 또한 상대적으로 ASEAN(13.7%)의 비중도 높은데, 반면 캐나다(5.7%)와 한국(2.5%)의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다. 소비재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국(18.4%)과 EU(18.5%)의 비중이 높고, ASEAN(12.3%)의 비중도 높은데, 반면 캐나다(8.1%)의 비중이 다소 낮다. 한편 자본재에서 멕시코의 비중이 높은 것과 소비재에서 한국(4.6%)과 일본(5.3%)의 비중이 높은 데에는 자본재로 분류되는 화물차(HS_8704)가 주로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며, 소비재로 분류되는 승용차(HS_8703)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이 수입되는 것의 영향이 존재한다.¹⁹⁷⁾

그림 4-3. 생산단계별 미국 수입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주: 2022~24년 총수입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6위)은 ASEAN으로 대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197) 미국의 자본재 수입에서 화물차(HS_8704) 비중은 2022~24년 6.1%이며, 화물차 수입에서 멕시코의 비중은 약 78%에 달함. 미국의 소비재 수입에서 승용차(HS_8703) 비중은 20.9%이며, 승용차 수입에서 한국 비중은 약 15%, 일본 비중은 약 19%임.

각 생산단계별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0~24년), 먼저 1차산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10.29%p), 이라크(-1.94%p), 베네수엘라(-7.61%p) 등 주요 산유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과거에도 1차산품 수입의 약 30%를 차지했던 캐나다(+24.26%p)로부터 수입이 더욱 증가하면서 2022~24년 캐나다의 비중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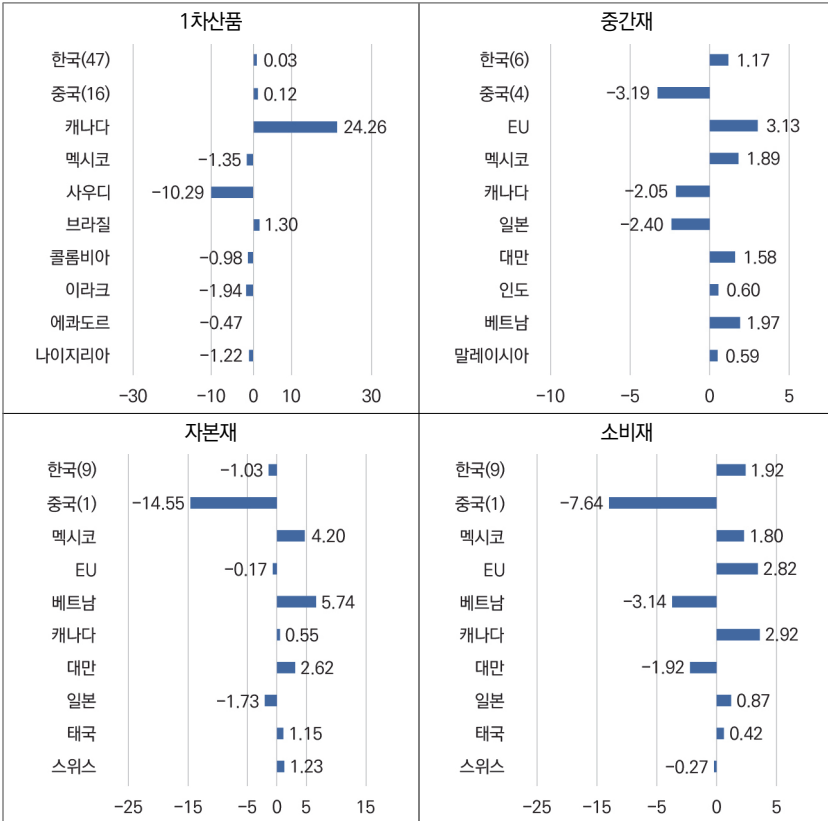
중간재의 경우 중국(-3.19%p), 캐나다(-2.05%p), 일본(-2.40%p)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EU(+3.13%p)와 멕시코(+1.89%p)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한국(+1.17%p), 대만(+1.58%p), 베트남(+1.97%p) 등 제조업 강국들의 비중이 증가했고, 반면 영국(-0.93%p)의 비중은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EU를 제외하면 선진국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 제조업 강국들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자본재의 경우 최대 수입 상대국인 중국(-14.55%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멕시코(+4.20%p), 베트남(+5.74%p), 대만(+2.62%p), 태국(+1.15%)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베트남의 비중은 2012~14년 0.75%에 불과했으나 2022~24년 6.49%에 달하며, 대만 역시 같은 기간 2.50%에서 5.12%로 2배 이상 커졌다. 한국의 비중은 1.03%p 감소(3.50%→2.47%)했고, 일본 역시 1.73%p(6.64%→4.90%) 감소하면서 2022~24년 기준으로는 베트남과 대만보다 오히려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재 역시 중국(-7.64%p)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더불어 캐나다(-3.14%p)와 일본(-1.92%p)의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반면 한국(+1.92%p), EU(+1.80%p), 멕시코(+2.82%p), 베트남(+2.92%p)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22~24년 기준 비중이 5.83%에 달하며 이는 한국(4.56%)과 일본(5.25%)의 비중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림 4-4. 생산단계별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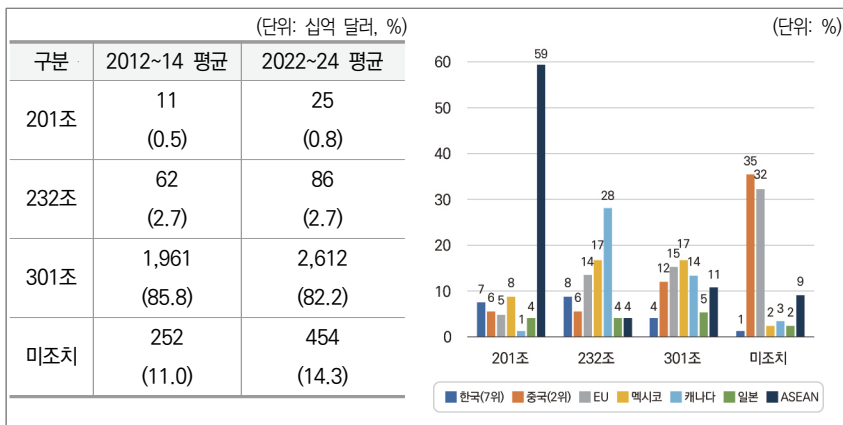
주: 주요국은 한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생산단계별 2022~24년 수입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시행한 3건의 관세 조치 관련 품목들에 대하여 주요 상대국별 비중을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먼저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201조 조치의 경우 ASEAN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9.4%에 달하게 되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철강·알루미늄(일부 파생제품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제232조 조치 관련 품목의 경우 캐나다(27.6%)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멕시코(16.8%)

와 EU(13.6%) 순이며, 한국의 비중도 7.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제 301조 조치 관련 품목의 경우 미국 전체 수입의 대부분(82.2%)에 해당하는 만큼 앞서 살펴본 전체 수입에서의 국가별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관세 조치의 직접적 대상이 된 중국의 제301조 조치 관련 비중은 12.2%로 전체 수입에서의 중국 비중(15.0%)보다 낮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3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미조치)에 대해서는 중국(35.4%)과 EU(32.1%)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에는 ASEAN(9.1%)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의 비중은 크지 않다.

각 조치별로 미국의 주요 수입 상대국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제201조(세탁기/태양광 제품) 조치 관련 품목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27.35%p 감소(39.94%→5.58%)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

그림 4-5.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미국 수입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주: 1) 2022~24년 총수입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6위)은 ASEAN으로 대치.
 2) 조치 관련 품목은 조치의 대상이 되는 HTS(2017) 8단위를 하나라도 포함하는 모든 HS 6단위가 집계되며, 더불어 HS 2017 → HS 2012 변환 과정에서도 n:1 매칭이 이루어지므로, 조치 관련 품목의 금액 및 비중은 실제 대상 품목에 비해 과대하게 계산됨.
 3) 제201조 관련 품목과 제232조 관련 품목은 서로 중복되지 않으나, 제301조 조치와 거의 중복되며, 여기서 제301조 조치는 제201조 및 제232조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검색일: 2025. 10. 1.).

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2016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된 바 있으며, 더불어 2018~19년에도 해당 품목들이 제301조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제201조 조치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제201조 조치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취해진 세이프가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¹⁹⁸⁾ 다만 과거부터 주요 수입 상대국이었던 말레이시아(-1.66%p)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며, 오히려 과거에는 수입이 미미했던 베트남(+21.81%p), 태국(+14.10%p), 캄보디아(+6.38%p), 인도(+5.17%p) 등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한국(+0.58%p)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멕시코(-8.63%p), 일본(-4.03%p) 등 과거 주요 수입 상대국이었던 국가들의 비중은 감소했다.

제232조(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조치 관련 품목들에 대해서는 중국(-2.66%p), EU(-2.46%p), 일본(-2.59%p)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캐나다(+3.14%p)와 멕시코(+4.97%p)의 비중은 증가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제232조 조치와 함께 대부분의 품목들이 제301조 조치에서도 중복적으로 대상이 되었다.¹⁹⁹⁾ EU와 일본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2022년) 들어서 철강에 대해 일부 면제(쿼터)를 받았는데,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비교적 이른 시기(2019년) 관세를 면제받았던 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0.49%)은 최초 2018년부터 철강에 대해 쿼터를 부과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비중 변화는 미미했다.

제301조(대중국 관세) 조치 관련 품목들(제201조 및 제232조 대상은 제외)에 대한 수입에서는 조치의 직접적 대상이 된 중국(-4.57%p)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며, 더불어 캐나다(-1.00%p), 일본(-1.55%p), 영국(-0.27%p) 등

198) 미국의 태양광 제품 4개 품목(HS_8541.40, 8501.31, 8507.20, 8501.61) 연간 수입액 변화(억 달러):

('17) 112 → ('18) 92 → ('19) 121 → ('21) 139 → ('22) 176 → ('23) 261 → ('24)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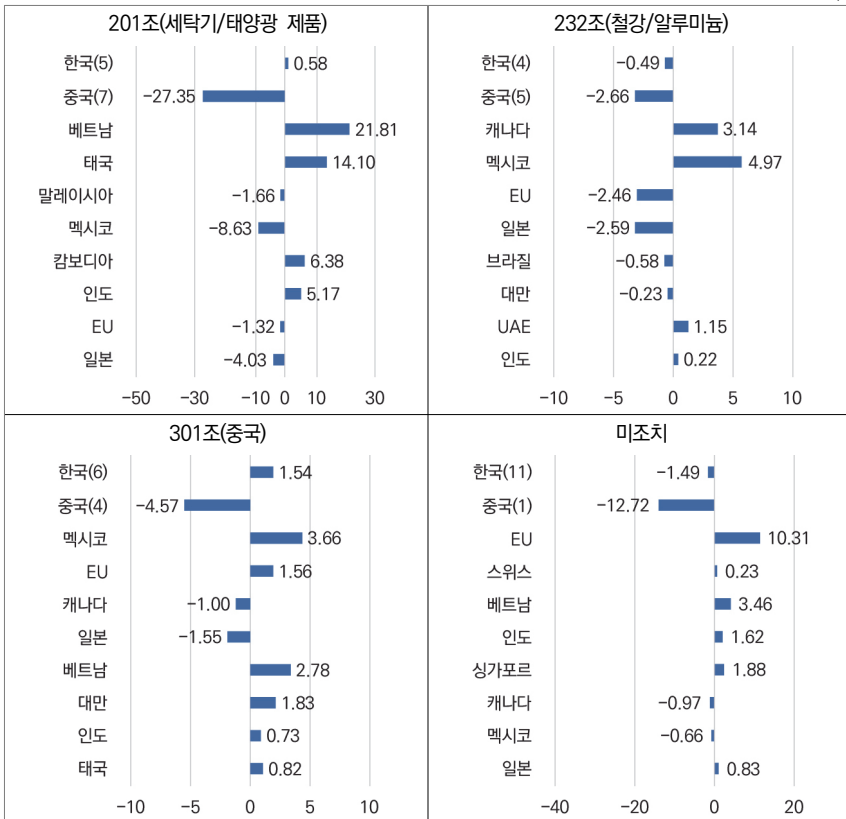
199)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련 814개 품목(HTS 2017 8단위) 중 693개가 제301조 조치 대상.

선진국의 비중이 감소했다. 반대로 멕시코(+3.66%p), 베트남(+2.78%p), EU(+1.56%p) 한국(+1.54%p), 대만(+1.83%p), 인도(+0.73%p) 등은 증가했는데, EU를 제외하면 대체로 신흥 제조업 강국들의 비중이 증가한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조치들과 관련이 없는(미조치) 품목들²⁰⁰의 수입에서도 중국(-12.72%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반면 EU(+10.31%p)의 비중이 크

그림 4-6.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미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주: 주요국은 한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생산단계별 2022~24년 수입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200) 주요 품목으로는 HS_3002.10(면역 혈청·물품), 8471.30(랩탑 컴퓨터), 9503.00(완구), 2937.19(호르몬), 9504.50(비디오게임기) 등이 있다.

게 증가했다. 미조치 품목들에 대한 수입은 중국(35.41%)과 EU(32.10%) 두 국가의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며, 다른 국가들의 비중은 3% 내외로 낮은 편이다. 이외에 한국(2.69%→1.20%)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비율적으로는 크게 감소했으며, 반대로 베트남(0.79%→4.25%)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나. 중국 수출시장²⁰¹⁾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경공업과 중공업을 모두 아우르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2~24년 기준으로 전기·전자(24.4%), 기계(16.0%), 화학·고무·플라스틱(12.2%), 철강·비철금속(8.9%) 등 중공업, 그리고 기타 제조업(15.2%) 및 섬유·의복(9.5%) 등 경공업의 비중이 모두 높은 편이다. 자동차(5.9%)의 경우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성차 판매가 내수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한편 경공업의 경우 과거에 비하면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 수출액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2022~24년 기준 미국(16.6%)과 EU(16.3%)로 두 국가의 비중이 특히 높다. 미국의 비중은 과거(2012~14년 20.27%)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으며, 반면 EU의 경우 비중 변화가 미미했다. 그 뒤를 이어 일본(4.99%), 한국(4.73%), 베트남(4.61%), 인도(3.69%), 러시아(3.12%) 순으로 여러 국가로 수출이 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3.19%p), 반대로 베트남(+1.96%p)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0.33%p)의 경우 지난 10년간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여전히 4위 수출 상대국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신흥국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격차는 줄어들었다. 한편 ASEAN을 단

201) 금액 및 비중 계산 시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한 수출은 제외함(홍콩 비중은 2022~24년 기준 8.2%).

일 국가로 합산한다면 그 비중은 2022~24년 기준 17.34%에 달하며(2012~14년 13.05%), 이는 미국과 EU의 비중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중국의 산업별 수출시장 구조를 주요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먼저 주요 6개 산업(화학· 고무· 플라스틱, 섬유· 의복,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기· 전자, 기타 제조업)에는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 EU, ASEAN 3개국이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타 제조업에서는 미국(23.9%), 철강· 비철금속에서는 ASEAN(22.4%)의 비중이 큰 편이며, 이외 주요 산업에서는 3개국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각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농축수산물식품업, 광업, 기타 운송기기에 산업에서 ASEAN의 비중이 큰 편이다.

한편 다른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이 농축수산물식품업(12.9%)과 광업(7.9%),

표 4-3. 중국 수출에서 산업별 비중

(단위: 십억 달러, %)

HS 2단위	산업	2012~14		2017~19		2022~24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01~24	농축수산물식품업	57	(3.1)	66	(3.1)	79	(2.5)
25~27	광업	29	(1.6)	39	(1.8)	55	(1.7)
28~40	화학· 고무· 플라스틱	177	(9.6)	220	(10.4)	386	(12.2)
50~63	섬유· 의복	252	(13.7)	250	(11.8)	299	(9.5)
72~83	철강· 비철금속	157	(8.5)	173	(8.2)	281	(8.9)
84	기계	333	(18.1)	364	(17.2)	504	(16.0)
85	전기· 전자	379	(20.6)	496	(23.4)	770	(24.4)
87	자동차	59	(3.2)	71	(3.4)	185	(5.9)
86,88,89	기타 운송기기	35	(1.9)	30	(1.4)	46	(1.4)
90~92	광학· 측정· 정밀기기	57	(3.1)	62	(2.9)	71	(2.2)
기타*	기타 제조업	306	(16.6)	347	(16.4)	481	(15.2)
	합계	1,839		2,118		3,156	

주: * 41~43, 44~49, 64~71, 93~97.

1) 산업은 HS 부(section) 및 류(chapter; 2단위) 분류를 기준으로 11개로 재구성함.

2) 합계는 미분류(HS_99 등) HS 코드를 제외한 11개 산업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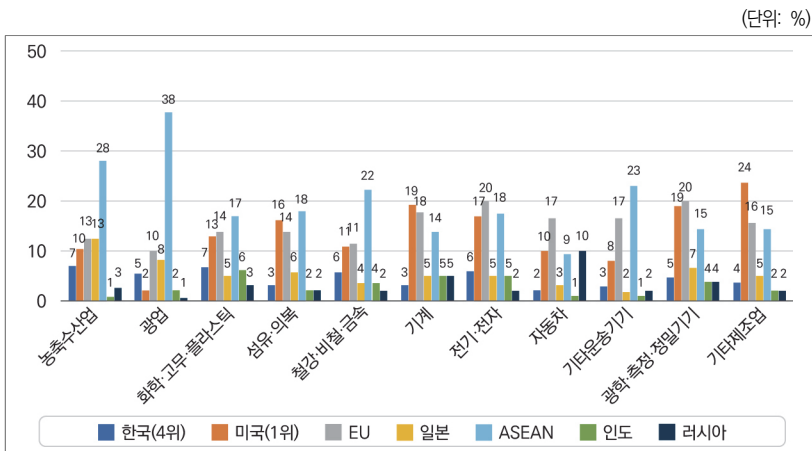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인도가 화학·고무·플라스틱(6.3%), 러시아가 자동차(9.8%)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특정 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경우는 없고 전반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비교적 농축수산물업(7.0%), 화학·고무·플라스틱(6.7%), 전기·전자(6.1%)의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수출시장의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한국의 비중은 화학·고무·플라스틱, 섬유·의복, 기계, 기타 제조업 등에서 증가했고, 광업, 철강·비철금속, 전기·전자, 기타 운송기기, 광학·측정·정밀기기 등에서 감소했다. 미국의 비중은 주요 6개 산업 중 섬유·의복을 제외한 5개 산업(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에서 모두 감소했다.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요 중공업 4개 부문에서 모두 미국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더불어 일본 등 선진국의 비중이 대체로 감소하고, 반대로 베트남 등 신흥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다만 EU와 한국의 경우 각 산업별로 증감 양상이 상이했다.

화학·고무·플라스틱 수출에서는 미국(-3.72%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그림 4-7. 산업별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주: 2022~24년 총수출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5위)은 ASEAN으로 대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반면 EU(+0.29%p)는 변화가 미미했고, 한국(+2.00%p)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일본(-2.30%p)은 크게 감소해 각 주요국들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한편 베트남(+2.11%p)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들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철강·비철금속 역시 베트남(+1.37%p)을 비롯해 여러 신흥국으로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며, 반면 미국(-1.98%p), EU(-0.85%p), 일본(-1.63%p) 등 선진국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2.54%p)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도 특징적인데, 한국은 3위의 수출 상대국이지만 수입액 규모가 미국과 EU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기계의 경우 미국(-7.11%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선진국인 EU(-2.34%p), 일본(-2.46%p), 영국(-0.36%p) 등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0.64%p)을 포함하여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다.

전기·전자의 경우 미국(-5.22%p)과 일본(-4.06%p) 그리고 한국(-2.78%p)에 대해 비중이 감소하였다. 해당 기간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55.7% 증가, 대한민국 수출은 39.9%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로의 수출이 매우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한 EU(+3.09%p), 5배 이상 증가한 베트남(+4.24%p), 3배 이상 증가한 인도(+2.20%p)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경공업 분야인 섬유·의복은 주요 6개 산업 중 유일하게 미국(+0.87%p)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으며, 한국(+0.55%p)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반면 EU(-2.63%p), 일본(-4.35%p), 영국(-1.36%p)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특히 일본과 영국에 대해서는 수출액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베트남(+1.21%p), 방글라데시(+1.21%p), 키르기스스탄(+1.32%p)의 비중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는 관련 산업이 발달한 국가인 만큼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증가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

아경제연합(EAEU) 시장에 대한 재가공 및 재수출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제조업의 경우 미국(-1.79%p)을 포함하여 과거 1~5위 상대국(미국, EU, 일본, 영국, 러시아)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다만 미국의 비중은 23.86%로 여전히 가장 높고,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여전히 주요한 수출 상대국이다. 이외에는 베트남(+2.14%p)에 대한 수출이 4배 이상 증가하면서 비중이 커졌고(1.13%→3.27%), 한국(+0.95%p)에 대해서도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비중이 커졌다(2.67%→3.62%).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광학·측정·정밀기기(+1.91%p)를 제외하고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7.98%p)의 경우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79.4% 증가했지만, EU(+6.38%)나 러시아(+5.31%p) 등에 대한 수출은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인 결과, 미국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 비록 자동차(-0.13%p), 농축수산물업(-0.63%p) 등은 비중 감소가 크지 않지만, 이를 포함해 모든 산업에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기타 운송기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중이 감소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업(-6.74%p), 자동차(-3.50%p), 광학·측정·정밀기기(-3.34%p) 등에서 비중 감소가 크다. 이와 정반대로 EU는 기타 운송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 모두에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외에 여타 국가들의 경우 농축수산물업에서 베트남(+2.74%p), 광업에서 싱가포르(+5.88%p) 등 여러 산업에서 ASEAN 국가들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멕시코(+3.11%p), 영국(+1.91%p), UAE(+1.64%p)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에 대하여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생산단계별 중국 수출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중간재(41.1%→46.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10년 동안 수

그림 4-8. 산업별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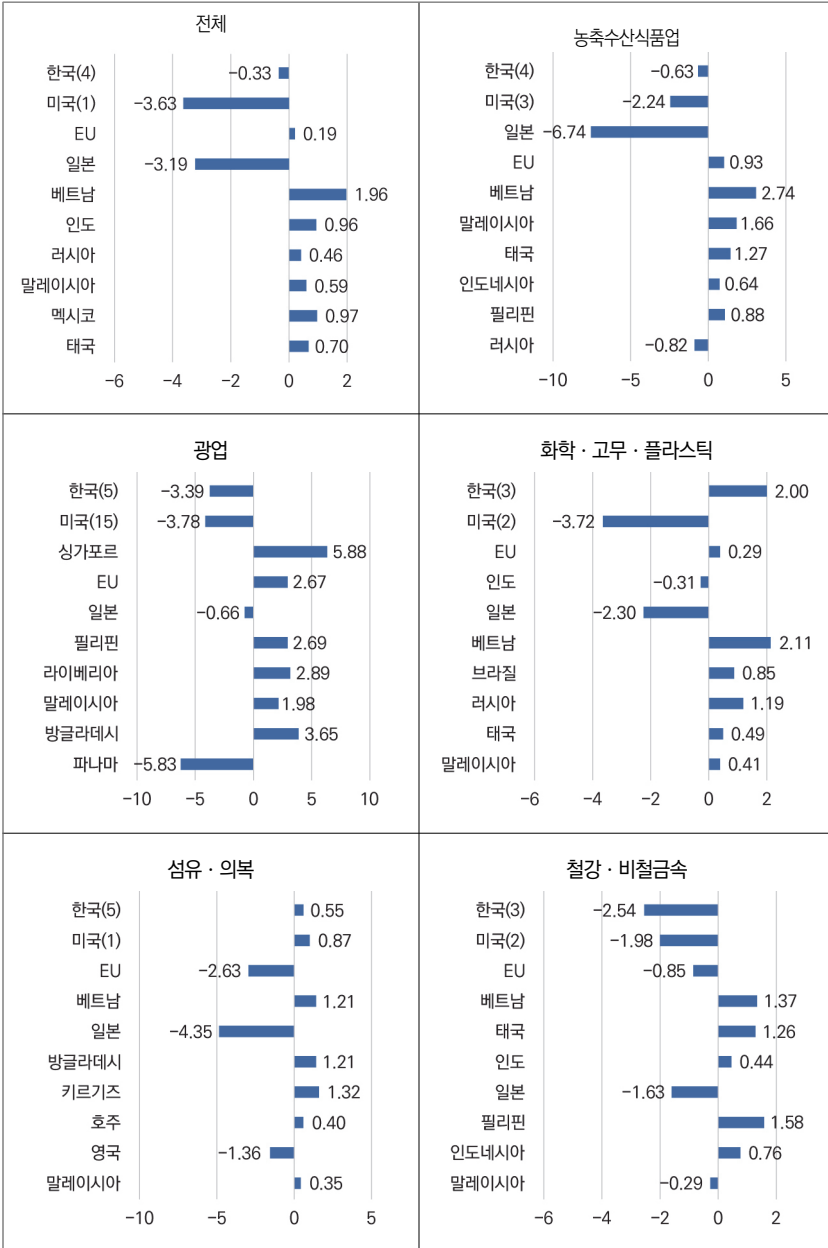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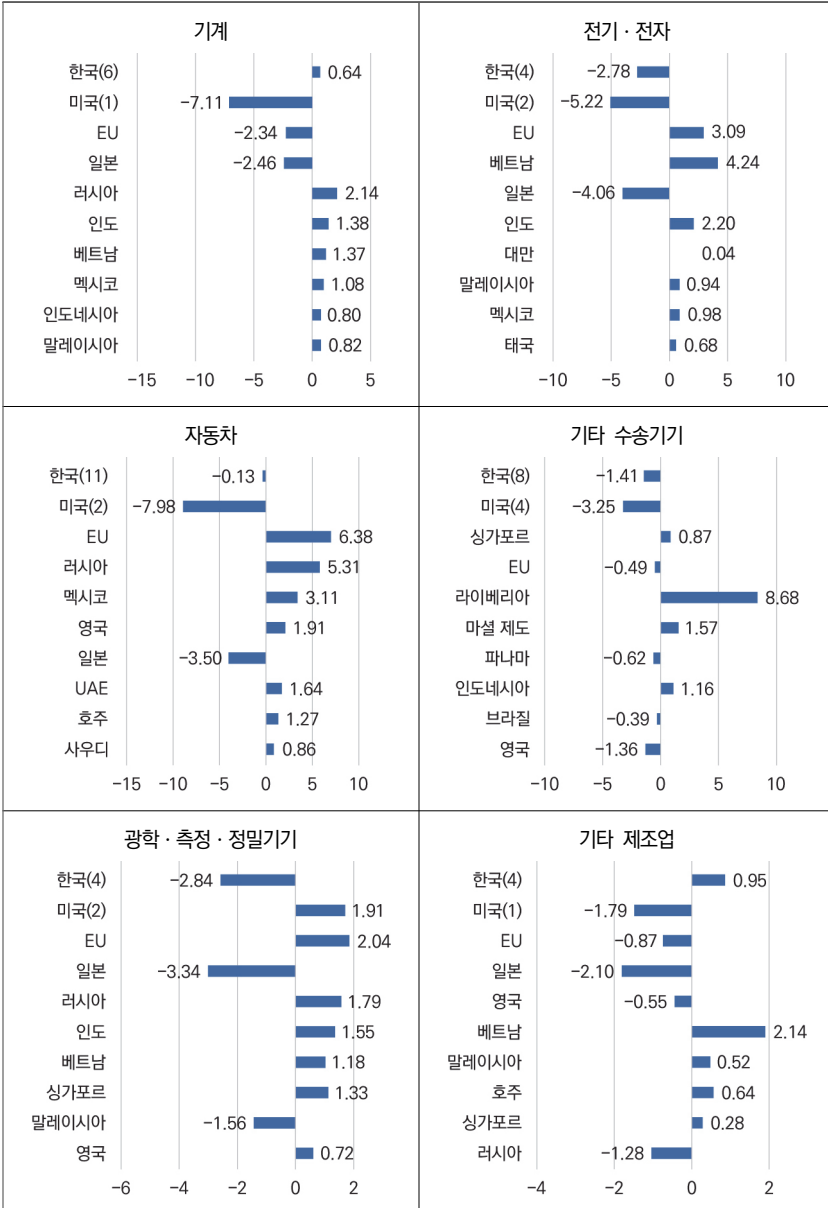


그림 4-8. 계속

(단위: %p)



주: 주요 상대국은 한국(순위)과 미국 그리고 산업별 2022~24년 수출액 기준 상위 8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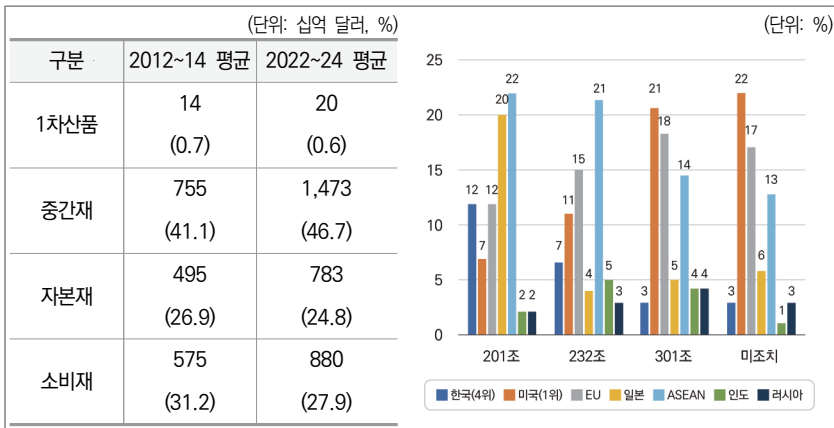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출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비중도 더욱 커졌다. 반면 자본재(26.9%→24.8%)와 소비재(31.2%→27.9%)는 수출액이 50% 이상 증가했으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1차산품(0.7%→0.6%)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각 생산단계별로 주요 수출 상대국의 비중을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1차산품은 ASEAN(22.0%), 일본(20.0%), 한국(11.9%)의 비중이 크고 미국(6.9%)의 비중이 작다. 중간재의 경우 ASEAN(21.4%)의 비중이 가장 크고 미국(11.0%)의 비중이 작은 가운데, 이외에 한국(6.6%)과 인도(5.2%)의 비중도 비교적 크다. 반면 자본재의 경우 미국(20.7%)과 EU(18.4%)의 비중이 큰 반면 한국(2.9%)의 비중은 작다. 소비재의 경우 미국(22.0%)의 비중이 가장 크며, 마찬가지로 선진국인 일본(6.1%)의 비중 역시 비교적 크다. 반대로 ASEAN(12.8%), 한국(3.1%), 인도(1.1%) 등 신흥국의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각 생산단계별로 중국의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1차산품은 최대 수출 상대국인 일본(-0.31%p)의 비중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2~4위 수출 상대국인 미국(-2.95%p),

그림 4-9. 생산단계별 중국 수출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주: 2022~24년 총수출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5위)은 ASEAN으로 대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한국(-2.22%p), EU(-3.70%p)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국가들을 포함하여 주요 신흥국들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중간재의 경우 미국(-3.60%p)과 일본(-3.19%p)의 비중이 비교적 크게 감소했으며, 반대로 EU(+1.41%p), 베트남(+2.64%p), 인도(+1.09%p), 멕시코(+0.82%p)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외에 한국(-0.36%p)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에 대해서는 비중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증감의 방향성만 살펴보면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대해 감소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등에 대해 증가했는데, 이와 같이 지역적 특성이나 선진국·신흥국 구분과 무관하게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자본재의 경우 미국(-4.45%p)의 비중 감소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국(-1.98%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EU,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비중 역시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인데, 다만 싱가포르와 영국의 비중 감소는 다소 미미하다. 반면 인도(+1.50%p), 베트남(+1.81%p) 등 신흥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특히 러시아(+1.99%p)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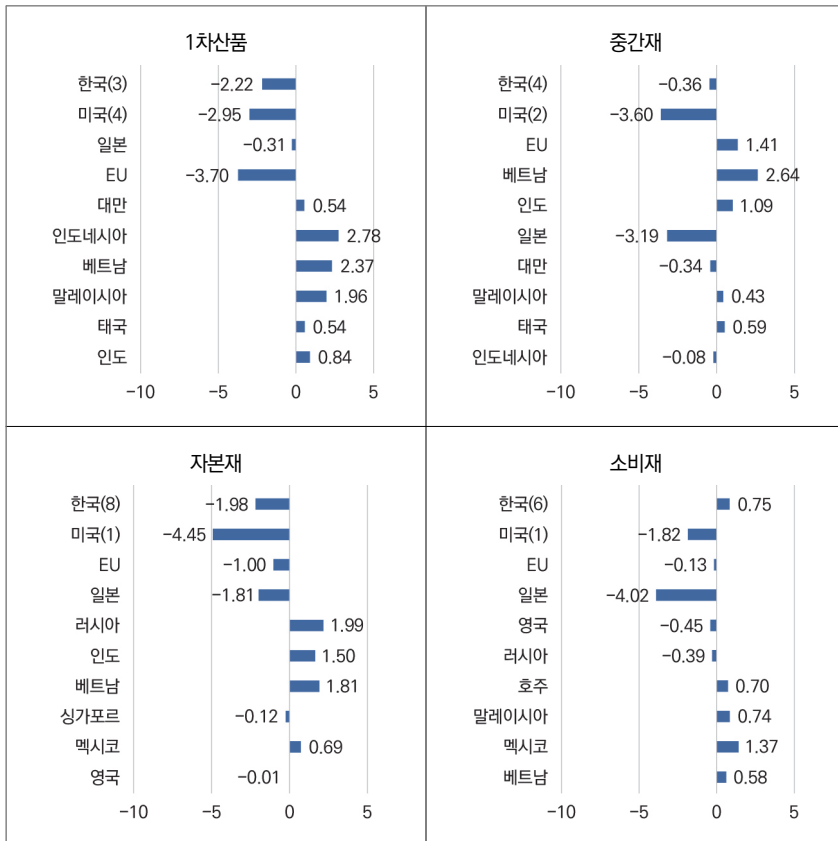
소비재의 경우 미국(-1.82%p)의 비중 감소와 더불어 일본(-4.02%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액이 41.4% 증가하는 가운데 비중이 감소한 반면, 일본은 수출액 자체가 감소(-8.0%)하면서 비중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한국(+0.75%p), 호주(+0.7%p), 말레이시아(+0.74%p)의 비중은 소폭 증가했는데, 기존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증가로 볼 수 있다(한국 2.45%→3.20%). 특히 멕시코(+1.37%p)의 경우 비중 자체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2~14년 비중이 0.99%에 불과했던 만큼 수출액 자체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관세 조치 관련 품목들에 대하여 중국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먼저 201조 조치(세탁기/태양광 제품) 관련 품목들에서는 EU(38.5%)의 비중이 크게 높고, 이어서 ASEAN(9.3%), 인

도(6.8%)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2.8%에 불과하며, 한국(2.0%), 일본(4.8%) 등의 비중도 비교적 작은 편이다. 다음으로 제232조 조치(철강/알루미늄) 관련 품목들의 경우 ASEAN(25.7%)의 비중이 가장 높고, 한국(7.0%)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미국(4.9%)과 EU(7.7%)의 비중은 타 조치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제301조 조치 관련 품목의 경우 미국의 비중이 14.9%인데, 이는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16.6%)에

그림 4-10. 생산단계별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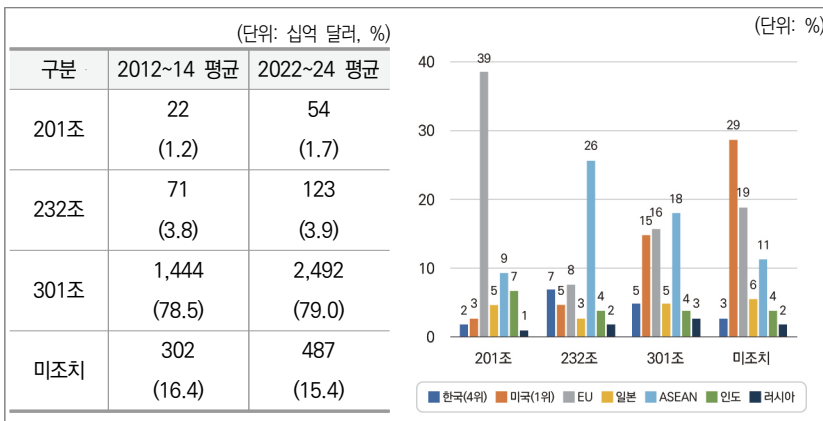
주: 주요 상대국은 한국(순위)과 미국 그리고 생산단계별 2022~24년 수출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비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ASEAN(18.2%)의 경우 총수출에서의 비중(17.3%)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은(미조치) 품목들의 경우 미국의 비중이 28.7%로 크게 높고, EU(18.9%)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각 조치별로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들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제201조(세탁기/태양광 제품) 관련 품목에서는 미국(-12.12%p)과 일본(-14.55%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2012~14년 비중이 각각 14.89%와 19.40%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의 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최대 수출 상대국인 EU(+11.34%p)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브라질(+6.88%), 인도(+3.87%p), 파키스탄(+2.01%p) 등 과거 수출액이 크지 않았던 신흥국들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도 특징적이다. 한편 한국의 비중도 3.31%p 감소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5.28%→1.97%).

제232조(철강·알루미늄) 관련 품목들의 경우 한국(-5.02%p)의 비중이 가

그림 4-11.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중국 수출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주: 2022~24년 총수출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5위)은 ASEAN으로 대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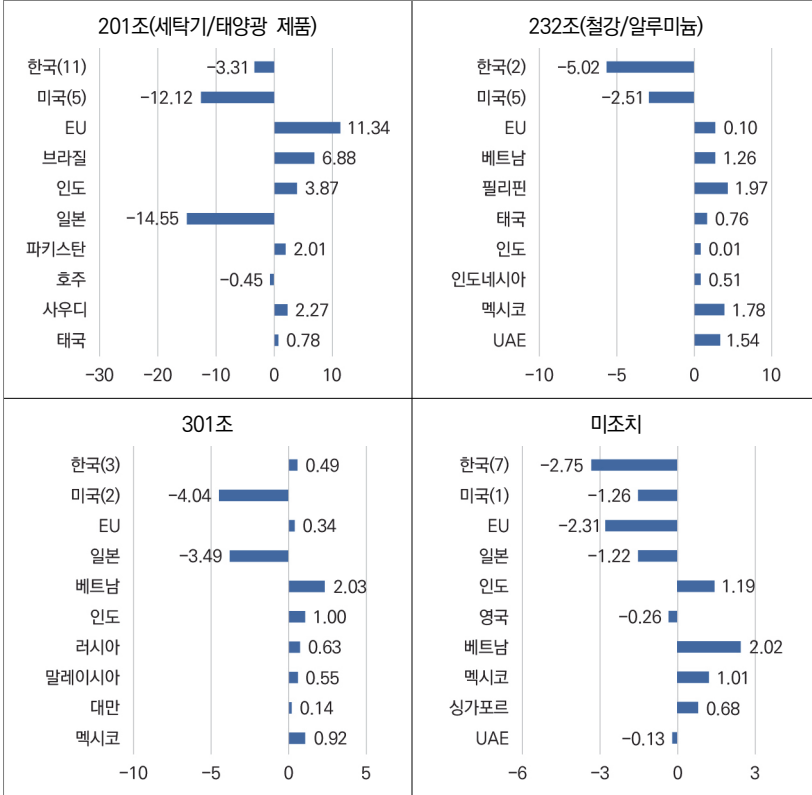
장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12~14년 기준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그 비중이 12.04%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7.39%)과 EU(7.56%)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EU의 경우 비중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만큼 2022~24년 기준으로 한국(7.02%)의 비중은 EU(7.65%)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편 관세 조치를 취한 미국(-2.51%p)의 비중 역시 상당히 감소했으며, 반면에 베트남(+1.26%p), 필리핀(+1.97%p) 등 ASEAN 국가들 그리고 멕시코(+1.78%p), 아랍에미리트(+1.54%p), 튀르키예(+2.03%p) 등 여러 지역의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증가했다.

제301조 조치 관련 품목들의 경우 미국(-4.04%p)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나, 금액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35.7% 증가했으며 2022~24년 기준 미국의 비중은 14.90%로 여전히 높다. 반면 EU(+0.34%p)의 비중 변화는 미미했으며, 2022~24년 기준 1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 한국(+0.49%p)의 비중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일본(-3.49%p)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또한 베트남(+2.03%), 인도(+1.00%p), 러시아(+0.63%p) 등 대부분 주요 신흥국들의 비중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미조치 품목들에 대해서는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1.26%p)의 비중 감소가 미미했고(29.99%→28.73%), 마찬가지로 EU(-2.31%p) 역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1.20%→18.89%). 반면 한국(-2.75%p)의 비중은 감소 폭도 컸지만 기존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인다(5.61%→2.86%). 이외에 일본(-1.22%p) 등에 대해 감소했으나 인도(+1.19%p), 베트남(+2.02%p), 멕시코(+1.01%p) 등 주요 신흥국들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면서 앞서 살펴본 조치 관련 품목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4-12.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중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주: 주요 상대국은 한국(순위)과 미국 그리고 조치별 2022~24년 수출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다. 한국 수출시장

한국의 수출 구조는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는 지난 10년간 반도체의 성장²⁰²⁾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2012~14년 23.4%에서 2022~24년 29.8%로 더욱 커졌다. 이어서 화학·

202) 2012~14년 대비 2022~24년 반도체 수출은 연평균 597억 달러 증가했으며, 이는 전자 산업 전체의 수출 증가분의 88.8%에 달함.

표 4-4. 한국 수출에서 산업별 비중

(단위: 십억 달러, %)

HS 2단위	산업	2012~14		2017~19		2022~24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01~24	농축수산물업	7	(1.3)	8	(1.4)	11	(1.7)
25~27	광업	55	(9.9)	43	(7.5)	59	(8.9)
28~40	화학·고무·플라스틱	77	(13.8)	88	(15.3)	111	(16.7)
50~63	섬유·의복	16	(2.8)	13	(2.3)	11	(1.6)
72~83	철강·비철금속	49	(8.7)	49	(8.6)	55	(8.3)
84	기계	60	(10.8)	73	(12.7)	75	(11.3)
85	전기·전자	131	(23.4)	167	(29.1)	198	(29.8)
87	자동차	72	(12.9)	62	(10.8)	86	(13.0)
86,88,89	기타 운송기기	39	(7.1)	30	(5.2)	24	(3.5)
90~92	광학·측정·정밀기기	37	(6.6)	26	(4.6)	18	(2.6)
기타*	기타 제조업	17	(3.0)	15	(2.6)	17	(2.6)
	합계	560		573		666	

주: * 41~43, 44~49, 64~71, 93~97.

1) 산업은 HS 부(section) 및 류(chapter; 2단위) 분류를 기준으로 11개로 재구성함.

2) 합계는 미분류(HS_99 등) HS 코드를 제외한 11개 산업의 합계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고무·플라스틱(16.7%), 자동차(13.0%), 기계(11.3%), 광업(8.9%),²⁰³⁾ 철강·비철금속(8.3%)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2022~24년 기준 중국(20.7%), 미국(17.8%), ASEAN(17.4%), EU(10.2%) 4개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한다. 과거(2012~14년)와 비교하면 중국의 비중은 감소하고(25.3%→20.7%), 미국의 비중은 증가(11.4%→17.8%)한 것이 가장 특징이다. 더불어 ASEAN의 비중도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베트남(3.5%→8.6%)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외에도 EU, 대만, 인도 등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반면에 일본, 홍콩, 러시아 등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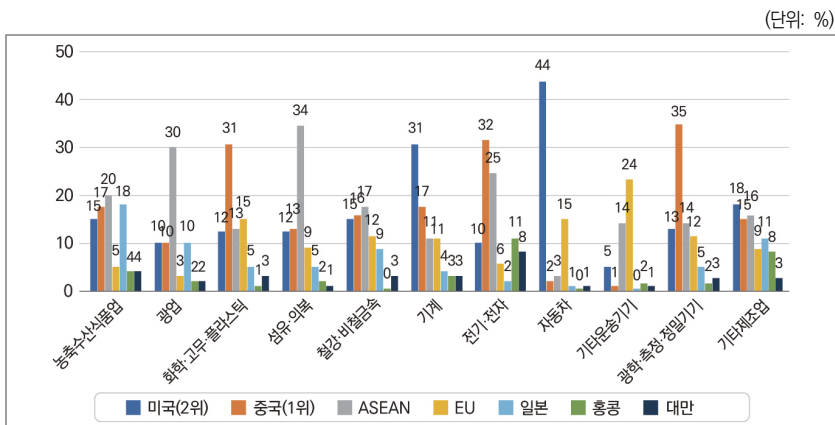
주요 수출 상대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한국의 수출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203) 한국의 광업 수출의 경우 석유화학공업 관련 품목(석유조제품(HS_2710)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2022~24년 기준), 먼저 석유조제품을 포함한 광업의 경우 ASEAN(30.2%)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10.3%)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EU(3.1%)의 비중은 낮다. 화학·고무·플라스틱의 경우 중국(30.6%)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은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기계 역시 미국(30.7%)의 비중만 두드러진다. 철강·비철금속의 경우 4대 교역국 중에서는 특정 국가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이외에는 일본(8.9%)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전기·전자는 중국(31.8%)과 ASEAN(24.7%)의 비중이 높고, 미국(9.9%)과 EU(5.5%)의 비중은 낮아 대조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자동차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미국의 비중이 44.0%에 달하는 반면 중국(1.5%), ASEAN(3.0%), 일본(0.5%) 등 주요국의 비중이 크게 낮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는 미국과 EU(15.0%)를 제외하면 오히려 캐나다(5.5%), 호주(4.1%), 영국(2.9%) 등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홍콩과 대만의 경우 최대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에서 비중이 10.8%와 7.9%로 상당히 높다.

산업별로 지난 10년간 한국 수출시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

그림 4-13. 산업별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주: 2022~24년 총수출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4위)은 ASEAN으로 대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비 2022~24년), 6개 주요 산업(광업,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미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석유조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광업은 미국(+4.31%p)의 비중이 증가하고 중국(-7.00%p)의 비중이 감소했다. 다만 광업 수출에서 미국(4위)과 중국(5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2022~24년 기준 1~3위 수출 상대국 중에서는 호주(+10.39%p)²⁰⁴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싱가포르(-5.53%p)와 일본(-4.38%p) 비중이 감소했다. 한편 비중이 크지 않았던 EU(-2.23%p)에 대해서는 감소했으며, 반대로 필리핀(+2.44%p) 등 일부 ASEAN 국가와 뉴질랜드(+2.61%p)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화학·고무·플라스틱의 경우 미국(+4.83%p)과 더불어 EU(+8.27%p)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6.91%p)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는데, 다만 여전히 수출의 30.64%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이외 주요국들의 경우 앞의 3개국에 비하면 비중 자체는 다소 작지만, 베트남(+2.28%p)의 증가와 대만(-1.59%p)의 감소 등이 주목할 만하다.

철강·비철금속의 경우 미국(+2.46%p)의 비중 증가와 중국(-1.13%p)의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EU(+4.95%p)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는 인도(+2.57%p), 베트남(+1.39%p), 멕시코(+3.06%p), 튀르키예(+1.88%p) 등 여러 지역 신흥국들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지나, 동시에 일본(-1.80%p), 인도네시아(-1.15%p), 호주(-0.95%p) 등 여러 국가의 비중이 감소하기도 하면서 각 상대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기계의 경우 미국(+12.27%p)에 대한 수출액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면서 비중 역시 크게 증가했고, 반면 중국(-6.20%p)에 대해서는 수출이 소폭 감소하면서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2.51%p)의 비

204) 호주의 경우 2020년부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철수로 국내 정제시설이 상당수 폐쇄되면서 석유 조제품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

증은 증가했으며, 이외에 일본(-1.15%p)은 감소, 베트남(+1.31%p)은 증가하는 등 다른 주요국들에 대한 변화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전기·전자의 경우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3.51%p)에 대해 감소한 반면 베트남(+11.77%p)과 대만(+4.51%p)에 대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베트남과 대만을 제외하면 홍콩(-1.82%p), 싱가포르(-1.58%p), 일본(-3.07%p) 주요국 대부분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혹은 변화가 미미한 양상이다. 미국(+0.81%p)의 비중 역시 소폭만 증가하면서 9%대 비중이 유지되었다.

자동차는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18.09%p)의 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25.94%→44.03%). 마찬가지로 EU(+4.50%p)의 비중도 커지면서 2022~24년 기준 14.95%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과거에는 3위 수출 상대국이었던 중국(-7.75%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2022~24년 기준으로는 1.51%(9위)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와 비슷하게 러시아(6.82%→1.28%)의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에는 사우디아라비아(-2.07%p)를 제외하면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여러 주요국들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한편 주요 6개 산업 외에는 농축수산물업(미국↑, 중국↑)과 기타 수송기기(미국↓, 중국↓)를 제외하면, 대체로 미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중국의 비중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일례로 광학·측정·정밀기기의 경우 중국(59.90%→34.64%)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미국(3.34%→12.56%)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생산단계별 한국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중간재(63.8%→66.7%)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도 더욱 증가하였다. 반면 자본재(23.7%→15.9%)는 수출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소비재(12.0%→16.4%)의 경우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지난 10년간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이는 친환경차를 포함한

그림 4-14. 산업별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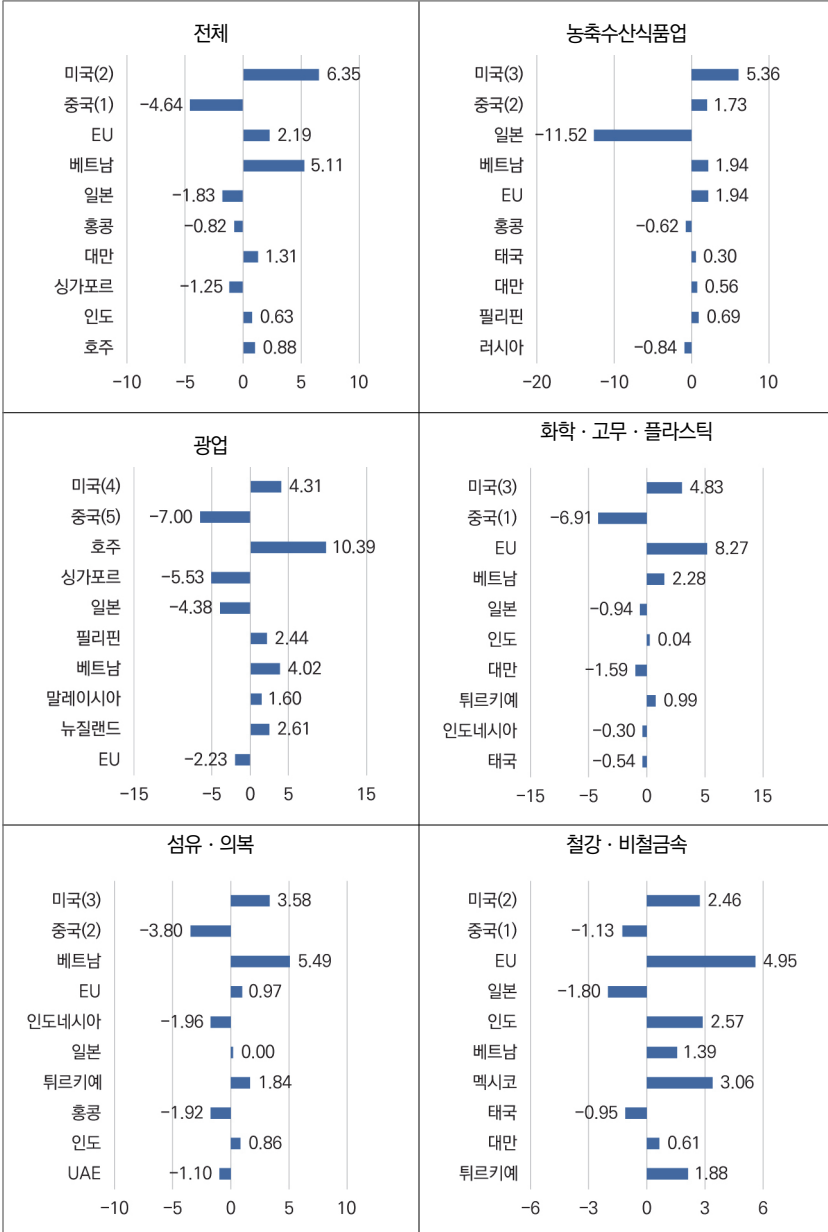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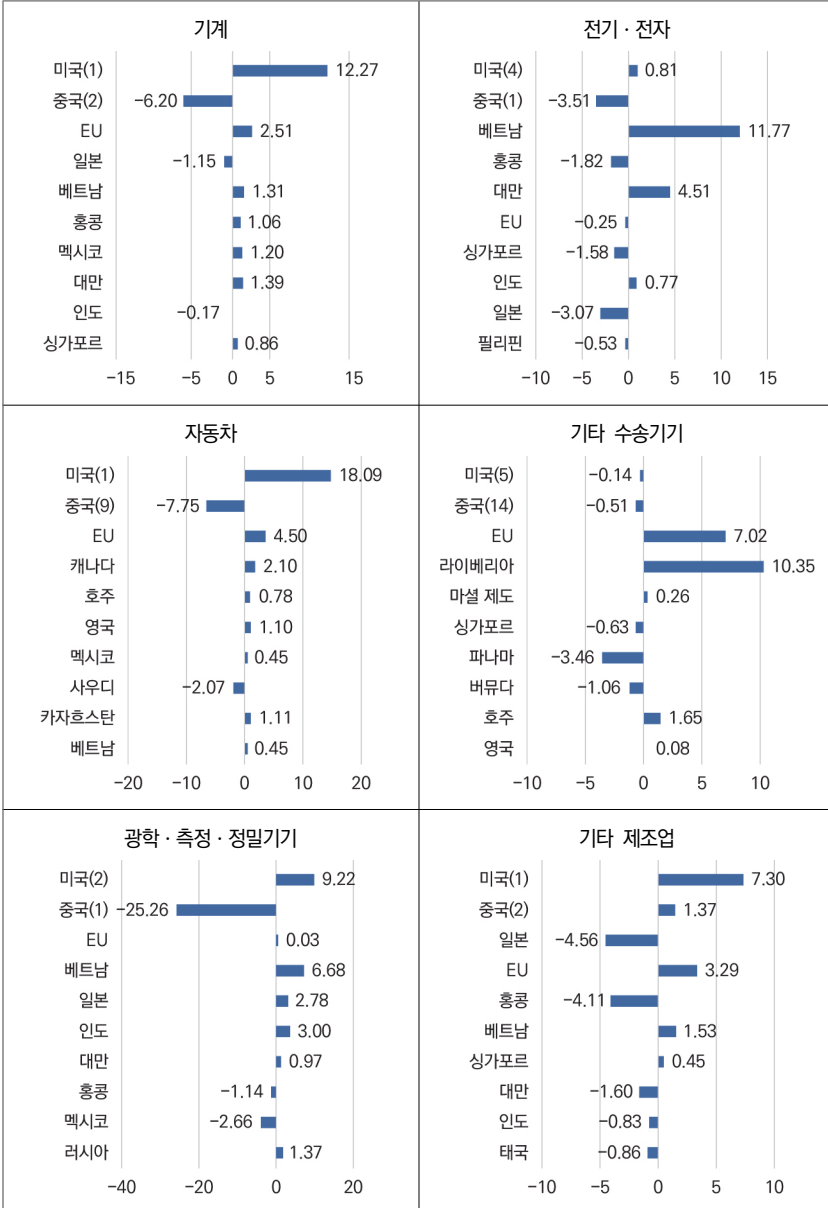


그림 4-14. 계속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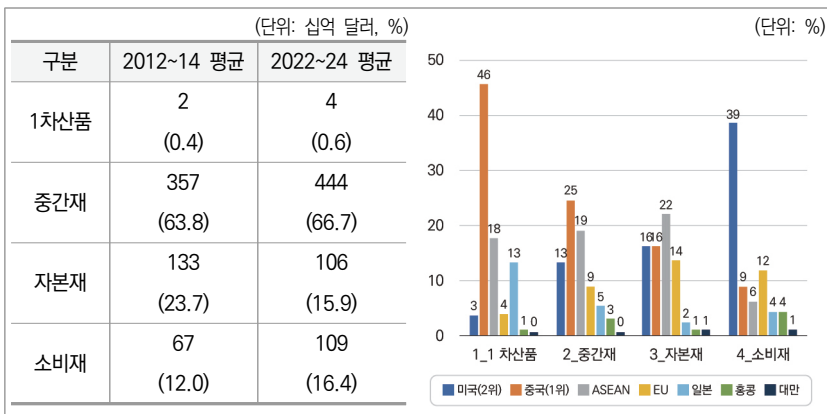
주: 주요 상대국은 미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산업별 2022~24년 수출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승용차(HS_8703)와 더불어 화장품(HS_3304), SSD저장매체(HS_8523.51) 등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편 1차산품(0.4%→0.6%)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각 생산단계별로 주요 수출 상대국의 비중을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먼저 중간재는 중국(24.6%)과 ASEAN(19.1%)의 비중이 높고, 미국(13.2%)과 EU(8.8%)의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자본재의 경우 ASEAN(22.0%)의 비중이 높고, EU(13.9%)의 비중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소비재의 경우 승용차가 포함되는 만큼 미국(38.6%)의 비중이 크게 높고 반면 중국(8.8%)과 ASEAN(6.1%)의 비중은 낮다. 1차산품의 경우 중국(45.6%)의 비중이 크게 높고, 이와 유사하게 지역·문화적으로 근접한 ASEAN(17.7%)과 일본(13.1%)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상기한 생산단계별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 품목들의 경우 EU(57.1%)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군용 무기·차량 관련 품목들의 수출 영향이다.

각 생산단계별 한국의 수출에서 주요국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그림 4-15. 생산단계별 한국 수출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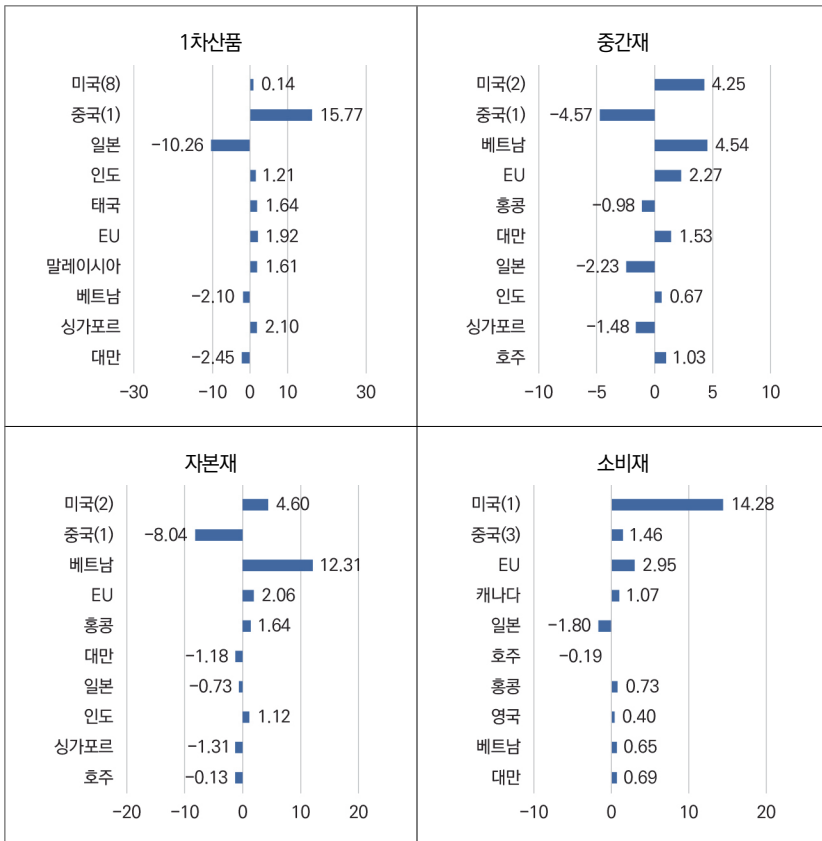
주: 2022~24년 총수출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4위)은 ASEAN으로 대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대비 2022~24년), 먼저 1차산품은 중국(+15.77%p)과 일본(-10.26%p)의 비중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며, 미국과 EU의 경우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

중간재의 경우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4.57%p)의 비중이 감소하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4.25%p)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외에는 베트남(+4.54%p), EU(+2.27%p), 대만(+1.53%p) 등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며, 반면 일본(-2.23%p), 싱가포르(-1.48%p) 등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림 4-16. 생산단계별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주: 주요 상대국은 미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생산단계별 2022~24년 수출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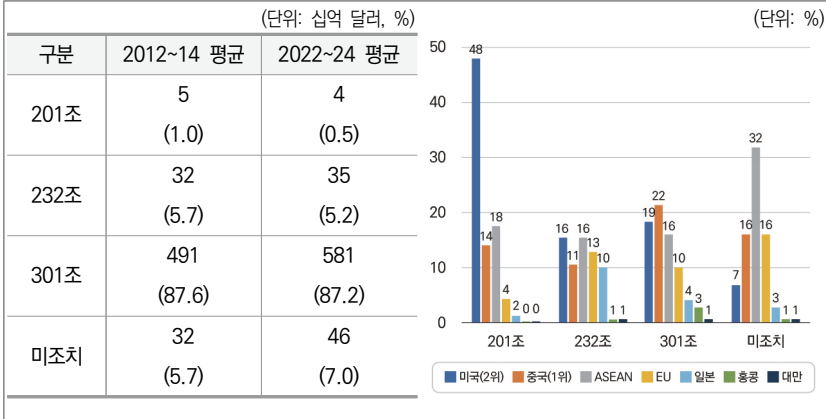
자본재의 경우 중국(-8.04%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미국(+4.60%p)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더불어 베트남(+12.31%p)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중간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베트남(2.32%→14.63%)의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중국, EU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중이 커졌다.

소비재의 경우 승용차 수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14.28%p)의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3.00%p) 및 러시아(-3.99%p)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다만 중국(+1.46%p)의 경우 앞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비중 감소가 뚜렷했으나, 여기서는 승용차를 제외한 다른 소비재(화장품, SSD 등)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오히려 비중은 증가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관세 조치 관련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을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먼저 제201조 조치(세탁기/태양광 제품) 관련 품목들의 경우 미국(48.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반면 EU(4.4%)의 비중은 크게 낮다. 제232조 조치(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련 품목들은 특정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중국(10.7%)의 비중이 낮고 일본(9.9%)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301조 조치 관련 품목의 경우 한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24년 87.2%에 달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79.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중국(21.7%)과 미국(18.5%)의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양국의 비중(20.7%, 17.8%)보다 모두 소폭 높다. 마지막으로 미조치 품목들의 경우 미국(7.2%)의 비중이 크게 낮은 반면 ASEAN(32.0%)의 비중이 매우 높다.

각 조치별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들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제201조(세탁기/태양광 제품)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 조치를 취한 미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13.89%→48.24%), 중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38.09%→14.21%). 다만 제201조 관련 품목의 경우 2020년대 들어 조치가 완화 및 종료(세탁기)되면서 대미국 수출이 증가

그림 4-17.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한국 수출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주: 2022-24년 총수출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베트남(4위)은 ASEAN으로 대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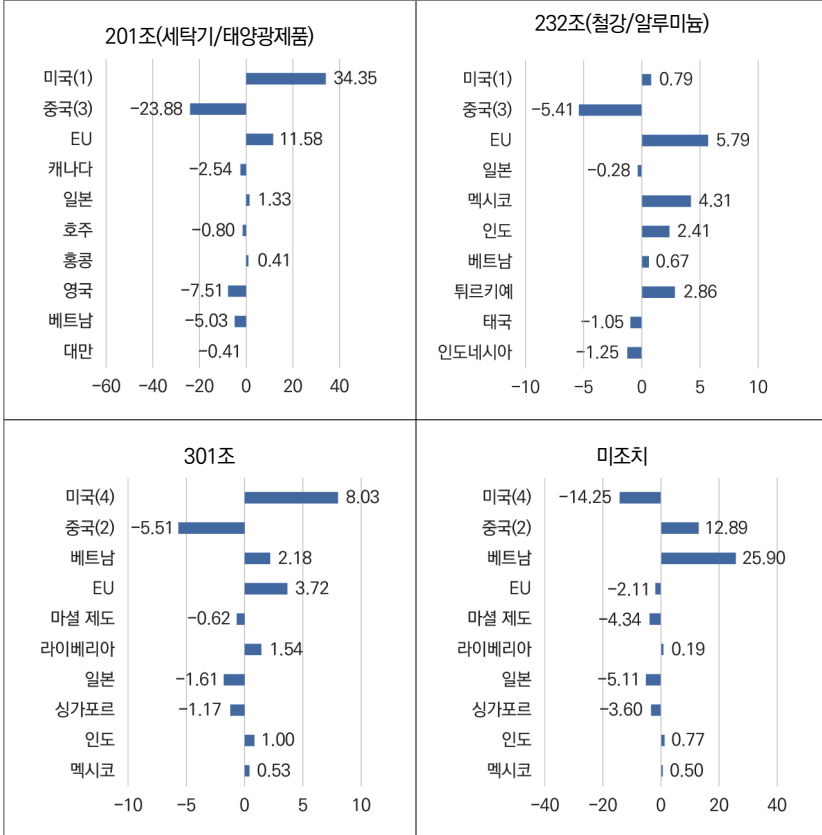
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232조(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련 품목들의 경우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0.79%p)의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이 철강에 대해 쿼터를 부과받았던 만큼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히려 중국(-5.41%p)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EU(+5.79%p)와 멕시코(+4.31%p)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외에도 인도(+2.41%p), 튀르키예(+2.86%p), 캐나다(+1.04%p)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EU에 대한 수출은 한국산 철강의 높은 품질과 환경 기준 충족,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철강 수입 금지 조치 등에 대한 전환효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미국 시장을 겨냥한 간접 수출의 증가 역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301조 조치 관련 품목들의 경우 미국(+8.03%p)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중국(-5.51%p)이 비중에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 비중의 증가는 전체 수출

그림 4-18.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한국 수출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주: 주요 상대국은 미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조치별 2022~24년 수출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에서의 변화(+6.3%)보다 크고, 중국의 감소 역시 전체 수출에서의 변화(-4.6%)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외에 EU(+2.18%p), 베트남(+3.72%p)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일본(-1.61%p), 싱가포르(-1.17%p) 등의 비중이 감소한 것 역시 전체 수출에서의 변화와 유사하다.

라. 한국 수입시장

한국의 수입시장에서는 원유와 LNG로 대표되는 광업과 반도체로 대표되는 전기·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 10년간(2012~14년 대비 2022~24년)에는 수출뿐 아니라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²⁰⁵⁾ 전기·전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13.7%→18.7%). 반면 광업의 경우 비중이 감소했는데(38.3%→30.7%), 세부적으로는 원유 수입이 감소하고 LNG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액 측면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⁰⁶⁾ 이어서는

표 4-5. 한국 수입에서 산업별 비중

(단위: 십억 달러)

HS 2단위	산업	2012~14 평균 (비중)	2017~19 평균 (비중)	2022~24 평균 (비중)
01~24	농축수산물업	27 (5.1)	31 (6.1)	43 (6.4)
25~27	광업	199 (38.3)	144 (28.4)	205 (30.7)
28~40	화학·고무·플라스틱	53 (10.2)	58 (11.5)	77 (11.5)
50~63	섬유·의복	13 (2.5)	16 (3.1)	18 (2.7)
72~83	철강·비철금속	47 (9.1)	40 (7.8)	47 (7.0)
84	기계	48 (9.1)	57 (11.4)	66 (9.9)
85	전기·전자	71 (13.7)	86 (17.0)	125 (18.7)
87	자동차	11 (2.1)	16 (3.2)	21 (3.2)
86,88,89	기타 운송기기	5 (1.0)	5 (0.9)	6 (0.9)
90~92	광학·측정·정밀기기	19 (3.6)	22 (4.3)	24 (3.5)
기타*	기타 제조업	27 (5.2)	31 (6.2)	37 (5.5)
	합계	520	506	668

주: * 41~43, 44~49, 64~71, 93~97.

1) 산업은 HS 부(section) 및 류(chapter: 2단위) 분류를 기준으로 11개로 재구성함.

2) 합계는 미분류(HS_99 등) HS 코드를 제외한 11개 산업의 합계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205) 해당 기간 반도체(HS_8542) 수출은 연평균 597억 달러 증가한 1,064억 달러이며, 수입은 연평균 306억 달러 증가한 583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입의 13.8%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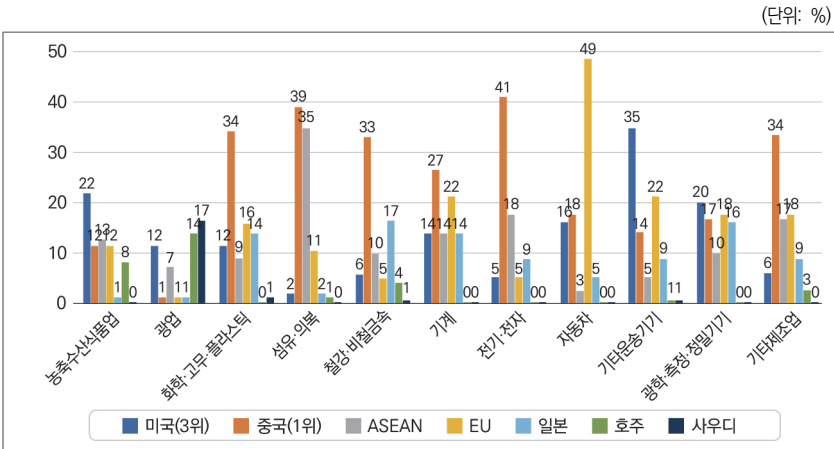
206) 해당 기간 원유(HS_2709) 수입은 연평균 84억 달러 감소한 925억 달러이며(비중 13.8%), LNG (HS_2711.11) 수입은 연평균 86억 달러 증가한 442억 달러이다(비중 6.6%).

기계(9.9%), 철강·비철금속(7.0%), 농축수산물업(6.4%) 등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2022~24년 기준 중국(21.8%)이며, 이어서 ASEAN(11.9%), 미국(11.3%), EU(10.0%), 일본(7.5%) 순이다. 과거(2012~14년)와 비교하면 일본(11.4%→7.5%)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나머지 주요 4개국의 비중은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16.3%→21.8%)과 미국(8.4%→11.3%)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5개국을 제외하면 광업 관련 수입이 많은 호주(5.4%)와 사우디아라비아(5.3%) 그리고 전기·전자 관련 수입이 많은 대만(4.1%) 순이며, 이외에는 석유 자원과 관련된 산유국들이 각각 2% 내외로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별로 지난 10년간 한국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주요 산업의 경우 광업에서 미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외 주요 4개 산업(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반대로 일본, EU, 미국의 비중은 감

그림 4-19. 산업별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주: 2022~24년 총수입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ASEAN은 단일 국가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광업의 경우 미국(+10.7%p)과 호주(+5.71%p)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다른 산유국들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원유와 석유가스,²⁰⁷⁾ 호주로부터는 석탄과 LNG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화학·고무·플라스틱의 경우 중국(+17.80%)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15.45%p)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는데, 두 국가는 여전히 가장 주요한 수입 상대국이지만 지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반면 마찬가지로 주요 수입 상대국인 미국(-1.79%p)과 EU(+0.37%p)의 비중 변화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나머지 국가 중에는 칠레(0.21%→2.45%)의 비중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으며, 이외 주요국들은 대체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다.

철강·비철금속의 경우 중국(+4.52%p)의 비중이 증가하고 일본(-6.05%p)의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 자체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미국(-1.39%p)과 EU(-2.27%p)의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고 두 국가 모두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주요 4개국을 제외하고는 인도(+2.08%p), 호주(+1.07%p), 베트남(+1.90%p) 등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계 수입에 대해서는 중국(+6.03%p)과 베트남(+5.72%p)의 비중이 증가하고, 일본(-7.43%p)과 EU(-4.34%p)의 비중은 감소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주요 수입 상대국인 미국(-1.07%p)의 비중 감소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이외에도 싱가포르(+1.92%p)를 제외하면 영국(-0.71%p), 노르웨이(-2.74%p) 등 선진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말레이시아(+0.92%p), 멕시코(+0.92%p) 등 신흥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눈에 띈다.

전기·전자 수입 변화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4.53%p), 대만(+3.23%p), 베트남(+6.87%p)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207) LNG(HS_2711.11)와 더불어 프로판(HS_2711.12) 및 부탄(HS_2711.13) 수입이 증가.

그림 4-20. 산업별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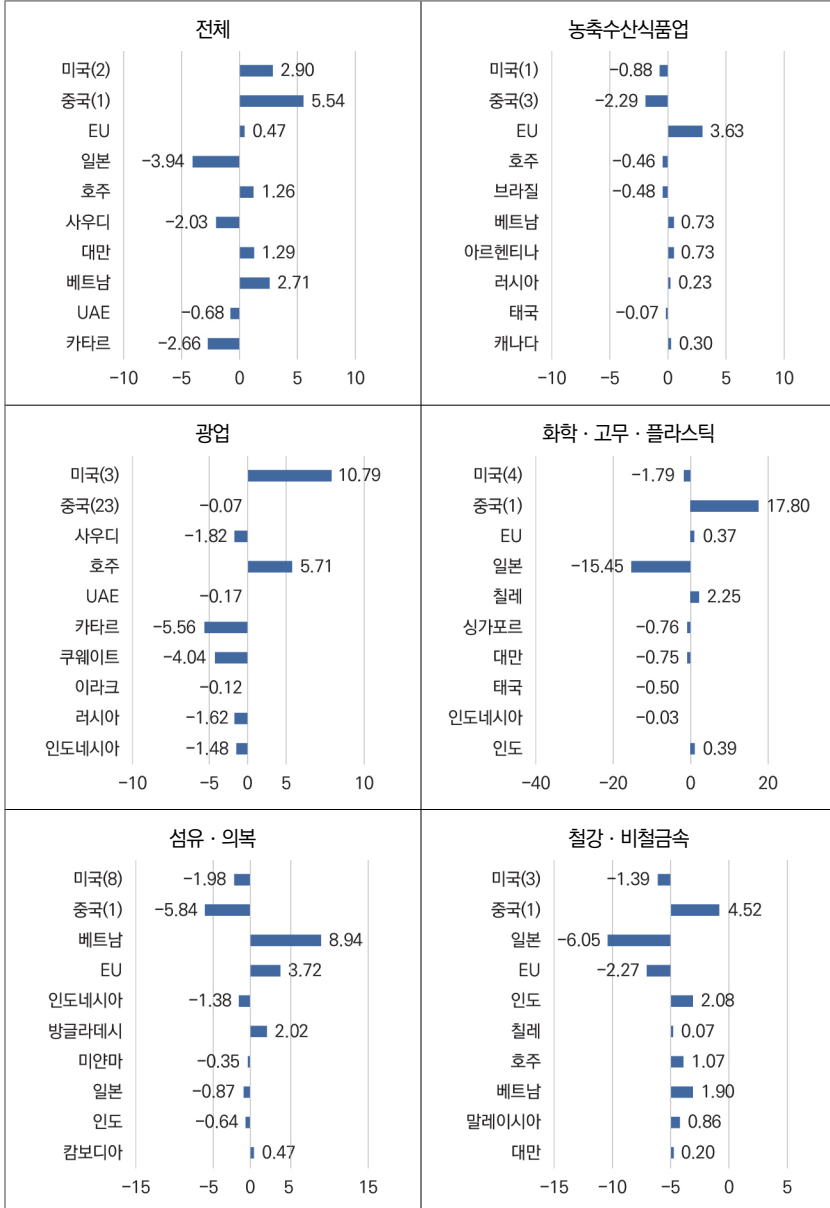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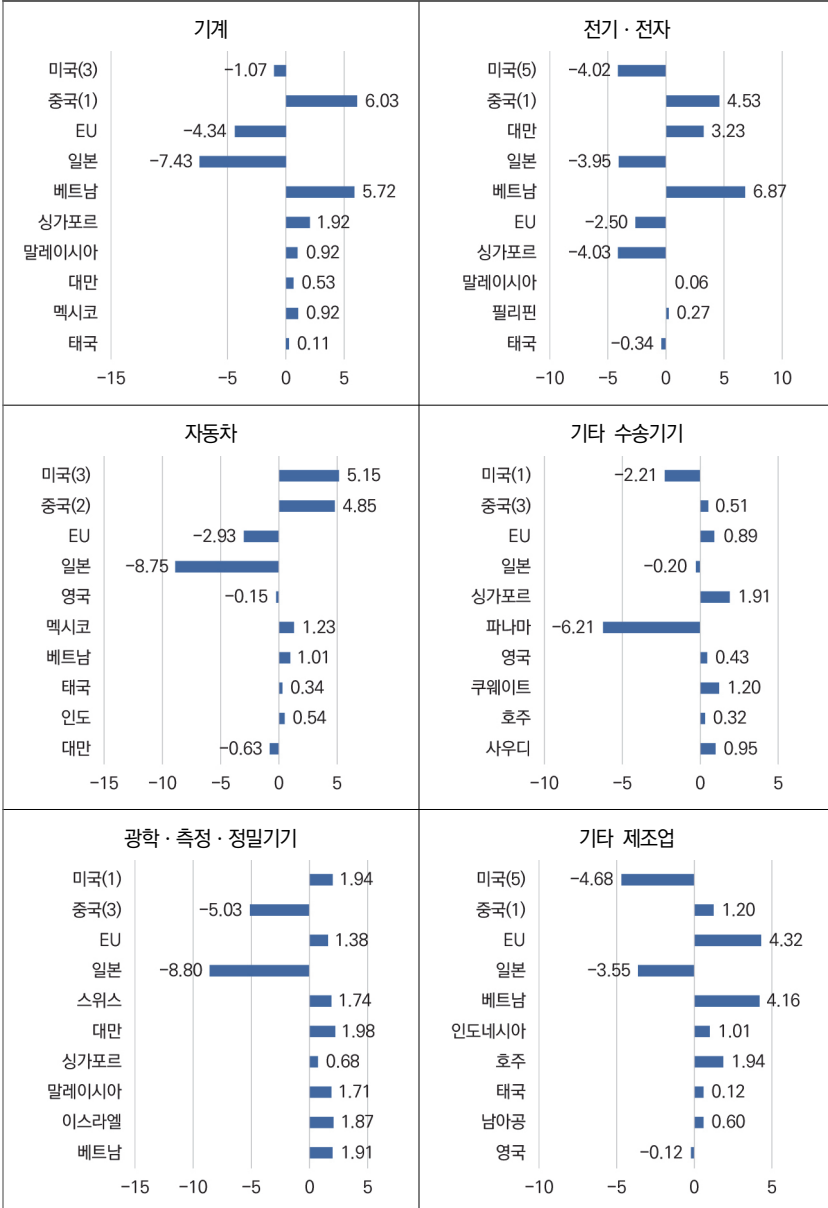


그림 4-20. 계속

(단위: %p)



주: 주요 상대국은 미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산업별 2022~24년 수입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수입액 측면에서도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2배 증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10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4.02%p), 일본(-3.95%p), EU(-2.50%p), 싱가포르(-4.03%p) 등 선진국의 비중은 뚜렷하게 감소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나머지 산업들의 경우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농축수산물 품업의 경우 미국(-0.88%p)과 중국(-2.29%p)의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EU(+3.63%p)의 비중이 증가했다. 섬유·의복 역시 중국(-5.84%p)과 미국(-1.98%p)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EU(+3.72%p), 베트남(+8.94%p), 방글라데시(+2.02%p)의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미국(+5.15%p)과 중국(+4.85%p)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일본(-8.75%p) 그리고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EU(-2.93%p)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광학·측정·정밀기기의 경우 미국(+1.94%p)과 EU(+1.38%p)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중국(-5.03%p)과 일본(-8.80%p)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조업은 최대 수입 상대국인 중국(+1.20%p)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4.68%p)과 일본(-3.55%p)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반면 EU(+4.32%p)와 베트남(+4.16%p)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생산단계별로 한국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1차산품(29.4%→23.3%p)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를 비롯해 석탄, 철광, 동광 등 많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50.1%→49.9%)의 경우 변화 자체는 미미했고, 자본재(11.2%→12.9%) 비중은 소폭 증가했으며 소비재(9.2%→13.8%) 비중은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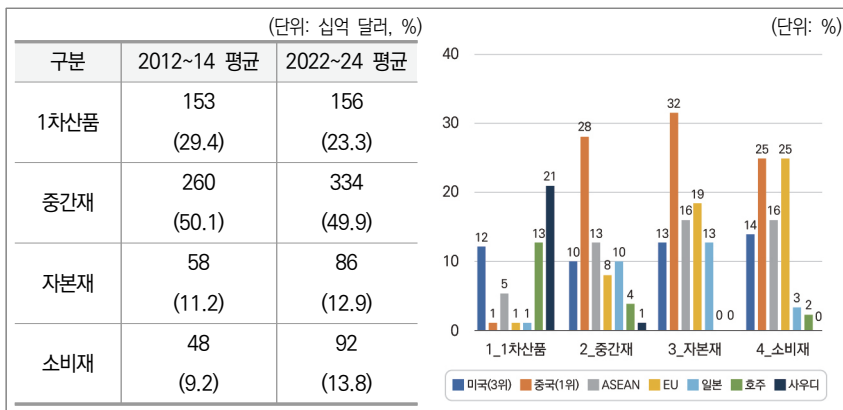
각 생산단계별로 주요 수입 상대국의 비중을 살펴보면(2022~24년 기준), 먼저 1차산품의 경우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21.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원유·석유가스 등을 포함한 주요 원자재 관련 수입 상대국

인 호주(12.8%)와 미국(12.2%)의 비중이 높다. 반면 1차산품 외에는 대체로 주요 4개국(중국, 미국, ASEAN, EU)의 비중이 모두 높은 편이다. 중간재의 경우 중국(28.1%)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자본재 역시 중국(31.7%)이 가장 높은 가운데 EU(18.5%)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소비재의 경우 EU(25.2%)와 중국(24.5%)의 비중이 높다. 한편 일본의 경우 중간재(10.1%)와 자본재(13.0%) 수입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생산단계별로 주요 수입 상대국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1차산품은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한 미국(+7.98%p)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반면 중동 지역의 산유국인 쿠웨이트(-4.46%p)와 카타르(-3.55%p)의 비중 감소가 두드러진다. 반면 최대 수입 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0.97%p)의 비중 변화는 미미했으며, 호주(+1.79%p)는 석탄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중간재의 경우 중국(+7.93%)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일본(-6.63%p)의 비중은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미국(+1.41%p)의 비중 역시 증가했는데,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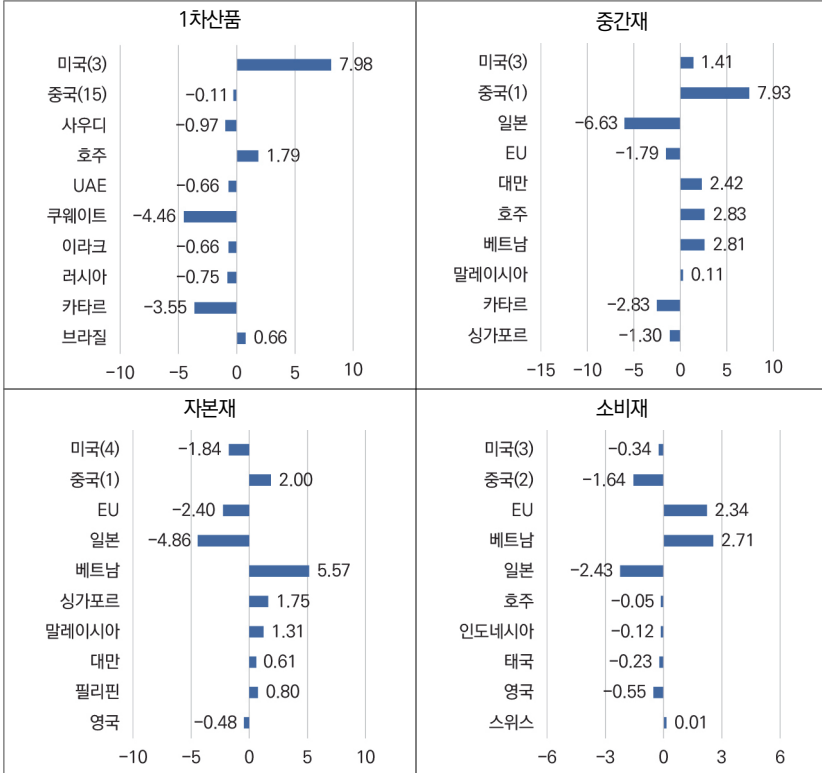
그림 4-21. 생산단계별 한국 수입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주: 2022~24년 총수입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ASEAN은 단일 국가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그림 4-22. 생산단계별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2012~14년 대비 2022~24년)

(단위: %p)



주: 주요 상대국은 미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생산단계별 2022~24년 수입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부분 석유가스 수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호주(+2.83%p) 역시 LNG 수입이 그간의 비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전기·전자 산업과 크게 연관된 대만(+2.42%p)과 베트남(+2.81%p)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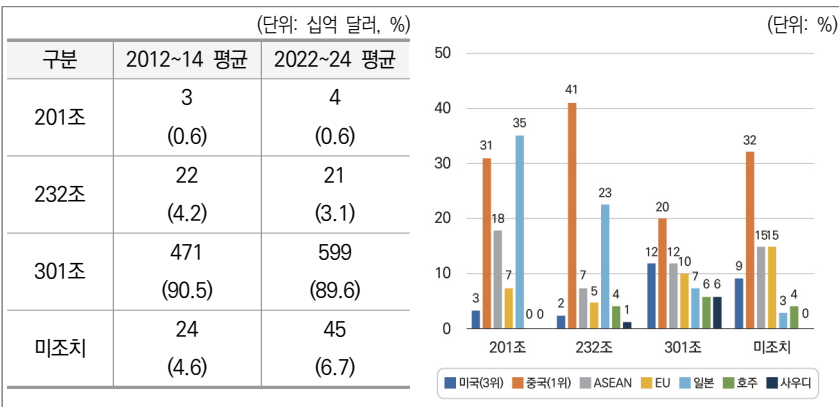
자본재의 경우 중국(+2.00%p)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미국(-1.84%p), EU(-2.40%p), 일본(-4.86%p)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또한 베트남(0.83%p→6.41%)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더불어 싱가포르(+1.75%p), 말레이

시아(+1.31%p) 등 ASEAN 국가들의 비중이 커진 것 역시 두드러진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2대 수입 상대국인 중국(-1.64%)과 EU(+2.34%p)의 비중이 소폭 변화했지만 여전히 각각 2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는 베트남(+2.71%p)의 증가와 일본(-2.43%p)의 감소 정도가 두드러지며, 미국(-0.34%p)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관세 조치 관련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살펴 보면(2022~24년 기준), 먼저 제201조 조치(세탁기/태양광 제품) 관련 품목들은 중국(30.8%), 일본(34.5%), ASEAN(17.7%)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반면 미국(3.2%), EU(7.5%) 등의 비중은 크지 않다. 제232조 조치(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련 품목 역시 중국(41.0%)과 일본(22.5%)의 비중이 크며, 마찬가지로 미국(2.5%)의 비중은 작다. 제301조 조치 관련 품목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과 거의 유사한데, 중국(20.3%)의 비중은 소폭 낮고, 미국(11.8%)의 비중은 소폭 높다. 마지막으로 미조치 품목의 경우 중국(32.1%)의 비중이 가장 높고 EU(15.0%)와 ASEAN(14.8%)도 상당한 비중

그림 4-23.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한국 수입 비중 및 주요 상대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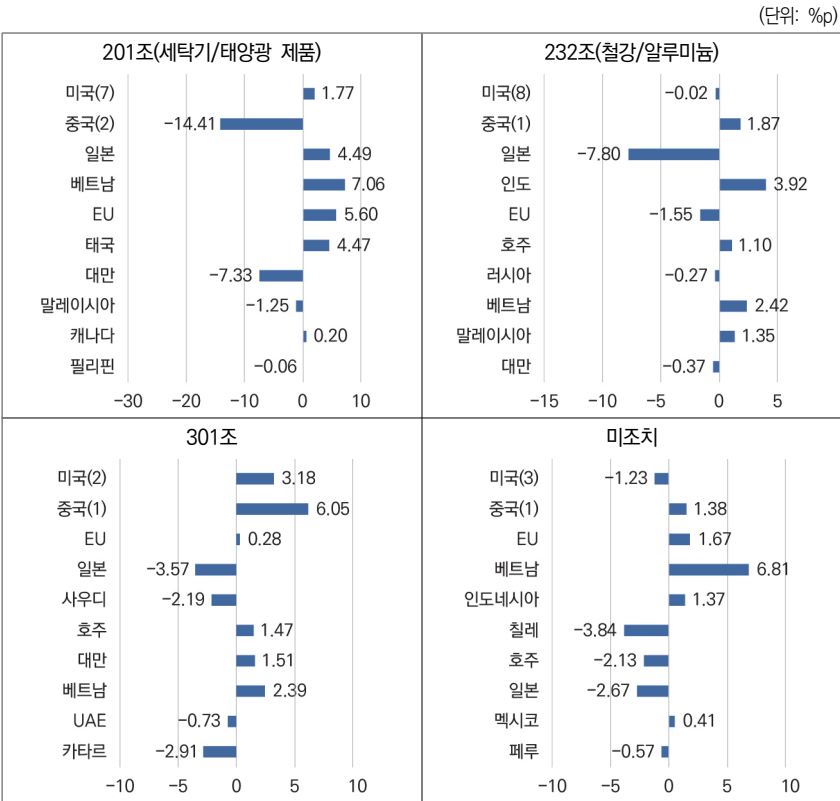


주: 2022~24년 총수입액 기준 상위 7개국의 비중이며, ASEAN은 단일 국가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을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9.1%)의 비중은 소폭 낮은 편이다.

각 조치별로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2012~14년 대비 2022~24년), 먼저 201조(세탁기/태양광 제품) 관련 품목의 경우 중국(-14.41%p)과 대만(-7.33%p)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22~24년 기준 30.82%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만의 비중은 5.21%로 크게 낮아졌다. 반대로 일본(+4.49%p), 베트남(+7.06%p), EU(+5.60%p), 태국(+4.47%p)의 비중은 높아졌으며, 미국의 비중(1.47%→

그림 4-24. 트럼프(1기) 관세 조치 관련 한국 수입에서 주요 상대국 비중 변화
(2012~14년 대비 2022~24년)



주: 주요 상대국은 미국(순위)과 중국 그리고 조치별 2022~24년 수입액 기준 상위 8개국.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3.25%) 역시 높아졌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제232조(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련 품목들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39.17%→41.04%)으로부터의 수입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7.80%p)과 EU(-1.55%p)의 비중이 감소한 것 역시 두드러진다. 반면 인도(+3.92%p), 베트남(+2.42%p) 등 신흥국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알루미늄과 관련하여 강한 경쟁력을 가진 호주(+1.10%p)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제301조 조치 관련 품목의 경우 중국(+6.05%p)과 미국(+3.18%p)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EU(+0.28%p)는 변화가 미미했으며 일본(-3.57%p)과 사우디아라비아(-2.19%p)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데, 이는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3차), 석유가스(3차), 반도체(2차) 등이 모두 제301조 조치 대상 품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2.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가. 개요

앞 절의 무역 구조 변화 동향을 보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 하락이 다수 산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중이 증가한 국가들은 산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조치별로 구분해 보더라도 무역법 제2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대상 품목군뿐 아니라 비대상 품목군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중국의 수출시장에서도 대미 수출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시장 구조는 미국과 중국이 합계 약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미국 비중은 상승하고 대중국 비중은 하락하

는 추세로 요약된다.

선행연구는 미중 통상갈등이 양국 간 교역과 제3국 교역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다루어 왔다. 2018년 이전 연구는 WTO 출범과 다양한 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혹은 무역장벽 완화의 효과, 즉 무역 창출 혹은 무역 전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무역장벽 관련 연구는 경제제재, 전쟁, 수입규제 등 단기 충격이 어떻게 교역을 축소하거나 전환하는가를 주로 평가했으며 방법론으로는 중력모형 기반 이중차분, 이벤트 스터디가 주로 활용되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정책은 즉각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다수의 연구가 2017~19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인 만큼 고빈도(월별) 자료를 사용해 관측치를 최대한 확보하고, 계절성 완화를 위해 차분 또는 증가율 변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월별 자료는 정책 시행 시점전후의 경계 설정이 명확하고 시차효과 관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기 효과 중심의 접근을 보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자료가 축적된 현시점에서 2012~24년의 중장기 시계열을 활용하여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와 2018년 이후 미국발 관세장벽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무역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통상정책 충격의 효과는 국가별 대응과 기업의 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와 중장기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설계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후 실증분석을 통해 앞 절에서 제시한 무역 현황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장의 동태적 무역 모형 기반 시나리오별 사전 시뮬레이션 분석의 해석·추론을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 및 분석 기간, 분석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한 Cigna *et al.*(2021) 방법론을 일부 변형하여 차용하였다.

나.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부터 중국의 미국 수출(혹은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받은 영향, 즉 관세로 인한 소위 직접효과(direct effects)와 중국 외 국가의 미국 수출(혹은 미국의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받은 영향, 즉 관세로 인한 소위 간접효과(indirect effects)를 추정하고자 한다.

기본 모형으로는 정책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 간의 미국 수입 변화 차이에 기반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였다. 모형 표기는 [식 4-1]과 같다.

$$\log(IMP_{p,i,t}^{USA}) = \beta \text{tariffdummy}_{p,t}^{CHN} + \gamma_{i,t} + \gamma_{i,p} + \gamma_{s,t} + \epsilon_{p,i,t}$$

[식 4-1]

여기서 $\log(IMP_{p,i,t}^{USA})$ 는 미국의 t년도 i국가로부터의 p품목 수입액이며, $\text{tariffdummy}_{p,t}^{CHN}$ 는 미국이 중국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처치변수로 관세를 부과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²⁰⁸⁾ 본 연구에서 i국은 미국의 주요 40개 교역국이다. 그 외에는 국가별 환율 변동 등 거시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연도 고정효과($\gamma_{i,t}$)를, 시차 불변 국가별 품목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품목 고정효과($\gamma_{i,p}$)를, 글로벌 공통 산업 경기 등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연도 고정효과($\gamma_{s,t}$)²⁰⁹⁾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psilon_{p,i,t}$ 는 오차항이다.

208) 무역법 제301조 대상 품목을 기반으로 설정하였고,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제2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품목은 제외하였다.

209) 산업-연도 고정효과($\gamma_{s,t}$)에서 하첨자 s는 산업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와 같이 HS 2단위 수준에서 분류하였다. 참고로 품목-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할 경우 처치변수의 효과를 식별할 수 없다.

추가 모형으로는 삼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상기 고정효과들로 통제하기 어려운 품목-수출국-연도별 삼중 결합으로 식별되는 수요 변동 요인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변동 요인이 대중 관세 도입 시점과 연관되어 있다면 관세 효과 추정치에 편의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상대 수요(즉 미국의 수입을 캐나다 수입과 비교하는) 종속변수를 이용하는 삼중차분법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품목-수출국-연도별 충격을 상쇄하는 접근법을 살펴 보았다.²¹⁰⁾ 본 절에서는 모형 표기만을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은 Romalis (2007), Russ and Swenson(2019), Cigna *et al.*(2021)을 참고하기 바란다.

$$\log\left(\frac{IMP_{p,i,t}^{USA}}{IMP_{p,i,t}^{CAN}}\right) = \beta \text{tariffdummy}_{p,t}^{CHN} + \gamma_{i,t} + \gamma_{i,p} + \gamma_{s,t} + \epsilon_{p,i,t}$$

[식 4-2]

여기서 설명변수는 기본 모형과 동일하다.

참고로 상기 추정식에서 수출국을 중국으로 한정하여 설정한 경우 관세 부과 조치를 직접적으로 받은 품목의 효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직접효과(direct effects)로, 수출국을 중국 이외 국가로 설정한 경우 직접적으로 관세 조치를 부과받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간접효과(indirect effects)로 설정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ta \rightarrow \begin{cases} \text{직접 효과} & \text{if } i = \text{중국} \\ \text{간접 효과} & \text{otherwise} \end{cases}$$

210) 선행연구는 미국과 EU를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 기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여 EU를 비교군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선진국인 캐나다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였다.

다.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미국의 수입 자료로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2년부터 2024년으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분석 기간의 경우 HS 코드 변경이 최근 2012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 이루어졌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대한 장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HS 코드 연계에서의 불일치성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 연도를 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코드 연계를 위해 HS 6단위 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교역하는 주요 40개 수입대상국으로 한정하였다.

글상자 4-1. 미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독일, 덴마크, 에콰도르,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아일랜드,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페루, 핀란드,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웨덴, 태국, 튀르키예, 대만, 베네수엘라,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라. 분석 결과

1) 직접효과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표 4-6]에서는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로그 선형모형과 포아송 모형 두 가지 형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모형은 다양한 수준의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1)번과 (4)번 모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으로 품목 고정효과와 산업-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기본 모형이다. 그 외 모형은 상기 기본 모형의 고정효과를 완화한 형태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

표 4-6. 직접효과 분석 결과(중국)

	로그 선형모형			포아송 모형		
	(1)	(2)	(3)	(4)	(5)	(6)
관세 조치 처치변수	-0.445*** (0.0607)	-0.548*** (0.0631)	-1.195*** (0.168)	-0.218* (0.0585)	-0.268*** (0.0711)	-1.985*** (0.512)
품목 고정효과	0	0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0	0		0
연도 고정효과		0			0	
관측치 수	50,729	50,729	50,840	50,729	50,729	50,840
R-squared	0.926	0.919	0.326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다. 모든 모형에서의 계수 추정치는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 부과가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을 명확히 감소시켰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품목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전체 품목을 성질별로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질별 분석에서는 앞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경우인 품목 고정효과와 산업-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기본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7]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간접효과

주요 4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제3국의 대미국 수출에 미친 영향, 즉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직접효과 추정과 마찬가지로 로그 선형

표 4-7. 직접효과 성질별 분석 결과(중국)

	로그 선형모형			포아송 모형		
	(1) 중간재	(2) 자본재	(3) 소비재	(4) 중간재	(5) 자본재	(6) 소비재
관세 조치 처치변수	-0.455*** (0.108)	-0.567*** (0.159)	-0.391*** (0.0802)	-0.372*** (0.107)	-0.280*** (0.0798)	-0.209*** (0.0713)
품목 고정효과	0	0	0	0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0
관측치 수	27,633	7,114	12,787	27,633	7,114	12,787
R-squared	0.914	0.921	0.951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모형과 포아송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1)번과 (4)번 모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으로 국가-연도 고정효과, 국가-품목 고정효과, 산업-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기본 모형이다. 그 외 모형은 상기 기본 모형의 고정효과를 완화한 형태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4-8]에서 보듯이 기본 모형을 포함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Cigna *et al.*(2021)과 유사한 결과이며, 선행연구에서는 그 배경으로 국가별 이질성과 더불어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모형에서는 선행연구보다 장기의 시계열을 사용하였으나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여전히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품목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직접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질별로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질별 분석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경우인 국가-연도 고정효과, 국가-품목 고정효과, 산업-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기본 모형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무역 전환의 일관된 증거는 제한적이었고, 자본재에서만 일부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4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그 선형모형과 포아송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1)번과 (4)번 모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으로 품목 고정효과, 산업-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기본 모형이다. 그 외 모형은 상기 기본 모형의 고정효과

표 4-8. 간접효과 분석 결과(40개국)

	로그 선형모형			포아송 모형		
	(1)	(2)	(3)	(4)	(5)	(6)
관세 조치 처치변수	-0.00591 (0.0284)	-0.0303 (0.0289)	-0.0366 (0.138)	0.0769 (0.115)	-0.168 (0.169)	-0.731** (0.355)
국가-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0
국가-품목 고정효과	0	0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0		
관측치 수	1,013,433	1,013,433	1,029,614	1,013,433	1,013,433	1,029,614
R-squared	0.875	0.873	0.087	-	-	-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4-9. 간접효과 성질별 분석 결과(40개국)

	로그 선형모형			포아송 모형		
	(1) 중간재	(2) 자본재	(3) 소비재	(4) 중간재	(5) 자본재	(6) 소비재
관세 조치 처치변수	0.00202 (0.0486)	-0.0949 (0.0687)	-0.00407 (0.0453)	-0.172* (0.104)	0.544*** (0.203)	0.0171 (0.0707)
국가-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0
국가-품목 고정효과	0	0	0	0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0
관측치 수	513,801	161,580	293,108	513,801	161,580	293,108
R-squared	0.871	0.856	0.891	.	.	.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4-10. 간접효과 분석 결과(한국)

	로그 선형모형			포아송 모형		
	(1)	(2)	(3)	(4)	(5)	(6)
관세 조치 처치변수	0.122 (0.105)	-0.0103 (0.1000)	0.305 (0.198)	1.457*** (0.246)	0.723 (0.577)	0.255 (0.673)
품목 고정효과	0	0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0	0		0
연도 고정효과		0			0	
관측치 수	37,221	37,263	37,537	37,221	37,263	37,537
R-squared	0.878	0.871	0.220	.	.	.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간접효과 성질별 분석 결과(한국)

	로그 선형모형			포아송 모형		
	(1) 중간재	(2) 자본재	(3) 소비재	(4) 중간재	(5) 자본재	(6) 소비재
관세 조치 처치변수	0.0149 (0.188)	0.0139 (0.257)	0.283* (0.157)	-0.0279 (0.217)	1.268*** (0.180)	1.021*** (0.285)
품목 고정효과	0	0	0	0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0
관측치 수	19,763	6,016	10,064	19,763	6,016	10,064
R-squared	0.881	0.849	0.885	.	.	.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를 완화한 형태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기본 모형인 (1)번과 (4)번의 추정 결과, 모두 양(+)의 계수 추정치를 얻었으며 특히 포아송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질에 따라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가장 높은 수준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경우인 품목 고정효과, 산업-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기본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본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간재 등 경직성이 크고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제3국에 의한 대체에 한계가 있으며, 보완적 관계로 인해 단기간 내 전환 역시 쉽지 않다. 반면 자본재, 소비재 등 표준화와 호환성이 높은 품목군의 경우에는 제3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 추가 분석 결과

분석 모형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중차분법(DID)은 처치 품목 대 비처치 품목의 시계열 차이를 이용하지만, 품목-수출국-연도별 삼중 결합으로 식별되는 수요 변동 요인 등의 충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삼중차분법(DDD)은 비처치 수입국(예: 캐나다)의 같은 품목·같은 시점 변화를 추가로 차감해 이러한 품목-수출국-연도별 충격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비처치 수입국은 미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전 세계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입국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나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EU를 비처치 수입국으로 사용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비처치 수입국으로 캐나다를 선정하였다. 본 절은 선행연구와 결과를 비교한다는 차원과 추후 연구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분석 결과를 간단히 소개한다.

중국의 경우 삼중차분법(DDD)을 사용하여 추정할 경우 고정효과 수준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효과의 경우 40개국의 사례에서는 모형과 관계없이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

체 품목과 성질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대체로 양(+)의 계수 추정치를 얻었으나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3)번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Cigna *et al.*(2021)과 유사한 결과다. 삼중차분법(DDD)은 기존 고정효과와 함께 품목-수출국-연도별 미시적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보수적 식별 모형으로, 직접효과는 강건성이 확인된 반면 간접효과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에 대해 추론해 보면 비교군 수입시장, 즉 캐나다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효과가 일부 전이될 경우 삼중차분의 순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고정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품목-수출국-연도 요인을 통제할 경우 정책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표 4-12. 삼중차분법 추정 직접 및 간접효과

	DDD(직접효과)			DDD(간접효과)		
	(1) 중국	(2) 중국	(3) 중국	(4) 40개국	(5) 40개국	(6) 40개국
관세 조치 처리변수	-0.500*** (0.0830)	-0.540*** (0.0834)	-0.617*** (0.104)	-0.0433 (0.0311)	-0.0110 (0.0292)	-0.0796 (0.0575)
품목 고정효과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0			
연도 고정효과		0				
국가-연도 고정효과				0	0	0
국가-품목 고정효과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관측치 수	48,325	48,336	48,459	765,853	765,853	778,056
R-squared	0.596	0.577	0.100	0.561	0.560	0.050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4-13. 삼중차분법 추정 간접효과 분석 결과(한국)

	DDD			DDD		
	(1) 전체품목	(2) 전체품목	(3) 전체품목	(4) 중간재	(5) 자본재	(6) 소비자재
관세 조치 처치변수	0.147 (0.144)	0.138 (0.138)	0.330** (0.141)	0.0741 (0.307)	-0.0368 (0.356)	0.239 (0.190)
품목 고정효과	0	0		0	0	0
산업-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연도 고정효과		0				
관측치 수	29,404	29,473	29,728	14,946	4,886	8,776
R-squared	0.551	0.528	0.099	0.559	0.463	0.576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3.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기업의 성과 동향

가. 개요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교역량 또는 품목 수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 또는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 등 무역 흐름의 변화에 주목해왔다. 본 연구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 중국 수출시장, 한국 수출시장, 한국 수입시장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한국의 경우 일부 산업에서 대미국 수출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무역 구조 변화가 한국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중단기적으로는 교역량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과(performance)와 경쟁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수출입통계를 통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차원의 수출 통계 혹은 경영성과 지표를 통해 충격의 실질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 수준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등 자료 제약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식별·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절에서는 대미 수출 기업의 성과 추이를 점검함으로써,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관세정책의 간접적 영향뿐 아니라 직접적 영향에 직면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우리 기업의 핵심 재무지표인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나. 분석 대상

본 절에서 ‘대미국 수출기업’이라 함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직전인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미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한국기업을 의미한다. 대미국 수출기업 리스트를 한국평가데이터사의 재무정보 데이터와 연결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참고로 개별 기업 단위의 자료이기에 오기, 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일정 기준에 따라 원자료의 극단값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우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영업활동이 비정상적인 기업(매출이나 다른 주요 재무 실적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거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평균 성과 추이를 보다 대표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과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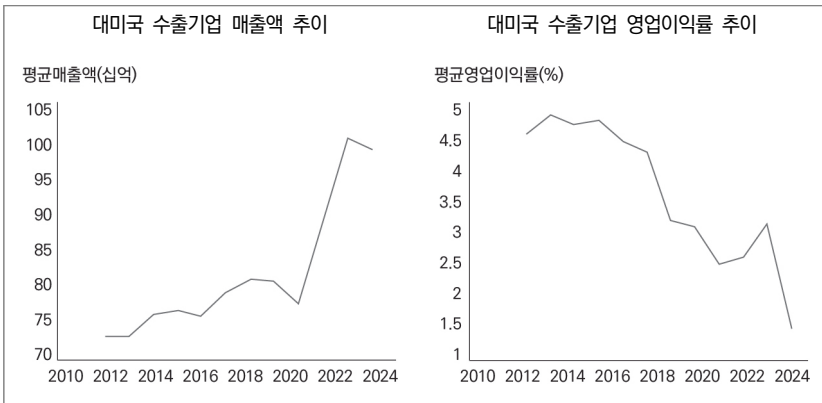
0.5백분위 및 99.5백분위 구간을 벗어나는 기업(즉 하위 0.5% 또는 상위 0.5%)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¹¹⁾

다. 주요 동향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인 미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표본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약 800억 원 전후의 연평균 매출을 기록한 반면, 최근 2022~23년에는 약 1,000억 원 전후로 연평균 매출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대 미국 수출기업의 매출 증대가 미국 수출 확대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미국 수출 추이와 대미국 수출기업의 매출액 추이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2017년 이전에는 약 4%대를 기록한 반면 2020년 이후에는 약 2% 전후로 하락하였다.

그림 4-25. 한국의 대미국 수출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2012~23년)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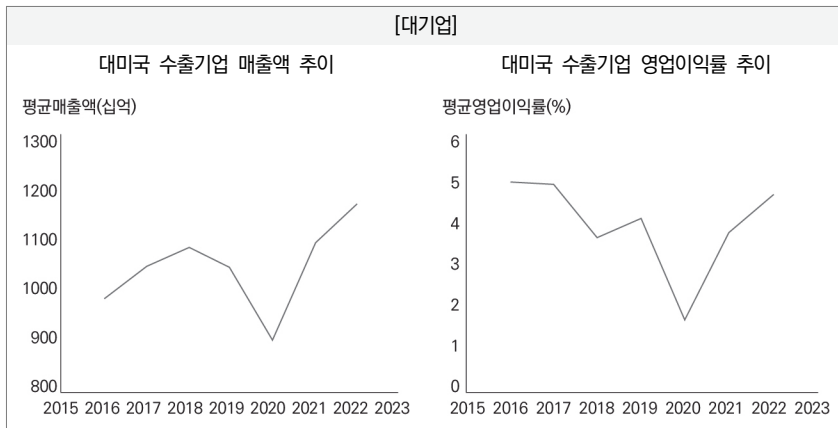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한국평가데이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11) 본 연구에서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은 본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다. 데이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잇값을 제거하였기에 본 분석은 수치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추가적으로 기업 이질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²¹²⁾ 기업 분류 기준 변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 추이는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을 살펴보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에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매출액은 급감하였으나 2021년, 2022년에는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영업이익률 역시 2020년 급감하였다가 2022년에 이르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이후 연평균 매출액은 상승하고 있으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201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²¹³⁾

그림 4-26. 기업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2016~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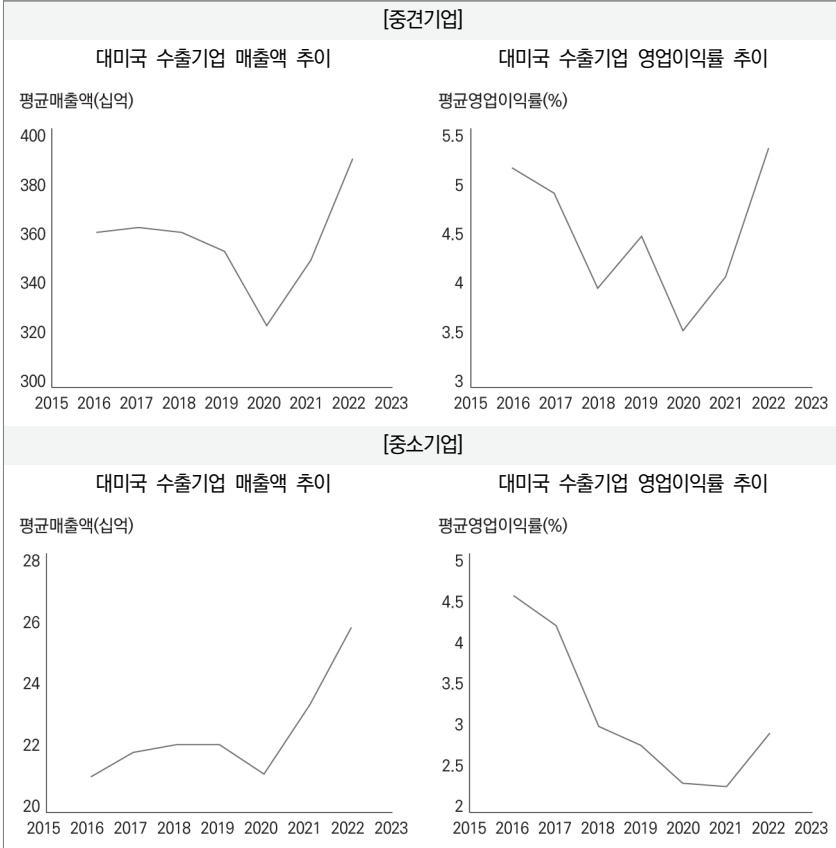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212) 보호 대상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으로, 한시성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213) 참고로 제301조 대상 품목으로 한정해 본 대미국 수출기업의 실적 추이는, 전체 품목을 기준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기업의 실적 추이와 유사하다.

(단위: 십억 원,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한국평가데이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소결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년) 이후 미국은 관세를 핵심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제201조(세탁기/태양광 제품), 제232조(철강·알루미늄),

제301조(중국)를 중심으로 글로벌 관세장벽을 형성하였다. 이는 관세정책을 시행한 미국의 수입시장, 주요 대상국이었던 중국의 수출시장, 그리고 양국의 주요 교역국인 제3국(한국)의 수출 및 수입 시장에 지난 10년간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과거(2012~14년) 19.7%에서 최근(2022~24년) 15.0%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기계(-13.4%p), 전기전자(-11.5%p), 섬유·의복(-12.3%p) 등에서 중국 비중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반대로 EU, 멕시코 등 다른 주요국의 비중을 증가시켰으며, 한국(2.8%→3.8%)의 비중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존의 주요국뿐 아니라 대만, 인도 그리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국가 등 신흥 공업국들의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중국의 수출시장에서는 미국의 비중이 감소함과 동시에 신흥국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전기·전자(-5.2%p), 기계(-7.1%p) 등 주요 부문에서 미국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인도, 멕시코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한국 수출시장의 경우 중국에 대한 비중이 과거 25.3%에서 20.7%로 감소한 반면, 미국의 비중은 11.4%에서 17.8%로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기계(+12.3%p), 자동차(+18.1%p)를 포함하여 거의 전 산업에서 미국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했다.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중국 비중이 감소하였고 베트남(+11.8%p), 대만(+4.5%p) 등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한국 수입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중국(16.3%→21.8%)과 미국(8.4%→11.3%)의 비중이 모두 상승하면서 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원유, 석유가스 등 1차산품(광업) 수입이, 중국으로부터는 화학, 철강, 전자, 기계 등 분야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만, 베트남 등 신흥국의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11.4%→7.5%)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지역 산유국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어서 사후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발 관세장벽이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가 주로 단기간의 고빈도 자료(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기 시계열(2012~24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 반면 제3국(40개국 전체)의 경우 국별 이질성 등으로 인해 대미 수출의 양(+)의 증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본재만 일부 유의한 양(+)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접효과에 비해 간접효과가 미미하게 추정된 원인으로 국별 이질성과 품목별 이질성을 지적하였고, 간접효과는 나타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됨을 언급하였다. 한국으로 한정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면 자본재와 소비재에서 일부 양(+)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기업의 성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과 관계 추정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기업의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영업이익률은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세장벽 확산은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관세장벽 확산과 향후 무역 및 경제 변화

1. 개요
2. 분석 모형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4.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1. 개요

본 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을 무역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 이론에서는 관세가 변할 때 소비자 및 기업의 최적 선택의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한 최적 선택에 따라 각국의 생산과 무역의 패턴, 무역의 이익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본 장의 분석에서도 기본적으로 다국가-다산업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관세 변화라는 외생적 충격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의 최적 선택을 추적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각국의 생산과 무역 패턴, 그리고 소비자 후생 및 고용으로 대변되는 무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앞서 제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세장벽 확대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때 소비의 다양성, 기업의 크기, 상품의 대체 가능성, 글로벌 생산 구조, 시장 구조, 수출 구조, 시간의 흐름, 무역수지,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고려한다면 분석 결과를 완결성 있고 강건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중 특히 상품의 대체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분석을 실시한다. 관세장벽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패턴의 점진적인 조정을 야기한다. 일국의 입장에서 수입처를 바꾸는 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마찰(friction)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에서는 무역 비용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 간 대체 가능성을 포착하는 무역탄력성이 단기와 장기에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왔다.²¹⁴⁾

관세장벽 확대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 상품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언급한 사항 중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게 된다. 먼저 동태적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과정을 살펴본다. 관세장벽

214) 단기와 장기에서의 무역탄력성 차이에 대해서는 Ruhl(2008), Dekle *et al.*(2008), Fontagne *et al.* (2018), Boehm *et al.*(2023)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변화의 일시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설득력 있게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의 분석은 다국가-다산업 동태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모형에서 기간별 무역탄력성은 매기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재를 조달할지 연속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도출된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전 세계 공급자 중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급자로부터 조달하지만, 언제든지 원할 때 공급자를 새로 바꾸기는 어려우며, 그 기회가 확률적으로 도래한다고 가정함으로써 현실적인 마찰을 구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장벽 확대의 충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장기적 조정을 통해 일어난다.

또한 글로벌 생산 구조를 통해 파급되는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장의 모형은 Eaton and Kortum(2002)에 기반한 리카르도식 동태적 무역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Caliendo and Parro(2015)와 같이 리카르도식 무역 모형에 글로벌 생산 구조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확장하고,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중간재의 투입산출 구조를 반영한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관세 인상의 파급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정책을 포함한 미국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래 관세율 변경과 유예를 반복해오고 있다. 다수의 국가와 협의를 통해 관세율을 차례차례 결정짓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멕시코와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관세율을 결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추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은 무역비용을 높이는 데, 이것이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무역을 얼마나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과 3절에서는 분석 모형과 자료에 대해 설명한 뒤, 4절에서는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에 대해 논한다.

2. 분석 모형

이 장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국제 무역과 기간별 무역탄력성의 변화를 고려한 Chen *et al.*(2025)를 활용한다. 이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다국가-다산업 동태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이다. 세계경제는 N 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출국은 s , 수입국은 d 로 표기한다. 각 국가에는 I 개의 산업이 존재한다. 각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없는 완전예측(perfect foresight)을 가정한다.

가. 경제주체

1) 가계

때 t 시점에 국가 d 에는 영속하는 가계가 L_d 만큼 존재하며 $w_{d,t}$ 의 임금으로 노동 1단위를 비탄력적으로 공급한다. t 시점 국가 d 에서의 가계 효용은 $u(C_{d,t})$ 로 주어지며, 최종재 총소비 $C_{d,t}$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C_{d,t} = \prod_{i \in I} (C_{di,t})^{\eta di} \quad [\text{식 5-1}]$$

$C_{di,t}$ 는 t 시점 산업 i 의 복합재(composite good)이며, ηdi 는 최종재 총소

비에서 산업 i 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의에 따라 $\sum_{i \in I} \eta di = 1$ 이다. t 시점 국가 d 에서 산업 i 의 복합재 가격 지수를 $P_{di,t}$ 로 표기하며 이에 따라 t 시점 국가 d 에서의 소비자 가격 지수는 $P_{d,t} = \prod_{i \in I} (P_{di,t} / \eta di)^{\eta di}$ 로 주어진다. 가계는 매기의 소득으로 소비하며 미래 효용의 흐름에 대한 할인율은 $\beta_t \in (0,1)$ 로 표기한다.

2) 중간재 생산자

각 산업에는 중간재 $\omega \in [0,1]$ 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존재한다. 국가 s 산업 i 의 중간재 ω 생산자는 z 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l 만큼의 노동과 타 산업 j 의 합성재 M_{ji} 를 투입해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에 따라 중간재를 생산한다.

$$y_i(\omega) = z(l)^{\alpha_{si}} \prod_{j \in I} (M_{ji})^{\alpha_{sj}} \quad [\text{식 5-2}]$$

$y_i(\omega)$ 는 산업 i 의 중간재 ω 의 생산량이며 α_{si} 와 α_{sj} 는 각각 국가 s 산업 i 의 부가가치 비중과 산업 j 에서 산업 i 로 투입되는 복합재의 비중이다. 정의에 따라 $\alpha_{si} = 1 - \sum_{j \in I} \alpha_{sj}$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모형에서는 중간재 생산자만이 노동을 고용한다.

중간재는 타국으로 무역이 가능하되 t 시점에 국가 s 에서 국가 d 로 산업 i 의 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빙산 형태의 무역비용 $u_{sdi,t} \geq 1$ 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국가 d 가 t 시점에 산업 i 의 중간재를 국가 s 로부터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는 $\widetilde{\tau}_{sdi,t} \geq 1$ 로 표기한다. 따라서 총무역비용 $\tau_{sdi,t}$ 는 $\tau_{sdi,t} = u_{sdi,t} \times \widetilde{\tau}_{sdi,t}$ 이다.

앞서 정의한 중간재 생산함수와 무역비용에 따라 t 시점에 국가 s 가 국가 d 로 수출하는 산업 i 의 중간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c_{sdi,t} = \Theta_{si} \tau_{sdi,t} (w_{s,t})^{\alpha_{si}} \prod_{j \in I} (P_{sj,t})^{\alpha_{sj}} \quad [\text{식 5-3}]$$

여기서 θ_{si} 는 콥-더글라스 계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수이다. 중간재 ω 생산자의 생산성이 $z(\omega)$ 라 할 때, 단위생산비용은 $c_{sdi,t}/z(\omega)$ 로 도출된다.

각 국가의 중간재 생산성은 Eaton and Kortum(2002)의 모델을 준용하여 프레첷 분포(Frechet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간주한다. 해당 분포에서 국가 s 산업 i 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위치 매개변수(location parameter)는 A_{sit} 로 표기하며, 산업 i 의 생산성의 분산 정도를 결정하는 모양 매개변수(shape parameter)는 θ_i 로 나타낸다.

3) 복합재 생산자

각 산업 i 에서 복합재 생산자는 중간재 ω 를 묶어 복합재를 만든다. 복합재는 중간재와 달리 무역이 불가능하며 국내에서 최종 소비나 중간재 생산을 위해 투입된다. 복합재 생산자는 다음의 기술을 통해 중간재들을 묶어 산업 i 의 복합재 $Y_{di,t}$ 를 생산한다.

$$Y_{di,t} = \left(\int_{[0,1]} y_{di,t}(\omega)^{\frac{\sigma_i - 1}{\sigma_i}} d\omega \right)^{\frac{\sigma_i}{\sigma_i - 1}} \quad [\text{식 5-4}]$$

$y_{di,t}(\omega)$ 는 국가 d , 산업 i 의 복합재 생산자가 구매한 중간재 ω 이며, $\sigma_i - 1$

은 산업 i 에서의 중간재 간 대체탄력성이다. 복합재 생산자는 국가 d 에서의 중간재 ω 가격 $p_{di,t}(\omega)$ 를 주어진 값으로 받아들인다. [식 5-4]로부터 비용 극소화 문제를 풀면 중간재 ω 에 대한 복합재 생산자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며,

$$y_{di,t}(\omega) = p_{di,t}(\omega)^{-\sigma_i} P_{di,t}^{\sigma_i} Y_{di,t} \quad [\text{식 5-5}]$$

복합재의 가격 지수 $P_{di,t}$ 는 다음의 식과 같다.

$$P_{di,t} = \left(\int_{[0,1]} p_{di,t}(\omega)^{-(\sigma_i-1)} d\omega \right)^{-\frac{1}{\sigma_i-1}} \quad [\text{식 5-6}]$$

4) 중간재 무역상

이 모형에서 복합재 생산자는 국내외 중간재 생산자와 거래하기 위해 전문 현지 무역상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각 중간재를 조달하기 위해 수입국의 무역상을 통해야 하며, 이 무역상은 복합재 생산자를 대신하여 전 세계 공급자들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무역상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장래를 내다보는(forward-looking) 행동을 취할 유인을 갖게 된다.

무역상은 수입국에서 중간재 조달에 대해 지역적 독점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복합재 생산자에게 부과하여 매기 이익을 얻고 이 이익은 수입국 d 의 대표 가계로 귀속된다. 무역상은 미래의 이윤을 $1/(1+r_t)$ 로 할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각국의 생산자들은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수입처를 바꿀 수 없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마찰이 존재한다. 이를 모형에서

구현하기 위해 무역상들이 중간재 조달처를 항상 바꿀 수는 없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무작위로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각 중간재 ω 에 대해 무역상은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는(i.i.d) 확률변수 $a_{di,t}(\omega) \in \{0,1\}$ 에 의해 수입국을 바꿀 기회를 얻는다. $a_{di,t}(\omega)$ 는 모든 $\omega \in [0,1]$, $d \in N$, $i \in I$ 에 대해 $\Pr[a_{di,t}(\omega) = 1] = \zeta_i$ 의 확률로 1의 값을 가진다. 만약 $a_{di,t}(\omega)$ 가 1이라면 산업 i 의 중간재 ω 를 취급하는 d 국가의 무역상은 선호하는 국가로 조달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반면 $a_{di,t}(\omega)$ 가 0이라면 무역상은 조달처를 바꿀 수 없고 $t-1$ 시점의 조달처에서 계속 중간재를 구매해야 한다. ζ_i 는 산업별로 공급자가 조정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며 $1 - \zeta_i$ 는 조달 과정의 마찰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_{di,t}(\omega)$ 가 0이어서 조달처가 변하지 않더라도 수입재의 물량과 가격은 전기와 달라질 수 있다. 생산요소 비용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 변하거나 정책 변화로 인해 무역비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달 과정에서의 마찰은 수입처 선택을 즉각적으로 최적화하여 재매칭하지 못하게 하는 탐색 비용이나 기타 장애 요인을 반영한다. 이 모형 내에서 조달 과정에서의 마찰은 일종의 잠금 효과를 발생시키며 각 중간재 공급자로부터 조달받아온 기간에 따라 중간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t 시점 산업 i 에서 k 기간 동안 조달받아온 중간재의 집합을 $\Omega_{di,t}^k$ 로 정의한다. 그리고 k 가 0보다 큰 중간재를 레저시 품목이라 명명한다.

$\Omega_{di,t}^0$ 에 속하는 중간재 ω 를 최적으로 조달하는 무역상의 공급자 선택 문제는 아래와 같다. 산업 i 의 중간재 ω 를 조달하는 d 국가의 무역상이 t 시점에 국가 s 로부터 조달하며, 국가 s 의 생산성 $z_{si}(\omega)$ 가 전 세계 생산자 중 가장 높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에서 무역상은 [식 5-3]에 표현되어 있는 공통의 단위비용에 따라 $c_{sdi,t}/z_{si}(\omega)$ 로 해당 상품을 조달할 수 있다. [식 5-5]와 같은 복합

재 생산자의 수요를 제약으로 하여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면, 수출국 s 로부터 조달된 중간재 ω 에 대해 국가 d 산업 i 의 복합재 생산자가 지불할 가격 $p_{sdi,t}(\omega)$ 는 다음과 같다.

$$p_{sdi,t}(\omega) = \frac{\sigma_i}{\sigma_i - 1} \frac{c_{sdi,t}}{z_{si}(\omega)}$$

그리고 무역상의 이윤은 다음과 같다.

$$\pi_{sdi,t}(\omega) = \frac{1}{\sigma_i} \left(\frac{\sigma_i}{\sigma_i - 1} \frac{c_{sdi,t}}{z_{si}(\omega)} \right)^{-(\sigma_i - 1)} P_{di,t}^{\sigma_i} Y_{di,t} \quad [\text{식 5-7}]$$

반면 조달 과정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무역상에게 확률적으로 조달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조달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무역상의 공급자 선택 문제는 다음의 벨만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_{di,t}(\omega) = \max_{n \in N} V_{di,t}(\omega, n) \quad [\text{식 5-8}]$$

여기서

$$V_{di,t}(\omega, n) = \pi_{ndi,t}(\omega) + \frac{\zeta_i}{1 + r_t} V_{di,t+1}(\omega) + \frac{1 - \zeta_i}{1 + r_t} V_{di,t+1}(\omega, n),$$

for $n \in N$ [식 5-9]

은 t 시점에 국가 n 으로부터 중간재 ω 를 조달하는 d 국가의 무역상이 가지는 순현재가치를 의미한다.

만약 한 무역상이 $t-k$ 시점에 단위비용 $c_{sdi,t-k}/z_{si}(\omega)$ 로 중간재 ω 를 최적으로 조달한 뒤, k 기간 동안 조달처를 바꾸지 않고 있다면 그 레저시 품목 ω 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p_{sdi,t}(\omega) = \frac{\sigma_i}{\sigma_i - 1} \frac{c_{sdi,t}}{z_{si}(\omega)} = p_{sdi,t-k}(\omega) \prod_{v=t-k+1}^t \widehat{c_{sdi,v}}$$

이후의 서술에서 $\widehat{x}_t \equiv x_t/x_{t-1}$ 는 해당 변수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레저시 품목 ω 의 가격은 $t-k$ 시점 이후 무역비용과 생산요소 가격의 누적 변화가 반영되어 결정된다.

[식 5-8]과 [식 5-9]를 이용해 조달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급자 선택 문제를 풀면 공급자 선택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V_{di,t}(\omega) = \max_{n \in N} \{ \pi_{ndi,t}(\omega)(1 + \Psi_{ndi,t}) \} + \frac{\zeta_i}{1 - \zeta_i} \sum_{u=1}^{\infty} \frac{(1 - \zeta_i)^u}{\prod_{v=1}^u (1 + r_{t+v-1})} V_{di,t+u}(\omega)$$

[식 5-10]

여기서

$$\Psi_{ndi,t}(\omega) = \sum_{u=1}^{\infty} (1 - \zeta_i)^u \left[\prod_{v=1}^u \frac{1}{1 + r_{t+v-1}} \left(\frac{\widehat{c_{ndi,t+v}}}{\widehat{P_{di,t+v}}} \right)^{-(\sigma_i - 1)} \widehat{P_{di,t+v}} \widehat{Y_{di,t+v}} \right]$$

[식 5-11]

로 이는 수출국 s 와의 공급관계에서 현재 이윤 $\pi_{sdi,t}(\omega)$ 가 향후 무역비용 및

생산요소 가격 변화($\widehat{c_{nid,t+v}}/\widehat{P_{di,t+v}}$)와 국내 수요 변화($\widehat{P_{di,t+v}}\widehat{Y_{di,t+v}}$)에 따라 달라질 변화율을 나타낸다. $\Psi_{sdi,t}(\omega)$ 는 조달 과정에서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잠금 효과를 반영한다.

[식 5-10]으로부터 조달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적 공급자 선택 $s_{di,t}^*(\omega) = \arg \max_n V_{di,t}(\omega, n)$ 을 도출한다.

$$s_{di,t}^*(\omega) = \operatorname{argmin}_{n \in N} \frac{c_{ndi,t}}{z_{ni}(\omega)} (1 + \Psi_{ndi,t})^{-\frac{1}{\sigma_i - 1}}$$

즉 생산자의 생산성, 현재 단위 비용, 양국 간 무역비용,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의 미래 변화에 대한 예상까지 고려하였을 때 t 시점에 최대 이윤을 가져다주는 공급처로 선택을 하게 된다.

Eaton and Kortum(2002)와 같이 국가 s 의 중간재 생산자의 생산성 $z_{si}(\omega)$ 는 프레젯 분포(Frechet distribution)를 따른다. 이를 최적 공급자 선택 $s_{di,t}^*(\omega)$ 에 반영하면 국가 d 의 무역상이 국가 s 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nu_{sdi,t}^0(\omega) \equiv \Pr[\omega \in \Omega_{i,t}^0 : s_{di,t}^* = s] = \frac{A_{si} c_{sdi,t}^{-\theta_i} (1 + \Psi_{sdi,t})^{\frac{\theta_i}{\sigma_i - 1}}}{Y_{di,t}}$$

$Y_{di,t}$ 는 프레젯 분포의 위치 매개변수와 공통 단위 생산비용, 그리고 $\Psi_{sdi,t}(\omega)$ 로 이루어졌으며 ζ_i 가 1이 되어 $\Psi_{sdi,t}(\omega)$ 가 0이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Eaton and Kortum(2002) 형태의 무역 모형에서의 중간재 조달 비중과 같아짐을 알 수 있다.

나. 무역 흐름

이 모형에서 도출되는 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중간재에 대한 전 세계 수요를 살펴본다. 새롭게 전환된 중간재에 대한 수요와 레거시 품목에 대한 수요를 구분하여 도출한다. t 시점 국가 s 로부터 조달된 중간재 $\omega \in \Omega_{di,t}^0$ 의 비중을 $\lambda_{sdi,t}^0(\omega)$ 이라 하면 프레젠테 분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ambda_{sdi,t}^0(\omega) = \frac{A_{si} c_{sdi,t}^{-\theta_i} (1 + \Psi_{sdi,t})^{\frac{\theta_i}{\sigma_i - 1} - 1}}{\Phi_{di,t}^0} \quad [\text{식 5-12}]$$

여기서

$$\Phi_{di,t}^0(\omega) = \sum_{n \in N} A_{ni} c_{ndi,t}^{-\theta_i} (1 + \Psi_{ndi,t})^{\frac{\theta_i}{\sigma_i - 1} - 1} \quad [\text{식 5-13}]$$

이다.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 측면에서 이 모형은 Eaton and Kortum(2002)와 마찬가지로 현재 비용에 반응하며 그 탄력성은 $-\theta_i$ 이다. 조달처를 바꿀 수 있는 중간재에 대해서 무역비용에 대한 무역의 부분 균형 탄력성은 프레젠테 분포의 모양 매개변수(shape parameter)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left. \frac{\partial \ln \lambda_{sdi,t}^0}{\partial \ln \tau_{sdi,t}} \right|_{\Phi_{di,t}^0, \Psi_{sdi,t}} = -\theta_i$$

반면 미래의 단위비용 변화를 예상하고 대응하는 조달 결정은 조달처 간 가격에 불균등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 측면에서 추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시점 h 이후 무역비용이 영구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조달처를 바꿀 수 있는 중간재의 경우, 미래의 무역비용에 대한 무역의 반응은 외연적 한계 측면에서 θ_i 뿐 아니라 내연적 한계 측면에서 대체탄력성 $\sigma_i - 1$ 에 의해 결정된다.

$$\left. \frac{\partial \ln \lambda_{sdi,t}^0}{\partial \ln \tau_{sdi,t+h'}} \right|_{\Phi_{di,t}^0, c_{sdi,t}} = - [\theta_i - (\sigma_i - 1)] \left(\frac{1 - \zeta_i}{1 + r} \right)^h \frac{\Psi_{sdi,t+h}}{1 + \Psi_{sdi,t}}$$

$k > 0$ 인 $\Omega_{di,t}^k$ 에 속하는 레거시 품목은 $t - k$ 시점에 최적 조달처로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후 k 기간 동안 공급 관계가 유지된다. 수입국 d 에서 중간재 $\omega \in \Omega_{di,t}^k$ 에 대한 국가별 수입 비중은 다음과 같다.

$$\lambda_{sdi,t}^k(\omega) = \frac{\lambda_{sdi,t-k}^0(\omega) \left(\prod_{v=t-k+1}^t \widehat{c_{sdi,v}}(\omega) \right)^{-(\sigma_i-1)}}{\Phi_{di,t}^k(\omega)} \quad [\text{식 5-14}]$$

여기서

$$\Phi_{di,t}^k(\omega) = \sum_{n \in N} \lambda_{ndi,t-k}^0(\omega) \left(\prod_{v=t-k+1}^t \widehat{c_{ndi,v}}(\omega) \right)^{-(\sigma_i-1)} \quad [\text{식 5-15}]$$

이다. [식 5-12]와 [식 5-13]을 비교하면 조달 관계의 기간에 따라 단위비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역상이 t 시점에서

중간재를 최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비용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프레젠테이션 분포의 모양 매개변수 θ_i , 즉 현재와 미래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 반면 조달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연적 한계 측면에서의 조정은 발생하지 않고 내연적 한계에 따라서만 조정이 발생한다. 이는 [식 5-13]에서와 같이 대체탄력성하에서 과거 단위비용의 누적적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역비용 변화에 대한 무역의 반응은 대체탄력성 $\sigma_i - 1$ 에 의해 결정된다.

$$\left. \frac{\partial \ln \lambda_{sdi,t}^k}{\partial \ln \tau_{sdi,t}} \right|_{\Phi_{di,t}^k, \lambda_{sdi,t-k}^0} = -(\sigma_i - 1)$$

다. 시장 청산 및 균형

$t - k$ 기 전에 선택된 공급자로부터 t 시점에 구매한 레거시 중간재 집합의 부분 가격 지수는 $(P_{di,t}^k)^{-(\sigma_i - 1)} = \int_{w \in \Omega_{di,t}^0} p_{di,t}(w)^{-(\sigma_i - 1)} dw$ 를 만족한다. 최적으로 선택되는 중간재 집합의 부분 가격 지수는 다음과 같다. 집합 $\Omega_{di,t}^k$ 는 산업 i 의 상품 공간을 분할하므로 이 부분 가격 지수를 모든 $\Omega_{di,t}^k$ 에 대해 합산하면 t 시점 국가 d 의 산업 i 의 가격 지수 $(P_{di,t})^{-(\sigma_i - 1)} = \sum_k (P_{di,t}^k)^{-(\sigma_i - 1)}$ 를 얻을 수 있다.

t 시점에 최적으로 선택되는 중간재 집합의 부분 가격 지수는 다음과 같다.

$$P_{di,t}^0 = \gamma_i \left(\mu_{di,t}(0) \frac{\Phi_{di,t}^0}{Y_{di,t}} \right)^{-\frac{1}{\sigma_i - 1}} (Y_{di,t})^{-\frac{1}{\theta_i}} \quad [\text{식 5-16}]$$

여기서 $\gamma_i \equiv [\sigma_i / (\sigma_i - 1)] \Gamma([\theta_i - (\sigma_i - 1)] / \theta_i)^{-1/(\sigma_i - 1)}$ 이고, $\Phi_{di,t}^0$ 은 [식 4-13]과 같으며 $\mu_{di,t}(0)$ 는 집합 $\Omega_{di,t}^0$ 의 측도이다. $\mu_{di,t}(0)$ 는 다양성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설명한다. 이 측도는 무역상들의 최적 조달을 결정하는 확률과정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한다.

또한 $t-k$ 시점에 선택된 레거시 중간재 집합의 부분 가격 지수는 다음과 같다.

$$P_{di,t}^k = P_{di,t-k}^0 \left(\frac{\mu_{di,t}(k)}{\mu_{di,t-k}(0)} \Phi_{di,t}^k \right)^{-\frac{1}{\sigma_i - 1}} \quad [\text{식 5-17}]$$

$P_{di,t}^0$ 과 $P_{di,t}^k$ 에 대한 두 식 [식 5-16], [식 5-17]을 통해 t 시점 국가 d 의 산업 i 의 가격 지수 $P_{di,t}$ 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t 시점 국가 d 의 총지출 중 국가 s 로부터 조달하는 지출의 비중인 $\lambda_{sdi,t}$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ambda_{sdi,t} = \sum_{k=0}^{\infty} \left(\frac{P_{di,t}^k}{P_{di,t}} \right)^{-(\sigma_i - 1)} \lambda_{sdi,t}^k \quad [\text{식 5-18}]$$

이 $\lambda_{sdi,t}$ 를 통해 t 시점 세계 경제의 수요를 도출할 수 있으며 $\lambda_{sdi,t}$ 와 시장 청산 조건으로부터 일반균형을 정의할 수 있다. 국가 s 의 산업 i 에서 t 시점에 발생한 총매출을 $X_{si,t}$ 로 표기하고, 각 산업의 총매출을 무역 비중, 소비에 대한 총지출 $E_{d,t}$, 그리고 전 세계 판매액 $X_{dj,t}$ 의 함수로 표현한다.

$$X_{si,t} = \sum_{d \in N} \lambda_{sdi,t} \left[\eta_{di} E_{d,t} + \sum_j \alpha_{dij} X_{dj,t} \right] \quad [\text{식 5-19}]$$

일정 마크업 비율하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산업 i 에서는 현지 생산자

의 매출 중 $1/\sigma_i$ 만큼이 무역상의 이윤으로 귀속된다.

$$\Pi_{d,t} = \sum_i \frac{1}{\sigma_i} \left[\eta_{di} E_{d,t} + \sum_j \alpha_{dij} X_{dj,t} \right] \quad [\text{식 5-20}]$$

한 국가의 총지출은 요소 소득, 이윤 소득, 무역 적자의 합과 같으며, 이는 $E_{d,t} = w_{d,t}L_{d,t} + \Pi_{d,t} + D_{d,t}$ ($\sum_{d \in N} D_{d,t} = 0$)로 표기할 수 있다. 기존 많은 국제 무역 문헌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총무역수지는 외생적으로 취급한다. 요소시장을 청산하기 위해 임금은 [식 5-21]과 같이 각국의 총요소 소득이 모든 생산자의 요소 지출 합계와 일치하도록 하며, 상품 시장은 월라스의 법칙에 의해 시장 청산이 이루어진다.

$$w_{d,t}L_{d,t} = \sum_i \frac{1}{\sigma_i} (1 - \alpha_{di}) \frac{\sigma_i - 1}{\sigma_i} X_{di,t} \quad [\text{식 5-21}]$$

세계 무역의 정태 균형은 [식 5-18]~[식 5-21]로 구성된다. 정태 균형에서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의 쌍에 대해 임금, 중간재 단위생산비용, 중간재 가격, 최종재 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동태 균형은 임금, 중간재 단위생산비용, 중간재 가격, 최종재 가격의 경로이며 정상 상태에서 임금, 중간재 단위생산비용, 중간재 가격, 최종재 가격은 해당 기 이후 불변하게 된다.

라. 분석 방법론: 동적 정태분석(Dynamic hat algebra)

이 모형에서는 중간재의 조달 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국가 및 산업 내 상품들 사이에서 조달 전략과 가격에 이질성이 발생하지만, 동적 정태분

석을 통해 기초 상수의 변화 경로에 대한 경제의 동태적 반응을 풀어낼 수 있다. 동적 정태분석은 Caliendo, Dvorkin, and Parro(2019)에서 제안한 동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의 정태분석 방법론으로, 다음의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¹⁵⁾ 첫째, $t+1$ 기의 일시적 균형의 해는 t 기의 기초 상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둘째, 상대적 시차 형태로 쓴 순차 균형의 해는 t 기의 기초 상수의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순차 균형의 해는 기준 기초 상수(baseline fundamentals)에 의존하지 않는다.

동적 정태분석의 장점은 생산성이나 무역비용 등 외생적 모수를 추정하지 않고도 반사실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장의 분석과 같이 다국가-다산업의 경제를 상정할 때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숫자는 상당히 많으며, 이를 동시에 식별하고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적 정태분석을 통해 이러한 모수의 추정 없이도 불확실성이 없는 완전예측의 가정하에서 내생 변수들의 변화 경로를 시간 변화율 \hat{x}_t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고율의 관세를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세정책과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정책 예고 혹은 발표 이후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 세부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인상뿐 아니라 통상정책의 변동성, 협상의 불확실성 자체가 국제무역의 비용을 높이고 기업의 국제 거래를 지연 및 축소 시키는 등 국제 무역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본 장

215) 동적 정태분석 방법론이 시뮬레이션 분석에 적용되는 과정은 Caliendo, Dvorkin, and Parro(2019)를 참고할 수 있다.

에서는 관세정책을 포함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려 한다. 본 연구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관세 인상과 유사하게 무역 감소를 야기한다는 실증적 관계를 바탕으로,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관세로 환산(관세상당치)하여 그 비용을 직관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한 경제적 영향 추정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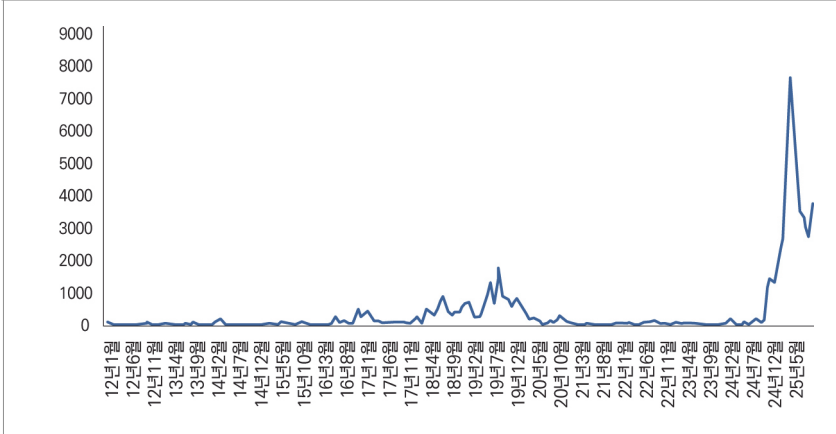
비관세 조치에 대한 무역비용 추정 등 통상정책이 얼마나 무역비용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문헌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온 바 있다. 이에 반해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무역비용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가 어려우며,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I: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를 활용하는 것이다. Baker, Bloom, and Davis는 다양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소개하면서 그중 하나로 TPUI를 제시하였다.²¹⁶⁾ Ebeke and Siminitz(2018)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의 증가가 GDP 대비 투자의 감소로 이어짐을 보였고, 조문희 외(2020)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세계 무역 및 GVC의 축소를 야기하는 것을 보이는 등 TPUI를 활용한 일련의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관세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임을 고려하여 앞장에서 사용하였던 미국 수입시장 자료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1995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에 높아졌다가 이후 안정을 찾았으나 2024년 말 이후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16) Economic Policy Uncertainty(검색일: 2025. 10. 17.).

그림 5-1.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1995. 1.~2025. 9.)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검색일:2025. 10. 1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Cadot and Gourdon(2016), Handley, Kamal, and Monarch(2025)가 제시한 방법론을 일부 변형하여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무역비용을 관세로 나타낼 경우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정하고자 한다.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아래의 중력모형을 통해 관세율과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구한다.

$$\log IMP_{i,t} = \beta_0 \log GDP_{us,t} + \beta_1 \log GDP_{i,t} + \beta_2 FTA_{i,t} + \beta_3 \log(1 + Tariff_{i,t}) + \beta_4 TU_{us,t} + \alpha_i + \epsilon_{i,t}$$

[식 5-22]

여기서 $IMP_{i,t}$ 는 미국의 t년도 i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의미하고, $GDP_{US,t}$, GDP_{it} 는 각각 미국과 수출국 i의 t년도 GDP를 의미하며, $FTA_{i,t}$ 는 미국이 t년도에 i국과 FTA를 맺으면 1 아니면 0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이다. $Tariff_{i,t}$ 는 미국의 t년도 i국에 대한 평균관세율, $TU_{US,t}$ 는 t년도 미국의 평균 무역 불

확실성 지수이며 α_i 는 i 국 고정효과이고, $\epsilon_{i,t}$ 는 오차항이다. 추정법으로는 상기 형태의 로그 선형모형과 함께 포아송 모형을 이용하였다. 상기 추정식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무역비용을 관세상당치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한다.²¹⁷⁾ 우선 상기 추정식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아래의 등식을 도출할 수 있다.

$$\log \widehat{IMP}_{i,t} = \hat{\beta}_0 \log GDP_{us,t} + \hat{\beta}_1 \log GDP_{i,t} + \hat{\beta}_2 FTA_{i,t} + \hat{\beta}_3 \log(1 + Tariff_{i,t}) + \hat{\beta}_4 TU_{us,t} + \hat{\alpha}_i$$

[식 5-23]

상기 등식을 토대로 우선 ①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설명변수가 특정 값 TU_{ave} ²¹⁸⁾인 경우와 0을 가진 경우를 가정하여 첫 번째 교역의 예측 편차를 구하고, 이어서 ② 관세가 특정 양(+)의 값을 갖는 경우($Tariff_{i,t} > 0$)와 관세가 0(영)인 경우를 가정하여 두 번째 교역의 예측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상기 두 가지 예측 편차는 아래와 같다.

$$\log \widehat{IMP}_{i,t}(TU = TU_{ave}) - \log \widehat{IMP}_{i,t}(TU = 0) = \hat{\beta}_4 TU_{ave}$$

$$\log \widehat{IMP}_{i,t}(Tariff > 0) - \log \widehat{IMP}_{i,t}(Tariff = 0) = \hat{\beta}_3 \log(1 + Tariff_{i,t})$$

상기 식의 좌변을 등식으로 연결하면,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변할 때 발생하는 무역 감소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관세 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17) 자세한 설명은 Cadot and Gourdon(2016), Handley, Kamal, and Monarch(2025), 조문희 외(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218) 본 연구에서 TU_{ave} 는 미국의 20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값(=4149.625)을 사용한다.

$$Tariff_{ave} = \exp\left(\frac{\hat{\beta}_4 TU_{ave}}{\hat{\beta}_3}\right) - 1 \quad [\text{식 5-24}]$$

본 절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기간은 1995년부터 2021년²¹⁹⁾으로 설정하였으며 무역 자료는 UN Comtrade, 관세자료는 Teti(2024), GDP는 World Bank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FTA는 CEPII,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웹사이트에서 각각 추출하였다. 기초통계량은 [표 5-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로그 선형모형과 포아송 모형을 바탕으로 추정한 분석 결과는 [표 5-2]와 같다. 본 연구의 관심 설명변수인 관세율 변수와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관세율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로그 선형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계수 추정치는 포아송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1.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og(수입액)	5,419	19.22687	3.49868	2.995732	27.05691
log(수출국 GDP)	4,855	16.84661	2.399661	9.420212	23.59875
log(미국 GDP)	5,419	23.35832	0.308786	22.75981	23.85859
FTA 더미	5,202	0.064591	0.245826	0	1
log(관세율)	5,419	0.0221	0.013754	0	0.052176
TU(무역정책불확실성 지수)	5,419	115.3878	159.6656	28.73999	797.1224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Teti(2024);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5. 8. 7.); CEPII(검색일: 2025. 8. 26.); Economic Policy Uncertainty(검색일: 2025. 10. 1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9) Teti(2024)는 기존 관세율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 관세율 자료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표 5-2. 무역 불확실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로그 선형모형	포아송 모형
	(1)	(2)
log(미국 GDP)	0.0031969 (0.2421631)	0.4170464* (0.2131906)
log(수출국 GDP)	0.5729673*** (0.1256873)	0.4760729*** (0.0737438)
FTA 더미	0.0388092 (0.1888516)	-0.3125618* (0.160512)
log(관세율)	-10.8488* (5.988849)	-10.37123 (7.153179)
TU(무역정책불확실성 지수)	-0.0001209 (0.0001029)	-0.000108* (0.00006)
수출국 고정효과	0	0
관측치 수	4,855	4,855
R-squared	0.9334	.

주: 1) ()는 강건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의 20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값 TU_{ave} (= 4149.625) 만큼 변할 때의 무역비용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증가세 관세율을 상기 두 가지 모형에서 구하면 로그 선형모형 기준으로는 약 4.73% 이고 포아송 모형 기준으로는 약 4.42%로 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 상한 적용 시 로그 선형모형 기준에서는 약 14.98%이며 포아송 모형 기준으로는 약 11.29%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산출식은 [표 5-3]과 같다. 상기 추정값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관세장벽 확대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무역 불확실성 비용의 추정값으로 관세상당치 5%를 사용한다.

표 5-3. 무역 불확실성의 관세상당치

로그 선형모형	포아송 모형
$4.73\% \approx \left(\exp\left(\frac{0.0001209 \times 4149.625}{10.8488}\right) - 1 \right) \times 100$	$4.42\% \approx \left(\exp\left(\frac{0.000108 \times 4149.625}{10.37123}\right) - 1 \right) \times 100$

자료: 저자 작성.

4.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

가. 분석 시나리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관세장벽 확대의 대부분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주요한 관세정책은 IEEPA와 제232조라 할 수 있다. IEEPA를 통한 추가 관세로는 국경 보안과 펜타닐 문제를 명목으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상호관세가 있다. 펜타닐 관세는 현재 대중 20%, 대캐나다 35%가 부과되고 있으며, 멕시코에 대해서는 30% 부과를 발표했으나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는 현재 유예된 상황으로, 향후 합의 과정을 통해 관세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국별 관세율이 7월 31일 상당 부분 수정되었으며 7월 31일을 전후로 영국, EU,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은 합의를 통해 추가 조정이 이루어졌다. 8월 27일 기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표 5-5]에 수록하였다. 한국과는 2025년 8월 7일 기존 25%에서 15%로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한 후 10월 29일 공식적으로 타결을 선언하였다.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34%로 발표되었으나 2025년 11월 10일까지 10%로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232조를 통한 관세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목재·제재목 및 파생제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든 면세 조치가 종료되고 50%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파생제품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USMCA에 따른 특혜 대우 기준을 제외하고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구리에는 50%의 관세가 부과 중이다. 영국과 EU, 일본 등 일부 국가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할 것을 제외하면, 미국은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 대해 제232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향후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으며, 9월 25일에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도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다.

관세장벽 확대의 대부분을 야기하는 것은 미국이지만,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이와 흡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10월 7일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쿼터를 기존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약 47% 축소하고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예고하였다. 이는 기존에 시행 중이었던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말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IEEPA와 제232조를 통해 현재 각국에 부과 중인 관세 정책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아(시나리오 1) 기존에 예고된 관세정책들이 향후 시행될 상황을 시나리오화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IEEPA를 통한 관세정책 시행이 유예 중인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여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가별로 변화할 때의 상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각각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 협상 중인 중국과 멕시코가 미국과의 합의가 불발되어 관세가 인상되는 상황을 상정한다(시나리오 2). 그리고 현재 제232조 관련 조사가 시행 중인 품목 중 일부

표 5-4. 분석 시나리오 개요

시나리오 1	현재 부과 중인 관세정책
시나리오 2	미국의 국별 관세정책의 변화(IEEPA)
시나리오 3	미국의 품목별 관세정책의 변화(232조)
시나리오 4	EU의 품목별 관세정책의 변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2~4 종합
시나리오 X-2	미국의 대한민국 관세정책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여 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될 때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제232조 관련 조사가 시행 중인 품목 중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가정한다(시나리오 3). 미국 외 국가에서도 관세장벽을 높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EU의 철강 관세 부과를 통해서 분석을 실시한다(시나리오 4).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간 관세율이 합의되기 전의 관세율인 25%가 유지되는 상황도 반사실적으로 분석해보며 한미 간 관세 합의의 경제적 의미도 파악해본다(시나리오 X-2).

나. 데이터

본 장의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ADB MRIO 데이터이다. ADB MRIO는 2000년과 2007~24년 63개국 35개 산업을 포함한다. 분석 과정 및 해석의 편의를 위해 ADB MRIO 내 63개국을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대만, 베트남, 인도, 기타 세계의 11개로 재분류하였다. 산업분류는 따로 조정하지 않고 ADB MRIO의 35개 산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5-5. 국가별 상호관세율

국가	관세율(%)	국가	관세율(%)	국가	관세율(%)	국가	관세율(%)	국가	관세율(%)	국가	관세율(%)	국가	관세율(%)
아프가니스탄	15	몽고민주공화국	15	요르단	15	나우루	15	시리아	15	튀르키예	15	튀르키예	15
알제리	30	에콰도르	15	키자흐스탄	25	뉴질랜드	15	대만	20	우간다	15	우간다	15
앙골라	15	적도기니	15	라오스	40	니카라과	18	태국	19	영국	10	영국	10
방글라데시	20	EU	15	레소토	15	나이지리아	15	트리니다드 토바고	15	비누아투	15	비누아투	15
볼리비아	15	포클랜드제도	10	리비아	30	북마케도니아	15	트리니다드 토바고	15	베네수엘라	15	베네수엘라	1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피지	15	리히텐슈타인	15	노르웨이	15	튀니지	25	베트남	20	베트남	20
보츠와나	15	가나	15	마다가스카르	15	파키스탄	19	튀니지	25	잠비아	15	잠비아	15
브라질	50	가이아나	15	말라위	15	파푸아뉴기니	15	튀니지	25	짐바브웨	15	짐바브웨	15
브루나이	25	아이슬란드	15	말레이시아	19	필리핀	19	튀니지	25	짐바브웨	15	짐바브웨	15
캄보디아	19	인도	50	모리셔스	15	세르비아	35	튀니지	25	짐바브웨	15	짐바브웨	15
카메룬	15	인도네시아	19	몰도바	25	남아공	30	튀니지	25	짐바브웨	15	짐바브웨	15
차드	15	이라크	35	모잠비크	15	한국	15	튀니지	25	짐바브웨	15	짐바브웨	15
코스타리카	15	이스라엘	15	미얀마	40	스리랑카	20	튀니지	25	짐바브웨	15	짐바브웨	15
코트디부아르	15	일본	15	나미비아	15	스위스	39	튀니지	25	짐바브웨	15	짐바브웨	15

자료: The White House(2025),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검색일: 2025. 8. 27).

표 5-6. 분석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1	2-1	3-1	4-1	5-1	1-2	2-2	3-2	4-2	5-2
대한국 상호관세(IEEPA)			15%					25%		
자동차 및 부품(제232조)					25%					
철강 및 알루미늄(제232조)					50%					
구리(제232조)					50%					
상호관세(IEEPA)						8/27 기준				
팬타닐 관세(IEEPA)						캐(35%) 맥(0%) 중(20%)				
대멕시코 팬타닐 관세 인상 및 멕시코 보복관세	X	미(30%) 맥(30%)	X	X	미(30%) 맥(30%)	X	미(30%) 맥(30%)	X	X	미(30%) 맥(30%)
대중국 상호관세 인상 및 중국 보복관세(IEEPA)	X	미(34%) 중(30%)	X	X	미(34%) 중(30%)	X	미(34%) 중(30%)	X	X	미(34%) 중(30%)
반도체 및 의약품(제232조)		X	100%	X	100%	X	X	100%	X	100%
EU의 대세계 철강 관세		X			쿼터 축소 및 50%		X		쿼터 축소 및 50%	

주: 1)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예외: EU(15%), 일본(15%).

2) 상호관세에서 기타 세계는 2024년 각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용.

자료: 저자 작성.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서는 앞 소절에서 소개한 이론 모형에 파라미터 값을 부여하고 기준 연도에 속한 변수값을 반영해야 한다. 모형에 부여해야 하는 파라미터는 장기 무역탄력성(θ), 단기 무역탄력성(σ), 공급자의 매기 조정률(ζ)이며, 이 파라미터 값은 Chen *et al.*(2025)의 추정 결과치인 $\theta = 3.24$, $\sigma = 1.35$, $\zeta = 0.1$ 을 사용한다. 기준 연도인 2024년 ADB MRIO 데이터를 통해 각 투입물별 생산자 지출 비중(α_{sij} 및 α_{sj}), 상대국별 수입 비중(λ_{sdi}), 양자 무역액(X_{sdi}), 각 산업별 가계 지출 비중(η_{di}) 등을 구하고, 모형의 초기 균형으로부터 총임금($w_s L_s$)과 총이윤(Π_{si}), 그리고 수지(D_{di})를 도출한다.

5.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모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현재 관세정책 및 향후 예상되는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수입재 조달 과정에서의 마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세 변화가 유발하는 무역과 가격의 변화를 도출하고, 실질임금의 변화를 후생 변화로 간주하여 이를 구한다.

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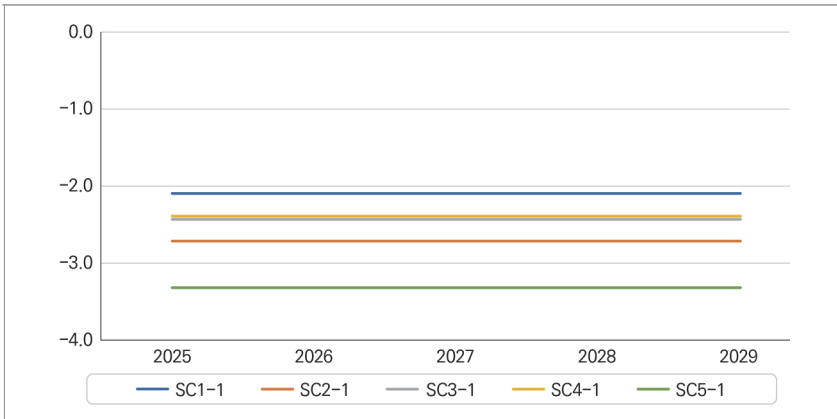
[그림 5-2]는 관세를 포함한 기준으로 산업 전체에 걸쳐 집계된 수입의 반사 실적(counterfactual) 반응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1-1에서는 전 세계 무역의 약 2.1%가 감소하며 시나리오 5-1에서는 약 3.3% 감소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연도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감소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후술할 양자 간 무역 변화와는 대조되는 특징이다. 전 세계 무역의 감소는

시나리오 3과 4보다는 시나리오 2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 품목에 대한 고관세 등의 효과보다는 전 세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역이 가장 위축됨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 관세장벽의 확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미국의 수입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세장벽 확대 이후 미국의 총수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나리오 1에서 미국의 수입은 2029년에 약 7.4% 감소하며 시나리오 5에서는 약 13.8%까지 감소한다.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에 대한 관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에 비해 미국 수입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5-2.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전 세계 교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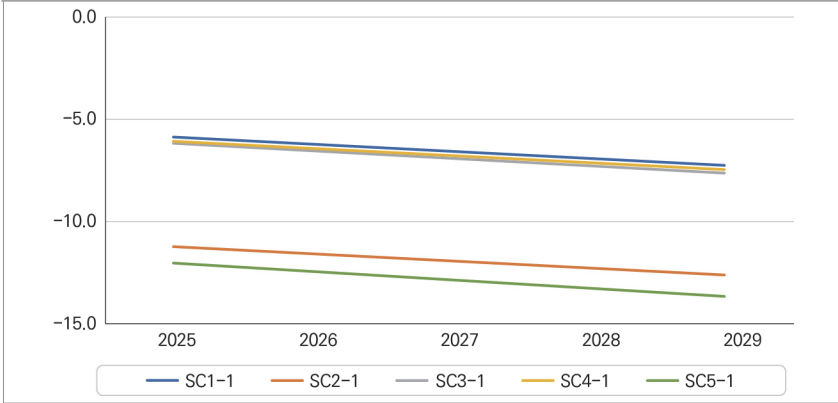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미국의 수입 변화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의 수입 변화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중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대인도 수입 역시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입은 시나리오 1에서는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결렬되어 상호관세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는 50% 이상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시나리오에 따라 약 14~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요국 중 대미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국가는 EU와 일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국가들은 지난 7월 미국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미국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상대가격을 바탕으로 관세장벽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로 가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현재의 15%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는 대미 수출이 시나리오에 따라 장기적으로 약 1.2~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일본 등 미국 시장 내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동시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비해 상대가격이 유리하게 변하며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에서 나타나는 시간

표 5-7.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미국의 국별 수입 변화

(단위: %)

<대한국 관세 15%>

연도	2025					2029				
	1-1	2-1	3-1	4-1	5-1	1-1	2-1	3-1	4-1	5-1
시나리오										
한국	1.57	2.96	0.14	1.79	1.67	3.09	5.62	1.18	3.41	3.94
중국	-34.85	-53.84	-32.45	-34.77	-51.84	-38.65	-58.59	-36.05	-38.51	-56.44
EU	4.84	4.06	1.58	2.47	-1.28	5.88	5.89	2.15	3.16	-0.23
캐나다	-0.75	-2.30	-0.42	-0.48	-1.66	-4.17	-5.40	-4.18	-3.89	-5.08
멕시코	-0.44	-9.87	0.54	-0.46	-8.82	-2.54	-12.09	-1.38	-2.53	-10.76
일본	2.80	2.16	3.25	2.73	2.71	4.24	4.33	4.70	4.25	5.07
대만	-1.13	1.30	-8.24	-0.16	-5.32	-0.22	3.69	-9.11	0.90	-4.82
베트남	-1.08	4.88	0.11	-0.67	6.78	0.02	8.37	1.20	0.48	10.50
인도	-14.09	-15.66	-18.66	-14.00	-19.90	-16.74	-18.18	-21.92	-16.58	-22.92
기타 세계	1.42	0.21	-0.75	1.64	-1.81	0.84	0.13	-1.96	1.13	-2.53
전체	-5.97	-11.27	-6.70	-6.23	-12.30	-7.35	-12.44	-8.35	-7.62	-13.77

<대한국 관세 25%>

연도	2025					2029				
	1-2	2-2	3-2	4-2	5-2	1-2	2-2	3-2	4-2	5-2
시나리오										
한국	-6.14	-5.05	-7.07	-5.93	-5.82	-6.32	-4.30	-7.54	-6.02	-5.29
중국	-34.63	-53.66	-32.24	-34.55	-51.67	-38.42	-58.41	-35.83	-38.27	-56.26
EU	5.03	4.27	1.76	2.66	-1.09	6.10	6.15	2.36	3.37	0.01
캐나다	-0.69	-2.23	-0.36	-0.41	-1.59	-4.10	-5.33	-4.11	-3.82	-5.00
멕시코	-0.37	-9.79	0.61	-0.39	-8.75	-2.43	-11.97	-1.28	-2.42	-10.65
일본	3.10	2.48	3.53	3.03	3.02	4.59	4.72	5.03	4.60	5.45
대만	-0.79	1.70	-7.97	0.19	-4.99	0.21	4.22	-8.78	1.34	-4.41
베트남	-0.88	5.13	0.30	-0.47	7.01	0.29	8.71	1.45	0.75	10.82
인도	-13.99	-15.56	-18.57	-13.91	-19.80	-16.65	-18.07	-21.84	-16.48	-22.82
기타 세계	1.56	0.36	-0.63	1.78	-1.67	1.00	0.31	-1.83	1.28	-2.37
전체	-6.03	-11.33	-6.76	-6.29	-12.36	-7.42	-12.52	-8.43	-7.70	-1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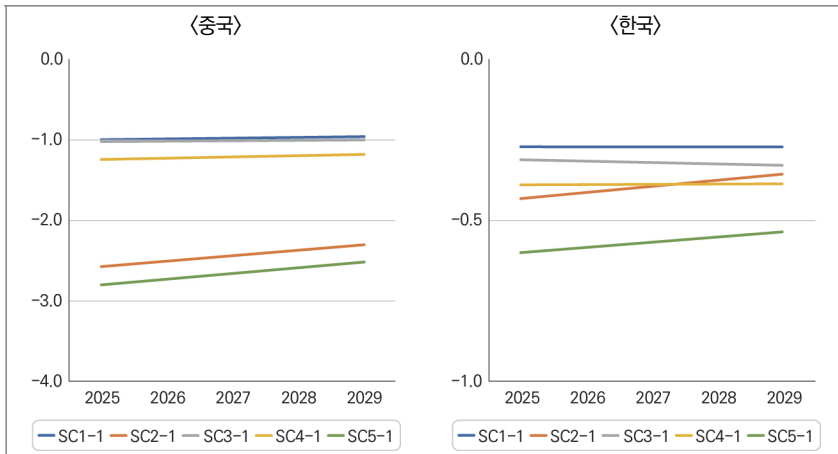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에 따른 무역효과의 변화 양상은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5와 같이 중국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수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에 무역탄력성이 증가하면서 공급자 간 대체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한국으로 전환되며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25% 관세를 계속 부과받았다면 대미 수출이 시나리오에 따라 장기적으로 약 4.3~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율과의 상대적인 크기, 전체 경제의 무역의존도 및 대미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준의 대미 수출 감소가 예측된다. 특히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제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다음으로 관세 장벽 확대 이후 중국과 한국의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은 초기에 소폭 감소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그림 5-4.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중국 및 한국의 수출 변화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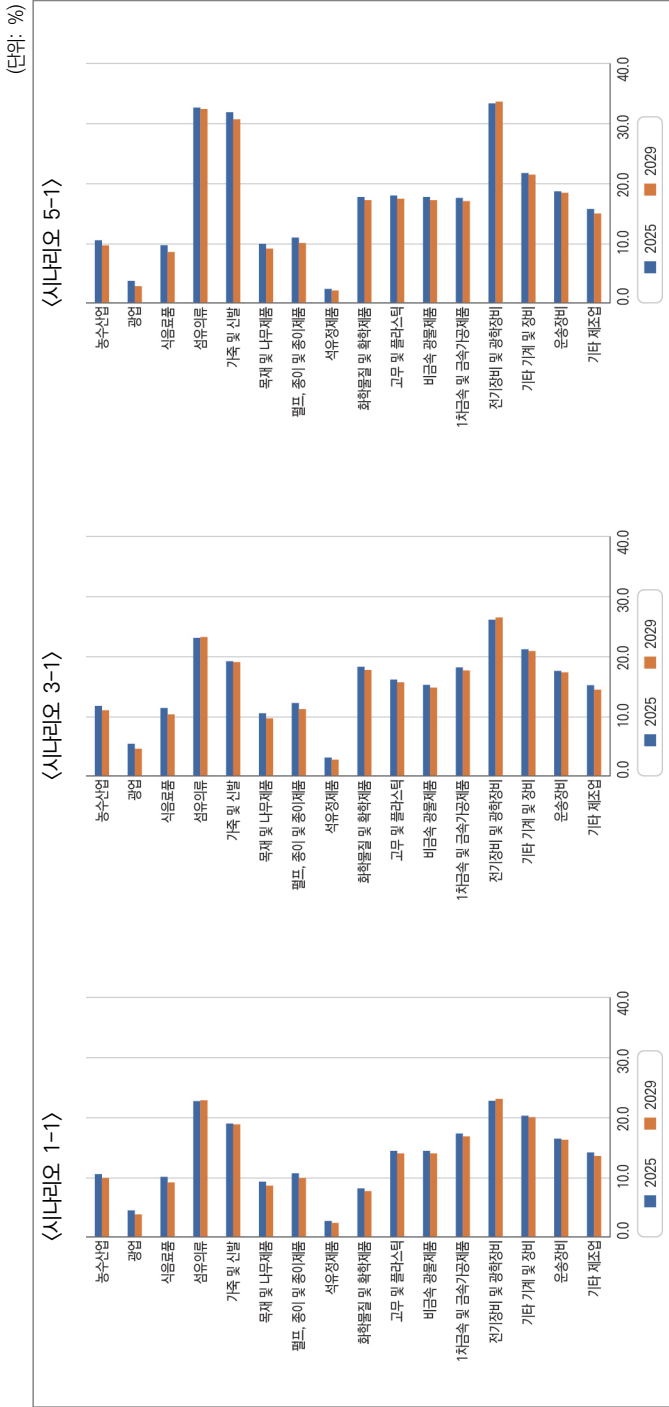
난다. 시나리오 1에서 중국의 수출은 2029년에 약 1% 감소하며 시나리오 5에서는 2.5%가량 감소한다. 한국은 관세장벽 확대 이후 미미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장기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은 시나리오 1에서 약 0.3%, 시나리오 5에서 약 0.5% 감소한다.

중국과 한국은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지만 제3국으로의 수출이 상당 수준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관세장벽 확대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현재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약 30% 감소하며 향후 협상이 결렬되어 관세가 인상된다면 약 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제3국으로의 수출로 상쇄되는데, 특히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는 미국 수출의 일부가 다른 국가로 전환되는 결과인 동시에 제3국으로 우회하여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는 장기로 가면서 중국 이외의 공급자로 조정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대중 수입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가격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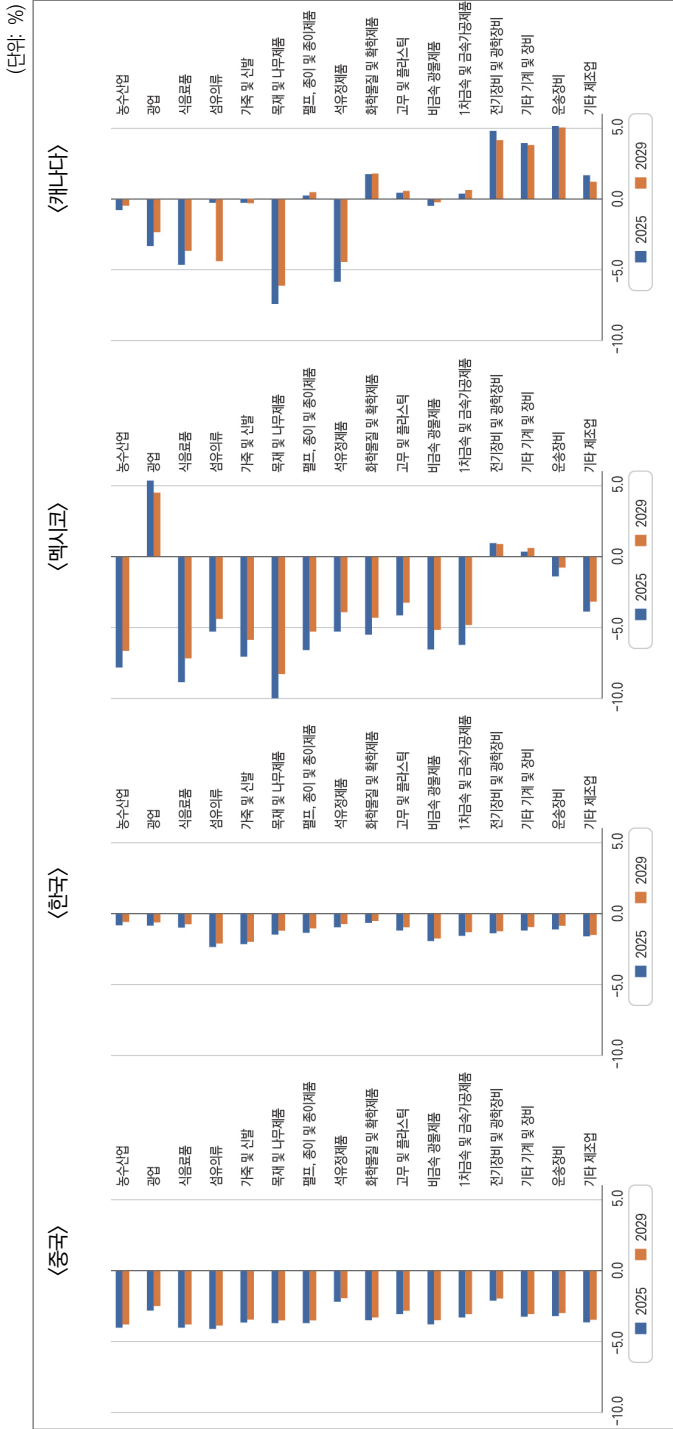
[그림 5-5]는 관세장벽 확대가 중국과 미국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무역비용이 상승하자 전 산업에 걸쳐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시나리오 1에서는 산업별로 약 2~23% 상승하였고, 시나리오 5에서는 약 3~33% 상승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관세 인상이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pass-through)되었다는 실증 연구 결과와 질적으로 일치한다.

그림 5-5.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미국의 가격 변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6.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가격 변화(시나리오 1-1)



자료: 저자 작성.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 및 의류, 가죽 및 신발,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기타 기계 장비 등의 산업에서 높은 가격 상승이 예측되었다. 미국의 수입의존도와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232조를 통해 반도체 및 의약품 산업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산업에서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반도체 및 의약품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산업들에서 각각 8%, 23%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는데, 관세 부과 시에는 각각 18%, 26%가량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와 장기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전자장비 및 광학장비 산업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단기에 가격 상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 조정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조달처에 대한 결정이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격은 부분적으로 하락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관세장벽 확대가 미국 외 국가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수요가 줄면서 수출 물량 일부가 국내시장으로 전환되어 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내수 가격 하방 압력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장의 기본 시나리오 1-1에서는 보복관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 국가에서는 수입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복관세 및 EU의 철강 관세를 상정한 시나리오에서는 멕시코, EU의 상당수 산업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국의 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가격 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 효과 측면에서 미국 외 국가 중 가장 이질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국가는 캐나다였다. 캐나다의 다수 산업에서 미국 관세장벽 확대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기타 기계 장비, 운송장비 산업

에서 약 5% 수준의 가격 상승이 예측되었다. 이 산업들에서 캐나다의 생산은 미국과 역내 RoO 등 공급망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 미국산 중간재의 비용 상승이 국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캐나다의 주요 대미 수출 산업인 목재 산업에서는 약 7%의 가격 하락이 예측되는 것과 대조된다.

다. 후생에 미치는 효과²²⁰⁾

[그림 5-7]은 관세장벽 확대 이후 각국의 실질임금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현재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약 1% 감소한다. 중국, 멕시코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품목별 관세도 추가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현재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시간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 약 1.2% 감소한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 2%까지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중 간 무역전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인 약 0.2% 감소에 비해 5~10배 큰 수준이다.

앞 소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미국은 관세 부과 이후 전 산업에 걸쳐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데, 이를 비추어볼 때 미국은 명목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하지만 물가가 이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실질임금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관세장벽 확대 이후 모든 상황에서 물가가 하락하는데, 명목임금이 이보다 더 감소하면서 실질임금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현재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단기적으로 약 0.3%, 장기적으로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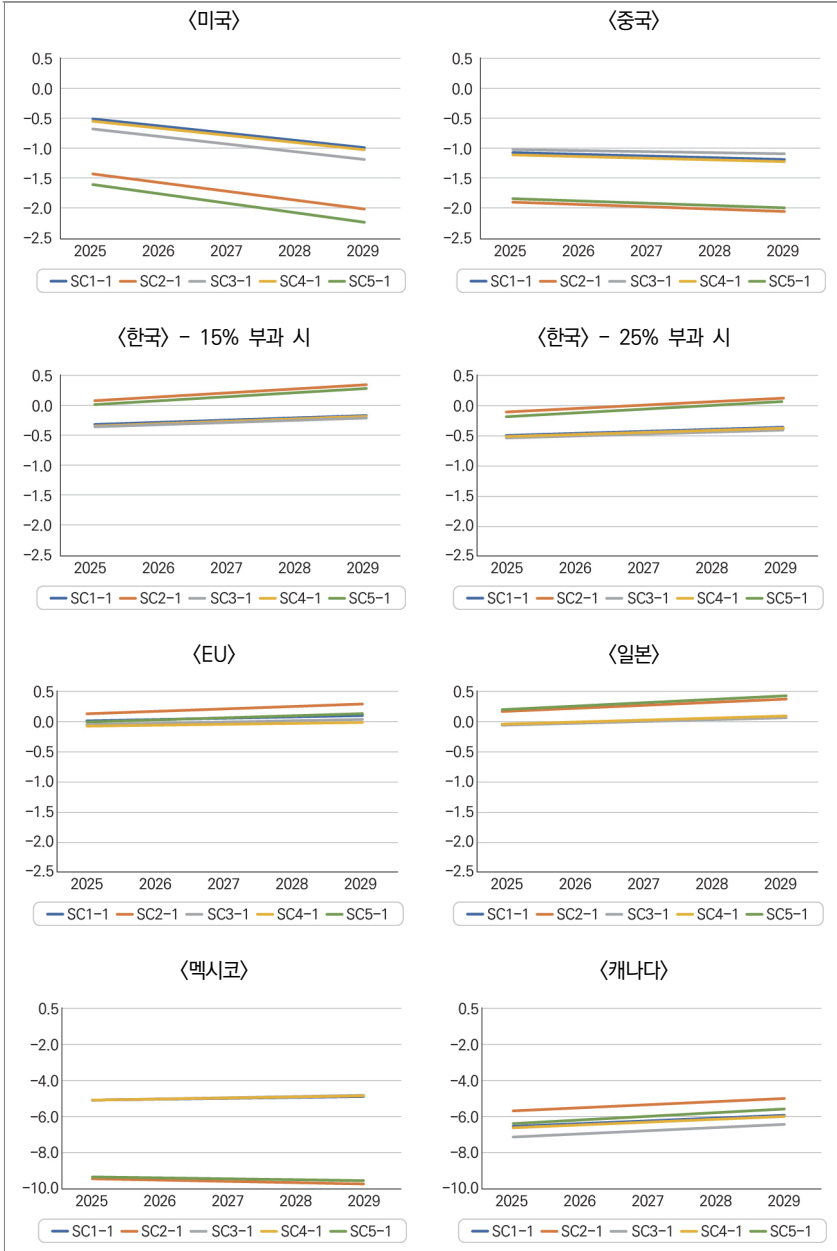
220) 본 장의 분석에서는 실질임금의 변화를 통해 후생의 변화를 파악한다. Chen *et al.*(2025)의 명제 4는 본 모형에서의 실질임금 변화가 후생 변화의 충분통계량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rkolakis *et al.*(2012)와 Chen *et al.*(2025)를 참고하기 바란다.

0.2%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이러한 실질임금의 감소는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완화된다. 시나리오 2-1과 시나리오 5-1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임금에 거의 변동이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약 0.3% 실질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 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실질임금은 단기적으로 약 0.5%, 장기적으로 약 0.4% 감소하면서 실질임금의 감소 폭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EU와 일본은 분석 대상국 중 실질임금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0.1%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0.3% 이상의 증가가 예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의 경쟁국들에 비해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얻은 상대가격의 이득으로 말미암아 관세장벽 확대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실질임금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의 품목에서 USMCA를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공급망의 긴밀성 등이 절대적으로 높은 북미 국가들은 후생 측면에서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장기에 비해 단기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대중 수입을 대체하게 되면서 무역 전환으로 인한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커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게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후생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모형을 통한 본 장의 분석에 의하면 각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에게 부과받는 관세 수준의 영향 못지 않게 중국이 미국에게 부과받는 관세 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대중 관세 수준에 따라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

그림 5-7.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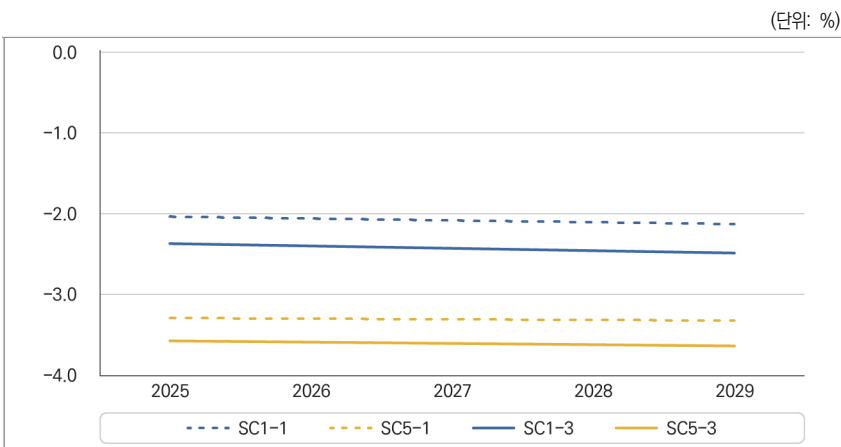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라. 관세정책 불확실성의 영향

본 소절에서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관세정책의 시행 여부, 시기, 세부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국제무역의 비용을 높이고 기업의 국제 거래를 지연 및 축소시켜 국제 무역을 저해하는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앞서 추정한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무역비용을 관세로 나타낼 때 약 5% 수준으로 추정되나, 미국의 대세계 무역비용이 5% 상승하는 것을 정책 충격으로 삼아 본 장의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본 소절에서는 상기한 시나리오하에서 미국의 대세계 무역비용에 5%를 가산하는 시나리오를 X-3로 표기한다.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비용이 상승하면 전 세계 무역은 약 2.4% 감소하며, 시나리오 5-1에서는 약 3.6% 감소한다.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시나리오인 1-3, 5-3과 비교하면 관세정책의 불확실

그림 5-8.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 세계 교역 변화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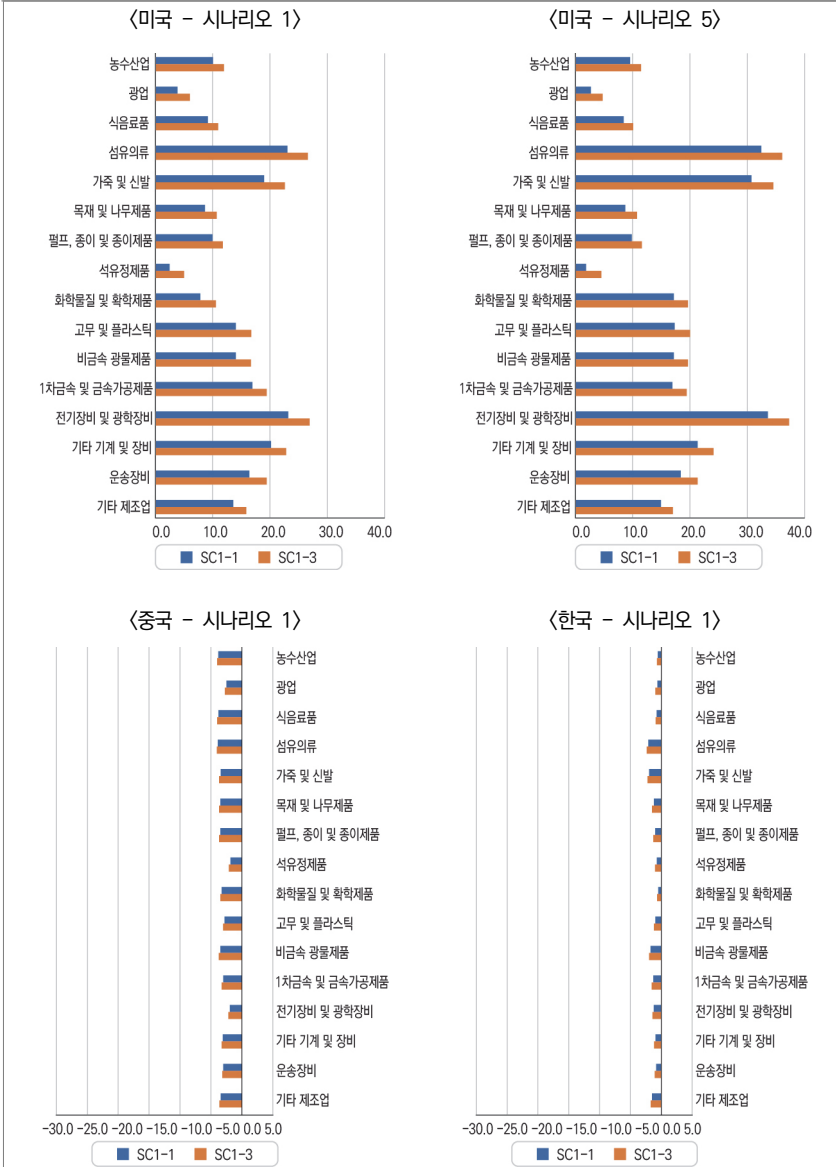
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약 0.3~0.4% 정도 추가적인 감소가 예측되며 전 세계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3]에서 보듯이 주요국의 교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모두 줄어들며 특히 미국의 수입은 시나리오에 따라 기존 7.4~13.9%에서 8.8~15.0%로 감소 폭이 더욱 커진다.

[그림 5-9]는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고려 여부에 따라 미국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관세장벽 확대는 전 산업에 걸쳐 가격 상승을 야기하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가격 상승을 더욱 증폭시킨다.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산업별로 약 3~23%, 시나리오 5에서는 약 3~33% 상승하였고,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는 경우 상승 폭이 시나리오 1에서는 약 5~27%, 시나리오 5에서는 약 5~37%까지 증가한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가격의 하락 폭이 더욱 커진다. 이는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더욱 줄면서 이 중 일부가 국내시장으로 전환되는 공급량이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10]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각국의 실질임금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1%, 시나리오 5에서는 2.2% 감소하였던 것이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각각 1.3%, 2.4%까지 감소한다. 중국의 경우 현재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시간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 약 1.2%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실질임금 감소 폭이 오히려 작아지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불확실성에 노출되면서 대미 무역비용이 동일하게 상승하게 되면, 고율의 관세로 인해 상대가격에서 불리함을 안고 있던 중국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5-9.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요국의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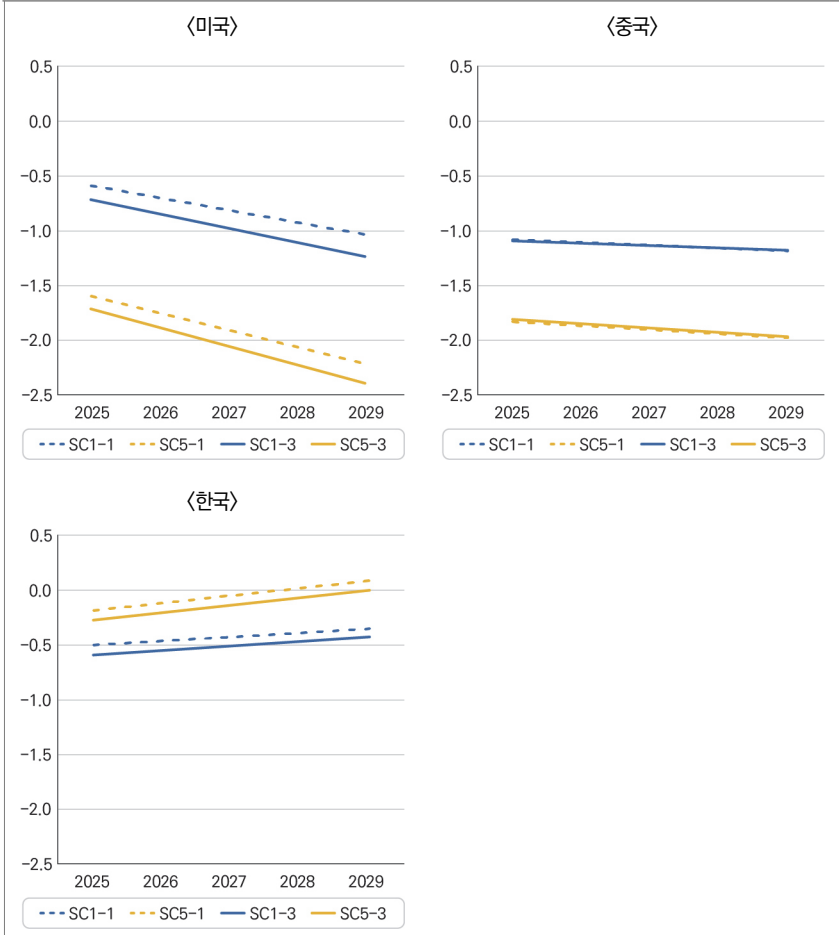
(단위: %)



주: 각 시나리오의 가격 변화는 기준 연도 대비 2029년까지의 누적 변화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0.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요국의 후생 변화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미 관세정책에 빈번한 변화가 발생하며 정책 시행의 여부, 시기, 세부 내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소결

본 장은 리카르도식 다국가-다산업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관세장벽의 확산이 무역과 가격,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으며 특히 단기와 장기 무역 탄력성의 차이를 조달적 마찰을 통해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관세장벽 확대의 경제적 영향은 먼저, 관세로 인해 단기에 큰 가격 상승과 무역 위축이 유발되고, 장기에는 공급자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무역과 실질임금의 손실이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점이다. 관세장벽의 확산이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광범위한 IEEPA 및 제232조 관세로 인해 산업별로 가격이 3~33% 이상 상승하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등 전형적인 보호무역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나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과 우회 효과로 총수출의 감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내수 물가 하락과 명목임금 감소가 겹치면서 후생은 감소한다. 한국은 대미 수출 감소와 후생의 하락이 나타나나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으며, 미-중/미-멕시코 간 추후 협상 결과 등 상대가격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장기 충격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존재한다. EU와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부과 등에 힘입어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장기에는 후생이 소폭 개선되는 등 무역 전환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발견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높은 수준의 북미 공급망과 중간재 의존도로 인해 여러 산업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례적 결과가 발견되었고 이는 강력한 역내 가치사슬을 통해 관세의 영향이 강하게 파급됨을 시사한다. 또한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무역비용을 상승시킬 경우 전 세계 무역의 위축과 인플레이션, 후생의 감소 등을 추가적으로 증폭시킴을 확인하였다.

제6장

K

PM

결론

1. 한국의 과거 대응
2.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과거 대응을 정리하고(트럼프 1기·바이든 정부), 향후 관세장벽의 상시화·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대미·대중 ‘이중 리스크’ 관리, ②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③ 우회 수출 차단과 원산지 관리·무역구제 활용, ④ 피해기업 지원 확대, ⑤ 산업정책-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⑥ 미 국내법·FTA·WTO 등 법·외교 채널의 활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한국의 과거 대응

한국은 주요국의 전략적 관세정책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이다.²²¹⁾ 특히 산업 구조상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이 고스란히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그간 한국은 관세 조치의 성격과 정책 목적을 파악하고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해왔다. 본 절에서는 관세장벽 전망과 대응 방향 제시에 앞서 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재부상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및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우리 정부 및 산업계의 주요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우리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외적 협상

221) 한국의 대외개방도(Trade/GDP)는 2023년 기준 87.9%로 세계 평균 58.4%, OECD 평균 58.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5. 8. 7.).

및 외교적 노력과 함께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 대미 무역흑자 축소, 업계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 한국정부는 미국 방문은 물론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해 해당 조치에서 한국산을 제외할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²²²⁾ 조치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관련 협의를 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였다.²²³⁾

같은 근거법에 의거하여 미국 상무부가 착수한 수입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²²⁴⁾ 한국은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의 상호호혜적 성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232조 조치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의견서는 민관 특별팀(TF)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는데, 이는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무역적자 상위 국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 전략을 병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적자 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하였으며,²²⁵⁾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다.²²⁶⁾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등)에 대한 수입 확대를 통해 교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를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였다. 협상 측면에서도 정부는 품

2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8. 3. 6.).

22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8. 3. 9.).

22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8. 6. 29.).

225) Presidential Documents, Executive Order 13786 of March 31, 2017,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2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7. 6. 20.).

특별 면제 및 쿼터 조정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USTR, 상무부 등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지 생산 확대를 고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3억 8,0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세탁기 공장을 건설하였다. LG전자 역시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2억 5,000만 달러를 들여 세탁기 공장을 지었다.²²⁷⁾ 현대차그룹은 2021년까지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투자금액은 5년 전에 비해 10억 달러가량 늘어난 것이다.²²⁸⁾ 이와 더불어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 가동률을 높였고, 현지 전략 차종(Santa Fe, Sonata 등)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며 대미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²²⁹⁾

NAFTA를 대체하는 USMCA가 체결되면서 한국기업들은 멕시코와 같은 니어쇼어링 거점에서의 생산 확대를 통해 해당 협정의 관세 면제 혜택을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CJ 등이 멕시코 현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으며 신규 투자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의 TV 생산량을 늘렸고 LG전자는 몬테레이 공장의 냉장고 생산라인을 증설하였다.²³⁰⁾ 기아차는 멕시코 소형세단 생산기지 확보와 현지 SUV 라인업 구축으로 미국 시장 판매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²³¹⁾

한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의 철강 관세(25%) 대신 연간 수출 쿼터를 수용하고 고장력 강판(high tensile steel)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고장력 강판은 자동차 차체의 강성(強性)과 안전성을 높이고 무게를 줄이는 차세대 철강 소재이다.²³²⁾

227) 「미국에 세탁기 공장 삼성·LG 철광관세에 삼중고 비상」(2018. 3. 6.)(검색일: 2025. 7. 3.).

228) 「트럼프 압박을 어찌할꼬...삼성·현대차·LG 딜레마」(2017. 2. 3.)(검색일: 2025. 7. 3.).

229) 「Hyundai's Alabama manufacturing plant registers production gain in 2019」(2020. 1. 2.)(검색일: 2025. 7. 3.).

230) 「美 니어쇼어링 최대 수혜국 멕시코... 중남미 수출 교두보」(2025. 6. 24.)(검색일: 2025. 7. 3.).

231) 「기아차, 멕시코 소형 세단 생산기지 확보 + 미국 SUV 라인업 구축」(2018. 9. 6.)(검색일: 2025. 7. 3.).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는 결과적으로 한국 상품에 직접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즉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아세안(특히 베트남)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2001~10년 기간과 2011~19년 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의 해외 신설 법인 중 중국의 비중은 64.6%에서 28.4%로 급감한 반면, 아세안 비중은 13.5%에서 37.7%로 크게 증가하였다.²³³⁾ 2020년 삼성전자는 중국 후이저우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였으며,²³⁴⁾ LG전자는 TV 조립라인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²³⁵⁾

나. 바이든 행정부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받지 않은바 정부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직접 관세보다는 차별적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보호주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사후적 방어 대신 사전적이고 구조적인 적응 전략을 취하였다. 즉 정부는 미국에게 해당 법의 개정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지침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이 제시한 혜택을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신설하였다.²³⁶⁾ 분석센터의 조직은 종합전략실,

232) 「갈수록 버티기 버거운 산업의 짙」(2028. 12. 8.)(검색일: 2025. 7. 3.).

233) 「韓 제조업 생산기지, 베트남 등 아세안 이전 현상 심화」(2019. 11. 24.)(검색일: 2025. 7. 4.).

234) 베트남 박닌, 타이응우옌, 호치민 등지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글로벌 생산의 중심이 되었으며, 인도 노이다 공장도 대규모 증설이 이루어졌다(KIEP 북경사무소 2022. 9. 23.).

235) Kotra(2023), p. 12.

23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2. 9.).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로 3개의 실을 두며, 무역협회, Kotra의 전문 인력 및 업종별 협회 및 단체의 지원인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의 주된 업무는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공급망 관련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 시스템(EWS) 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하였다. 동 센터는 기존의 기업활력법 활용 지원센터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²³⁷⁾ 사업재편 제도는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 개선과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인 구조조정 제도와는 차별된다. 기업활력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① 과잉공급 해소, ② 공급망 위협 해소, ③ 신산업 진출, ④ 디지털 전환, ⑤ 탄소중립, ⑥ 산업위기 지역의 지역경제 회복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수출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2023년 10월 출범한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가 대표적이다.²³⁸⁾ 특히 2024년 3차 회의에서는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으로 △ 글로벌 4대 메카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범정부 총력 지원, △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 수출 밀착지원형 통상전략 전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범정부 지원 사항 중에는 무역금융(360조 2,000억 원), 수출 마케팅(1조 원), 수출바우처(1,679억 원), 해외인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²³⁹⁾

237)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5. 7. 4.).

23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10. 5.).

한편 기술안보와 공급망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령도 정비되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한국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핵심기술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② 기술 유출 범죄 구성요건 강화, ③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 마련, ④ 미승인·미신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행정명령 부과 및 통제 강화 등이다.²⁴⁰⁾

더불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투자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 3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²⁴¹⁾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0%, 중소기업은 30%로 상향된다. R&D 세액공제 기간은 5년 연장(2024→2029년)되었는데,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2031년까지 연장되었다.

앞서 조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트럼프 1기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는데, 즉 미국 내 현지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우리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지 생산·투자 유인 정책에 대응하여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공장 신설·증설, 합작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트럼프 1기에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150억 달러 안팎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

239)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2024. 3. 8.)(검색일: 2025. 6. 25.).

240) 개정안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었으며,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41) 2023년 3월 30일 1차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세액공제를 추가 인상(5%p) 및 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내용을 포함한 2차 개정안은 2025년 2월 27일에 통과되었다.

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 279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2년 298억 달러, 2023년에도 2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²⁴²⁾ 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를 약정한 규모는 215억 달러였으며,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미국정부로부터 47억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²⁴³⁾ 2023년 5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약 43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SK온과도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짓기로 하였다.²⁴⁴⁾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조달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거점 및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설비 증설, 기술개발, 국산화 프로젝트를 강화하였다. 예컨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배터리 핵심소재의 국내 조달 비중을 높이고 국내외 협력업체와 합작투자를 확대하였다.²⁴⁵⁾ 더불어 한국은 중국에 집중된 부품·소재 조달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및 남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하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베트남, 인도 등에 반도체·전자부품 생산라인을 확대하였다. ²⁴⁶⁾

24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투자금액 기준(검색일: 2025. 7. 4.).

243)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원으로 확정... 원안보다 26%↓」(12월 21일)(검색일: 2025. 7. 4.).

244) 「현대차·LG엔솔, 5.7조 투자해 美 배터리 공장...연 30만대 물량」(2023. 5. 26.)(검색일: 2025. 7. 4.).

245) 「14년 배터리 갈등 LG·SK...美의 中봉쇄에 거래 뒀다」(2025. 4. 10.)(검색일: 2025. 7. 4.).

246) "Samsung Vietnam eyes \$34.7 bln revenue in 2025, a 10% jump from 2024"(2025. 1. 13.) 및

"SK Hynix looks for local partner to set up memory assembly unit in India"(2025. 11. 24.)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1. 25.)를 참고하여 작성.

표 6-1. 시기별 정부의 대응 비교

구분	트럼프 1기	바이든
협상 전략	쿼터 협상, 면제 요청 등 사후적 대응	IRA · CHIPS 이행지침 협상, EU와 공동입장 조율
통상안보	에너지 수입을 통한 무역흑자 완화, FTA 재협상	공급망 안보 법제화, IPEF 다자공조 강화
산업 지원	철강 중심 피해 완화, 수입대체 산업 유도	첨단산업 법제 정비(K-칩스법)
신시장전략	중국 의존도 완화	ASEAN, 인도 진출 가속화

자료: 저자 작성.

2.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와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관세정책 관련 법적 근거와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 충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장단기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가.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노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수출 주도형 통상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국가 집중과 품목 집중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첫째, 우리 수출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두 국가의 합계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 최근 중국 비중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약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며 약 18%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어느 한쪽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우리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위험을 내포한다. 더불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전략경쟁이 자

리한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HS 4단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상위 5대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35~40%, 상위 20대 품목이 약 60%를 차지한다. 내수 시장이 제한적인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2024년,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45개 품목에서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871억 달러로 상위 100대 품목의 대미국 수출액 1,149억 달러의 약 76%를 차지하며, 전체 대미국 수출액 1,278억 달러

표 6-2.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대중국 수출	162,913	25.28	155,789	22.79	124,818	19.74	133,011	19.46
대미국 수출	95,902	14.88	109,766	16.06	115,696	18.30	127,761	18.69
전체 수출	644,400	100	683,585	100	632,226	100	683,609	100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6-3.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HS 4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대 품목 수출액 (비중)	231,891 (35.99%)	265,459 (38.83%)	241,761 (38.24%)	279,077 (40.82%)
20대 품목 수출액 (비중)	366,859 (56.93%)	402,427 (58.87%)	365,636 (57.83%)	413,454 (60.48%)
전체 수출액	644,400	683,585	632,226	683,609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 약 68%를 차지한다. 대미국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와 직접 연계되어 미국 통상정책의 표적이 되기 쉽다. 또한 교차한 45개 품목을 HS 2단위로 묶으면 87류(자동차·부품), 84류(기계), 85류(전기·전자) 3개군의 대미 수출이 각각 약 429억 달러, 208억 달러, 168억 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군에 교차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역시 한국 제조업의 위험요인이다. 또한 45개 품목 중 전 세계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이 8개²⁴⁷⁾이며 해당 품목들의 대미국 수출이 약 408억 달러로 한국-미국의 결속도 역시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이후 통상 환경은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통상 분쟁,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기조 유지와 산업정책으로 요약된다. 한국은 제6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 생산거점 확충과 다양한 정책 대응을 통해 전체 수출과 대미국 수출을 모두 확대했고, 기계·전기전자·자동차 중심의 고부가가치 구조를 강화하였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하락하는 사이 한국, 멕시코, 베트남의 비중은 상승하는 흐름이 관찰된다. 한편 중국 내 수요와 산업 구조 변화, 대중 수출통제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장벽 확산과 미중 갈등 심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한층 키우고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군이 반복적으로 정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수출이 중간재·자본재 공급을 통해 미국 산업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치적·사회적 요인으로 다양한 통상정책의 확대 적용이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미·대중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핵심 품목이 우리 주력 수출품목과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247) 3918, 8418, 8427, 8428, 8528, 8701, 8703, 8802.

나. 품목별, 조치별, 표적화된 관세 부과와 예외 조항 확대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관세 조치는 거의 모든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전면적이면서 광범위한 조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조치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항상 자국의 국민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외나 면제가 적용되고 있어 선별적(표적화)이면서 유연한 이면이 존재한다.

먼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조치는 한국에 대한 쿼터를 포함해 여러 국가들에 대해 면제 조치가 적용되었다. 특히 주요 수입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2019년 들어 관세가 면제되었고,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EU, 일본, 영국에 대해서도 쿼터가 적용되는 등 우호국을 중심으로는 제한적이지만 면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제301조 조치 역시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 것은 아니며,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25%가 아닌 7.5%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부적으로는 많은 예외와 면제가 적용되었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IEEPA) 조치는 USMCA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된 상호관세(보편관세)의 경우도 이미 제232조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조치가 예정된 품목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게다가 다소 징벌적인 성격으로 시행했던 관세 조치들 역시 계속적으로 시행을 유예하거나(중국), 별도의 면제 리스트를 작성하거나(브

라질) 혹은 기존 상호관세의 면제 리스트를 유지하는(인도) 등 예외적 조치를 통해 급격한 충격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특정 품목군에 대해 시행하는 제232조 관세 조치의 경우에도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일정 부분 예외 및 면제가 존재한다. 철강·알루미늄의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치의 경우 5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책정되었지만, 미국 내에서 용융·주조(철강) 혹은 제련·주조(알루미늄) 공정을 거친 경우 면제되며, 또한 실질적으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조치는 USMCA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함량만큼은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미국 제조사(Big 3)들은 관세를 상당히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EU, 영국,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으므로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내 충격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매우 많은 품목들이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승용차 및 경트럭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되며, 더 나아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USMCA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수입의 경우 관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국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이러한 세부적인 제외 및 면제 조치는 다른 제232조 조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리의 경우 원재료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파생제품의 경우 앞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구리 함량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었다. 한편 목재 및 파생제품의 경우 원목·제재목은 비교적 낮은 관세가 적용되며, 파생제품의 경우도 무역합의가 발효된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관세정책은 특히 최근 들어 전방위적이고 일괄적인 방식

을 표방하고 있으나, 동시에 여전히 선택적이고 표적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결국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가능한 벗어나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관세 조치들 역시 큰 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 및 면제 조치는 촘촘하면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브라질에 대한 보복조치 성격의 추가 40% 관세(IEEPA)에서는 기존의 상호관세 면제 리스트가 아닌 새로운 면제 리스트가 적용되었으며, 여기에는 오렌지주스 등 사소하게 보이지만 일반 소비자와 밀접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은 품목들이 포함된 바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여러 예외 및 면제 조치는 대부분 미국의 일방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국의 개별 협상 과정 등을 통해 도입된 세부적인 면제 조치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무역 합의를 도출한 영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조치에서 쿼터를 포함해 인화된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다음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한 일본, EU, 한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관세의 인화와 더불어 향후 관세가 도입될 수 있는 반도체·의약품 등 분야에서 최혜국대우가 보장되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코코아, 팜유, 고무 수출에 대하여 미국의 상호관세(19%)를 면제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미발효),²⁴⁸⁾ 필리핀 역시 농산물, 전자제품, 타이어, 가방,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하여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²⁴⁹⁾하는 등 세부적인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 역시 단순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접근보다는, 세부적인 산업, 품

248) "Indonesia says US agrees tariff exemption for its palm oil, cocoa, rubber"(2025. 8. 26.) (검색일: 2025. 8. 26.).

249) "Philippines seeking US tariff exemptions for selected exports"(2025. 8. 29.)(검색일: 2025. 8. 29.).

목, 기업 수준에서 고려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이익에 일견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예외 및 면제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품목별 관세 조치(제232조)에 한해서도 약 10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통상·정치·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보복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예측이 불가능한 새로운 조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만연할 뿐 아니라, 기존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합의를 통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산업·무역 정책적 대응을 통해 관세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때 미국과의 협상 측면에서, 비록 복잡하고 그 영향력이 미미하더라도 한-미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파레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나 미국 산업 및 소비자에게 부정적 충격이 클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면제를 이끌어내거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우회수출에 따른 추가 피해 최소화

미 행정부는 2025년 7월 31일에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반년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과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상품에 40% 추가 종가세율(ad valorem rate of duty)과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²⁵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250) 관세 증가와 벌금 부과뿐 아니라 우회수출을 한 기업과 국가에 대해 미국의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했다.

위해 수출 가격을 낮추거나, 국내외 생산기지의 생산량을 조정하거나, 증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다만 열거한 방법은 관세 상승에 따른 비용을 수출 기업이 떠안는 방법이다. 수출 기업은 비용을 떠안지 않고 이윤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우회 수출(환

표 6-4.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내용 중 우회수출(환적) 부분

영문	국문
Sec. 3. Transshipment.	제3조. 환적(우회수출)
(a) An article determined by CBP to have been transshipped to evade applicable duties under section 2 of this order shall be subject to (i) an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of 40 percent, in lieu of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applicable under section 2 of this order to goods of the country of origin, (ii) any other applicable or appropriate fine or penalty, including those assessed under 19 U.S.C. 1592, and (iii) any other United States duties, fees, taxes, exactions, or charges applicable to goods of the country of origin.	(a) CBP가 이 명령의 제2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됐다고 판단한 품목은 (i) 이 명령의 제2조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증가 세율 대신 40%의 추가 증가세율, (ii) 19 USC 1592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하여 기타 적용 가능하거나 적절한 벌금 또는 벌칙, (iii) 원산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미국 관세, 수수료, 세금, 징수 또는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CBP shall not allow,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for mitigation or remission of the penalties assessed on imports found to be transshipped to evade applicable duties.	CBP는 적용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품에 부과된 벌칙을 적용 법률에 따라 완화 또는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b) The Secretary of Commerc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cting through the Commissioner of CBP, in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hall publish every 6 months a list of countries and specific facilities used in circumvention schemes, to inform public procurement, national security reviews, and commercial due diligence.	(b) 상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세국경보호청 청장을 통하여,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우회 행위에 이용되는 국가와 특정 시설의 목록을 6개월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공공조달, 국가안보 심사, 그리고 상업적 실사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Executive Order 14326 of July 31, 2025,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적, transshipment)을 검토할 유인이 크다. 실제로 2025년 9월 12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²⁵¹⁾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불법적인 우회수출 137건이 적발되었다(총규모 약 8,000억 원). 올해 1~8월 동안에만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건수는 약 150%, 금액은 약 1,300% 증가했다.

해외 기업의 우회 수출이 막히면 그다음으로 상품 가격을 낮추어 수출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이 원가보다 수출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저가 상품의 공급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입상품이 중간재일 경우, 국내 중간재 생산자와 수입상품이 경쟁한다. 국내 중간재 생산자는 해외 상품의 덤핑 가격과 가격 경쟁(price competition)을 해야 한다. 고용이나 임금 조정 여력이 부족하고, 기타 중간재 투입품의 비용 감축이 어려울 경우, 저가 수입품의 증가는 해당 중간재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덤핑된 상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내 산업에 속한 기업은 오히려 생산 비용 감소라는 이득을 얻는다. 예컨대 미국의 관세장벽 확대로 중국산 철강이 덤핑 가격으로 한국이 수입되면 중국산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은 승자(winners)가 되지만, 중국산 철강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철강 기업은 모두 패자(losers)가 된다. 다만 덤핑상품의 수입이 국내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예컨대 관세청이 2025년 9월 1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²⁵²⁾ 따르면 올해 우리 기업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기준 10건을 이미 넘어섰고, 과거 최대치(2002)와 같다.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중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 구조가 빠르게 변화

251) 「150% 넘는 미국관세 감당 못하는 중국베트남... 한국산 '택갈이' 적발 16배 폭증」(2025. 9. 13.) (검색일: 2025. 9. 13.).

252) 관세청 보도자료(2025a. 9. 12.).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기업의 한국 경유 우회수출 유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회수출을 이유로 미국이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행정명령 제3조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도록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국내 산업이 외국산 저가 덤핑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증명 요건을 강화하여 제3국 경유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기업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함으로써 의심 품목에 대한 잠정관세 등 신속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우회수출·덤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무역위원회가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과(덤핑조사지원과,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 왔으나, 관세장벽 확산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한다.

라. 관세 관련 국내 피해기업 지원 확대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할 때 무엇보다 관세 정보(information)와 피해 구제(trade remedy)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복잡한 관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현재에도 정부는 관세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수출바우처 사업, 관세대응 119, 수입 규제 컨설팅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언제부터 어떤 상품(HS 코드 단위)에 어떤 관세율이 실제 적용될 것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2025년 3월 중기중앙회에서 실시

한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응답: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 기업 600여 개사, 중기중앙회, 철강과 금속 포함 20개 조합)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 내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응답자 42%)이었고 기업들이 바라는 정부 지원 1순위(응답자 51%)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이었다.²⁵³⁾

정부가 기업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관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글로벌 관세율 변화는 국가 간 상대가격의 변화를 뜻한다. 국가 간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국내 기업은 증장기 관세를 변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 간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특정 상품에 비교우위(경쟁력)가 없었던 일부 국내 기업이 새롭게 생산(더 나아가 수출)을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시행을 지속해서 관찰, 추적,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 보완해야 한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관세 충격의 크기 및 양상에 따라 국내 기업과 고용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9월 3일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자금(약 14조 원)과 무역금융(약 270조 원) 지원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²⁵⁴⁾ 해당 대책은 기존 제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우대지원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

253) 관세청(2025b. 4. 11.).

254) 관계부처 합동(2025. 9. 3.).

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다수의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관세 피해기업을 실제로 돕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찰, 추적, 평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성 강화

트럼프 라운드의 핵심은 관세율 재조정과 교역 상대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으로 요약된다.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투자도 불가피하게 고려될 것이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자국 중심의 전략적 보호무역 기조로 회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고율의 관세뿐만 아니라 보조금, 기술규제 등 복합적인 정책 수단이 결합된 통상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반도체·제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일부 산업(재생에너지)의 보조금 철회 등 보조금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표 6-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TSMC의 1,000억 달러 규모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²⁵⁵⁾ 제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미국 중소기업청(SBA)의 Made in America Manufacturing Initiative)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에게 세제·보조금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²⁵⁶⁾ 반면 일부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행정명령을 통해 철회하거나 조정하고 있어,²⁵⁷⁾ 보조금 정책 역시 산업별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255) “Giant chipmaker TSMC to spend \$100B to expand chip manufacturing in US, Trump announces”(2025. 3. 4.)(검색일: 2025. 9. 18.).

256) SBA(2025), “SBA Announces Made in America Manufacturing Initiative”(검색일: 2025. 9. 18.).

257) Executive Order 14315 of July 7, 2025, “Ending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표 6-5. 트럼프 2기 보조금 관련 정책

정책	내용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TSMC가 미국에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fab 공장 추가 건설 발표, 외국 투자 + 국가적 전략산업 중심 인센티브(보조금 요소) 제공
SBA의 Made in America Manufacturing Initiative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무역 지향 프로그램 발표, 관세 외에도 세제 감면, 생산 유지 인센티브 등의 보조금 요소 포함
행정명령: 풍력·태양광 보조금 제거 지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preferential treatment”를 제거하라는 행정명령
One Big Beautiful Bill Act(2025)	트럼프 2기 핵심 세제/지출 법안으로, 청정에너지 보조금 일부 폐지 혹은 축소,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

자료: 저자 작성.

그간 한국은 WTO 보조금협정과 통상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신뢰성과 통상 분쟁 최소화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보조금 정책을 광범위하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환경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인 산업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안정, 기술 자립, 전환기 산업 지원 등 공공성과 정당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신중히 운용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친환경차, 반도체, 배터리처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산업이나 지정학적 위험이 큰 원자재 공급 분야에서는 공급 안정성 확보, 기술력 성장, 민간 투자 촉진 등 명확한 목적을 전제로 보조금을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도 국제 규범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보조금은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의 교차 지점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관세장벽이 강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은 한국에게 단순한 대응 수준을 넘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해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보조금은 그중 일부 분야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 대응의 옵션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용 여부는 개별 산업의 전략적 가치, 통상적 파급효과,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의 설계와 운용은 국제 규범뿐만 아니라 국내 행정체계 및 기업의 수용 역량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산업정책-통상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실제로 보조금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전달 체계 및 평가 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바. 추가 고려사항: 미 국내법, 무역협정, WTO

1) (미 국내법) 미 관세정책의 지속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 보호 차원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였고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며, 태양광 모듈 및 세탁기 등 특정 수입품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1974년 무역법 제201조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의 무역법 조항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관세 부과 권한을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인 국가안보 또는 대외 정책에 대한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IE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IEEPA를 근거로 하여 국경 안보/마약 밀매 이슈, 무역 적자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입한 IEEPA 기반의 상호관세 및 마약 밀매 관련 관세는 IEEPA가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로 적합한지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2025년 12월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

표 6-6. 트럼프 1, 2기의 주요 관세정책 수단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품목별 관세(제232조): 특정 산업 보호	상호관세 등(IEEPA): 무역 적자 해소, 마약 통제, 전 세계 압박
특정국 불공정 관세(제301조): 중국 견제	품목별 관세(제232조): 특정 산업 보호
세이프가드(제201조): 특정 수입품 급증에 따른 심각한 피해 완충	

자료: 제2장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에 있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관세의 소급 무효화 및 환급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소송 상황, 환급 적용 범위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납부 기록과 통관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통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부정할 경우, 무역 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활용하거나 그밖에 1930년 무역법 제338조나 1974년 무역법 제122조 등 다른 관세 수단을 활용하여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제232조에 따라 부문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IEEPA 관세부과에 제동이 걸릴 경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광물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부과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USTR의 주도 아래 조사 및 공청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IEEPA처럼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으며,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조사 절차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하나, 관세율 15% 상한, 최대 기간 150일이라는 제한이 있다. 다만 CIT는 상품무역 적자는 제122조가 다루도록 의회가 의도한 바로 그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표 6-7. IEEPA를 대체할 관세 부과 수단 비교

구분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관세법 제338조	무역법 제122조
관세 부과 목적 및 근거	국가안보를 해치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 및 관세 부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보복 조치	미국 상위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관세 부과
관세율/기간 제한	관세율 및 기간에 명시적 상한 없음	4년 주기 재검토 (이론상 무제한 연장가능)	최대 50%의 추가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전면 금지 가능	관세율 최대 15%로 제한. 관세 부과 기간 최대 150일로 제한
특징	상무부(DOC)의 조사 및 보고가 선행되어야 함. 관세 부과 권한을 명확히 위임하여 법적 정당성이 있음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및 청문회 등 절차 필요. 주로 특정국(중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됨	대통령 주도. IEEPA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주요 대체 수단으로 주목됨	비교적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조치. CIT가 무역적자 대응을 위한 법적수단으로 제122조를 언급한 바 있음

자료: 제2장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는 제122조가 설정한 제한(관세율 최대 15%, 기간 최대 150일)을 준수해야 하며, 제한이 없는 IEEPA를 적용하여 무제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²⁵⁸⁾

그러나 만약 미국 대법원에서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으로 인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활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보나 긴급 상황임을 명분 삼아 더욱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무역협정) FTA를 활용한 외교적 해법 모색

미국은 2025년 8월 1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였고,²⁵⁹⁾ 멕시코에 대해서는 7월 31일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25% 관세 적용이 90일 연장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는 15%로 책정되

258)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Slip Op. 25-66 (May 28, 2025)(검색일: 2025. 9. 9.).

259) Executive Order 14325.

어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국은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²⁶⁰⁾ 밴 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총무역량 중 USMCA 준수 상품의 비율을 반영할 경우 캐나다의 실효관세는 4.2%, 멕시코의 경우 6.9%로 추산한 바 있다.²⁶¹⁾

USMCA 외 다른 FTA 체결국들은 상호관세에서 자동적인 예외나 면제를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한 국가로 한미 FTA 제2.3조 제1항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may increase any existing customs duty, or adopt any new customs duty, on an originating good)”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관세 방어막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상호관세로 25%를 부과하였고 향후 협상한 결과, 15%로 인하되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콜롬비아, 페루, 칠레, 호주는 FTA의 무관세 혜택과 별개로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10%의 기본 관세(Baseline Tariff)를 부과했다. 호주는 10%의 상호관세에 대해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호주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 희토류·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미국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수입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자제하기로

260) The White House(2025. 4. 2.),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검색일: 2025. 10. 4.).

261) “Despite Tariff Threats, Experts Say USMCA Will Endure”(2025. 7. 25.)(검색일: 2025. 10. 4.).

표 6-8. 미국이 FTA를 체결한 주요국과의 상품무역수지 및 FTA 예외 적용

FTA 체결국	2024년 상품무역수지(미국 기준)	상호관세율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시
멕시코(USMCA)	-1,812억 달러 적자	25%	0%
캐나다(USMCA)	-693억 달러 적자	25%→35%	0%
한국	-662억 달러 적자	25%→15%	변함없음
이스라엘	-68억 달러 적자	15%	변함없음
싱가포르	+20억 달러 흑자	10%	변함없음
호주	+178억 달러 흑자	10%	변함없음

자료: 2024년 상품무역수지(미국 기준)는 BEA,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ecember and Annual 2024 Report"(검색일: 2025. 10. 2.).

결정하였다.²⁶²⁾

이렇듯 FTA 체결국임에도 USMCA와 다른 FTA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육상 국경을 공유하는 최인접국이며, 수십 년간 자동차, 에너지, 농산물 등 핵심 공급망이 통합되어 있어 이 두 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 물가와 미국 제조업체의 공급망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제22.9조는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할 경우,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 분쟁해결절차로의 회부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FTA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상호 관세 및 제232조를 통한 부문별 관세를 부과하는 논리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는 것인데, 한미 FTA 제23.2조(필수적 안보)에서는 "나. [...]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USMCA 제32.2조(필수적 안보)는 별도의 각주가 없으나 한미 FTA 제23.2조 나에 대한 각주 2는

262) 「싱가포르, 미국과 10% 관세 협상 예정」(2025. 4. 4.)(검색일: 2025. 10. 2.).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제23.2조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 제23.2조의 강한(사실상 비심사) 안보 예외 때문에, 제22조 분쟁해결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더라도 패널이 예외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회보고서도 “2025년 7월, 미국과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무역협정을 발표했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국)의회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7월 무역협정이 의회가 비준한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는지, 최종 무역협정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²⁶³고 적시하여 상호관세와 한미 FTA의 합치성 문제를 미국 의회가 검토할 사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법정 다툼보다 정치적·외교적 해법을 통한 부문별 감면, 쿼터, 예외 적용 등을 협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한미 FTA를 통한 문제 제기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정 싸움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실효적일 것으로 보인다.

3) (WTO) 다자 채널을 통한 해결책 모색과 한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이 IEEPA에 대해서(DS633, DS634, DS640), 또 캐나다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해서(DS 635) WTO 분쟁해결기구에 협의 요청을 하였다.

트럼프 1기에도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사건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바 있다. 중국(DS544), EU(DS548), 인도(DS547), 노르웨이(DS552), 스위스(DS556), 튀르키예(DS564) 등이 2018년 WTO 분쟁해결

26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5. 9. 8.), “U.S. Tariff Actions and U.S.-South Korea Trade”(검색일: 2025. 10. 10.).

표 6-9. 국가안보 예외 조항에 대한 쟁점과 WTO 패널 판단

쟁점	패널의 판단	핵심 의미
안보 예외 심사가능성	WTO가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봄.	안보 예외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WTO는 해당 조치가 안보 목적으로 적합한지 따져볼 권한이 있음.
안보 위협의 범위	전쟁에 준하는 심각한 국제적 위기만 해당됨.	단순한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경제적 갈등, 무역 적자 등은 안보 조치를 정당화하는 ‘국제관계상의 비상사태’로 볼 수 없음.
관세 부과 시점	안보 위협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함.	관세 부과 시점과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적 위기’ 사이에 시간적인 연계성이나 긴급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즉 안보 위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관세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입증에 실패함.

자료: WTO(2022. 12. 9.), Panel Report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R(검색일: 2025. 5. 10.)을 토대로 저자 정리.

기구를 통해 협의를 요청하였고 2022년 12월 9일 다수 패널 보고서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미국 패소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은 “GATT 제XXI조는 전적으로 자가판단(self-judging)” 조항이라 주장했지만,²⁶⁴⁾ 패널은 “which it considers” 문구가 각 소목((i)-(iii))까지 비심사화(non-justiciable)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²⁶⁵⁾ 패널이 ‘안보 예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국제관계상의 전쟁 또는 기타 비상사태’[XXI(b)(iii)]의 의미에 대해서 패널은 “전쟁에 준하는 수준의 심각한 국제적 위기(grave tension internationale)”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갈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²⁶⁶⁾ 미국은 (a) 과잉 수입에 의한 국내 철강/알루미늄 대체, (b) 그에 따른 국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c) 철강 및 알루미늄의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이 국내 산업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악영향과 글로벌 초과 생산 능력이 미국의 내부 경제를 약화시킴 등의 이유로 이는

264) WTO(2022. 12. 9.), Panel Report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R, para. 7.105(검색일: 2025. 5. 10.).

265) *Ibid.*, para. 7.128(검색일: 2025. 5. 10.).

266) *Ibid.*, para. 7.139(검색일: 2025. 5. 10.).

국내 안보를 침해하는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그런 경제적 상황은 ‘국제관계상의 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게다가 미 국내법 제232조의 기준을 WTO 제XXI(b)(iii) 요건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²⁶⁷⁾ 또한 안보 예외가 성립하려면 조치가 그 전쟁/비상사태 기간 중(‘taken in time of’)에 취해져야 하는데 패널은 미국이 지목한 사정들과 조치의 시간적 연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²⁶⁸⁾ 안보 예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패널심이 개시되면 패널은 또다시 같은 법리로 국제관계상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GATT 제21조의 국가안보 예외를 통한 정당화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미국이 패소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WTO 제소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현재 WTO의 최종 심급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미국의 거부로 인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패널이 미국 패소 판정을 내더라도 미국이 상소할 경우 상소기구가 기능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다. 설령 미국이 상소하지 않아 패널심이 확정된다 해도, 미국이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즉시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 WTO 제소는 장기적인 전략적 수단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

267) WTO(2022. 12. 9.), Panel Report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R, paras. 7.142-7.143(검색일: 2025. 5. 10.).

268) *Ibid.* para. 7.140(검색일: 2025. 5. 10.).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5.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25-5-2-(1)」. (9월 3일)
- 관세청. 2025a. 「덤핑수입 차단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보도자료. (9월 12일)
- _____. 2025b.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4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산업부, 미국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6월 20일)
- _____. 2018.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 산업부 등 조치에 적극 대응」. 보도참고자료. (3월 9일)
- _____. 2018.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보도참고자료. (6월 29일)
- _____. 2018. 「철강 232조 대응 위해 대미 아웃리치 총력 경주」. 보도참고자료. (3월 6일)
- _____. 2022.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보도자료. (2월 9일)
- _____. 2023. 「민관합동 9대 단기 수출 확대 프로젝트로 수출플러스 전환 이끈다」. 보도자료. (10월 5일)
- 유지윤. 2024.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규엽, 조문희, 강준구, 박혜리, 엄준현. 2017.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조 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문희, 배찬권, 이규엽, 강준구, 김지현. 2020.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북경사무소. 2022. 「중국의 중서부 발전전략과 대아세안 산업이전에 대한 대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24,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2023. 「인도네시아」. KOTRA Country Report.

[영문 자료]

Amiti, M., S. H. Kong, and D. E. Weinstein. 2020. “The Effe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US Invest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7114.

Amiti, M., S. J. Redding, and D. E. Weinstein. 2019. “The Impact of the 2018 Tariffs on Prices and Welfa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4), pp. 187-210.

_____. 2020. “Who’s Paying for the US Tariffs A Longer-Term Perspective.” *AEA Papers and Proceedings*, 110, pp. 541-546.

Antras, P. and D. Chor. 2018. “On the Measurement of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Global Value Chains*, pp. 126-194. Taylor & Francis Group.

Arkolakis, C., A. Costinot, and A. Rodriguez-Clare. 2012. “New Trade Models, Same Old Gai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1), pp. 94-130.

Baldwin, R. 2024a. “Factful Friday with Richard Baldwin, Feb. 9.”

_____. 2024b. “Factful Friday with Richard Baldwin, Feb. 23.”

Benguria, F., J. Choi, D. L. Swenson, and M. Xu. 2022. “Anxiety or Pain? The Impact of Tariffs and Uncertainty on Chinese Firms in the Trade Wa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7.

Boehm, C. E., A. Flaaen, and N. Pandalai-Nayar. 2019. “Input Linkages and the Transmission of Shocks: Firm-level Evidence from the 2011 Tohoku Earthquak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1(1), pp. 60-75.

Boehm, C., A. Levchenko, and N. Pandalai-Nayar. 2023. “The Long and Short (Run) of Trade Elastici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3(4),

- pp. 861-905.
- Bown, C. 2025. "Trump's trade war timeline 2.0: An up-to-date guid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pril 29)
- Broda, C. and D. E. Weinstein. 2006. "Globalization and the Gains from Varie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2), pp. 541-585.
- Buera, F. J. and E. Oberfield. 2020. "The Global Diffusion of Ideas." *Econometrica*, 88(1), pp. 83-114.
- Cadot, O. and J. Gourdon. 2016. "Non-tariff measure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prices: new evidence." *Review of World Economics*, 152(2), pp. 227-249.
- Caliendo, L., M. Dvorkin, and F. Parro. 2019. "Trade and Labor Market Dynamics: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the China Trade Shock." *Econometrica*, 87, pp. 741-835.
- Caliendo, L. and F. Parro. 2015.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2, pp. 1-44.
- _____. 2022. "Chapter 4 - Trade policy,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 Cavallo, A., G. Gopinath, B. Neiman, and J. Tang. 2021. "Tariff Pass-Through at the Border and at the Store: Evidence from US Trade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3(1), pp. 19-34.
- Chen, J., C. Goes, M. Muendler, and F. Trottner. 2025. "Dynamic Adjustment to Trade Shocks." Working Paper.
- Cigna, S., P. Meinen, P. Schulte, and N. Steinhoff. 2021. "The impact of US tariffs against China on US imports: Evidence for trade diversion?" *Economic Inquiry*, 60(1), pp. 162-173.
- Clausing, K. and M. E. Lovely. 2024. "Trump's Proposed Tariffs and Tax Cuts Would Hurt Low-income Americans the Mos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y 20)
- Costinot, A. and A. Rodriguez-Clare. 2014. "Trade Theory with Numbers:

- Quantifying th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pp. 197-261.
- Crucini and Kahn. 2003. “Tariffs and the Great Depression Revisited.” Staff Report no. 172. FRB of New York.
- De Bromhead, Alan Fernihough, Markus Lampe, and Kevin Hjortshøj O'Rourke. 2017. “When Britain Turned Inward: Protection and the Shift toward Empire in Interwar Britain.” NBER Working Paper 23164.
- Dekle, R., J. Eaton, and S. Kortum. 2008. “Global Rebalancing with Gravity: Measuring the Burden of Adjustment.” NBER Working paper 13846.
- Ding, H., B. Pu, and T. Qi. 2021. “Valuation Effects of the US China Trade War The Effects of Foreign Manager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6(3), pp. 662-683.
- Dix-Carneiro, R., J. P. Pessoa, R. Reyes-Heroles, and S. Traiberman. 2023. “Globalization, Trade Imbalances, and Labor Market Adjust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8(2), pp. 1109-1171.
- Eaton, J. and S. Kortum. 2002. “Technology, Geography, and Trade.” *Econometrica*, 70, pp. 741-779.
- Ebeke, C. and J. Siminitz. 2018. “Trade Uncertainty and Investment in the Euro Area.” IMF Working Papers, WP/18/281.
- Fajgelbaum, P. D. and A. K. Khandelwal. 2022. “The Economic Impacts of the US-China Trade War.” *Annual Review of Economics*, 14, pp. 205-228.
- Fajgelbaum, P. D., P. Goldberg, P. Kennedy, A. K. Khandelwal, and D. Taglioni. 2024. “The US-China Trade War and Global Realloc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6(2), pp. 295-312.
- Fajgelbaum, P. D., P. K. Godberg, P. J. Kenenedy, and A. K. Khandelwal. 2020. “The Return to Protectio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 Economics*, 135(1), pp. 1-55.
- Feenstra, Robert C. and David E. Weinstein. 2017. "Globalization, Markups, and US Welfa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5(4), pp. 1040-1074.
- Fitzgerald, D. and S. Haller. 2018. "Exporters and Shock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3, pp. 154-171.
- Flaaen A., A. Hortacsu, and F. Tintelnot. 2020. "The Production Relocation and Price Effects of US Trade Policy The Case of Washing Machin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7), pp. 2103-2127.
- Fontagne, L., P. Martin, and G. Orefice. 2018. "The International Elasticity Puzzle is Worse than You Think."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5, pp. 115-129.
- Freund, C. 2017a. "Public Comment on Trump Administration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y 8)
- _____. 2017b. "Trump Plays Reagan's Game on Tariffs and Taxes." Bloomberg. (December 14)
- Grossman, G. M. and E. Helpman. 1994. "Protection for Sal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pp. 833-850.
- Guo, M., L. Lu, L. Sheng, and M. Yu. 2018. "The Day After Tomorrow Evaluating The Burden of Trump's Trade War." *Asian Economic Papers*, 17(1), pp. 101-120.
- Handley, K., F. Kamal, and R. Monarch. 2025. "Rising import tariffs, falling exports: When modern supply chains meet old-style protectionism."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7(1), pp. 208-238.
- Huang, Y., C. Lin, S. Liu, and H. Tang. 2023. "Trade networks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wa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45.
- Hufbauer, G. C. and Z. Lu. 2016. "Free Trade Agreements and Trade

- Deficit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atch. Washingt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Irwin, Douglas A. 1998. “The Smoot-Hawley Tariff: A Quantitative Assess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pp. 326-334.
- _____. 2012. “The Nixon Shock after Forty Years: The Import Surcharge Revisited.” NBER Working Paper 17749.
- _____. 2017. “Clashing over Commerce: A History of U.S. Trade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21. “The Nixon Shock and the Trading System.” *The International Economy*.
- Jacks, D. S. and D. Novy. 2019. “Trade Blocs and Trade Wars during the Interwar Period.” NBER Working Paper 25830.
- Jensen, J. B. 2025. “Trump’s Tariffs also Threaten US Innova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pril 17)
- Jiang, L., Y. Lu, H. Song, and G. Zhang. 2023. “Responses of exporters to trade protectionism: Inferences from the US-China trade wa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40.
- Jiao, Y., Z. Liu, Z. Tian, and X. Wang. 2024. “The Impact of the US Trade War on Chinese Exporter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6(6), pp. 1576-1587.
- Krugman, P. 1980. “Scale Economi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70(5), pp. 950-959.
- Lovely, M. E. and Y. Liang. 2019. “They Save the Worst for Last: Why Trump’s Impending December Tariffs on China Should Be Rolled Back.” (November 7)
- Mayer, W. 1984. “Endogenous Tariff 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4(5), pp. 970-985.
- Melitz, M.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71(6), pp. 1695-1725.
- Ossa, R. 2014. “Trade Wars and Trade Talks with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104(12), pp. 4104-4146.
- Rodriguez-Clare, A., M. Ulate, J. P. Vasquez, and R. D. Zarate. 2025. “The 2025 Trade War: Dynamic Impacts Across U.S. States and the Global Economy.” NBER Working Paper 33792.
- Romalis, J. 2007. “NAFTA’s and CUSFTA’s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3), pp. 416-435.
- Ruhl, K. 2008. “The International Elasticity Puzzle.” Working Paper.
- Russ, K. N. and D. L. Swenson. 2019. “Trade diversion and trade deficits: The cas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52, pp. 22-31.
- Sampson, T. 2023. “Technology Gaps, Trade, and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113(2), pp. 472-513.
- Statista. 2022. “The Great Depression.”
- Teti, F. 2024. *Missing Tariffs*.
- TikTok Inc. v. Garland, No. 24-5178 (D.C. Cir. Dec. 6, 2024).
- “US Blocks AB Once Again.” 2025. *Washington Trade Daily*, Vol. 34, Number 122. (June 24)
- USITC. 2017. “U.S. imports for consumption, duties collected, and ratio of duties to value,” pp. 1891-2016.
- Waugh, M. E. 2019. “The Consumption Response to Trade Shocks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War.” NBER Working Paper 26353.

[미 행정명령]

- Executive Order 14197.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 Executive Order 14198.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Executive Order 14259. “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Order 14266.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Executive Order 14289. “Addressing Certain Tariffs on Imported Articles.”

Executive Order 14298.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Order 14309. “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Executive Order 14315. “Ending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Executive Order 14316. “Extending the Modific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 Rates.”

Executive Order 14323.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Executive Order 14325.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Executive Order 14326.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Executive Order 14329.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Executive Order 14334. “Further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Ongoing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Order 14345.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Executive Order 14346. “Modifying the Scope of Reciprocal Tariff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rade and Security

Agreements.”

Executive Order 14357. “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ecutive Order 14358.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and Trad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idential Documents, Executive Order 13786.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Presidential Memorandum.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Proclamation 10339. “To Continue Facilitating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Certai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Partially or Fully Assembled Into Other Products).”

Proclamation 10895.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10896.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10908.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10925. “Amendments to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10947.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and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10962. “Adjusting Imports of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9704.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9705.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9980. “Adjusting Imports of Derivative Aluminum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Into the United States.”

[미 공청회 문서]

USTR. 2018. "Section 301 Tariffs Public Hearing." (May 15)

_____. 2019. "Section 301 Tariffs Public Hearing." (June 17)

[온라인 자료]

「150% 넘는 미국관세' 감당 못하는 중국베트남... 한국산 '택갈이' 적발 16배 폭증」.
2025. 『매일경제』. (9월 13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57896?cde=news_edit(검색일: 2025. 9. 13.).

「갈수록 버티기 버거운 산업의 쌀」. 2018. 『동아일보』. (12월 8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186042?sid=101>(검색일: 2025. 7. 3.).

「기아차, 멕시코 소형 세단 생산기지 확보 + 미국 SUV 라인업 구축」. 2018. 『뉴스웍스』.
(9월 6일).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33>(검색일: 2025. 7. 3.).

「미국에 세탁기 공장 삼성·LG 철강관세에 삼중고 비상」. 2018. 『한국경제』. (3월 6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3902797?sid=104>
(검색일: 2025. 7. 3.).

「美 니어쇼어링 최대 수혜국 멕시코... 중남미 수출 교두보」. 2025. 『머니투데이』. (6월 2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1543?sid=101>(검색일: 2025. 7. 3.).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원으로 확정... 원안보다 26%↓」. 2024. 『연합뉴스』.
(12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1002853071>
(검색일: 2025. 7. 4.).

「美의 50% 관세폭탄 앞둔 브라질 “협상하되 안풀리면 다음 대응」. 2025. 『연합뉴스』.
(8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1009200087>(검색일: 2025. 10. 4.).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oneshot.or.kr/Service/Main/app/Main.asp>(검색일: 2025. 7. 14.).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 2024. 한국무역보험공사 카드뉴스. (3월 8일). https://www.ksure.or.kr/rh-kr/bbs/i-417/detail.do?ntt_sn=37045(검색일: 2025. 6. 25.).
- 세계 법제정보센터. 2025. 「브라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상호주의법」 제정」. (5월 7일).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55170&AST_SEQ=40&ETC=2(검색일: 2025. 10. 2.).
- 「싱가포르, 미국과 10% 관세 협상 예정」, 2025. 『AIF 아세안』. (4월 4일).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No=380115&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tPage=10&pageCnt=10(검색일: 2025. 10. 2.).
- 최설화. 2024. 「'트럼프 2.0' 시대와 중국(1):관세」. Meritz Research. <https://ssl.pstatic.net/imgstock/upload/research/invest/1708059936356.pdf> (검색일: 2025. 8. 8.).
- 「트럼프 압박을 어찌할꼬... 삼성·현대차·LG 딜레마」, 2017. 『매일경제』. (2월 3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7700158>(검색일: 2025. 7. 3.).
- 「韓 제조업 생산기지, 베트남 등 아세안 이전 현상 심화」, 2019. 『HANIN POST』. (11월 24일). <https://haninpost.com/archives/27361>(검색일: 2025. 7. 4.).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검색일: 2025. 8. 28.).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keri.koreaexim.go.kr/index>(검색일: 2025. 7. 4.).
-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정보 DB(검색일: 2025. 8. 28.).
- 税委会公告2025年第1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 (2月 4日).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502/t20250204_3955222.htm(검색일: 2025. 10. 1.).
- 税委会公告2025年第2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

加征关税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 (3月 4日).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03/t20250304_3959228.htm(검색일: 2025. 10. 1.).

税委会公告2025年第3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加拿大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의 발표)」。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03/t20250307_3959523.htm(검색일: 2025. 10. 1.).

税委会公告2025年第4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 (4月 4日).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04/t20250404_3961451.htm(검색일: 2025. 10. 1.).

税委会公告2025年第5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04/t20250409_3961684.htm(검색일: 2025. 10. 1.).

税委会公告2025年第6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04/t20250411_3961823.htm(검색일: 2025. 10. 1.).

税委会公告2025年第7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에서 출발하는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발표)」。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05/t20250513_3963684.htm(검색일: 2025. 10. 1.).

税委会公告2025年第9号.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停止实施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중단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11/t20251105_3975755.htm(검색일: 2025. 11. 6.).

Agência Brasil - EBC. 2025. "Tariff hike: exceptions apply to 434 exports to

- US.” <https://agenciabrasil.ebc.com.br/en/economia/noticia/2025-07/tariff-hike-exceptions-apply-434-exports-us>(검색일: 2025. 11. 24.).
-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Inc. v. United States, No. 18-001 52, Slip Op. 19-37 (Ct. Int’l Trade Mar. 25, 2019).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it/18-00152/18-00152-2019-03-25.html>(검색일: 2025. 11. 4.).
-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Inc. v. United States, No. 19-1727 (Fed. Cir. Feb. 28, 2020).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fc/19-1727/19-1727-2020-02-28.html>(검색일: 2025. 11. 4.).
- Asian Development Bank. “ADB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s at current prices.”
- BEA.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ecember and Annual 2024 Report.” <https://www.bea.gov/news/2025/us-international-trade-goods-and-services-december-and-annual-2024>(검색일: 2025. 10. 2.).
- _____.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60-present (Excel).” <https://www.bea.gov/data/intl-trade-investment/international-trade-goods-and-services>(검색일: 2025. 5. 25.).
- Bipartisan Policy Center. 2025. “How Much Are U.S. Tariffs Raising in Revenue?” (April 23). <https://bipartisanpolicy.org/explainer/tariff-tracker>(검색일: 2025. 5. 10.).
- Bond, David E., Matt Solomon, and Ian Saccomanno. 2024. “United States finalizes Section 301 tariff increases on imports from China.” White & Case.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united-states-finalizes-section-301-tariff-increases-imports-china>(검색일: 2025. 8. 19.).
- CEPII. https://www.cepii.fr/cepii/en/bdd_modele/bdd_modele.asp(검색일: 2025. 8. 26.).

- Cheng, Jonathan. 2025. "Mexico Slaps Up to 50% Tariffs on Chinese Goods, Drawing Outcry From Beijing."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1). <https://www.wsj.com/economy/trade/china-urges-mexico-to-drop-protectionist-practices-in-tariff-spat-0b606c35>(검색일: 2025. 12. 12.).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5. "Budgetary and Economic Effects of Increases in Tariffs Implemented Between January 6 and May 13, 2025." (June 4). <https://www.cbo.gov/publication/61389>(검색일: 2025. 7. 15.).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IN11129.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1129>(검색일: 2025. 8. 8.).
- _____. 2025.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Authority to Impose Import Tariffs." CRS Report No. R48435, authored by Christopher T. Zirpoli. (April 23).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435>(검색일: 2025. 11. 5.).
- _____. 2025. "U.S. Tariff Actions and U.S.-South Korea Trade." CRS Report No. IN12569 authored by Wong, Liana. (September 8).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2569>(검색일: 2025. 10. 10.).
- Crowell. 2025. "Section 301: History and Overview." <https://www.cmtradelaw.com/2025/01/section301historyandoverview>(검색일: 2025. 4. 4.).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25. "Canada announces robust tariff package in response to unjustified U.S. tariffs." (March 4).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3/canada-announces-robust-tariff-package-in-response-to-unjustified-us-tariffs.html>(검색일: 2025. 10. 1.).
- Economic Policy Uncertainty. <https://www.policyuncertainty.com/>(검색일: 2025. 10. 17.).
- Federal Register. 2020. "To further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certai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0/16/2020-23108/to-further-facilitate-positive-adjustment-to-competition-from-imports-of-certain-crystalline-silicon>(검색일: 2025. 8. 8.).

_____. 2025. “Adoption and procedures of the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 exclusions process.” (August 1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8/19/2025-15819/adoption-and-procedures-of-the-section-232-steel-and-aluminum-tariff-inclusions-process>(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America First Trade Policy.” Presidential Document, Vol. 90, No. 20 (90 FR 8471). (January 3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30/2025-02032/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 2025. 4. 3.).

_____. 2025. “Implementation of duties on steel pursuant to Proclamation 10896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June 1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6/16/2025-11067/implementation-of-duties-on-steel-pursuant-to-proclamation-10896-adjusting-imports-of-steel-into-the>(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Implementing certain tariff-related elements of the U.S.-EU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tariff suspension.” (September 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25/2025-18660/implementing-certain-tariff-related-elements-of-the-us-eu-framework-on-an-agreement-on-reciprocal>(검색일: 2025. 11. 24.).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06587).” (April 1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16/2025-06587/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

- 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06591)." (April 1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16/2025-06591/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07260)." (April 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25/2025-07260/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07273)." (April 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25/2025-07273/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08500)." (May 1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5/13/2025-08500/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13345)." (July 1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7/16/2025-13345/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13365)." (July 16).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7/16/2025-13365/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16191).” (August 2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8/25/2025-16191/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18729).” (September 2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26/2025-18729/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No. 2025-18749).” (September 2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26/2025-18749/notice-of-request-for-public-comments-on-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Procedures to administer import adjustment offset amounts for certain imports of automobile parts.” (June 1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6/13/2025-10740/procedures-to-administer-import-adjustment-offset-amounts-for-certain-imports-of-automobile-parts>(검색일: 2025. 8. 8.).
- FRED. “All Employees: Manufacturing in Michigan (MIMFG).” <https://fred.stlouisfed.org/series/MIMFG>(검색일: 2025. 4. 4.).
- _____. “All Employees: Manufacturing in Ohio (OHMFGN).” <https://fred.stlouisfed.org/series/OHMFGN>.

- stlouisfed.org/series/OHMFGN(검색일: 2025. 4. 4.).
- _____. “All Employees: Manufacturing in Pennsylvania (PAMFG).” <https://fred.stlouisfed.org/series/PAMFG>(검색일: 2025. 4. 4.).
- _____. 2025. “Federal government current tax receipts: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Customs duties.”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235RC1Q02/SBEA>(검색일: 2025. 4. 4.).
- “Giant chipmaker TSMC to spend \$100B to expand chip manufacturing in US, Trump announces.” 2025. *AP news*. (March 4). <https://apnews.com/article/trump-tsmc-chip-manufacturing-tariffs-42980704ffca62e823182422ee4b7b83>(검색일: 2025. 9. 18.).
- Gillies, Rob. 2025. “Crucial exemption allows majority of Canadian and Mexican goods to be shipped to US without tariffs.” *AP News*. (August 6). <https://apnews.com/article/trump-tariffs-canada-mexico-exemption-969a4cfb03638ce9d6c0ffad2b98b4b1>(검색일: 2025. 10. 2.).
- Global Trade Alert. Activity Tracker. <https://globaltradealert.org/activity-tracker>(검색일: 2025. 8. 8.).
- Government of Canada. “Canada’s response to U.S. tariffs on Canadian good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programs/international-trade-finance-policy/canadas-response-us-tariffs.html>(검색일: 2025. 10. 4.).
- “Hyundai’s Alabama manufacturing plant registers production gain in 2019.” 2020. *Made in Alabama*. (January 2). <https://www.madeinalabama.com/2020/01/hyundais-alabama-manufacturing-plant-registers-production-gains-in-2019/>(검색일: 2025. 7. 3.).
- “Indonesia says US agrees tariff exemption for its palm oil, cocoa, rubber.” 2025. *Reuters*. (August 2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donesia-says-us-agrees-tariff-exemption-its-palm-oil-cocoa-rubber-2025-08-26/>(검색일: 2025. 8. 26.).

- Mexico Business News. 2025. "Despite Tariff Threats, Experts Say USMCA Will Endure." (July 25). <https://mexicobusiness.news/trade-and-investment/news/despite-tariff-threats-experts-say-usmca-will-endure>(검색일: 2025. 10. 4.).
- Office of the Historian.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21-1936/protectionism>(검색일: 2025. 8. 6.).
- Osendarp, Joanne E, Anthony Rapa, Eric S. Parnes, Timothy J. Hruby, Alan Kashdan, and Rachel D. Evans. 2025. "Court of Appeals Rules That President Lacks Authority for Broad Tariffs." *The National Law Review*, Vol. XV, No. 309. (September 4).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ourt-appeals-rules-president-lacks-authority-broad-tariffs>(검색일: 2025. 9. 9.).
- "Philippines seeking US tariff exemptions for selected exports." 2025. *Business World*. (August 29).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8/29/694534/philippines-seeking-us-tariff-exemptions-for-selected-exports>(검색일: 2025. 8. 26.).
- PIIE. 2025.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September 25).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2019/us-china-trade-war-tariffs-date-chart>(검색일: 2025. 10. 1.).
- Renshaw, Jarrett, David Morgan, and David Lawder. 2025. "Trump push to use tariffs to pay for tax cuts faces opposition in Congress." *Reuters*. (January 23).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push-use-tariffs-pay-tax-cuts-faces-opposition-congress-2025-01-22/> (검색일: 2025. 5. 10.).
- Research report. 2024. "Naver Securities Research PDF." <https://ssl.pstatic.net/imgstock/upload/research/invest/1708059936356.pdf>(검색일: 2025. 8. 8.).
- SBA. 2025. "SBA Announces Made in America Manufacturing Initiative."

News Release 25-34. <https://www.sba.gov/article/2025/03/10/sba-announces-made-america-manufacturing-initiative>(검색일: 2025. 9. 18.).

The White House. 2020. “Executive Order 13942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Tok.” Presidential Actions. (August 6).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threat-posed-tiktok/>(검색일: 2025. 9. 9.).

_____. 2020. Executive Order 13943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 Tok. Presidential Actions. (August 6).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threat-posed-tiktok/>(검색일: 2025. 9. 9.).

_____. 2025.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July 3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addressing-threats-to-the-us/>(검색일: 2025. 10. 4.).

_____. 2025. “Adjusting imports of medium-and heavy-duty vehicles, medium-and heavy-duty vehicle parts, and buses into the United States.” (October).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0/adjusting-imports-of-medium-and-heavy-duty-vehiclesmedium-and-heavy-duty-vehicle-parts-and-buses-into-the-united-states/>(검색일: 2025. 10. 21.).

_____. 2025. “Adjusting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September).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adjusting-imports-of-timber-lumber-and-their-derivative-products-into-the-united-states/>(검색일: 2025. 11. 24.).

_____. 2025. “America First Trade Policy” (January 20).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

t-trade-policy/(검색일: 2025. 4. 4.).

- _____. 2025.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pril 2).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declares-national-emergency-to-increase-our-competitive-edge-protect-our-sovereignty-and-strengthen-our-national-and-economic-security>(검색일: 2025. 10. 4.).
- _____. 2025.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Reach Massive Trade Deal.” (July 28).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the-united-states-and-european-union-reach-massive-trade-deal>(검색일: 2025. 10. 1.).
- _____. 2025.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July 3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further-modifying-the-reciprocal-tariff-rates/>(검색일: 2025. 8. 27.).
- _____. 2025. “Modifying the Scope of the Reciprocal Tariff with Respect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November 1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1/modifying-the-scope-of-the-reciprocal-tariff-with-respect-to-certain-agricultural-products/>(검색일: 2025. 11. 24.).
- _____. 2025. 홈페이지. “Report to the President on the America First Trade Policy Executive Summary.” (April 3).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report-to-the-president-on-the-america-first-trade-policy-executive-summary/>(검색일: 2025. 4. 4.).
- _____. “Fact Sheet: U.S.-UK Reach Historic Trade Deal. May 8, 2025. Available at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5/fact-sheet-u-s-uk-reach-historic-trade-deal/>(검색일: 2025. 10. 1.).
- _____. “Joint Statement on Framework for United States-Indonesia Agreement

- on Reciprocal Trade.” (July 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tatements/2025/07/joint-statement-on-framework-for-united-states-indonesia-agreement-on-reciprocal-trade/>(검색일: 2025. 10. 1.).
- Trump, D. J. 2025a. ‘Truth Social post.’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940711907400754>(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b. ‘Truth Social post.’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942189236610107>(검색일: 2025. 10. 21.).
- “Trump push to use tariffs to pay for tax cuts faces opposition in Congress.” *Reuters*. (January 23).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push-use-tariffs-pay-tax-cuts-faces-opposition-congress-2025-01-22> (검색일: 2025. 5. 10.).
- U.S. Congress. “S.J.Res. 37 —A joint resolution terminat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to impose duties on articles imported from Canada.” 119th Congress (2025–2026).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joint-resolution/37>(검색일: 2025. 11. 5.).
- _____. 2025. “Expanded 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Insight, IN12519, authored by Keigh E. Hammond and Kyla H. Kitamura. (September 26).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2519>(검색일: 2025. 11. 6.).
- _____. 2025.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In Focus, IF11346, authored by Danielle M. Trachtenberg. (September 30).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346>(검색일: 2025. 11. 6.).
- _____. 2025.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R45618, authored by Christopher A. Casey, Jennifer K. Elsea, and Liana W. Rosen. (September 1).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5618>(검색일: 2025. 11. 6.).

- _____. H.J.Res.117 —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by the President on July 30, 2025. 119th Congress (2025-2026).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joint-resolution/117>(검색일: 2025. 11. 5.).
- _____. H.J.Res.72 —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by the President on February 1, 2025. 119th Congress (2025-2026).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joint-resolution/72>(검색일: 2025. 11. 5.).
- _____. H.J.Res.73 —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by the President on February 1, 2025. 119th Congress (2025-2026). Available at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joint-resolution/73> (검색일: 2025. 11. 5.).
- _____. H.J.Res.91 — Relating to a national emergency by the President on April 2, 2025. 119th Congress (2025-2026).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joint-resolution/91> (검색일: 2025. 11. 5.).
- _____. H.R. 7521 (118th Congress):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Introduced March 5, 2024. Available at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8/hr7521> (검색일: 2025. 9. 9.).
- _____. H.R.407 — Prevent Tariff Abuse Act. 119th Congress (2025-2026). Available at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407>(검색일: 2025. 11. 5.).
- _____. S.151 —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on Imported Goods Act of 2025. 119th Congress (2025-2026). Available at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51>(검색일: 2025. 11. 5.).
- _____. S.J.Res.49 — A joint resolution terminat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to impose global tariffs. 119th Congress (2025-2026).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joint-resolution/49>(검색일: 2025. 11. 5.).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Fed. Cir.). V.O.S. Selections,

- Inc. v. Trump, No. 25-1812 (Aug. 29 2025). https://www.ca9c.uscourts.gov/opinions-orders/25-1812.OPINION.8-29-2025_2566151.pdf (검색일: 2025. 9. 9.).
-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Slip Opinion 25-66. Decided May 28, 2025. <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25-66.pdf>(검색일: 2025. 9. 9.).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d5afad).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3d5afad>(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d5b0a5).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3d5b0a5>(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d7c46d).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3d7c46d>(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de7ef9).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3de7ef9>(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e0a63e).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3e0a63e>(검색일: 2025. 8. 8.).
- _____. 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ee1cba).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3ee1cba>(검색일: 2025. 10. 21.).
- _____. 2025. GovDelivery bulletin (ID: 3ee1ce7).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3ee1ce7>(검색일: 2025. 10. 21.).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https://fiscaldata.treasury.gov/datasets/monthly-treasury-statement/receipts-of-the-u-s-government>(검색일: 2025. 9. 12.).
- U.S. Supreme Court. “USP Holdings, Inc., *et al.* v. United States, *et al.*” No.22-565 (petition for certiorari filed Dec. 20, 2022).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2-565.html>(검색일: 2025. 11. 4.).

-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 <https://comtradeplus.un.org/>
(검색일: 2025. 8. 28.).
- UNCTAD.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datacentre/>
(검색일: 2025. 8. 7.).
-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Trade Dat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data/index.html>(검색일: 2025. 8. 6.).
- US Congress. 2021. “Safeguards: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In Focus, IF10786 authored by Liana Wong. (January 13).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786>(검색일: 2025. 11. 6.).
- _____. 2025.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In Focus, IF13006, authored by Kyla H. Kitamura. (July 16).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3006>
(검색일: 2025. 11. 6.).
- USITC. “U.S. Trade by Industry Sectors and Selected Trading Partners.” https://www.usitc.gov/research_and_analysis/tradeshifts/2023/us_trade_industry_sectors_and_selected_trading(검색일: 2025. 11. 14.).
- USTR. 2024.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05.14.2024%20Four%20Year%20Review%20of%20China%20Tech%20Transfer%20Section%20301%20\(Final\).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05.14.2024%20Four%20Year%20Review%20of%20China%20Tech%20Transfer%20Section%20301%20(Final).pdf)(검색일: 2025. 8. 19.).
- _____. 2024. “USTR Finalizes Action on China Tariffs Following Statutory Four-Year Review.” Press Releas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4/september/ustr-finalize-saction-china-tariffs-following-statutory-four-year-review>(검색일: 2025. 8. 19.).

- _____. 2025. "U.S.-EU Deal Receives Widespread Praise." (July 29).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july/us-eu-deal-receives-widespread-praise>(검색일: 2025. 10. 1.).
- _____.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Fact Shee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fs/201%20FactSheet.pdf>(검색일: 2025. 8. 8.).
- WITS. WTO IDB. <https://wits.worldbank.org/>(검색일: 2025. 8. 8.).
-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5. 8. 7.).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United States - Universal and Country-Specific Additional Duties on Imports from China: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WT/DS638/1, G/L/1567, G/SCM/D141/1, Geneva, 8 April 2025.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638-1.pdf>(검색일: 2025. 5. 10.).
- _____. 2022. Panel Report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R. (December 9).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4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Dispute Settlement: DS633 — United States — Additional Tariff Measures on Goods from China."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33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Dispute Settlement: DS543 —United States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3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Dispute Settlement: DS544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4_e.htm(검색일: 2025. 4. 4.).

- _____. “Dispute Settlement: DS545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5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Dispute Settlement: DS546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6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Dispute Settlement: DS550 —United States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50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Dispute Settlement: DS557 —Canada —Additional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57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Dispute Settlement: DS562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62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Dispute Settlement: DS635 —United States —Additional Import Duties on Steel and Aluminum Articles from Canada.”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35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2023. “Korea, US reach mutually agreed solution in large residential washers dispute.” *WTO News*. (April 28).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3_e/dsb_28apr23_e.htm(검색일: 2025. 5. 10.).
- _____. “tariff profiles.”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tariff_profiles_list_e.htm(검색일: 2025. 10. 20.).
- _____. “United States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DS543).” *Dispute Settlement: One-Page Case Summaries - 1995-2022*.

- Geneva: WTO, 2020.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1pagesum_e/ds543sum_e.pdf(검색일: 2025. 5. 10.).
- _____.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 (DS546).” Dispute Settlement: One-Page Case Summaries - 1995-2022. Geneva: WTO, 2023.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1pagesum_e/ds546sum_e.pdf(검색일: 2025. 5. 10.).
- _____. “United States —Safeguard Measure on PV Products (China) (DS562).” Dispute Settlement: One-Page Case Summaries -1995-2022. Geneva: WTO, 2022.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1pagesum_e/ds562sum_e.pdf(검색일: 2025. 5. 10.).
- _____. “United States - Universal and Country-Specific Additional Duties on Imports from China: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WT/DS638/3, Geneva, 23 April 2025.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638-3.pdf> (검색일: 2025. 5. 10.).
- _____. “Canada -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of Chinese origin -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China.” G/L/1534 ; WT/DS627/1 (Sep. 11. 2024).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27_e.htm (검색일: 2025. 5. 10.).
- _____.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https://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25. 8. 7.).

부록



미국의 주요 관세 조치 관련 한국과 미국의 무역 동향



2017년부터 현재(2025년 8월)까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비중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까지도 포함하여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미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즉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관세 조치, 특히 중국에 대한 301조 조치(2018~19년) 이후 한국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는 여러 관세 위협과 밀어내기 물량 급증의 영향으로 한국의 비중 역시 등락을 거듭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탁기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이미 과거(2012~13년)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이후 감소한 바 있으나, 2018년 세이프가드 조치 직후에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최근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50% 내외에 달한다. 미국의 세탁기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2021년부터 급격히 높아졌으며, 조치가 종료된 2023년부터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였다.

태양광 제품 관련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2018년 세이프가드 조치 직후 감소했으나 2020년대 들어 다시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조치 직후 감소했는데, 이후 대한민국 수입이 증가했으나 한국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2018년 조치 시행 이전 미국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등이었는데, 조치 이후에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철강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조치 시행 이후 감소했으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비중 역시 10% 이상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철강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알루미늄 수출의 경우 철강에 비하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 규모는 크지 않으며, 2018년 조치 시행 이후 2020년(코로나19)을 제외하면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쿼터를 부과하지 않고 10%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에 대한 제301조 조치 관련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1기 시기(2018~19년)보다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더욱 뚜렷한 양상이다. 제1차 조치 관련 품목들의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조치 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제2차 조치 관련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조치 직후 증가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기간에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4년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2020년대 들어서도 별다른 증가세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제3차 조치 관련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조치 직후 오히려 감소한 바 있으나 2021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이며, 한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치 직후 증가했으나, 2021년부터는 증가세가 미미하다. 제4차 조치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204.1억 달러)부터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비록 크지 않으나, 조치 시행을 전후로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제5차 조치 관련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2018~19년 이미 관세가 부과되었던

만큼 당시에는 앞서 살펴본 품목들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 2024년(9월 27일) 전후로는 오히려 한국의 수출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수출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23년 10%를 상회하였으나, 2024년 약 9%, 2025년 약 7%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조치 관련 품목들의 경우 앞서 살펴본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와 같이 수출과 비중이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파생제품의 경우 2020년 조치에서는 대상 품목이 많지 않았고 2025년 3월에 이르러서야 크게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매우 광범위한 품목들이 대상이 되고 있어 실제 파생제품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더불어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현황 파악이 다소 제한적이다.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202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까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증가세가 크지 않았지만,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과거의 2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더욱 증가해 2023~24년에는 약 50%에 달했다. 미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해 계속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코로나19 이전 10% 미만이던 것이 2024년 약 15%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25% 관세가 부과된 2025년 4월 한국의 비중은 11.4%(1~3월 평균 15.2%)로 크게 약세를 보인 바 있으나, 5~7월(평균 15.8%) 다시 증가하였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제232조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국 수출 역시 202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한국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미국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정체 양상을 보이다가 2025년부터는 감소하였다. 특히 2025년 관세 부과 이후 두 비중 모두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다만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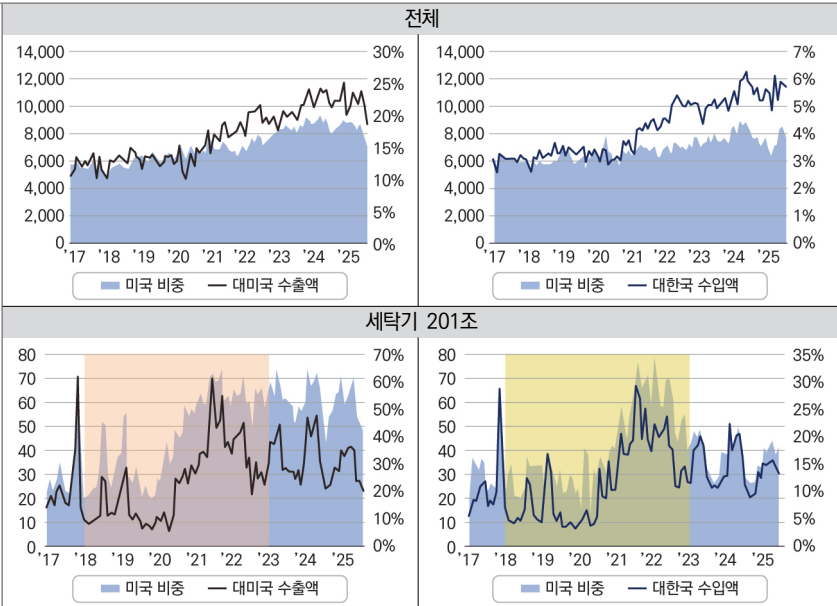
부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이 아닌 여러 품목이 광범위하게 그 대상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승용차 및 경트럭 관련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구리 제품에 대한 제232조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과거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동일하게 비중 측면에서도 한국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과 미국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2025년 상반기(1~6월 평균) 기준 미국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19.0%였으며, 제232조 조치가 시행된 8월에는 16.6%로 크게 변동했다(7월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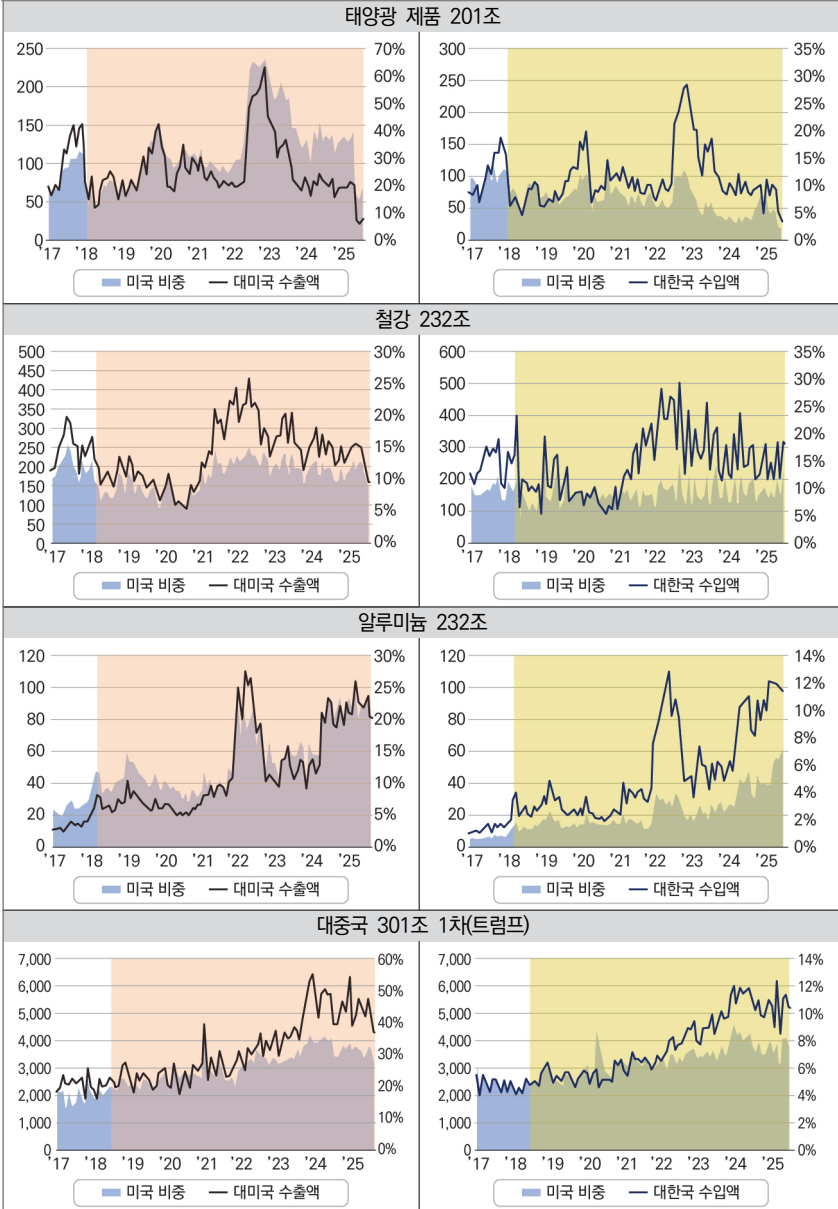
상호관세 조치 관련 품목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 무역 동향은 대체로 전체 수출입 추이와 유사한 양상이다. 다만 2025년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미국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1~3월 평균 2.1%로 예년 대비 낮은 수준을, 4~7월에는 평균 2.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록 그림 1. 미국의 주요 관세 조치 관련 한-미 간 수출입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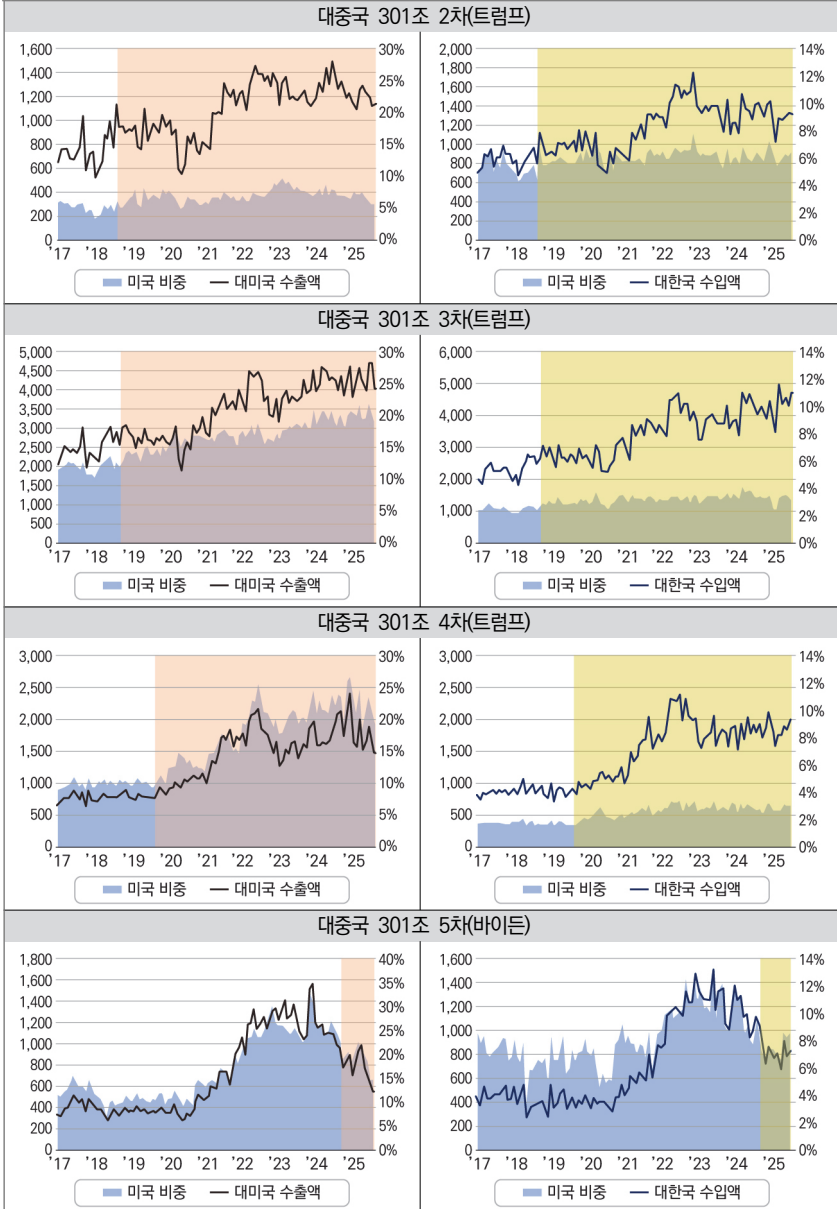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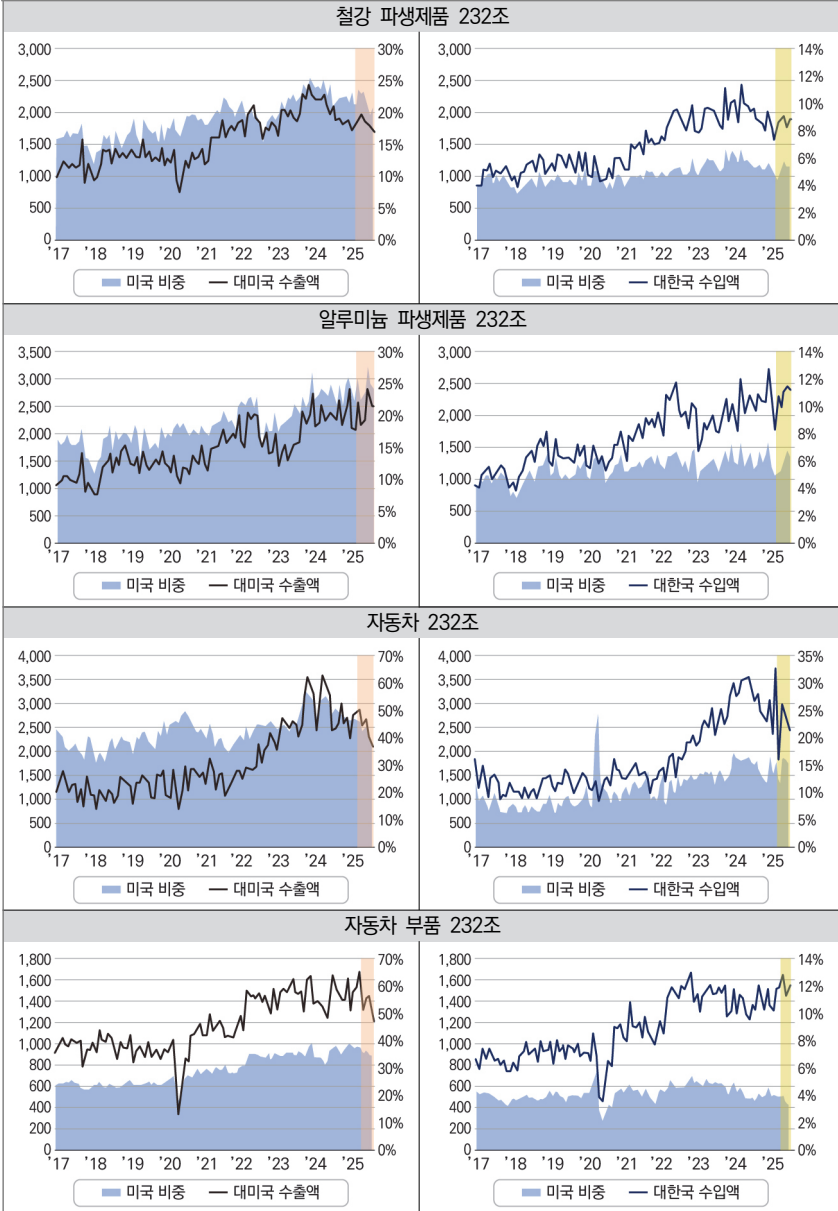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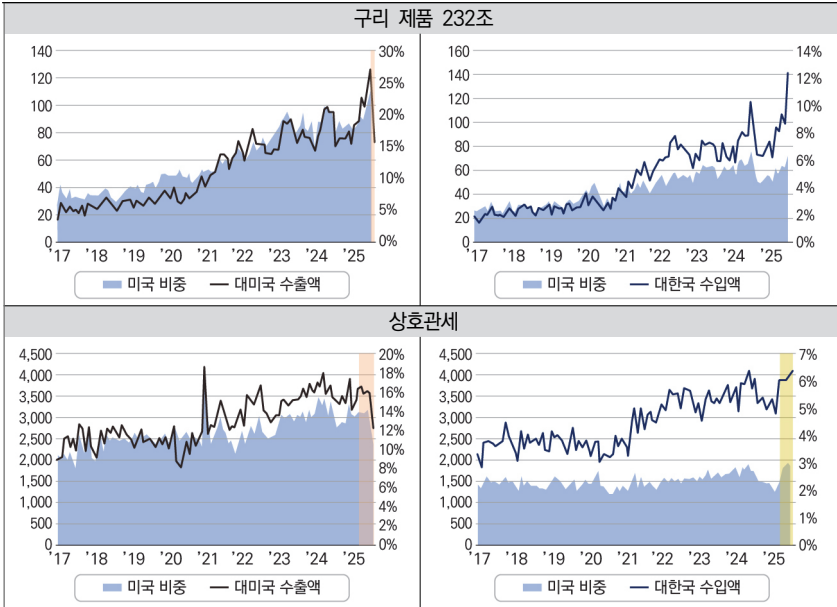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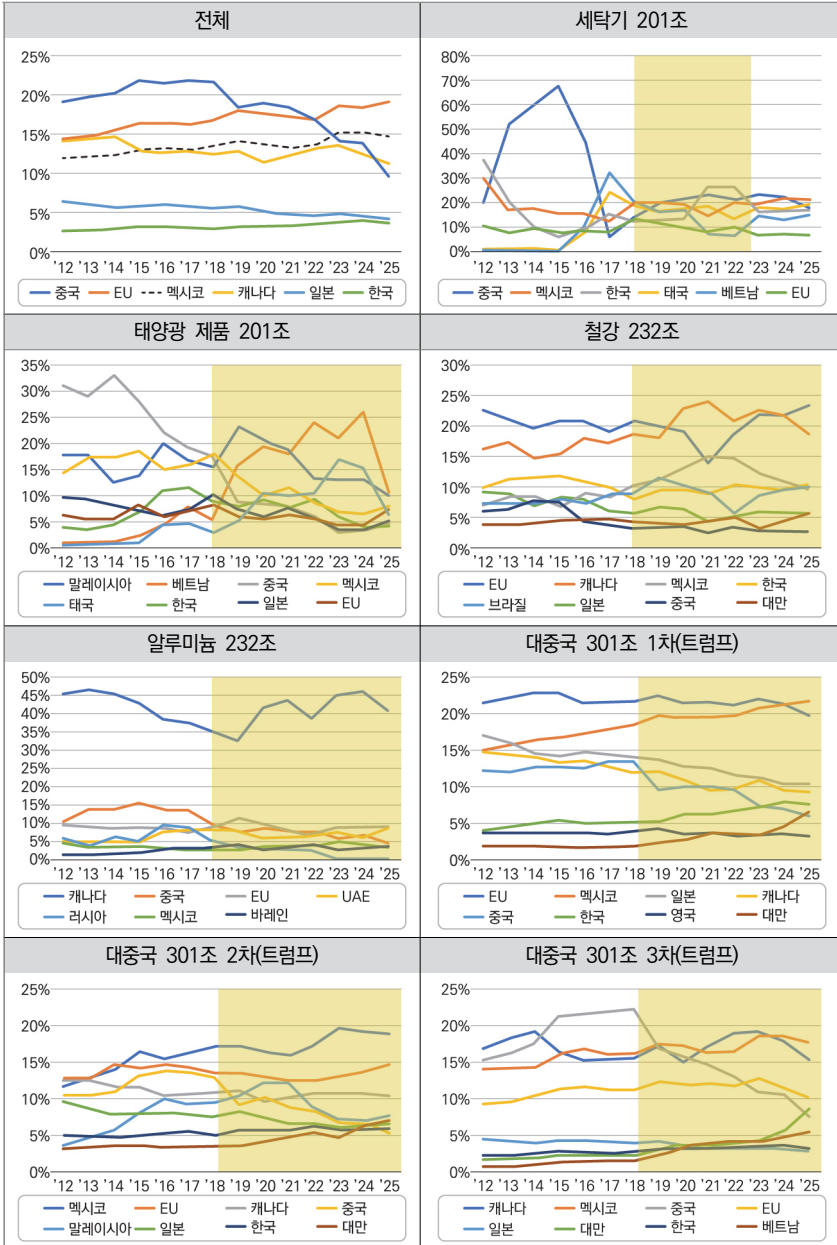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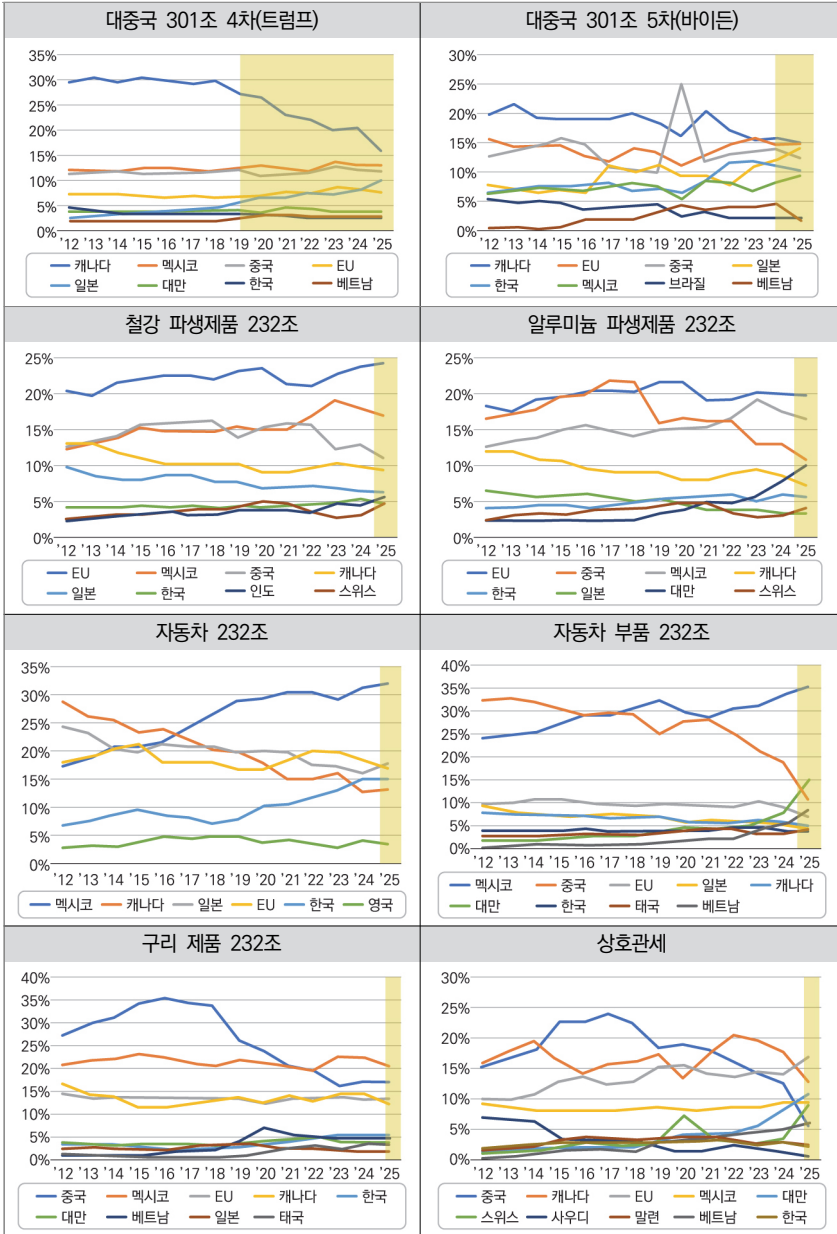
주: 월별 수출 및 수입은 2017년 1월부터 2025년 8월(한국) 및 7월(미국)까지 통계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미국)(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8. 28.).

부록 그림 2. 미국의 주요 관세 조치 관련 국가별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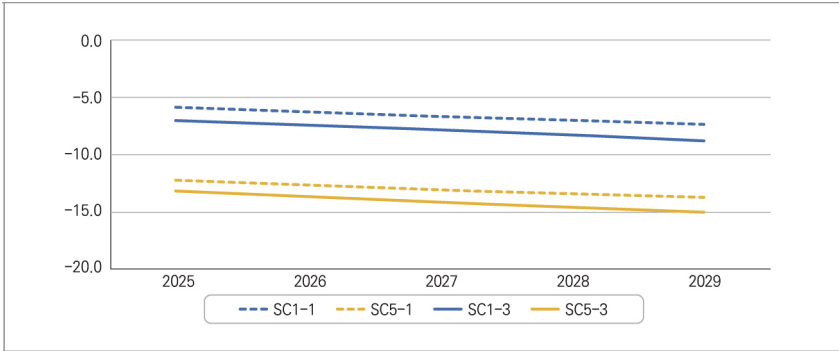
부록 그림 2. 계속



주: 2025년 수입은 2025년 7월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 Plus(검색일: 2025. 8. 28.).

부록 그림 3. 관세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국의 수입 변화



자료: 저자 작성.

The Economic Effects of Global Tariff War

Moonhee Cho, Kyu Yub Lee, Hyunsoo Kim, Hyeyoon Keum,
Minji Kang, and Minchirl Chung

U.S. tariff measures have expanded beyond China to include a broad range of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European Union, Japan, India, and Brazil. The global spread of tariff barriers poses a significant risk to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developed within an ope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is study aims to support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trade by providing policy and strategic guidance in response to the global spread of tariff barrier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historical review of tariff increases, an examination of relevant trade law, empirical analyses, and simulation analyses based on a trade model.

Chapter 1 review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ariff policy across the 1930s, the 1970s, and the post-WTO period. Chapter 2 provide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xpansion of U.S.-originated tariff measures, their legal foundations, and the responses of major economies. Chapter 3 traces the channels through which tariff increases affect the economy by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and highlights theoretical, empirical, and quantitative findings on how tariff hikes influence prices, trade diversion, investment,

employment, and welfare. Chapter 4 provides a statistical assessment of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s of major countries follow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examines performance trends among Korean firms exporting to the U.S. Chapter 5 develops a dynamic trade model to quantify how different global tariff scenarios influence trade flows, prices, and welfar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S. import market, China's share has declined, while the shares of Korea, Mexico, Vietnam, and other countries have increased. Korea'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have grown, particularly in core industries. At the firm level, however, a dual pattern emerges: sales have increased, but profitability has not improved.

Second, the dynamic trade model shows that rising tariff barriers and policy uncertainty have differentiated effects depending on each country's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substitutability of goods. Overall, however, they tend to result in lower trade, higher prices, and reduced consumer welfare. This underscores the need to mitigate short-term disruptions while strengthening medium- to long-term fundamentals. Our scenario analysis further indicates that the primary driver of global trade contraction is not targeted high tariffs on specific products but the escalation of tariff barrier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ddition, countries that, through separate agreements, secured reductions in reciprocal tariff rates and Section 232 tariffs experienced relatively smaller adverse effects, as they gained a relative price advantage over countries that did not.

Third, the current global trade environment is characterized by the weakening enforcement of WTO-based multilateral rules and the

growing prominence of a power-based approach, led by the United States, that relies on domestic law as a policy instrument. In response, major economies are pursuing a range of policy options—including WTO litigation, retaliatory tariffs, negoti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domestic industrial protection mechanisms—depending on the level of tariff pressure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nd their respective economic structures.

Finally, Chapter 6 reviews Korea’s policy responses under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Building on the main findings of Chapters 1 through 5, it sets out six policy dire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to prepare for the possible persistence and entrenchment of tariff barriers: (1) managing the “dual risks” confronting Korea’s exports; (2) pursuing product- and measure- specific responses while strategically utilizing exception clauses; (3)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circumvention trade and making effective use of trade remedy mechanisms; (4) expanding support for firms affected by global trade disruptions; (5) strengthening coordination between industrial policy and trade policy; and (6) making strategic use of legal and diplomatic channels.

<책임>

조문희

연세대학교 경영학/경제학 학사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現, E-mail: mhcho@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공저, 2022)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공저, 2024) 외

<공동>

이규엽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Instructo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장

(現, E-mail: ky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공저, 2023)

“Trade and Growth with Digital Data”(2025) 외

김현수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장

(現, E-mail: kimhs@kiep.go.kr)

저서 및 논문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공저, 2023)

『디지털콘텐츠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공저, 2024) 외

김혜운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사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hykeum@kiep.go.kr)

저서 및 논문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2023)

『디지털콘텐츠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공저, 2024) 외

강민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국제경제법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jkg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공저, 2023)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연구』(2025) 외

정민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cch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공저, 2024)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공저, 2025) 외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25년
 - 25-01 무형자산 기술확산의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
윤정은 · 송하운 · 이병준
 - 25-02 트럼프 2기 대만 정책과 동아시아 경제 · 산업에 대한 영향 /
김선진 · 이홍배 · 서창배 · 이혁구
 - 25-03 글로벌 질서 변동과 새로운 북방전략 연구 /
박정호 · 강부균 · 정동연 · 김경민 · 김석환 · 염동호
 - 25-04 인도 첨단전략산업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
김경훈 · 한형민 · 강반디 · 김민희 · 남유진 · 박병열
 - 25-05 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 연구 /
강문수 · 최인아 · 문지영 · 박미숙 · 유광호 · 이지은 · 이다운
 - 25-06 북합위기 이후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연구 /
최장호 · 김다울 · 최유정 · 김범환
 - 25-07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 연구 /
최원석 · 오수현 · 조성훈 · 홍진희 · 박보영
 - 25-08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 /
강구상 · 김혁중 · 김중혁 · 권혁주 · 박은빈
 - 25-09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 /
오지영 · 노운재 · 박지현 · 송지혜 · 김민희 · 장한별
 - 25-10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윤상하 · 김효상 · 연지흠 · 윤정은 · 송예나 · 이지윤 · 최상엽 · 허진욱
 - 25-11 글로벌 고부채 동향 및 거시경제적 함의 /
최홍석 · 박지원 · 송하운 · 이병준 · 신희비
 - 25-12 중국경제 중장기 성장 전망과 성장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
문지영 · 송하운 · 김홍원 · 최지원 · 조고운
 - 25-13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구조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김규판 · 김혁중 · 이형근 · 이보람
 - 25-14 공급망 재편 시대 벙골만 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전략 /
김경훈 · 신민금 · 김도연 · 윤지현 · 김소은 · 지연정

- 25-15 주요국의 신흥제조기지 진출 현황과 시사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 한선이 · 신민규 · 김예진 · 김소은 · 황인정
- 25-16 지속가능한 중장기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방안 연구 / 정지원 · 윤정환 · 정원혁 · 윤혜민 · 박소정
- 25-17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장영욱 · 라미령 · 노윤재 · 김윤정 · 이영준 · 강준구 · 이현진 · 김제국 · 이정은 · 이종관 · 이승호
- 25-18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와 통상 정책방향 연구 / 김종덕 · 강구상 · 최원석 · 이현진 · 엄준현 · 박보영
- 25-19 중국의 해외 생산 · 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 정지현 · 정재완 · 이철원 · 나수엽 · 김진오 · 김혁황 · 이효진 · 최재희
- 25-20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조문희 · 이규엽 · 김현수 · 금혜윤 · 강민지 · 정민철
- 25-21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협력 방안 / 이은석 · 오지영 · 정지선 · 이예림 · 김유리
- 25-22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과 정책 시사점: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 박정호 · 강부균 · 정동연 · 민지영 · 김경민 · 강태호 · 제성훈
- 25-23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평가 및 시사점 / 정지현 · 이효진 · 이한나 · 김영선
- 25-24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구경현, 이상훈, 한형민, 예상준, 홍성우, 김남석, 정재완, 김혁황, 이재호, 윤지현, 정민철
- 25-25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 정형곤, 김부용, 김용석, 윤여준

■ 2024년

- 24-01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 장영욱 · 이철원 · 강부균 · 김초롱
- 24-02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 김경훈 · 김도연 · 김소은 · 남유진 · 백종훈
- 24-03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강문수 · 유광호 · 이지은 · 김영선 · 이다운
- 24-04 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김은미 · 장한별

- 24-05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
윤상하 · 김성환 · 최홍석 · 송예나 · 백인걸 · 오준석
- 24-06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
조성훈 · 한형민 · 최원석 · 홍진희 · 윤형준 · 최재희 · 김현정
- 24-07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윤상하 · 윤정은 · 조성훈 · 이지윤 · 백예인 · 손녕선
- 24-08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
이천기 · 박혜리 · 오태현 · 이주형
- 24-09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이보람 · 김승현 · 손원주
- 24-10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 /
홍성우 · 김성환 · 김진오 · 강준구 · 박미숙 · 박진희 · 김승현
- 24-11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허재철 · 정지현 · 김효상 · 김홍원 · 이한나 · 최지원 · 최재희
- 24-1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 장영욱 · 한형민 · 오태현 · 윤형준
- 24-13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석 · 주재우 · 신민이 · 김제국
- 24-14 ODA 평가의 활용 현황과 유용성 제고 방안 연구 /
이은석 · 오지영 · 정지선 · 유애라 · 이예림
- 24-15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파급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
최홍석 · 송새랑 · 한원태 · 김준형 · 이용대
- 24-16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
문지영 · 나수엽 · 박민숙 · 오종혁 · 김홍원 · 문익준
- 24-17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김현수 · 강준구 · 금혜윤 · 심경보
- 24-18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구조 분석 /
정형곤 · 김혁중 · 김정현 · 최진백
- 24-19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
최인아 · 김경훈 · 배기현 · 이재호 · 김소은
- 24-20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
김혁중 · 강구상 · 홍성우 · 김종혁 · 민보람 · 김용기

- 24-2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양아 협력 시사점 / 정민현 · 김정민 · 김혁황 · 정동연 · 김원기
- 24-22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
최장호 · 김다울 · 이정균 · 이희선
- 24-23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 · 김혁황 · 엄준현 · 신은철 · 이진혁
- 24-2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
노운재 · 김경훈 · 김민희 · 남유진 · 박지원
- 24-25 한-아프리카 자원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 /
한선이 · 조성훈 · 김예진 · 김주혜 · 서상현
- 24-26 복합 위기 시대의 난민과 강제 이주: 현황과 한국의 과제 /
윤정환 · 장영욱 · 오지영 · 김윤정 · 윤혜민 · 박소정
- 24-27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 · 연지흠 · 정민철 · 류기락
- 24-28 중국의 디지털 통상 발전 전략과 시사점 /
이승신 · 최원석 · 나수엽 · 김영선 · 서봉교
- 24-29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
이주관 · 조문희 · 박지현 · 박혜리 · 김민성
- 24-30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
예상준 · 정원혁 · 오종혁 · 엄준현 · 이대은 · 연원호
- 24-31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비전 2050 /
허재철 · 정성춘 · 김규판 · 오수현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김승현 · 손열 · 전재성 · 한준 · 이정환 · 임은정 · 백서인 · 박지수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월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A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The Economic Effects of Global Tariff War

Moonhee Cho, Kyu Yub Lee, Hyunsoo Kim, Hyeyoon Keum,
Minji Kang, and Minchirl Chung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는 관세장벽의 영향을 역사적·법적·실증적·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관세장벽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전략을 제시한다.



ISBN 978-89-322-1950-9
978-89-322-1072-8(세트)

정가 12,000원